

2002년도

규제개혁 백서

규제 개혁위원회



고건 국무총리께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03. 6. 13)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 (2003. 5. 30)



한정길 경제1분과위원장이 경제1분과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03. 6. 11)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 경제1분과위원회 위원들 (2003. 6. 11)



정문수 행정사회분과위원장이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03. 6. 11)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 행정사회분과위원들 (2003. 6. 11)



경제2분과위원회 김대환 위원장이 경제2분과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03. 6. 13)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 경제2분과위원회 위원들 (2003. 6. 13)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2단계 규제개혁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새로 설립하려면 정부기관의 도장을 선진국의 경우보다 훨씬 많이 받아야 합니다. 무한경쟁시대를 맞은 우리 경제에 도약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정부규제의 혁파는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과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97년 국무총리로 일할 때, 정부 규제를 혁파하는 일을 총리 직무수행의 첫 발걸음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처럼 규제개혁이 일과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추진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규제개혁의 기본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독립적인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규제혁파업무를 추진하도록 했고, 일정한 시한이 지나면 저절로 규제가 없어지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때 출범했던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기존 규제의 절반 이상을 폐지하거나 개선했습니다. 또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규제의 양산을 막아 왔습니다. 그리고 지식정보화 사회를 구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낡은 제도를 새로운 틀로 고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규제숫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양 위주의 규제개혁을 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무로 치자면 가지치기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기업하는데 불편한 핵심덩어리 규제에 대한 개혁이 미흡했기 때문에 기업인들과 국민들은 아직 규제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정부에서는 과거 양 위주의 1단계 규제개혁을 질 위주의 2단계 규제개혁으로 전환해서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참여정부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그냥 추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쟁국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앞으로 5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새로 정한 핵심규제개혁의 10대 전략과제 중 6대 분야를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과제로 선정하여 이를 중점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들도 찾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규제개혁백서에는 그동안의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방향과 추진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2010년에 세계 10대 경제강국, G10과 2만불시대에 진입할 수 있도록 참여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힘써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위원회'로 만들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과 기업인 여러분께서 참여정부의 새로운 규제개혁 추진노력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규제개혁 백서 발간에 부쳐



정부에서는 지난 5년간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11,000여 건의 규제를 발굴 이 중 절반 이상을 폐지하고, 157개 중점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총 1,339개 법령, 4,518건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를 통해 1,544건을 개선 또는 철회토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여 왔습니다.

특히, 2002년 10월에는 APEC-OECD 규제개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여 우리의 규제개혁 성과를 과시하고 규제개혁의 수준을 국제화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체계 정립을 위해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110개 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 정부 5년간 추진한 규제개혁 실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규제개혁의 추진을 위한 표적으로 삼기 위해 2002년도 규제개혁 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백서는 제1장과 제2장에서 규제개혁 추진체계와 지난 5년간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종합 정리하고, 제3장 내지 제8장에서 분야별 추진실적을 수록하였으며, 제9장에서 규제개혁 추진실적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싣고, 제10장에서는 향후 규제개혁의 방향과 2003년도 추진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규제개혁 백서가 관계 공무원에게는 업무 지침서로서, 전문가와 일반국민에게는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그 동안 정부의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안문석

제1장 | 규제개혁 추진개요

제1절 규제개혁 추진경위 · 25

제2절 규제개혁 추진방향 · 27

1. 규제개혁의 필요성 · 27
2. 규제정비원칙 · 28

제3절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조직 · 30

1. 개요 · 30
2.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32
3.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6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추진기구 · 38

제2장 | 국민의 정부 5년간 규제개혁 추진실적

제1절 기존규제의 전수조사 및 일제정비 · 43

제2절 중점규제개혁 과제의 정비 · 45

제3절 지식정보화 관련 규제정비 · 51

1. 제1단계 지식정보화 과제 · 52
2. 제2단계 지식정보화 과제 · 56

제4절 규제의 신설 · 강화에 대한 심사 · 57

제5절 하위법령·유사행정규제의 정비·59

제6절 행정규제의 등록·공표·61

1. 추진개요·61
2. 등록대상 규제사무·62
3. 규제사무의 등록 현황·62

제7절 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국민제안·68

1. 규제신고센터 설치·운영·68
2. 국민제안 접수·처리 실적·69
3. 평가 및 향후계획·71

제3장 | 규제개혁 특성과제의 정비

제1절 금융규제의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75

1. 금융기관 건전성 관련 규제정비방안(금감위)·75
2. 금융기관의 유사업무 관련 법규통폐합을 통한 규제정비(재경부)·78
3. 금융감독규제의 체계화방안(금감위)·81
4. 금융기관 각종 신고(보고)부담 경감방안(금감위)·84

제2절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87

1. 선박 항행구역(航行區域)의 합리적 조정(해양부)·87
 2. 방송국 허가제도 개선(정통부)·90
 3. 석유유통체계 개선방안(산자부)·91
-

4. 외국인력 활용제도의 합리화 방안(노동부) · 93

제3절 건축·소방 등 국민생활 관련 규제개혁 · 104

1. 소방 관련 규제개혁 방안(행자부) · 104
2. 건축기준 합리화 방안(건교부) · 111
3. 광고물 관련 규제개혁방안(행자부) · 115
4. 교육과정 개편 관련 규제개선방안(교육부) · 118

제4절 환경규제의 합리화 · 122

1. 연료사용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환경부) · 122
2. 폐기물 소각시설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환경부) · 128

제4장 |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규제개혁

제1절 추진개요 · 137

제2절 추진실적 · 139

1. 제1차 건의과제 및 처리실적 · 139
 2. 제2차 건의과제 및 처리실적 · 141
 3. 제3차 건의과제 및 처리실적 · 143
 4. 제4차 건의과제 및 처리실적 · 145
 5. 제5차 건의과제 및 처리실적 · 147
 6. 제6차 건의과제 및 처리실적 · 155
 7. 제7차 건의과제 및 처리실적 · 158
-

제5장 |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제1절 전자정부 구현의 실효성 확보 · 163

1. 전자정부 구현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행자부) · 163
2.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화 추진(행자부) · 164
3. 행정정보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행자부) · 167
4. 민원사무의 정보통신망 사용 관련 규제 정비(행자부) · 168
5. 정보통신망 이용 민원의 신분확인 관련 규제 개선(행자부) · 169
6. 전자서명시스템 구축(산자부) · 170
7. 전국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교육부) · 171

제2절 국민생활의 편의 증진 · 174

1. 교육과정 관련 법령 정비(교육부) · 174
2. 사회교육 체제 운영 관련 규제개혁(교육부) · 175
3. 의료정보 유통의 원활화를 위한 기반 구축(복지부) · 177
4. 의약품 등 구매·유통의 편의 및 효율화(복지부) · 180
5. 의료서비스분야 보완 발전(복지부) · 183
6. 유통 농산물의 중량 허용오차 개선(농림부) · 184
7. 포장 농산물의 의무표시 사항 정비(농림부) · 185
8. 농작업 재해의 산재보험대상 확대(노동부) · 186
9. 소방과 화재보험제도 연계를 통한 재해 예방 강화 · 189

제3절 금융산업의 선진화 · 191

1. 투신관련 공시제도 개선(재경부) · 191
 2. 금융신상품 개발과 관련된 규제의 완화(금감위) · 193
-

3. 신용카드 가맹점공동망 가입 관련 규제완화(금감위) · 195
4. 상호저축은행의 점포설치 규제완화(금감위) · 197

제4절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제고 · 201

1. 소출력 FM방송국 제도 개선(정통부) · 201
2. 시내전화 · 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성제도 도입(정통부) · 202
3. 요금규제제도 개선(정통부) · 203
4. 주파수 경매제도 도입(정통부) · 203
5. 무선국 준공기한 신설(정통부) · 204

제5절 산업기반 구축 · 205

1. 지리정보유통 관련 제도 정비(정통부 · 건교부) · 205
2. 지하시설물 수치지도의 표준화 추진(산자부 · 정통부 · 건교부) · 208
3. 건설기능 인력의 효율적 경력 관리 체계 구축(건교부) · 211
4. 산업단지 관리기관 범위 확대(산자부) · 213
5. 국가기술자격 신뢰도 제고 관련 규제개혁 추진방안(노동부) · 214
6. 과학기술 연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기부) · 222

제6장 | 신설 · 강화규제에 대한 심사

제1절 공정거래분야 · 225

1. 공정거래위원회 · 225

제2절 재경금융분야 · 239

1. 재정경제부 · 239
2. 금융감독위원회 · 256
3. 관세청 · 272

제3절 산업자원분야 · 273

1. 산업자원부 · 273
2. 중소기업청 · 289
3. 특허청 · 290

제4절 건설교통분야 · 292

1. 건설교통부 · 292
2. 철도청 · 325

제5절 보건복지분야 · 327

1. 보건복지부 · 327

제6절 일반행정분야 · 341

1. 행정자치부 · 341
2. 법무부 · 347
3. 경찰청 · 350

제7절 교육분야 · 355

1. 교육인적자원부 · 355

제8절 문화관광분야 · 368

1. 문화관광부 · 368
-

제9절 노동분야 · 373

1. 노동부 · 373

제10절 외교 · 국방 및 보훈분야 · 388

1. 외교통상부 · 388
2. 통일부 · 389
3. 국방부 · 391
4. 국가보훈처 · 392
5. 병무청 · 393

제11절 환경분야 · 394

1. 환경부 · 394

제12절 해양수산분야 · 416

1. 해양수산부 · 416

제13절 농림분야 · 433

1. 농림부(농업진흥청 포함) · 433
2. 산림청 · 446

제14절 과학기술 · 정보통신분야 · 450

1. 과학기술부(기상청 포함) · 450
 2. 정보통신부 · 456
-

제7장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및 APEC-OECD 규제개혁회의

제1절 2002년 자치단체 규제정비 · 469

1. 추진배경 · 469
2. 2002년도 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현황 · 470
3. 향후 자치단체 규제정비 중점 사항 · 471

제2절 APEC-OECD 규제개혁 한국회의 · 473

1. 개요 · 473
2. 회의개최 배경 · 473
3. 한국회의의 논의내용 · 474
4. 한국회의의 성과 · 478
5. 향후 조치 계획 · 479

제8장 |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제1절 이행실태 점검개요 · 485

1. 점검체계 구축 개요 · 485
2. 점검결과 · 488

제2절 제9차 이행실태 점검 · 489

1. 점검 개요 · 489
 2. 점검결과 · 490
 3. 분야별 세부 지적 사항 · 491
-

4. 수범 사례 · 494

제9장 | 규제개혁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제1절 김대중정부 규제개혁 5년의 평가 · 497

1. 우리나라에서의 규제개혁의 의의: 규제완화, 민영화, 분권화 · 497
2. 규제개혁 추진실적과 평가 및 규제개혁추진체계의 문제점 · 500
3. 김대중정부 규제개혁의 교훈 · 509

제2절 2002년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 516

2002년 규제개혁 종합평가 · 516

1. 2002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및 실적 · 516
2. 2002년도 규제개혁 평가 · 523
3. 규제개혁의 과제와 방향 · 526

금융분야 규제개혁 평가 · 527

산업건설분야 규제개혁 평가 · 531

1. 평가의 관점 · 531
2. 2002년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 · 534
3. 맺는 말 · 539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 평가 · 540

1.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의 특성 · 540
2. 보건의료분야의 규제개혁 과제 · 541
3.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의 새로운 출발 · 544

교육분야 규제개혁 평가 · 545

1. 교육분야 규제개혁의 의의 · 545
2. 교육분야 규제개혁의 추진 및 주요 실적 · 546
3. 교육분야 규제개혁의 성과 · 548
4. 교육분야 규제개혁의 미흡한 점 · 549
5. 교육분야 규제개혁의 향후 과제 · 550

정보통신분야 규제개혁 평가 · 551

환경분야 규제개혁 평가 · 557

1. 서론 · 557
2. 2002년도 환경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 및 실적 · 558
3. 2002년도 환경분야 규제개혁의 평가 · 561
4. 환경분야 규제개혁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 563

제10장 | 2003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제1절 추진방향 · 567

제2절 세부 추진계획 · 569

1.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10대 전략과제 추진 · 569
 2. 기존규제 일제정비 · 570
 3. 유사행정규제 등 현장규제의 정비 · 571
 4. 신설 · 강화규제 심사의 내실화 · 571
 5. 규제개혁 추진역량의 제고 · 572
 6. 규제개혁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573
-

부록 제1장 | 행정규제기본법 · 시행령

제1절 행정규제기본법 · 시행령 · 579

행정규제기본법 · 579

제1장 총 칙 · 579

제2장 규제 신설 · 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 581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 584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 586

제5장 보 칙 · 588

부 칙 · 589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 590

제1장 총 칙 · 590

제2장 규제 신설 · 강화에 대한 심사 · 592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 594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 595

제5장 보 칙 · 598

부 칙 · 599

제2절 규제개혁위원회운영세칙 · 601

규제개혁위원회운영세칙 · 601

제1장 총 칙 · 601

제2장 위원회의 운영 · 601

제3장 분과위원회의 구성 · 운영 · 602

제4장 사무기구 · 603

제5장 전문위원·조사요원 및 전문 연구기관 등·604

제6장 보 칙·605

부 칙·605

부록 제2장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현황 및 상정안건

제1절 규제개혁위원회·609

제2절 경제1분과위원회·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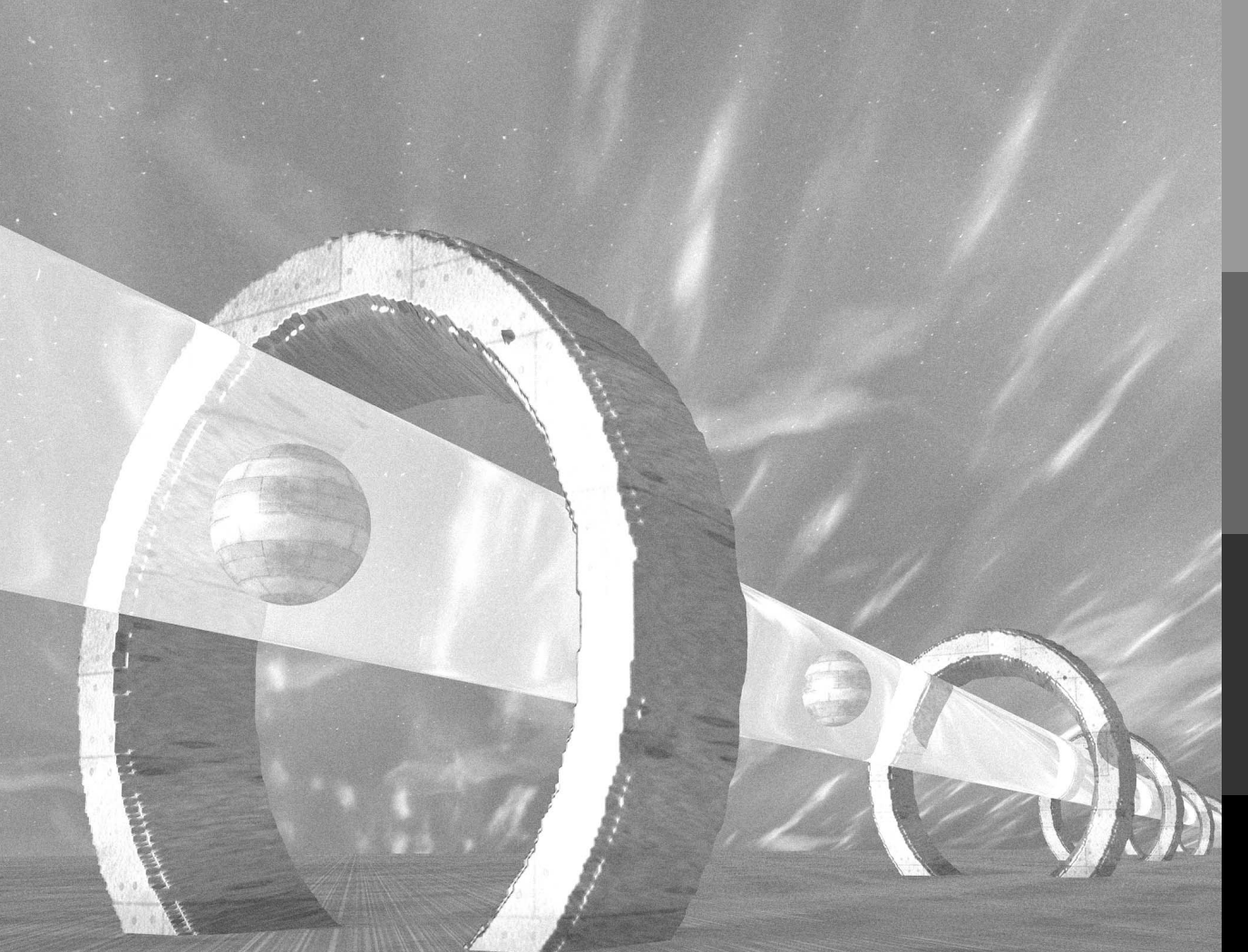
제3절 행정사회분과위원회·635

제4절 경제2분과위원회·640

2002년도

규제개혁 백서

규제 개혁위원회



제1장 규제개혁 추진개요

제1절 _ 규제개혁 추진경위

제2절 _ 규제개혁 추진방향

제3절 _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조직

제1절 _ 규제개혁 추진경위

*집필자 : 박구연 서기관(Tel. 3703-3926, kuyeon@opc.go.kr)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래 30여 년간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전략을 채택하여 괄목할 만한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이 시기에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략산업을 빠른 시일 내에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 의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민간부문이 신장됨에 따라 정부의 개입과 간섭은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창의를 억제하고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 WTO 출범 이후 무역자유화와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시나 통제에 의한 규제메커니즘으로는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정부규제의 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시급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1980년대 이후 국제적인 규제완화 추세에 따라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들어 이러한 규제개혁 노력이 가속화되었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행정쇄신위원회」를 중심으로 5년 간 약 6,0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또한 1997년에 설치된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도 경제활성화와 국민 편익증진을 위해 약 100여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규제완화 작업은 대부분 구비서류 감축, 절차 완화 등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규제완화 수준에 머물렀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1997. 8월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이고 항구적인 규제개혁의 틀을 마련했다.

1998. 2월 IMF위기 극복의 과제를 안고 출범한 국민의 정부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1998. 4월 대통령 소속으로 민간중심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적이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은 1998년 당시 기존규제의 절반수준 폐지, 법령 미근거 규제의 전면 철폐, 규제영향분석의 실시와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도입 등 보다 체계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제2절 _ 규제개혁 추진방향

*집필자 : 박구연 서기관(Tel. 3703-3926, kuyeon@opc.go.kr)

1. 규제개혁의 필요성

가. 경쟁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경쟁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혁이 선결과제다.

나. 민간자율과 창의의 극대화

다양성과 창의성이 인정받는 행정풍토와 사회분위기를 진작시키고 투명한 규제제도의 확립과 공정한 경쟁의 보장을 통해 경제활동의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도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다. 국민생활의 질 향상

보건, 환경, 안전 등의 사회적 분야에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 나가야 한다.

라. 부정부패의 추방

규제가 심한 곳에 부정과 비리가 발생해 왔으며 모호한 규제와 비현실적 규제로 인해 각종 부정과 비리가 유발되어 왔던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따라서 부정부패가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제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마. 제도의 국제화

국제화와 세계경제 통합 추세에 부응하여 규제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제교류와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선진 규제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2. 규제정비원칙

가. 경제적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사회적 규제는 합리화한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과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제적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환경·안전·보건 등 국민 대다수와 관련된 사회적 규제는 무조건적인 폐지보다는 규제의 내용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나. 규제방식을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한다

인·허가 등과 같이 특정분야에 대해 사전적·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나열하는 규제방식에서 등록·신고와 같이 기준을 마련하여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다.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모호하거나 포괄적인 규정으로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전환하여 부정부패의 여지를 최소화한다.

라. 준수율이 낮거나 규제효과에 비해 비용이 더 큰 규제는 폐지 또는 개선한다

준수율이 낮은 비현실적인 규제는 기준을 현실화하거나 다른 정책 수단으로 대체하고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여 주어진 규제목표에 대해 최선의 규제수단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정비한다. 또한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규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규제일몰제를 적용한다.

마. 동일 목적의 다른 규제 혹은 동일 내용을 다수의 기관에 중복 제출토록 하는 규제는 주된 규제로 통합하여 정비한다

중복규제에 대한 심사 시 관계부처의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하고 One-Stop Service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바. 국제적 규범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폐지한다

경제적 규제에 있어서 해당 부처가 외국에서도 동일(유사)한 규제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우리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규제가 경쟁국에 비해 과다하거나 불합리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제3절 _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조직

*집필자 : 민용식 서기관(Tel. 3703-3931, kantmin@opc.go.kr)

1. 개요

가.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기구 구축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다원적으로 추진하여 오던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원화하였고, 중앙행정기관별로 자체 규제개혁추진기구를 설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연계 운영함으로써 범정부적인 규제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기구

(1) 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중앙행정기관별 규제개혁추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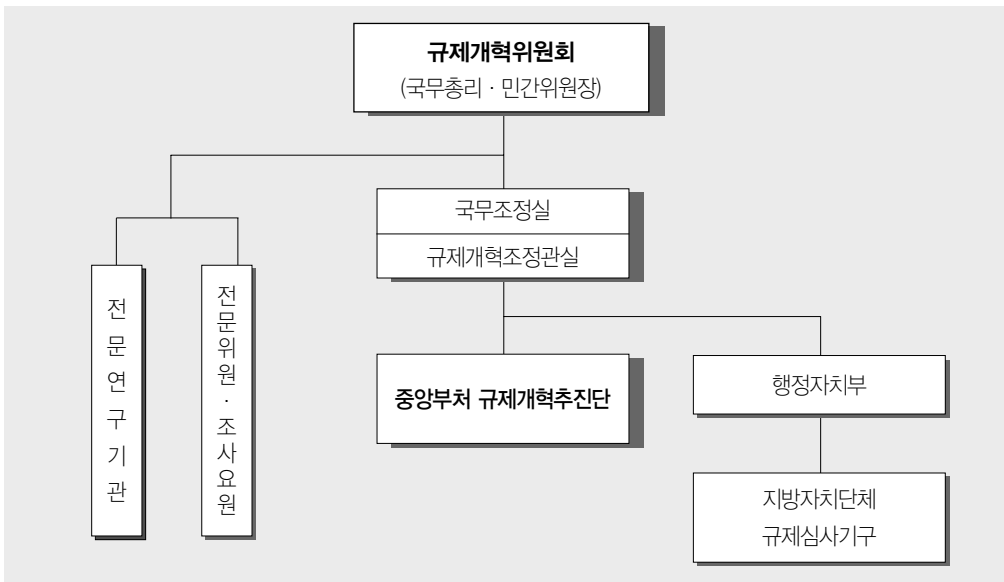
기획관리실장, 실·국장,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단은 규제의

신설·강화 시 사전심사를 하고, 기존규제에 대한 연차별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맞추어 지역실정에 맞는 규제개혁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조례·규칙에 근거한 규제의 정비 및 조례·규칙 제·개정 시 사전심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규제개혁추진 체계도



2.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가. 구성 및 기능

(1) 위원회 설치 근거 및 목적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다.(1998. 4. 18)

(2) 기능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및 발전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규제의 등록·공표
-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3) 구성

국무총리(당연직 위원장), 민간공동위원장, 민간위원 12인, 정부위원 6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명단

2003년 4월 현재

구 분	성 명	현 직
위 원 장	고 건	국무총리
	안 문 석	고려대학교 부총장
정부위원 (6)	김 진 표	재정경제부 장관
	김 두 관	행정자치부 장관
	윤 진 식	산업자원부 장관
	이 영 탁	국무조정실장

구 분	성 명	현 직
	강 철 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성 광 원	법제처장
민간위원 (12)	강 응 선	매일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김 대 환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 재 옥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회장
	남 궁 근	서울산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프리존스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서 윤 석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원장
	신 수 연	코리아스테파(주) 사장
	이 인 실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소장
	정 문 수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조 건 호	(前)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최 종 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한 정 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나. 회의 운영

(1) 소집

위원장은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회의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매주 개최한다.

(2)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4) 회의 출석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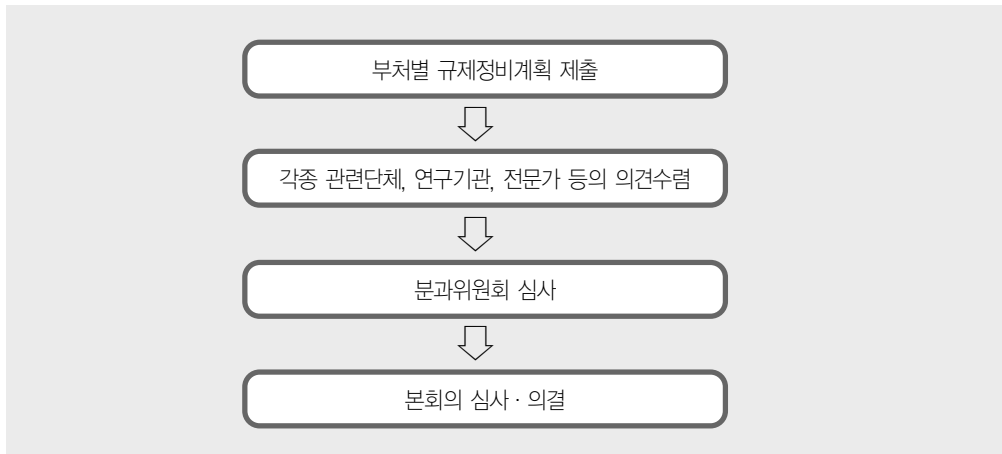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도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조정 및 의견 청취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심사절차

(1) 부처별 규제정비계획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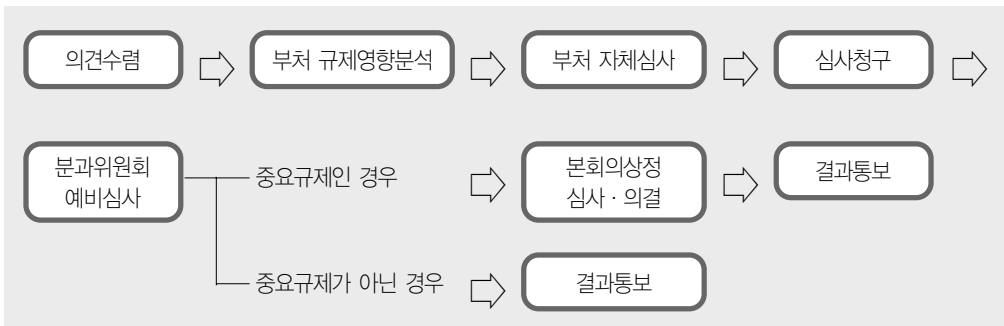
(2) 신설·강화규제 심사

(가) 일반적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분과위원회는 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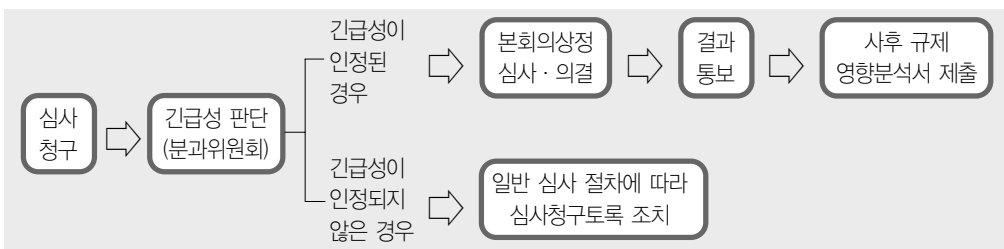
아야 할 규제(중요규제)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중요규제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심사절차를 종결한다.

중요규제인 경우에는 심사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의 범위 내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나) 긴급한 규제의 경우

긴급한 규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수렴,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평가를 생략하고 이에 대한 사유를 명시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긴급성 여부를 판단하여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분과위원회는 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일반적인 경우의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가. 구성 및 기능

(1) 분과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1998. 4. 18, 행정규제기본법 제28조)

(2) 기능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3) 분과위원회의 구성

경제1분과, 경제2분과, 행정사회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4인, 정부위원 3~4인 등 7~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과위원회 구성

2003년 4월 현재

분과위원회	분과위원		소관부처
경제 1	민간위원	한 정 길(위원장) 서 윤 석 제프리존스 이 인 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철도청 (13개 기관)
	정부위원	재경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경제 2	민간위원	김 대 환(위원장) 신 수 연 조 건 호 강 응 선	과학기술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9개 기관)
	정부위원	산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분과위원회	분과위원		소관부처
행정 사회	민간위원	정 문 수(위원장) 김 재 옥 남 궁 근 최 종 원	부패방지위원회, 방송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법제처, 병무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문화재청 (20개 기관)
	정부위원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나. 회의 운영

(1) 회의 소집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당해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2) 의결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공개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회의 출석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도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위원회 의결로 의제되는 분과위원회 의결사항

중요 규제 여부 및 규제의 긴급성 인정 여부의 결정, 기타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가.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1) 규제심사위원회

(가) 기능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규제심사위원회는 기존 행정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관한 사항, 행정 기능의 민간 위탁 및 이양촉진에 관한 사항 및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나) 구성

규제심사위원회는 민간인, 전문가 및 공무원 등 10~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중 민간위원의 수가 과반수를 넘도록 하고 있다.

(2) 규제개혁 총괄부서

(가) 기능

규제개혁 총괄 부서에서는 규제개혁업무 총괄조정, 각 분과 작업반에 대한 지도·조정,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평가, 정부 내 규제개혁 관련 부처 간 협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구성

기획관리실장을 중심으로 행정관리(법무) 담당관, 정책평가 담당관 등이 담당하고 있다.

중앙부처 규제개혁 추진기구도



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추진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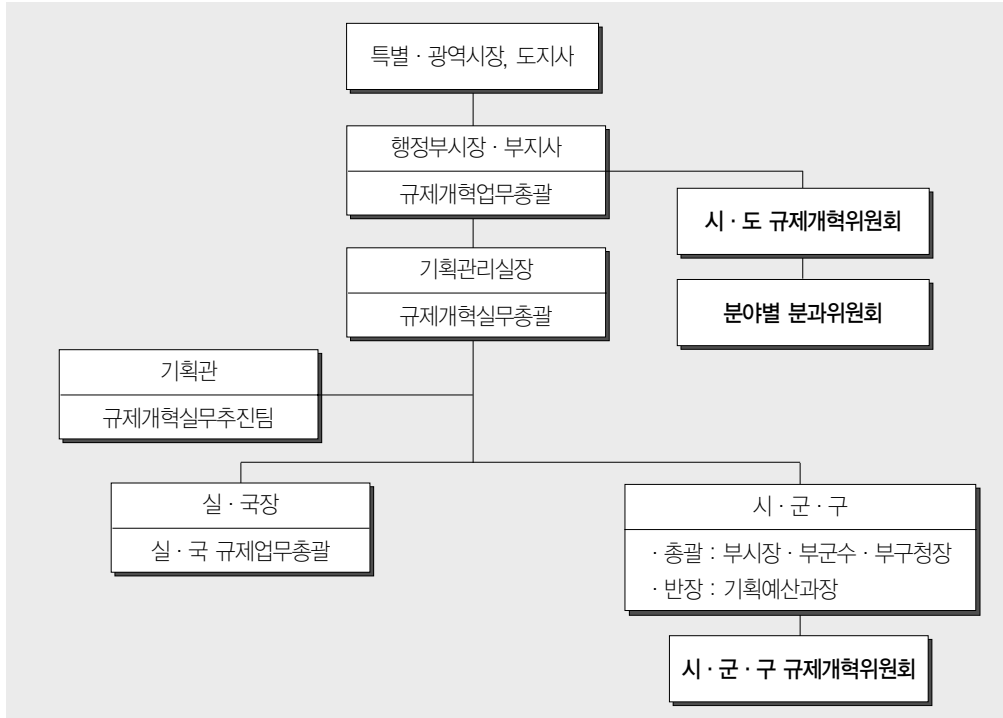
(1)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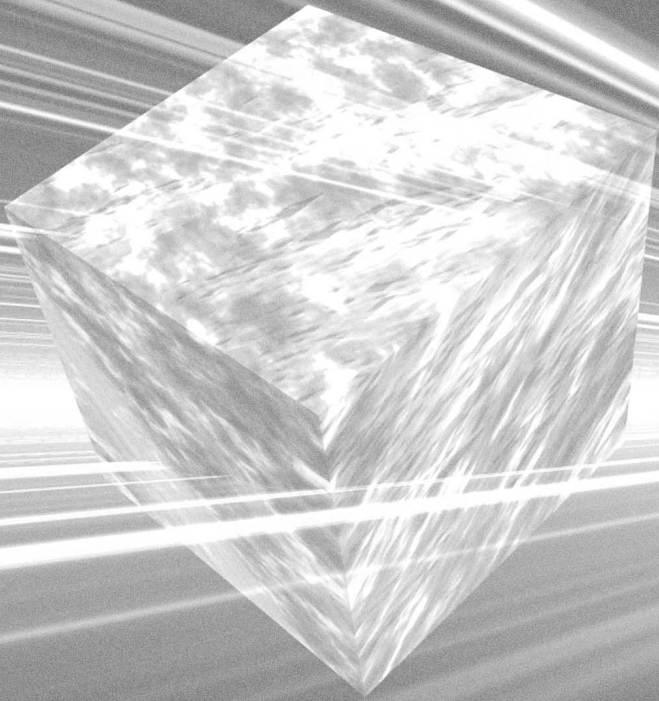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구성되어 있는 규제개혁추진기구에서는 조례·규칙에 근거한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 또는 기존에 존재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에 기초하여 타당성을 심사하고 있다.

(2) 구성

시·도, 시·군·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규제심사위원회는 10~20인 내외의 민간인,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제2장 국민의 정부 5년간 규제개혁 추진실적

제1절 _ 기존규제의 전수조사 및 일제정비

제2절 _ 중점 규제개혁 과제의 정비

제3절 _ 지식정보화 관련 규제정비

제4절 _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제5절 _ 하위법령·유사행정규제의 정비

제6절 _ 행정규제의 등록·공표

제7절 _ 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국민제안

제1절 _ 기존규제의 전수조사 및 일제정비

*집필자 : 박구연 서기관(Tel. 3703-3926, kuyeon@opc.go.kr)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는 민간 중심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모든 기존규제에 대해 Zero-base에서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도 그 내용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정비작업은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동시에 범정부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일반적으로 기존규제 일제정비작업으로 부른다.

기존규제 일제정비작업은 기존규제에 대한 전수조사에서부터 출발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행정규제의 분류 및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이 운용중인 법령상 기존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조사결과 1998.4월 당시 기존규제의 수는 총 11,125건이었다.

이렇게 발굴된 규제에 대해 ‘모든 규제를 전면 재검토’ 한다는 방침에 따라 제1단계 기존규제 일제정비작업에 착수하였다. 먼저 각 부처에서 소관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전문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처가 제출한 정비계획을 심의하여 최종 정비계획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비계획은 규제 한 건 한 건별로 존폐 여부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존치가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내용과 수준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제1단계 정비작업결과 총 11,125건의 규제 중 5,430건(48.8%)을 폐지하고, 2,411건(21.7%)을 개선키로 하였다.

주요 정비사항으로는 투자자문회사·자산운용회사 및 환전상의 설립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선물거래업·증권투신운용업 등 금융서비스업종의 자본금 대폭 인하 등을 통한 시장진입제한 규제 완화, 외국인 투자 제한 31개 업종 개방 등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민간인들의 농산물 도매시장 개설 허용 및 건설업 면허제의 등록제로의 전환 등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의료보험 진료권 이용제한 폐지, 단순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허용 등 국민생활 관련 규제의 개선 등이 있다.

1999년에는 1998년도의 1단계 규제정비 이후 남은 나머지 규제에 대하여 “민간조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철저히 정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30개 분야별 전문연구기관을 선정, 잔존 규제 총 6,811건(1998년도 신설규제 511건 포함)에 대한 검토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검토 결과를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를 집중 심사·조정하여 규제의 존치 여부 및 품질개선방안 등을 심의하였다. 1999년도의 기존규제 정비계획 심의결과 잔존 규제 총 6,811건 중 503건(7.4%)을 폐지하고, 570건(8.4%)을 개선기로 하였다.

주요 정비사항으로는 품질보증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 권한의 민간 이양,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접객업 허가제의 신고제로의 전환, 대학원 정원 자율화, 일반·전문 건설업의 겸업 및 영업범위 제한 폐지, 일정 규모 이하의 양곡가공업 등록제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1998년도 및 1999년도의 기존규제 정비작업 결과 기존규제 정비실적은 총 11,125건 중 폐지규제가 5,933건, 개선규제가 2,981건이다. 다만, 이는 정부의 기존규제 정비계획상 정비실적이며, 법령의 제·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규제의 정비는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규제 등록시스템을 통한 실제 규제폐지 건수의 추이는 1998년도 483건, 1999년도 3,788건, 2000년도 1,048건, 2001년도 507건, 2002년도 62건이며, 5년 간 실제로 폐지작업이 완료된 규제는 총 5,888건이다.

한편, 1999년까지의 기존규제 일제정비를 통해 대부분의 개별규제에 대한 정비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자 2000년부터는 여러 부처와 법령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복합 규제에 대한 정비, 일선 현장에서 기업과 국민이 느끼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한 기획적인 규제정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예를 들어 중점규제 개혁과제의 선정·추진, 유사행정규제 발굴정비, 지자체 소관 규제정비, 경제5단체 등의 건의과제 수렴·정비 등이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였다.

제2절 _ 중점 규제개혁 과제의 정비

*집필자 : 박구연 서기관(Tel. 3703-3926, kuyeon@opc.go.kr)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 특히 기존규제의 정비는 제1절에서 정리한 기존규제 일제정비와 본 절의 중점 규제개혁 과제의 추진으로 대별된다. 기존규제 일제정비는 개별 규제 한 건 한 건에 대한 재검토방식으로 추진되었다면, 중점 규제개혁 과제는 특정 규제분야를 선정하여 동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규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중점 규제개혁 과제는 국가 경쟁력 강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규제분야, 다수의 법령과 여러 부처에 얽혀 있어 일괄개혁의 필요성이 있는 규제분야, 경제계·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으로부터 개혁요구가 집중되거나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규제분야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중점규제개혁과제의 추진방식은 먼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각계각층의 견수렴을 통해 대상과제를 선정하여 소관 부처에 통보하면 소관 부처에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난 5년간 추진된 중점 규제개혁 과제는 주택건설산업 관련 규제 완화,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개혁,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 방안 등 총 157건이며 연도별 과제목록은 다음 표와 같다. 참고로 과제별 세부적인 내용은 연도별 규제개혁백서 또는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www.rr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중점규제개혁 추진과제 목록

연도별	중 점 과 제 명	소관부처
1998년 (37개)	1. 주택건설산업 관련 규제완화	건교부
	2. 건설산업분야 규제개혁	건교부
	3. 주차장 관련 규제개혁	건교부
	4. 건설기계·장비 관련 규제개혁방안	건교부
	5. 자동차 관련 규제개혁(Ⅰ)	건교부
	6. 자동차 관련 규제개혁(Ⅱ)	건교부
	7. 물류·유통부문 규제개혁(Ⅰ)(해운·항만분야)	해수부
	8. 물류·유통부문 규제개혁(Ⅱ)(철도·화물분야)	건교부
	9.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개혁방안	재경·산자부
	10. 수출입 통관 관련 규제개혁방안	관세청
	11. 주류분야 규제개혁방안	국세청
	12. 벤처산업 관련 규제개혁	산자부등
	13. 관광산업분야 규제개혁	문광부
	14. 풍속영업 관련 규제개혁	문광부
	15. 사업자단체의 기업활동 규제개혁	공 통
	16. 환경 관련 각종 부담금제도 개선	환경부
	17.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방안	공 통
	18. 수도권 규제 합리화	건교부
	19. 금융산업 진입규제완화	재경부
	20. 금융산업경영 관련 규제완화	재경부
	21. 해외건설분야 규제개혁	건교부
	22. 감리제도 규제개혁	건교부
	23.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 관련 규제개혁	건교부
	24. 토지이용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건교부
	25. 도·소매업 관련 규제개혁	산자부
	26. 농수산물유통 규제개혁	농림부
	27. 정보통신 관련 규제개혁	정통부
	28. 문화재 관련 규제합리화	문화재청
	29. 의료기기산업 규제개혁	보건복지부
	30. 옥외광고제도 규제개혁	행자부
	31. 군사보호시설구역 내 규제완화	국방부
	32.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관리 관련 규제개선	공정위

연도별	중 점 과 제 명	소관부처
	33. 영화·영상·음반 등 규제개혁 34. 법정업무 고용제도 개혁 35. 외국인 고용관련 규제 합리화 36. 각종 법령의 투명성 제고 방안 37. 학원설립·운영 등에 관한 규제개혁	문광부 노동부 산자부 공 통 교육부
1999년 (33개)	1. 품질인증제도 규제개혁방안 2. 경쟁 제한적인 수출입 및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개선방안 3.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방안 4. 주택공급 자율성 확대방안 5. 비업무용 토지제도 및 공장업종 구분 개선방안 6. 기간통신 사업자의 연구개발출연금제도 개선방안 7. 산업현장 안전기준 등 관련규제 합리화 방안 8. 자동차 운수사업 진입규제 합리화 방안 9. 향만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방안 10. 농업관련산업 진입규제 개선방안 11. 석유화학시설 등의 안전관리 합리화 방안 12. 건설현장 안전관리 관련 규제개혁방안 13. 증명민원제도 개혁방안 14.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관련 규제개혁방안 15. 규제영향분석 사례연구 16.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규제개선방안 17. 약용작물(한약재)의 가공 및 유통 관련 규제개선 18. 기업의 준조세 정비개혁방안 19. 국가자격제도 규제개혁방안 20. 양식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방안 21. 저작권 관련 규제개혁방안 22. 국내기업 역차별 관련 규제개혁 23. 물류산업 규제개혁방안 24. 지정진료제도 개선방안 25. 민간건축물 공사감리관련 규제개혁방안 26. 농수산물가공 및 식품산업 규제개혁 27. 학원운영·설립 관련 규제개혁 28. 규제자유지역 설치방안	산자부 공정위 공 통 건교부 건교부 정통부 노동부 건교부 해수부 농림부 산자부 건교부 행자부 공 통 공 통 건교부 복지부 공 통 과기부 해수부 특허청 재경부 산자부 복지부 건교부 농림부 교육부 공 통

연도별	중 점 과 제 명	소관부처
	29. 소방법령체계 개편방안 30. 문화산업 관련 규제개혁 31. 규제대안개발 연구 32.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방안 33. 금융산업 진입규제 완화	행자부 문광부 공 통 공정위 재경부
2000년 (56개)	1. 코스닥시장 건전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개선방안 2. 도시계획지역·지구제도 개선방안 3. 외국인 국내활동 관련 규제개혁방안 4. 임산물 굴취·채취·매각 관련 규제개혁방안 5. 사립학교 교장자격 관련 규제개선 6. 공원지역 내 행위제한 규제개선방안 7. 무선국 및 무선종사자 관련 규제개선방안 8. 의료보험 관련 규제개혁방안 9.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방안 10. 축산업 관련 진입규제 개선방안 11. 기업의 유가증권발행 관련 규제개선방안 12. 보험영업 관련 규제개혁방안 13. 중소기업 고유업종지정제도 개편방안 14. 시장지배적 사업자 심사기준 개선방안 15. 증명민원서류 감축 방안 16. 해운분야 규제개혁방안 17. 자동차운전학원 관련 규제개혁방안 18. 폐기물 재활용 관련 규제개선 19.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 규제개혁방안 20. 학원설립·운영 관련 규제개혁방안 21. 정보통신산업 관련 규제합리화 22.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23. 품질인증관련 규제개혁 24. 농업관련 인·허가 업무절차 간소화 25. 공공공사입찰 관련 규제개선방안 26. 토지이용 관련 규제개혁방안 27. 병역특례제도 관련 규제개선 28. 전력기술관리 관련 규제개선방안	재경부 건교부 재경부 산림청 교육부 건교부 정통부 복지부 건교부 농림부 재경부 재경부 중기청 공정위 행자부 해수부 경찰청 환경부 건교부 교육부 정통부 문광부 산자부 농림부 조달청 건교부 병무청 산자부

연도별	중 점 과 제 명	소관부처
	29. 문화재보호 관련 규제의 합리화	문화재청
	30. 전자직업소개업 관련 규제개혁	노동부
	31. 고용보험제도 관련 규제개혁	노동부
	32. 외국인학교설립 관련 규제개혁	교육부
	33.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제도 관련 규제개혁	교육부
	34. 농촌개발 및 지원 관련 규제개선	농림부
	35. 산지의 보존 및 이용 관련 규제의 합리화	산림청
	36. 수산업분야 진입규제 등 개선방안	해수부
	37. 금융업 진입규제 등 겸업 관련 규제개혁방안	재경부
	38. 금융기관 영업 관련 규제개혁방안	금감위
	39. 동일인 신용공여 관련 규제의 합리화	재경부
	40. 인감증명제도 개선	행자부
	41.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제도 개선방안	산자부
	42.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발급 관련 규제개혁	산자부
	4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관련 규제개혁	문광부
	44. 광고물 관련 규제의 합리화	행자부
	45. 에너지이용 관련 규제합리화 방안	산자부
	46. 산업의 진입, 가격 등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방안	공정위
	47. 위탁대행기관 관련 규제개선	과기부
	48. 항만분야 규제개혁방안	해수부
	49. 건축 관련 규제개선	건교부
	50. 토지이용 관련 규제개혁방안	건교부
	51. 의약품 및 검사 관련 규제개혁	복지부
	52. 환경산업업종의 합리적 개선방안	환경부
	53. 다단계 판매업 등 관련규제 개선방안	공정위
	54. 각종 보세구역 지정·운영 관련 규제개선방안	관세청
	55. 단체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제개선	중기청
	56. 수도권 산업입지 관련 규제개선	건교부
2001년 (17개)	1. 맥주제조시설 기준완화방안 2. 진입제한 및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방안 3.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겸업제한제도 개선 4. 사회복지사업 관련 규제개혁방안 5. 관광산업 관련 규제합리화	재경부 공정위 정통부 보건복지부 문광부

연도별	중 점 과 제 명	소관부처
	6. 소음진동측정 관련 규제개선방안 7. 직업교육·훈련 관련 규제개혁방안 8.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발전방안 9. 소규모 농지거래제한 규제개선방안 10. 접도구역 규제개선방안 11. 체육시설 설치·운영관련 규제개혁 12. 에너지 이용관련 규제합리화 방안 13. 해양환경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14. 환경관련 유사·중복규제 개선방안 15. 농업인·농용시설 및 가축 등의 개념 정비 및 범위 확대방안 16. 오수처리 및 정화조 설치 관련 규제개선 17. 무선국 운용 및 검사 관련 규제개혁	환경부 노동부 공정위 농림부 건설교통부 문광부 산자부 해수부 환경부 농림부 환경부 정통부
2002년 (14개)	1. 금융기관 건전성 관련 규제정비 2. 금융기관의 유사업무 관련 법규 통폐합을 통한 규제정비 3. 교육과정개편 관련 규제개선방안 4. 청정연료사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5. 선박항행구역의 합리적 조정 6. 방송국 허가제도 개선 7. 폐기물 소각시설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8. 석유유통체계 개선방안 9. 소방 관련 규제개혁방안 10. 건축기준 합리화 방안 11. 금융감독규제의 체계화 방안 12. 금융기관 각종 보고(신고) 부담 경감방안 13. 광고물 관련 규제개혁방안 14. 외국인력 활용제도의 합리화방안	재경부, 금감위 재경부, 금감위 교육부 환경부 해양부 정통부 환경부 산자부 행자부 건교부 금감위 금감위 행자부 노동부
계	157개 과제	

제3절 _ 지식정보화 관련 규제정비

*집필자 : 박구연 서기관(Tel. 3703-3926, kuyeon@opc.go.kr)

우리 사회는 정보통신기술(IT)의 발전으로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지식과 정보의 창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창의성과 자율이 존중받는 역동적 경제사회가 펼쳐지게 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진전은 정부의 규제내용과 패러다임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규제는 주로 산업사회에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시정하고, 동 사회가 효율적으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기업과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양식이 크게 변화되므로 기존의 규제 체계도 이에 맞추어 새롭게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분야가 발전하게 되므로 이를 규율할 새로운 규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지난 2000년도부터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기존의 규제 중 지식정보화사회와 관련이 있는 규제를 찾아 지식정보화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규제의 내용과 수단을 지식정보화사회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였다. 예를 들면 각종 보고 시 종이서류 외에 전자문서를 허용하고 영업허가 시 물리적인 사업장 설치의무를 폐지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기존규제를 지식정보화사회에 맞게 정비하는 작업과 병행하여 IT산업 등과 같이 지식정보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체계

를 새롭게 만드는 작업도 추진되었다.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은 2차에 걸쳐 추진되었다. 먼저 제1단계 지식정보화 과제는 금융, 건설 등 10개 분야별로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약 4개월에 걸쳐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81개 최종 과제를 확정하여 이를 대통령께 보고(2000. 9. 19)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기본계획에 제시된 추진일정에 따라 2000. 9월부터 12월까지 총 26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2000년도 추진대상과제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2001년까지 추진을 완료하였다.

한편, 제1단계 지식정보화 규제개혁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2001년도 하반기부터는 그간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고 미진한 분야에 대한 보완을 위해 추가적인 지식정보화 규제개혁과제의 발굴에 착수하여 9개 분야 29개 과제로 이루어진 제2단계 지식정보화 과제를 선정하여 2002년 말까지 추진을 완료하였다.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추진한 제1단계 및 제2단계 지식정보화 규제개혁과제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제1단계 추진과제의 세부내용은 2001년도 규제개혁백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제2단계 추진과제의 세부내용은 제5장에 정리했다. 다만, 규제개혁백서에 수록된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에 별도의 안건형식으로 상정하여 확정된 과제만 포함하고 있으며, 기타 과제는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때 바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다. 당초 추진 계획상 과제별 세부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www.rr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제1단계 지식정보화 과제

가.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구 분	추진 부처
1-1. 전자정부 구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제의 개선	
① 행정정보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행자부
② 민원사무의 정보통신망 사용 관련 규제정비	행자부
③ 정보통신망이용 민원의 신분확인 관련 규제개선	행자부
④ 전자입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재경부, 조달청

구 분	추진 부처
⑤ 자동차민원행정 간소화	건교부
1-2. 산업의 지식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① 표준화시스템의 재정비	산자부
② 단체 표준의 활성화	산자부
③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측면의 표준화 장려	산자부
④ 인터넷 특허행정을 위한 규제정비	특허청
⑤ 신기술개발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특허청
⑥ 통계자료의 수집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통계청
⑦ 인터넷 환경하의 상표권 보호	특허청
⑧ 생명공학관련 법령 정비	복지부, 과기부
⑨ 외국인 투자제도 규제개혁	산자부
⑩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도 개선	재경부
⑪ 코스닥시장 운영관리체제 개선	재경부, 금감위
1-3. 선진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	
① 인터넷은행 설립 규제개혁	재경부, 금감위
②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제한 완화	재경부
③ 선물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재경부
④ 금융업 진입제도 규제개혁	재경부
⑤ 금융 관련 보고서의 전자문서화 및 전자민원 확대	금감위
⑥ 전자매체의 활용을 통한 금융기관의 부담경감	재경부, 금감위
⑦ 투자신탁사 및 자산운용사 경쟁력강화를 위한 성과보수제 도입	금감위
⑧ 채권시장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재경부
⑨ 투자 자문업 운용인력 보유제도 규제개혁	재경부
1-4. 기타 지식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①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정비	문광부
②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문광부
③ 건강보험 EDI 청구에 따른 조기지급 제도화	복지부
④ 건강보험증 관리업무 개선	복지부
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복지부
⑥ 소방과 화재보험제도 연계를 통한 재해예방 강화	행자부, 금감위

나. 지식과 정보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규제개혁

구 분	추진 부처
<p>2-1. 전통적인 장소 개념의 변화에 따른 규제개혁</p> <p>① 각종 영업의 인·허가, 등록요건인 사무소, 상시고용 인수, 자본금 요건 등 대폭 완화</p> <p>② 원격의료제도 도입</p> <p>③ 전자의무기록제도의 도입</p> <p>④ 전자처방전 이용제도 개선</p> <p>⑤ 보건의료정보 공동활용 추진</p> <p>⑥ 출판산업 진흥과 도서관 정보화</p> <p>⑦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저작물 이용 합리화</p>	<p>전 부처</p> <p>복지부</p> <p>복지부</p> <p>복지부</p> <p>복지부</p> <p>문광부</p> <p>문광부</p>
<p>2-2.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p> <p>①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p> <p>② 전자화폐제도 규제개혁</p> <p>③ 전자상거래 책임관계 등 명확화를 위한 제도 개선</p> <p>④ 전자상거래 특별통관절차 마련</p>	<p>공정위, 산자부, 법무부, 정통부</p> <p>재경부</p> <p>산자부</p> <p>재경부</p>
<p>2-3. 지식정보의 공유확산을 위한 규제개혁</p> <p>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p> <p>② 지적전산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p> <p>③ 공간정보의 유통·활용범위 확대</p> <p>④ 측량 및 지적제도의 합리화</p> <p>⑤ 공공측량 성과심사제도 개선</p> <p>⑥ 수치지도갱신 관련 제도 개선</p> <p>⑦ ITS시설의 설치 근거규정 보완</p> <p>⑧ 공공부문 수집교통 정보의 유통과 민간이용 촉진</p> <p>⑨ 건설공사의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제도정비</p> <p>⑩ 물류정보화 전담사업자의 지정요건 완화</p>	<p>정통부</p> <p>행자부</p> <p>건교부</p> <p>건교부, 행자부</p> <p>건교부</p> <p>건교부</p> <p>건교부</p> <p>건교부</p> <p>건교부</p> <p>건교부</p> <p>건교부</p>

다.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

구 분	추진 부처
<p>3-1.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교육 체제로의 개편</p>	

구 분	추진 부처
① 사이버 교육체제의 구축·운영	교육부
② 창의적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내용 및 방법 개편	교육부
③ 학교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 및 경쟁제고 방안	교육부
④ 교과서 발행·공급 규제개혁	교육부
⑤ 학원설립·운영제도 개선	교육부
⑥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교육부
⑦ 영재교육 체계화를 위한 규제개선	교육부
⑧ 교육정보화 진흥을 위한 제도정비	교육부
3-2. 새로운 직업 창출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규제개혁	
① 직업교육·훈련제도 개혁	노동부
② 국가자격검정의 응시요건 규제개선	노동부
③ 민간자격제도 규제합리화	교육부, 노동부
④ 재택근로제도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노동부
⑤ 휴일·휴가제도 및 근로시간제도 개선	노동부
⑥ 계약직 근로계약 관련 규제개혁	노동부
⑦ 여성보호제도 개혁	노동부
⑧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안정서비스 관련 규제개혁	노동부
⑨ 퇴직금 및 퇴직총당금제도 개혁	노동부
⑩ 전자직업소개업 규제합리화	노동부
⑪ 근로자공급사업관련 규제개혁	노동부

라.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제도정비

구 분	추진 부처
① 우수쇼핑몰에 대한 포상·인증제도 개선	산자부, 정통부
② 부당한 지적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도 개선	공정위
③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 강화	공정위
④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정통부
⑤ 민간부문 개인사생활보호를 위한 제도정비	정통부
⑥ 정보통신망상의 인권침해행위 방지대책	정통부
⑦ 민간의 암호이용 활성화를 위한 암호이용제도 정비	정통부
⑧ 청소년보호를 위한 정보내용 등급자율 표시제 추진	정통부, 정보위
⑨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정보통신기반 시설보호체제 정비	정통부
⑩ D/B의 체계적인 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정통부

2. 제2단계 지식정보화 과제

분 야	과 제 명	비 고
재정금융(4)	신상품 개발과 관련된 규제의 완화 여신전문금융협회 정회원 및 가맹점 공동망가입 관련 규제완화 상호신용금고의 점포설치 규제완화 투산업 관련 공시제도의 개선	재경부, 금감위 금감위 금감위 재경부, 금감위
산업건설(4)	지하시설물 수치지도의 표준화 추진 지리정보유통 관련 제도정비 건설기능인력 DB 구축 산업단지 관리기관 범위 확대	건교부, 산자부, 정통부 정통부, 건교부 건교부, 노동부 산자부
교 육(4)	교육과정 관련 법령 및 제도정비 학교운영 관련 제도개선 사회교육체제 운영 관련 규제개혁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보건의료(3)	의료정보 유통의 원활화를 위한 기반 구축 의약품 등 구매·유통의 편의 및 효율화 의료서비스 취약분야 보완·발전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일반행정(2)	전자정부 구현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화 추진	행자부 외 행자부 외
노 동(3)	산업보건관리 체계의 합리적 개선 농작업 재해의 산재보험대상 확대 국가기술자격의 신뢰도 제고 관련 규제개혁방안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정보통신(6)	요금규제제도 개선 번호이동성제도의 도입 주파수경매제도의 시행 소출력 FM 방송제도 개선 무선국 준공기한 신설 전자서명시스템 구축	정통부 정통부 정통부 정통부 정통부 정통부
농 림(2)	유통 농산물의 중량허용오차 개선 포장 농산물의 의무표시사항 정비	농림부 농림부
과학기술(1)	과학기술연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기부

제4절 _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집필자 : 박구연 서기관(Tel. 3703-3926, kuyeon@opc.go.kr)

지난 1998. 6. 1일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었다. 신설·강화규제 심사제도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앞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규제 신설·강화의 타당성을 스스로 심사토록 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가 다시 심사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된 것이다.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를 거친 신설·강화규제 중 중요 규제가 아닌 규제에 대해서는 소관 분과위원회가, 중요 규제로 판단되는 경우는 본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토록 하고 있다. 중요 규제의 판단기준은 피규제자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경우, 규제 영향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다만,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강화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체심사절차를 생략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직접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규제심사제도도 아울러 운용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규제개혁위원회는 총 1,339개 법령, 4,518건의 신설·강화규제를 심사하였으며, 이 중 2,974건(65.8%)을 부처안대로 수용하고, 1,157건(25.6%)에 대해서는 개선을, 387건(8.6%)에 대해서는 철회를 권고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별 신설·강화규제 심사실적은 다음과 같다.

분과위원회별 신설강화규제 심사실적 (1998~2002)

구 분	연도별	법령수	심사대상 규 제 수	심사 결과(%)		
				개선권고	철회권고	원안수용
경제1분과	1998	-	162	49(30.3)	13(8.0)	100(61.7)
	1999	148	245	51(20.8)	36(18.8)	158(60.4)
	2000	195	424	108(25.5)	35(8.3)	281(66.2)
	2001	119	475	179(37.7)	28(5.9)	268(56.4)
	2002	119	418	25(29.9)	10(2.4)	283(67.7)
	계	581	1,724	512(29.7)	122(7.1)	1,090(63.2)
행정사회분과	1998	-	204	26(12.7)	27(13.2)	151(74.1)
	1999	113	245	52(21.2)	67(27.3)	126(51.4)
	2000	122	338	109(32.3)	37(11.0)	192(56.9)
	2001	75	361	67(18.3)	48(13.3)	246(68.4)
	2002	69	199	46(23.1)	21(10.6)	132(66.3)
	계	379	1,347	300(22.3)	200(14.8)	847(62.9)
경제2분과	1998	-	207	37(17.9)	12(5.8)	158(76.3)
	1999	96	247	73(29.6)	-	174(70.4)
	2000	89	340	89(26.2)	22(6.5)	229(67.4)
	2001	93	373	62(16.6)	13(3.5)	298(79.9)
	2002	101	280	84(30.0)	18(6.4)	178(63.6)
	계	379	1,447	345(23.8)	65(4.5)	1,037(71.7)
총 계		1,339	4,518	1,157(25.6)	387(8.6)	2,974(65.8)

제5절 _ 하위법령 · 유사행정규제의 정비

*집필자 : 박구연 서기관(Tel. 3703-3926, kuyeon@opc.go.kr)

규제는 규제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규제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훈령, 지침 등 하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협회, 공사, 공단 등 준공공기관은 행정기관은 아니지만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규제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주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및 준공공기관에 의한 규제에 대한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하위규정 및 유사행정규제 정비작업을 추진하였다.

제1단계로 2000년도에는 각 부처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동 작업 결과 2000. 10월까지 하위규정에 의한 규제는 1,217건이 발굴되어 이 중 549건을 폐지하고, 668건을 개선하였다. 유사행정규제는 1,208건을 발굴하여 927건을 폐지하고, 281건을 개선하였다.

이러한 1단계 정비작업으로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었으나, 800여 개에 달하는 정부산하 기관을 감안할 때 유사행정규제에 대한 정비실적은 미흡한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대표적인 분야에 대한 시범정비를 통해 유사행정규제 정비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유사행정규제 정비작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2001년 중에 건설, 산업자원, 문화관광, 환경, 해양수산 등 5개 분야를 선정하고,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작업반을 구성하고 불합리한 유사행정규제 사례 122건을 발굴하여 이중 69건을 폐지하고 53건은 개선키로 하였다.

이어, 2002년도에는 2000년도 부처 중심의 유사행정규제 정비결과 및 2001년도 시범 정비작업결과를 분석하여 대표적인 준공공기관 12개를 선정하고, 동 기관에 해당하는 유사행정규제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유사행정규제 정비모델」을 마련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위 모델을 기초로 2003년도에 전체적인 유사행정규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04년도에 범정부적인 유사행정규제 정비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2002년도 시범정비 작업결과 및 유사행정규제 정비모델은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www.rrc.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6절 _ 행정규제의 등록·공표

*집필자 : 민용식 서기관(Tel. 3703-3931, kantmin@opc.go.kr)

1. 추진개요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규제사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공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사무의 등록·공표에 더하여 등록되는 규제를 전산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상시 공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등록 및 전산화계획」을 수립(1998. 3. 23)하고, 전산시스템 개발을 거쳐 1999년 2월 22일 인터넷(<http://www.rrc.go.kr>)에 규제등록 내용을 공개하였다. 2003년 3월 현재 767,753명이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에 공개되는 규제등록 웹서비스는 정부의 규제사무를 부처별·유형별·법령별로 분류된 통계와 함께 규제 사무명·내용에 대한 용어검색을 통해 관련 규제목록과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규제신고센터와 연결되어 있어 검색 후 즉시 규제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opc.go.kr>)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부대표 홈페이지(<http://www.gcc.go.kr>)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도록 연계시켜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2. 등록대상 규제사무

등록대상인 규제사무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동 법령에 근거한 고시 등(훈령, 예규, 고시, 공고)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말한다. 규제의 등록단위는 규제사무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이나 규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경우에는 하위법령이나 규정상의 규제사무를 기준으로 등록하고, 하위법령이나 규정에서 규제사무를 세분하지 않고 단순히 서식이나 절차만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상위법령상의 규제사무를 기준으로 등록한다.

3. 규제사무의 등록 현황

이와 같은 규제사무 등록기준에 따라 전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행정규제사무를 등록토록 하였던 바, 규제등록 초년도인 1998년 8월 등록된 규제수는 총 10,717건이었다. 이후 기존 규제사무의 폐지와 새로운 규제사무의 신설 등 증감변화를 거쳐 2002년 12월 현재 최초 등록 대비 3,171건이 감소한 7,546건의 규제사무가 등록되어 있다.

규제사무의 주요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신설된 규제사무수가 1,436건, 누락된 규제사무를 추가로 등록한 것이 611건이었으며,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기존 규제정비(폐지)로 인한 규제사무수 감소가 4,729건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총 규제수 및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수 변동에 관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수 변동 내역

(단위 : 건, 2002. 12 기준)

소관 부처	최초등록 규제수 (1998.8.31)	규제수 변경					증감소계	현재등록 규제수
		증 가			감 소			
		신설	누락등록	기타	폐지	기타		
총 계	10,717	1,436	611	660	4,729	1,159	-3,181	7,546
여 성 부	0	7	0	29	0	0	36	36
국무조정실	0	0	0	7	0	0	7	7
국가보훈처	85	6	3	0	42	5	-38	47

제2장 국민의 정부 5년간 규제개혁 추진실적

소관 부처	최초등록 규제수 (1998.8.31)	규제수 변경						증감소계	현재등록 규제수
		증 가			감 소				
		신설	누락등록	기타	폐지	기타			
공정거래위	75	93	3	9	19	1	85	160	
청소년보호위	23	4	0	0	0	0	4	27	
금융감독위	549	143	126	23	278	23	-9	540	
부패방지위	0	2	0	0	0	0	2	2	
재정경제부	500	119	49	102	209	128	-67	434	
통 일 부	57	4	0	0	18	11	-25	32	
외교통상부	40	3	0	0	6	6	-9	31	
법 무 부	88	43	0	0	5	0	38	126	
국 방 부	37	0	0	0	15	9	-24	13	
행정자치부	484	31	8	8	182	6	-141	343	
교육인적자원부	269	27	2	0	133	26	-130	139	
과학기술부	426	16	19	0	223	31	-219	207	
문화관광부	401	28	0	9	148	107	-218	183	
농 립 부	682	115	27	46	325	55	-192	490	
산업자원부	667	85	19	29	364	25	-256	412	
정보통신부	370	72	16	49	190	61	-114	256	
보건복지부	1,631	95	13	180	764	384	-860	771	
환 경 부	643	84	25	52	160	51	-50	594	
노 동 부	335	74	65	7	130	13	3	338	
건설교통부	900	130	144	6	391	27	-138	762	
해양수산부	763	151	54	35	378	59	-197	566	
국 세 청	27	0	0	0	7	0	-7	20	
관 세 청	220	0	0	0	101	0	-101	119	
조 달 청	27	4	2	0	22	0	-16	11	
통 계 청	10	0	1	0	7	0	-6	4	
병 무 청	29	0	0	0	2	0	-2	27	
경 찰 청	382	14	2	30	140	48	-142	240	
기 상 청	28	0	0	0	14	0	-14	14	
농촌진흥청	14	1	0	0	7	0	-6	8	
산 립 청	254	13	8	35	99	62	-105	149	
중소기업청	84	10	16	0	48	2	-24	60	

소관 부처	최초등록 규제수 (1998.8.31)	규제수 변경						현재등록 규제수
		증 가			감 소		증감소계	
		신설	누락등록	기타	폐지	기타		
특 허 청	60	1	6	0	26	1	-20	40
식품의약품안전청	256	5	0	2	128	1	-122	134
철 도 청	53	0	2	0	26	1	-25	28
해양경찰청	122	21	0	0	57	13	-49	73
문 화 재 청	133	6	0	0	65	2	-61	72
방송위원회	0	32	1	0	0	0	33	33

다음으로 중앙행정기관별·연도별 규제사무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 8월 기준으로 등록된 총 규제사무 10,717건 중 보건복지부가 1,625건, 건설교통부가 900건, 해양수산부가 763건 등이었으며, 2002년 12월 기준으로 볼 때는 등록된 총 규제사무 7,433건 중 보건복지부가 771건, 건설교통부가 762건, 해양수산부가 566건 등으로 감소하였다.

중앙행정기관별·연도별 등록규제사무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소관부처별	1998. 8	1998. 12	1999. 12	2000. 12	2001. 12	2002. 12
총 계	10,717	10,372	7,294	6,912	7,248	7,546
보건복지부	1,625	1,537	973	821	768	771
건설교통부	900	879	832	691	748	762
해양수산부	763	768	484	487	554	566
농 립 부	682	701	478	434	478	490
산업자원부	667	655	339	350	375	412
환 경 부	643	643	554	546	581	594
금융감독위	548	547	397	515	527	540
재정경제부	500	385	295	373	420	434
행정자치부	484	484	366	319	336	343
과학기술부	426	426	220	210	208	207
문화관광부	401	391	306	189	186	183
경 찰 청	382	380	307	236	242	240
정보통신부	370	324	202	228	250	256

제2장 국민의 정부 5년간 규제개혁 추진실적

연도별 소관부처별	1998. 8	1998. 12	1999. 12	2000. 12	2001. 12	2002. 12
노 동 부	335	334	247	255	286	338
교육인적자원부	269	269	183	167	146	139
식품의약품안전청	256	211	165	138	132	134
산 림 청	254	259	175	133	142	149
관 세 청	220	220	119	119	119	119
문 화 재 청	133	133	70	70	70	72
해양경찰청	122	116	53	72	72	73
법 무 부	88	88	93	93	109	126
국가보훈처	85	79	41	41	39	45
중소기업청	84	84	44	45	51	60
공정거래위	75	74	74	78	78	160
특 허 청	60	49	37	43	40	40
통 일 부	57	57	39	32	32	32
철 도 청	53	51	29	29	28	28
외교통상부	40	40	38	31	31	31
국 방 부	37	37	22	13	13	13
병 무 청	29	29	27	27	27	27
기 상 청	28	28	14	14	14	14
국 세 청	27	24	20	20	20	20
조 달 청	27	27	11	11	11	11
청소년보호위	23	23	23	26	27	27
농촌진흥청	14	10	7	7	8	8
통 계 청	10	10	4	4	4	4
국무조정실	-	-	-	7	7	7
방송위원회	-	-	-	32	33	33
여 성 부	-	-	6	6	36	36
부패방지위	-	-	-	-	-	2

등록된 규제사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1998년 8월 기준으로 인허가·면허 등이 2,562건, 확인·증명 등이 618건, 지도·단속 등이 1,723건, 의무·금지 등이 5,814건이었으며, 규제개혁 5차년도인 2002년 12월 기준으로는 인허가·면허 등이 1,748건, 확인·증명 등이 449건, 지도·단속 등이 1,288건, 의무·금지 등이 4,053건으로 각각 감소하였

다. 시장진입규제와 관련이 깊은 허가·인가·면허·특허·승인·지정·등록의무·고용의무와 관련한 규제사무가 1998년 8월 기준으로 총 2,293건이었으나, 2002년 12월 기준으로 볼 때 68% 수준인 1,557건으로 감소한 것은 그간의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시장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라 하겠으며, 이는 곧 시장경쟁력 강화와 관계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유형별 규제사무 현황

(단위 : 건)

유형별		연도별					
		1998. 8	1998. 12	1999. 12	2000. 12	2001. 12	2002. 12
인 허 가 · 면 허 등	소 계	2,562	2,438	1,695	1,583	1,671	1,748
	허 가	669	614	496	443	453	463
	인 가	270	265	188	193	205	208
	면 허	74	69	63	63	64	66
	특 허	19	19	13	13	13	13
	승 인	642	613	353	328	339	347
	지 정	360	347	245	210	230	243
	추 천	26	22	16	16	14	14
	동 의	23	23	7	7	9	12
	기 타 1	479	466	314	310	344	382
	확 인 · 증 명 등	소 계	618	585	453	431	444
시 험		51	55	44	43	45	46
검 사		275	248	220	204	210	209
인 정		47	46	36	34	41	44
확 인		93	89	66	62	62	62
증 명		40	49	29	28	25	25
기 타 2	112	108	58	60	61	63	
지 도 · 단 속 등	소 계	1,723	1,685	1,245	1,166	1,236	1,288
	결 정	42	42	32	31	30	35
	명 령	555	551	369	336	349	360
	지 도	228	220	120	107	130	133
	단 속	76	74	64	59	56	66
	행정질서별	648	631	541	521	546	564
	행정형별	11	10	3	2	-	-
기 타 3	163	157	116	110	126	130	

유형별		연도별					
		1998. 8	1998. 12	1999. 12	2000. 12	2001. 12	2002. 12
	소 계	5,814	5,652	3,905	3,730	3,891	4,053
의 무 · 금 지 등	신고의무	1,041	1,004	587	543	542	546
	보고의무	464	445	224	197	196	199
	등록의무	204	220	157	161	167	171
	고용의무	55	53	43	42	46	46
금 지 등	통지의무	60	57	38	33	36	52
	제출의무	280	269	158	148	162	176
	기준설정	1,496	1,461	1,124	1,116	1,210	1,287
	금 지	758	744	579	562	609	626
	기 타 4	1,456	1,419	995	928	923	950
총 계		10,717	10,360	7,298	6,910	7,242	7,546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령 등에 명시하도록 하고,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하되,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규제일몰제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1998년 이후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당해 규제사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 바 있으며, 그 결과 2002년 12월 현재 존속기한을 설정한 규제사무의 수는 38건에 이르고 있다.

존속기한 설정 규제사무 현황

(단위 : 건)

소관부처별		연도별					
		1998. 8	1998. 12	1999. 12	2000. 12	2001. 12	2002. 12
	존속기한 미설정	10,703	10,358	7,278	6,893	7,231	7,508
	존속기한 설정	14	14	16	19	17	38
총 계		10,717	10,372	7,294	6,912	7,248	7,546

제7절 _ 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국민제안

* 집필자 : 임규호 사무관(Tel. 3703-3936, kh6663@opc.go.kr)

1. 규제신고센터 설치 · 운영

정부는 1998년부터 규제개혁위원회를 민관합동으로 구성하고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국민과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규제개혁과제의 선정과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민이나 기업들로부터 인터넷 · 전화신고 ·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개혁관련 제안사항을 접수받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 규제개혁 홈페이지에 사이버규제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있으며,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대한상공회의소 등에도 규제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일반 국민을 비롯한 기업과 단체들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 건의사항을 쉽고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제신고센터에 전담직원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제안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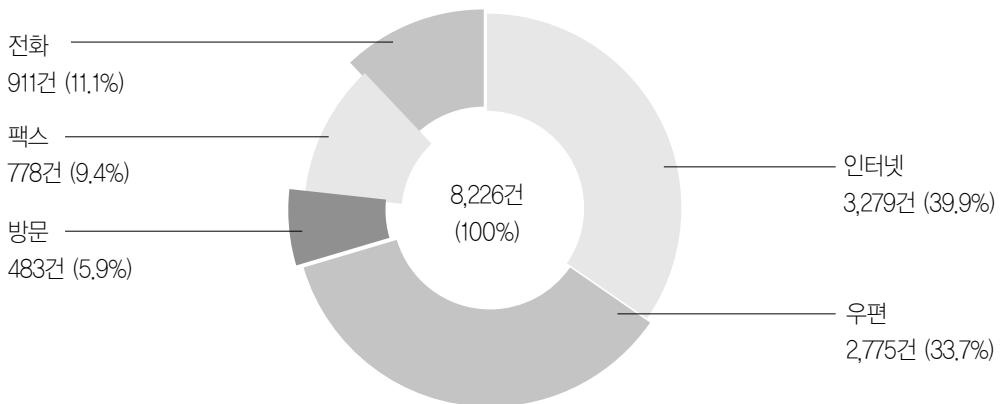
<규제개혁관련 제안사항 제출방법>

- 우 편 :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 방 문 : 규제신고센터(정부중앙청사 503호실)
- 전 화 : (02) 722-9797, (02) 3703-2177~9
- FAX : 02.720-2056, 인터넷 : <http://www.rrc.go.kr>

2. 국민제안 접수·처리 실적

규제개혁위원회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한 규제개혁과 관련한 제안은 총 8,226건이며, 이 중 인터넷접수가 3,279건(39.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우편(33.7%), 전화(11.1%), 팩스(9.4%), 방문접수(5.9%)순이었다. 2002년의 경우 인터넷접수가 전체 제안건수의 65.6%를 차지하는 등 인터넷 제안 비율이 갈수록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접수방법별 규제개혁제안 실태



제안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택·건축분야 1,085건(13.2%), 운송·물류분야 823건(10.0%), 경찰·교통분야 555건(6.7%), 보건·위생분야 522건(6.3%)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 규제개혁 제안현황

분 야	건 수	분 야	건 수	분 야	건 수
행정일반	293	재정경제	432	건 설	212
국적·출입국	42	전 매	69	수자원	19
법 무	106	금융·통화	120	보건·위생	522
민 사	26	농지·농정	207	의료·약사	187

분 야	건 수	분 야	건 수	분 야	건 수
형사·교정	5	축 산	33	사회복지	153
지방행정	275	산 림	72	환 경	332
경찰·교통	555	수 산	31	노 동	259
소방·민방위	113	무 역	9	관 광	15
군사·병무	114	상·공업	122	운송·물류	823
국가보훈	28	공업소유권	37	해운·항만	40
체육·청소년	85	에너지	294	정보통신	112
교육·학술	392	국토·도시개발	219	외무·여권	8
문화·공보	419	주택·건축	1,085	기 타	168
과학·기술	21	토지·지적	172	계	8,226

제안을 소관 부처별로 구분해 보면 건설교통부 2,463건(29.9%), 보건복지부 820건(9.9%), 행정자치부 652건(7.9%), 경찰청 564건(6.9%), 산업자원부 478건(5.8%), 문화관광부 440건(5.3%)순으로 상위 6개 부처 소관 제안수가 총 5,417건(65.9%)에 이르러, 건설교통·복지·경찰·지방행정·산업자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제안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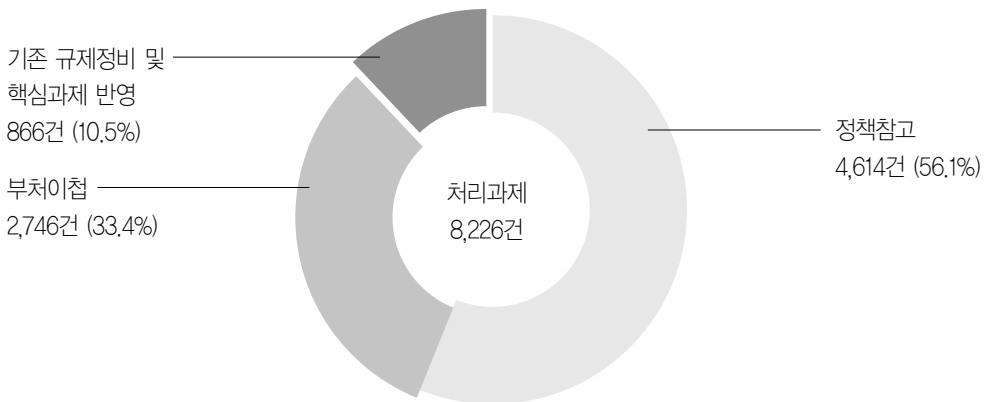
소관부처별 규제개혁 제안현황

부처·청	접수건수	부처·청	접수건수	부처·청	접수건수
기획예산위	3	국 방 부	39	조 달 청	19
여 성 부	0	행정자치부	652	통 계 청	1
중소기업특별위	0	교육인적자원부	413	대검찰청	1
국무조정실	24	과학기술부	13	병 무 청	79
국무총리비서실	2	문화관광부	440	경 찰 청	564
국정홍보처	0	농 림 부	236	기 상 청	0
법 제 처	1	산업자원부	478	농촌진흥청	0
국가보훈처	29	정보통신부	117	산 림 청	71
공정거래위	38	보건복지부	820	중소기업청	30
비상기획위	0	환 경 부	340	특 허 청	26

부처·청	접수건수	부처·청	접수건수	부처·청	접수건수
청소년보호위	45	노동부	261	식약청	32
금융감독위	72	건설교통부	2,463	철도청	11
재정경제부	396	해양수산부	70	해양경찰청	3
통일부	1	예산청	0	문화재청	10
외교통상부	27	국세청	84	부처공통	3
법무부	161	관세청	36	기타	115
				계	8,226

8,226건의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기존규제 정비 및 핵심과제 등에서 반영된 건수가 866건(10.5%), 정책참고 4,614건(56.1%), 부처이첩 2,746건(33.4%) 등으로 단순 정책참고 및 개별민원성격의 제안이 상당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규제개혁 제안 처리현황



3. 평가 및 향후계획

지난 5년간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총 8,200여 건의 제안을 접수·처리함으로써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각계의 관심을 제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이루는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안내용면에서 볼 때 규제개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안보다는 개별적인 민원사항과 개인의 편의에 따른 주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규제제안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기도 한다.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 제안제도에 대한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규제신고센터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제3장 규제개혁 특정과제의 정비

- 제1절 _ 금융규제의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 제2절 _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 제3절 _ 건축·소방 등 국민생활 관련 규제개혁
- 제4절 _ 환경규제의 합리화

제1절 _ 금융규제의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집필자 : 이용의 사무관 (Tel: 3703-2158, yonguei@opc.go.kr)

1. 금융기관 건전성 관련 규제정비방안(금감위)

가. 현황 및 문제점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건전성 관련 금융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음.
- 이는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 기인한 것이나, 종합적이고 일관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각 금융업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이 있음.

나. 개선방안

- 건전성 관련 규제 전반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로 재검토하여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부분을 발굴하여 정비함.

다. 추진방향

- 금융산업의 안정성·건전성 확보를 통한 예방적 감독 체제의 정착
 -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련 감독규제를 금융권역별로 상호 비교하여 각 금융권역별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타 금융권역에 비하여 지나치게 감독 규제가 과도하거나
 - 이외는 반대로 규제의 강도가 낮아 규제 실효성이 미흡하여 금융권역간 규제 형평성을 저해하거나 불균형한 부문을 발굴·정비
- 최근의 감독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현행 건전성 관련 규제의 정비·추진
 - 금융환경변화의 흐름에 맞춰 관련 규정의 제·개폐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거나 또는 금융기관의 자율경영 및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정비

라. 주요 정비 내용

(1) 금융권역 간 불균형 해소

- (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지도비율 및 적기시정조치 기준 강화(2002. 3)
 -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이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전성지도비율(4%→5%) 등 관련 제도를 은행 수준에 근접하게 조정
- (나)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2002. 3)
 - 은행 등 타금융 회사 및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충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 조정(요주의 자산 : 1% → 2%)
- (다) 신용카드사의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 및 충당금 적립기준 개선(2002. 6)
 - 카드전업사와 겸영은행 간 충당금 적립 기준의 일치 등
- (라) 증권·보험사 외국환 포지션 관리기준 마련(2002. 7)
 - 증권·보험사의 장외 파생상품 거래 취급 및 외환시장의 참여에 따라 은행·종금사와 동일한 수준의 외환감독기준 마련 등
- (마) 증권·보험사 해외 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계량평가제도 도입(2002. 8)
 - 은행과 동일하게 증권·보험사의 해외점포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상태 파악을 위해 계량평가(CAEL) 실시

(2)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

- (가) 상호저축은행 소유 및 경영지배구조 개선 유도(2002. 3)
 - 대주주 1인 중심의 소유구조를 지분분산 및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전환 유도
 -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소유구조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추가
 - (나) 신탁 경영관리대상조합의 경영 정상화 계획 제출 관련 제도 개선(2002. 5)
 - 직무 정지된 조합 이사장 등의 임원에 대해 경영 정상화 방안의 제출요구 근거를 마련
 - (다) 신탁의 재무개선 조치 요구사항 강화(2002. 6)
 - 조합원의 부실책임 분담을 통한 재무구조의 실질적 개선을 유도
 - 신탁 중앙회장의 재무상태 개선 대상조합 조치요구 항목에 출자금의 무상감자 포함
 - (라) 신탁의 외부감사 의뢰대상조합 확대(2002. 8)
 - 외부감사 의뢰대상 조합 선정기준에 경영실태평가결과와 배제 등
 - (마) 보험사 지급여력 산정방식 개선 (2002. 5)
 -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이연법인세차의 반영으로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유도
 - (바) 재보험 감독체계 개선(2002. 7)
 - 재보험거래를 이용한 지급여력비율 규제회피 및 불건전 자금차입 수단으로의 악용을 방지
 - 재보험거래 인정요건 신설 및 사전신고제 도입 등
 - (사) 은행경영실태평가 제도 개선(2002. 11)
 - 부실은행에 대한 변별력 제고를 위해 경영실태평가요소에 ‘경영효율성 및 생산성’에 대한 평가요소를 반영
 - (아) 보험사 지급여력 산정방식의 개선(2002. 9)
 -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 평가 시 자회사 관련 리스크 반영 등
 - 자회사의 경영부실의 모회사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자본과부족을 지급여력 항목에 반영하고, 재보험의 수재분을 지급여력산정기준에 반영
- (3) 기타 감독기준 명확화 등
- (가) 경영평가위원회 심의근거 명문화 등(2002. 4)
 - (나) 상호저축은행의 금융상품공시 의무화(2002. 6)
 - (다) 상호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대손상각요건 간소화 등(2002. 6)

2. 금융기관의 유사업무 관련 법규통폐합을 통한 규제 정비(재정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령은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신탁업법, 보험업법 등 법령별로 규제를 담고 있음.
- 이로 인해 유사하거나 동일한 규제가 법령별로 중복 규정되어 규제의 체계 및 적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함.

나. 개선방안

- 자산운용업법의 제정을 통하여 자산운용과 관련한 규제를 재검토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규제를 통합

다. 자산운용업법 제정 추진배경

- IMF 경제위기 이후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실적상품 위주인 자산운용산업으로의 자금유입이 감소되고 있음.
 - 특히, 투신사의 경우 대우사태 이후 신뢰성이 훼손되어 수탁고가 감소하는 추세(최대 수탁고 : 255조, 1999.7.22)
- * 은행신탁의 경우에도 수탁고가 1998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

자산운용산업 수탁고 추이

(단위 : 조원)

연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9월 말
자산운용						
신탁형 펀드	86.8	196.4	188.3	142.5	154.1	171.0
회사형 펀드				2.8	6.2	8.4
은행 신탁	199.5	158.6	120.3	78	81.3	76.9

- 고령화 등 경제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여유자금을 고수익으로 운용해 줄 수 있는 효율적인 자산운용산업이 필요
 - 주식시장에서의 장기 안정적 수요자로서 자산운용산업의 역할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
 - ⇒ 자산운용업법 제정을 통해 신뢰회복을 위한 감시장치를 강화하고 규제를 전면 통합·쇄신함으로써 자산운용산업이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

라. 자산운용업법 제정 방향

-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을 통합하여 「자산운용업법」을 제정
 -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의 현행 규정내용은 가급적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원칙
 -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의 중복되는 규정내용은 통합
 - 그동안 발표한 자산운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 및 공청회 결과를 반영
 - * 자산운용산업 신뢰회복을 위한 수탁회사 역할강화방안(2002. 7), 자산운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2002. 8), 자산운용업법 제정요강(2002. 8) 등
- 금융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이해하기 쉬운 법률 마련을 위해 법률체제 정비
 - 자산운용업법이 자산운용(간접투자)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규정
 - * 간접투자과 관련한 새로운 금융행위 및 투자대상 발생 시 자산운용업법이 우선 적용
 - 법률 체계를 펀드 구성 및 등록 → 펀드의 판매 → 펀드운용 → 펀드 환매 등 업무 흐름에 따라 재편성

마. 자산운용업법의 주요 내용

(1) 자산운용업에 대한 포괄적·기능별 규제방식 도입

- 간접투자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간접투자 행위에 대하여 자산운용업법을 우선 적용
 -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유가증권 등 자산에 투자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착시키는 것을 ‘간접투자’로 정의
 - 다만, 간접투자 중 현재 부동산투자회사 및 창투조합 등 같이 개별법에 의해 인정

되는 간접투자는 자산운용업법 적용을 배제

-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2) 자산운용산업 전반의 규제쇄신과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기 발표한 자산운용산업 활성화 방안 내용을 반영
 - 자산운용산업 신뢰회복을 위한 수탁회사 역할강화방안(2002. 7)
 - 자산운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2002. 8)
 - 자산운용업법 제정요강(2002. 8) 등

(3)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사항 반영

- 부동산에 대한 투자 관련
 - 공청회 등 의견수렴 결과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장치 마련이 필요
 - ⇒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은 부동산펀드로 분류하여 일정 기간 동안 환매를 제한하고 객관적 가치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등 전문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의무화함.
- 업무의 외부 위탁 근거 마련
 -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의 외부 위탁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업무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 위탁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규정(대통령령)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

바. 향후 추진일정

- 법안의 국회 제출 및 공포(2003년 상반기)

3. 금융감독규제의 체계화방안(금감위)

가. 개요

- 금융감독규제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및 금융 이용자 보호”라는 금융감독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규제체계를 재정립
 - 금감위 소관 모든 금융감독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규제의 목적별로 분류하고 분류된 규제가 시장경제의 원리와 양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시장 친화적 규제와 비시장 친화적 규제로 대별

나. 주요내용

- 금감위 소관 금융감독규제 522건을 규제목적 및 시장친화 여부에 따라 분석
 - 금융회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적정자본유지 규제, 금융이용자보호를 위한 소비자 규제 등 총 208건(39.8%)은 시장 친화적인 규제로 분류
 - 금융시장의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영업활동 규제, 금융회사의 인·허가와 관련된 진입규제 등 총 314건(60.2%)은 비시장 친화적인 규제로 분류
- 분류된 규제 전체 522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2003년도 금융규제정비계획」에 반영
 - 시장 친화적 규제인 경우 규제의 합목적성에 따라 필요한 규제는 공적 규제로 유지 하되, 시장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하여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
 - 비시장 친화적 규제인 경우 향후 금융여건 변화 및 시장의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의 적용, 규제대상 범위의 축소, 자율규제기관 이관 등을 추진
- 다만, 규제 전체 522건에 대한 실효성 및 준수율 검토 결과에 따라
 - 규제의 실효성과 준수율이 낮아 2003 상반기 중 규제의 개선/폐지가 필요한 15건 (보고 관련 규제 포함)에 대해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

다. 세부 추진계획

(1) 시장 친화적 규제

(가) 상장법인 등의 이사회 결의 시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및 중개증권사 지정 의무화 관련(2003 상반기)

- 현행 : 유상증자의 이사회 결의 시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과 관련된 사항 및 매매 중개를 할 증권회사를 정하도록 함.
- 개선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관련 제도가 정비되었으므로 신주인수권 상장 시 중개증권사 지정의무를 폐지(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함.)
- 조치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8조 개정

(나) 상장법인 등의 시가발행 증자시 발행가액 산정방법 제한(2003 상반기)

- 현행 : 시가발행 요건(상장법인 등의 경우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상인 경우에만 시가발행이 가능)과 발행가액 산정방법에 대해 제한
- 개선 : 시가발행증자의 여부에 대한 해당 상장법인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시가발행요건을 폐지(발행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규제는 존치)
- 조치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 개정

(2) 비시장 친화적 규제

(가) 보험사업자 임원의 겸직제한(법령 개정 후 2003. 4 예정)

- 현행 : 보험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감사 및 대표자의 금융기관, 자회사 등의 상근 임원 또는 사용인 겸직을 제한
- 개선 : 보험사의 상근 임원이 금융지주회사·자회사의 임직원이나, 보험계약자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겸직을 허용
- 조치 : 보험업법 제11조 개정

(나) 보험사업자의 재산이용의 방법 등 제한(법령 개정 후 2003. 4 예정)

- 현행 : 보험회사의 편중된 자산운용에 따른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운용에 대한 방법 및 비율기준을 설정
- 개선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기준 규제를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에서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으로 변경하여 자율성을 확대

- 조치 : 보험업법 제19조 개정
- (다) 증권회사의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랩어카운트)에 대한 규제 폐지(2003. 3)
- 현행 : 투자자문업(예탁재산 : 개인 5천만원 · 법인 1억원 이상, 두 종류 이상 수익증권 투자), 투자일임업(예탁자산 : 개인 1억원 · 법인 2억원 이상, 30% 이상 투자 적격 미만 채권투자 등)의 예탁재산규모, 투자대상 등을 엄격히 규제
 - 개선 : 증권회사의 랩어카운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폐지
 - 조치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2 개정
- (라) 보험사업자의 부수업무에 대한 허가(법령 개정 후 2003. 4)
- 현행 : 보험사업자의 부수업무 영업허가 신청 시 금감위가 이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고 허가여부를 결정
 - 개선 : 금융의 자율화, 겸업화 추세 및 타 금융권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부수업무 영위 허가제를 폐지한다. 다만 무분별한 부수업무 영위에 따른 보험회사의 부실화 방지 및 건전성 도모를 위하여 영위 가능한 부수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정비
 - 조치 : 보험업법 제9조 개정
- (마) 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한 제한(법령 개정 후)
- 현행 : 신탁회사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대출, 국공채, 사채 등의 응모, 인수, 매입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토록 제한
 - 개선 : 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한 규제방식을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에서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으로 변경하여 신탁재산의 운용대상을 확대
 - 조치 : 신탁업법 제15조의2 개정
- (바) 신탁자금 운용기준 설정(법령 개정 후)
- 현행 : 신탁회사의 동일인 대출한도, 타 주식회사 발행주식 소유 한도 등을 설정하여 신탁운용을 제한
 - 개선 : 신탁회사의 동일인 대출 한도의 경우 한도산정기준을 전년도 말 총 신탁대출 금잔액에서 금전신탁수탁고로 변경하는 등 신탁회사의 영업자율권을 확대
 - 조치 : 신탁업법시행령 제13조 개정
- (사) 위탁회사의 유가증권 소유제한(법령 제정 후)
- 현행 : 위탁회사는 금감원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가증권을 소유할

수 없음.

- 개선 : 현행 규정은 위탁회사 고유재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가증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 조치 : 자산운용통합법 제정

(아) 신탁회사의 수익증권 발행인가(법령 개정 후)

- 현행 : 신탁회사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을 발행 시 금감위 인가를 받아야 함.
- 개선 : 수익증권 발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수익증권 발행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 조치 : 신탁업법 제17조의2 개정

4. 금융기관 각종 신고(보고)부담 경감방안(금감위)

가. 개요

- 금융회사 등의 과도한 신고 및 보고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규제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감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피규제자의 업무부담을 완화
 - 2001년도부터 추진한 금융권역별 보고서의 종합정비, 금융정보공유협의체 운영, 보고항목 축소 등의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중

나. 추진실적

- 금융회사의 보고서 체계의 정비
 - 2001년 2단계 금융규제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금융회사의 보고서 체계 정비계획은 계획대로 완료
 - * 금융회사 보고서 33건 감축
 - 금융감독원에 금융회사 보고서를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여 DB화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 「금융회사등에대한자료제출요구지침」 제정
 -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 시 자료 요구서에 구체적인 내용, 사용목적,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담당 부서장이 서명 후 제출토록 의무화함.
- 금융정보공유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
 - 금융정보공유협의회(2회) 및 실무협의회(4회) 개최를 통하여 감독기관(금감원, 한은, 예보) 간 금융회사의 재무정보의 약 97%를 공유(2002. 11 기준)
- 보고 절차의 간소화
 - 은행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사전 신고수리제도를 사후 보고제로 완화(2002. 7)
 - 외은지점의 갑기금 증액 및 적립금의 갑기금 전입 시 사전 신고에서 사후 보고로 절차를 간소화(2002. 9)
 - 금융회사의 자체 감사계획 및 결과보고 의무를 완화(2002. 5)

다. 향후계획

(1) 기본방향

- 기존의 신고(보고) 부담 경감방안이 보고서의 수 감축, 금융정보공유협의회 개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지침 제정 등을 중심으로 추진
- 향후에는 금융회사의 실질적 보고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체계화 방안을 기초로 신고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여 「2003년도 금융규제정비계획」에 반영할 계획
 - 다만, 금융규제 체계화방안에서 규제의 실효성과 준수율이 낮아 2003년 상반기 중 개선/폐지하기로 한 규제 15건 중 보고(신고) 관련 사항 5건에 대해 세부 정비계획을 마련

(2) 세부 정비계획

(가) 시장 친화적인 규제

① 외국법인의 사업보고서 및 첨부서류 등 제출의무화(2003 상반기)

- 현행 : 외국법인에게 국내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함.
- 개선 : 외국법인에게 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회계기준

차이에 의한 효과 등을 명시하여 제출할 수 있게 함.

- 조치 :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47조 개정
- ② 위탁회사의 수익증권 발행신고 관련(법령 제정 후)
- 현행 : 수익증권을 발행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원본이 보전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개선 : 통합 자산운용법에서 수익증권발행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므로 동 제도 도입 시 수익증권 발행신고에 대한 규제는 폐지할 계획임.
 - 조치 : 자산운용통합법 제정
- ③ 신탁회사의 약관 등 제정·변경 보고 관련(법령 개정 후)
- 현행 : 신탁회사가 약관 등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개선 : 단순 업무편의를 위한 약관변경 등의 경우 사전 보고제를 사후 보고제로 완화하고, 현행 보고생략 범위를 확대
 - 조치 : 신탁업법 제25조의2 개정
- ④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약관보고 관련(법령 개정 후)
- 현행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는 약관 제정 및 변경 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개선 : 주택저당증권 약관의 사전보고제를 유지하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사후보고제로 전환
 - 조치 : 신탁업법 제25조의2 개정
- (나) 비시장친화적인 규제
- ① 보험사업자의 기초서류 변경에 대한 인가(법령 개정 후 2003. 4 예정)
- 현행 : 보험사업자는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변경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에 인가를 신청
 - 개선 : 현행 인가제도를 판매 전 신고 또는 판매 후 제출(분기별)하는 것으로 변경
 - 조치 : 보험업법 제7조 개정

제2절 _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집필자 : 김창환 서기관(Tel. 3703-3942, kch318@opc.go.kr)

김진곤 사무관(Tel. 3703-3947, number4@opc.go.kr)

이호모 사무관(Tel. 3703-2177, yhomo@opc.go.kr)

이종협 사무관(Tel. 3703-3927, bird@opc.go.kr)

1. 선박 항행구역(航行區域)의 합리적 조정(해양부)

가. 검토배경

- 현행 항행구역은 일제시대인 1935년 지정된 후 67년간 시행되어 왔으나 그동안 선박은 범선(帆船)에서 기선(汽船)으로 구조 및 설비 등이 현대화되고, 선박에 승선하는 해기사는 2,900여 명에서 20,000여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해상교통환경은 항로 표지시설 확충 및 해상교통관제방식 도입 등으로 선진화되었음에도 이를 현행 제도에 반영하지 못한 실정
- 현재의 상황에서 해상요건이 유사한 조건임에도 항행구역이 서로 다르게 지정되어 있는 구역을 적법하게 운항하기 위해서는 “상위(上位)의 항행구역에 적합한 강화된 설비(구명뗏목 등)”를 갖추어 임시검사 등 별도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선박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 및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항행구역의 합리적 조

정이 필요

나. 규제현황

- 항행구역이란 선박(어선 제외)의 운항능력을 고려하여 해상에서 운항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현행 항행구역은 해상의 상태 및 연안으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평수(平水)구역, 연해(沿海)구역, 근해(近海)구역 및 원양(遠洋)구역 등 4개 구역으로 구분(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26조)
- 선박의 항행구역은 당해 선박의 운항능력(크기·구조·재료·설비·용도·선령·속력·항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지정된 항행구역 외의 구역을 항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비를 강화하여 선박의 임시검사 등 별도의 검사를 받아야만 항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27조, 제29조, 제30조)

선박구조 및 시설의 현대화, 연안해역의 해상교통환경 개선 등을 고려하고, 연안해역의 10년간 해상기상 통계를 이용하여 선박 모의시험(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항행구역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동일권역 운항선박에 대한 별도의 검사생략 및 설비완화 등 규제의 완화로 선박소유자의 시간 및 경제적 이익을 도모

다. 개선방안

(1) 평수구역 확대조정

(가) 현황

- 평수구역은 호수·하천 및 항 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18개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으로 지정된 선박은 운항범위가 평수구역 내로 제한

(나) 문제점

- 연안의 대규모 매립, 선박 시설의 현대화 및 해상교통환경 개선 등 변화된 여건이 현행 항행구역에 반영되지 않아 동일권역에서도 항행구역이 평수구역과 연해구역으로 각각 다르게 지정된 곳이 있어 평수구역 선박이 연해구역으로 운항하기 위해서는 설

비강화에 따른 별도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따른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초래

(다) 개선방안

- 총 18개 평수구역 중 북한지역의 10개 구역을 제외한 8개 구역을 대상으로 선박 모의시험(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포항지역을 제외한 7개 구역을 확대조정
- 현행 평수구역과 유사한 연해구역이 평수구역에 편입되어 평수구역 선박이 평수구역으로 편입한 종전의 연해구역으로 제한 없이 항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2) 연해구역 확대조정

(가) 현황

- 연해구역은 한반도와 제주도 해안으로부터 20마일(1마일:1,852미터) 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5개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으로 지정된 선박은 운항범위가 평수구역을 포함한 연해구역 내로 제한

(나) 문제점

- 제주도 동측에서 일본 큐슈까지의 해역은 연해구역인 제주도 부근해역과 기상 및 해상상태가 거의 유사함에도 근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연해구역 선박이 전라남도 여수시 이서(以西) 지역에서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주도 동측 해역을 우회하여야 하며 직항로(直航路)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해구역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 임시검사를 받아야 함.

(다) 개선방안

- 제주도 부근해역과 기상 및 해상 상태가 유사한 제주도 동측에서 일본 큐슈까지의 근해구역을 연해구역으로 확대 조정함으로써 연해구역 선박이 연해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근해구역으로 항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3) 근해 및 원양구역 통합조정

(가) 현황

- 근해와 원양구역은 국제항해에 해당되며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는 동경 175도, 남위 11도, 동경 94도, 북위 63도 선(線)안의 수역을 근해구역으로, 전 세계의 모든 수역을 원양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근해구

역 선박은 평수구역과 연해구역을 포함한 근해구역만을 운항할 수 있으며, 원양구역 선박만이 전 세계의 모든 수역을 운항할 수 있음.

(나) 문제점

- 근해구역과 원양구역은 모두 국제항해에 해당되므로 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 등 현실적으로 구분의 필요가 없음에도 현행 법령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있음으로써 근해구역 선박이 원양구역으로 운항하기 위해서는 선박검사증서상 기재사항 변경(항행구역 변경)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야 함.

(다) 개선방안

- 근해구역과 원양구역을 통합하여 원양구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임시검사 의무 등 불필요한 사항의 폐지 등 규제를 완화

라.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선박안전법시행규칙」 개정 : 2002. 12. 31일부터 시행

2. 방송국 허가제도 개선(정통부)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표준방송·초단파방송의 범위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정한 전파규칙과 상이하고, 특히 지상파디지털방송(Digital Audio Broadcasting)의 경우 초단파 방송(88~108MHz)으로 포함되지 않아 동 방송 육성에 장애가 있음.
-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으나 소출력 FM방송국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 방송국의 개설허가, 변경허가, 및 재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방송위원회의 추천서를 모두 제출토록 하고 있음.

(2) 개선방안

- 표준방송 및 초단파방송의 범위를 확대·조정하여(각각 300kHz~3MHz 이하, 30~300MHz),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과 일치시키고 지상파디지털방송을 초단파방송 범위에 포함.
- 소출력 FM방송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함.
- 공중선 전력이 1W 이하의 방송국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송국은 추천 절차를 생략

(3)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전파법시행령 개정 : 완료(2002. 11)
- 전파법시행규칙 개정 : 완료(2002. 12)
- 방송법 개정 필요

3. 석유유통체계 개선방안(산자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석유유통 체계는 다단계 유통구조를 유지하고, 유통 단계별로 영업범위 등을 한정함으로써 유통구조개선에 저해요소로 작용
- 일부대리점은 대리점 간의 수평거래금지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리점이 아닌 석유 수출입업자로 등록하는 등 당초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부작용이 발생
- 석유사업법규 위반행위로 등록(신고) 취소처분을 받은 석유판매업자가 등록취소 즉시 명의만 변경하여 계속 영업하는 등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나. 개선방안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석유유통구조 및 영업범위 등 유통구조상의 불합리한 규제 및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규제를 발굴하여 정비

다. 추진방향

(1) 석유유통구조 합리화 및 수급안정

- 석유사업자 간 수평거래제한 완화
 - 주유소가 일반판매소 등에 등·경유를 판매하는 거래에 한해 수평거래를 허용
- 석유수출입업자의 등록요건 보완
 - 수출입업자로서 필요한 최소 저장시설 규모를 1만kl로 하고, 이에 미달하는 기존 수출입업자는 시행일 후 1년 내 시설을 구비토록 함.
 - 수출입업자로 등록한 후 일정기간 수출입실적이 없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
- 법령이 정하지 않은 형태의 석유거래 제한
 - 수출입업자를 포함, 석유판매업자 아닌 자가 법령에서 정한방식 이외에는 석유판매를 못하도록 규정 신설
- 석유판매지점도 별도로 사업자의 요건을 구비토록 제한
 - 지점사업자도 본점과 동일하게 석유판매업의 등록(신고) 요건을 갖추어 지점 소재지 관할 시·도에 등록(신고)하도록 함.
 - 기존의 지점사업장은 법규 개정일로부터 1년 이내 저장시설 등을 갖추도록 함.

(2)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

- 유류 구매카드제 도입 추진
 - 석유제품 거래 투명화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민간자율로 운영되는 「유류구매카드제」 도입을 검토·추진
- 일반 판매소의 석유수급보고 강화
 - 모든 일반 판매소가 석유수급 상황을 보고토록 제도를 보완

(3) 건전한 유통 질서의 확립

- 이동 판매 차량의 총 용량 범위 제한
 - 주유소·일반 판매소의 업체당 이동판매차량의 총 용량은 소방법상 주유 취급소/석유판매 취급소의 저장시설 허가용량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제한
- 이동 차량 위주의 석유 판매업 제한

- 시·도에서 일반판매소 신고접수 시 소방법상의 석유판매취급소 허가서류를 따로 확인하여 접수하도록 함.
- 기존 이동 차량만에 의한 일반 판매소는 관련법령 개정 후 3월 이내에 석유판매취급소 허가를 얻도록 함.

(4) 석유사업법규의 실효성 확보

- 정부 위탁 업무 해태 단체에 대한 제재
 - 보고수리 거부 등 정부위탁업무를 부당하게 해태하는 경우(형법 제122조에 의한 직무유기)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가능토록 관련법규 정비
- 석유사업자에 대한 직권 등록취소 근거 마련
 - 실질적인 폐업 또는 1년 이상 영업행위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등록(신고)기관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 지위 승계자에 대한 행정처분 확인제도 시행
 - 지위 승계 시 최근 1년간의 과거행정처분에 대한 확인절차제도를 마련
- 부생연료유판매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수수료징수 권한을 시·도에 위임

라. 필요조치 사항 및 추진일정

- 「석유사업법」 개정추진 : 2003년도 하반기 시행 예정(법령개정 시 별도 규제심사)

4. 외국인력 활용제도의 합리화 방안(노동부)

가. 외국인력의 실태

- 출입국관리법은 그동안 전문·기술 외국인력에 대한 국내 취업만을 인정하고, 단순 기능 외국인력의 국내 취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만을 인정
 - 그러나,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는 1993년 제도도입 이래 송출비리·인력의 편법활용 시비, 연수이탈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국내산업의 인력부족, 국내외 임금격차(10~20배) 등으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

외국인력 현황

(2002. 10 현재)

전 체	소 계	합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
		합법 근로자		산업연수생	해외투자 기업연수생	
		전문기술인력	연수취업자			
358,633명 (100.0%)	70,994 (19.8)	21,668 (6.1)	13,527 (3.8)	22,041 (6.1)	13,758 (3.8)	287,639 (80.2)

- 현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감금 등 인권침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신분상 지위를 악용하여 불법 취업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
 - 불법 취업자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신분상 약점으로 인한 신고기피로 행정기관에 의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실정

나. 외국인력제도의 경과 및 문제점

(1) 외국인력제도의 경과

- 80년대 말부터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을 호소하며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합법화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노동계 등에서 이를 반대함에 따라 1993년 11월 임시대책으로써 외국인을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도입
- 이후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이 나타나자 1995년부터 각계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이 추진되었으나 통산부, 중기청 등 일부 부처와 중기협중앙회 등의 반대로 도입이 보류
 - 1998년 4월 1일에는 단계적인 개선방안으로 2년 연수 후 자격시험 합격자에게는 1년간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는 「연수취업제」를 도입(2000년 4월부터 실시)
- 2000년 말 새천년민주당은 관련 부처·단체, 업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고용허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경기 악화, 관련 이익 단체의 반발 등에 따라 입법 추진을 보류
- 그러나, 국내산업 인력부족, 불법체류자 급증 및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문제 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2001년 말부터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외국인력제도 개선·보완 논의를 지속 추진

(2) 외국인력제도의 개요

(가) 전문·기술 외국인력 취업제도

<제도개요>

-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전문기술 외국인력은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국내 취업이 가능
- 특히, IT인력의 경우 골드카드제를 도입(2000. 11)하여 국적에 관계 없이 복수사증 발급, 체류기간 상한 확대 및 체류자격 외 활동 허용 등 국내 체류활동 요건을 완화 하여 시행중임.

<취업 절차>

- 일반절차 : 당사자 간에 고용계약 체결 → (관계부처 장관의 추천) → 법무부장관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외국인의 입국

체류자격별 취업자현황

(2002. 10 현재)

계	교수 (E-1)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 (E-5)	예술흥행업 (E-6)	특정활동 (E-7)
21,668명	845	10,989	1,088	177	398	5,125	3,046

(나) 산업연수생제도

<제도개요>

-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는 1993년도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당초 연수 2년으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1998년 4월 연수 2년 후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1년간 근로자로서 취업 가능토록 제도를 보완
 - * 2001년 12월 연수 1년, 취업 2년으로 변경(2002년 4월부터 시행)
- 도입 정원은 당초 제도도입 당시 연수생 2만명으로 시작하였으나, 계속 확대되어 1996년에는 84,500명까지 확대
 - * 2002년 8월 총 정원관리제(연수생·연수취업자·이탈자 포함)를 도입키로 하고 총 정원을 145,500명으로 책정

- 도입국가 :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14개국

〈운영체계〉

-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체 도입 규모, 송출 국가 선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연수주관부처가 산업연수생 관리규정을 제정(중기청,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 연수 추천 단체인 중기협중앙회, 대한전협, 수협중앙회(농협중앙회 2003년) 등이 실질적인 제도운영을 담당
- 산업연수생에 대한 일상적 관리는 연수추천단체가 지정한 위탁관리업체에서 실시하며 산업연수생은 의무적으로 월 24,000원의 위탁관리비를 연수생 위탁관리업체에 납부

〈연수조건 및 연수취업자 근로조건〉

-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되지 못하고 행정지도로 운영하고, 연수취업자는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므로 노동관계법을 전면 적용

(다)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

-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는 해외투자업체의 현지 고용인력의 기능향상과 산업설비·기술 수출업체 등의 해외 기술 이전을 위해 현지법인의 종업원을 초청하여 국내 기업에서 연수를 시키는 제도로 1991년 11월부터 도입
- 연수허용기간은 최장 2년이며 기업 규모에 따라 연수 허용인원을 제한하고 있음(생산직 상시근로자수의 15~20%, 최대 100명 이내)
-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의 경우 법무부가 출입국 및 체류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별도의 연수생 관리체제는 없으며 구체적인 연수실시기준도 없어 개별기업에 의한 자의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해외투자기업 연수생도 산업연수의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어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3) 문제점

- 국내외 외국인력수요·공급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인력제도
 -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Pull 요인) 및 국내외 임금격차(10~20배) 등에 따른 아시아 각국 근로자들의 국내 취업 욕구(Push 요인)에도 불구하고 산업연수생제도

만을 인정

- 산업연수생제도가 연수목적이 아닌 외국인력활용수단으로 활용되고, 산업연수생의 현지 송출기관이 국가별로 1~8개소로 제한되어 있어 관광비자 등을 통한 불법체류가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
- 외국인력의 편법활용 및 권익보호 미흡
 - 산업연수생제도를 국내 부족 인력을 충족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운영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외국인력을 편법활용한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연수생의 경우 체류자격이 취업이 아닌 연수라 하여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특히 양산되는 불법체류자의 경우 인권침해 사례가 심각
- 산업연수생의 사업장 이탈 증가
 - 산업연수생제도의 경우 독점체제에 따른 송출비리, 연수생 배정시스템의 결과에 따른 저임금 등의 문제로 인해 산업연수생들이 연수업체를 이탈하고 국내 장기체류를 조장(2002년 10월 현재 연수생정원 85천명 중 사업장 이탈 등으로 인해 22천명 연수 중)
 - 해투기업연수생의 경우 브로커의 개입에 의한 위장입국이 증가하고 연수업체 이탈이 과다(2002년 10월 현재 연수인원 30,931명 중 이탈자 17,173명)
- 산업연수생 관리·운영 체제의 미흡
 - 산업연수생제도의 경우 일률적으로 연수생을 연수업체에 배정해 주는 시스템(연수생 배정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어 연수업체가 필요로 하는 적격자 선발이 곤란
 - 연수업체를 가점제도에 의해 운용하고 있어 인력부족여부와는 관계없이 우수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수생이 배정됨으로써 정작 인력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
 - 불법체류자의 임금이 연수생의 연수수당보다 높아 연수이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다. 외국인력제도 개선·보완대책의 주요내용

(1)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 및 출국준비기간 부여

- 불법체류자 급증으로 장기간 정주 및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3. 25~5. 29)을 설정하고 자진신고자에게는 2003년 3월까지 출국준비기간을 부여

- 불법체류자 276천명 중 93%인 256천명이 신고하여 출국준비기간 부여
- 그러나, 2003년 3월까지 불법체류자 전원이 자진 출국할 가능성이 낮고, 전원에 대해 출국조치할 경우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혼란 등이 예상됨에 따라 보완 대책을 마련

(2) 산업연수생제도의 보완

- 연수·취업기간 조정
 - 사실상 노동력 제공 목적의 연수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근로자로서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취업기간 2년으로 확대
 - 근로자 신분을 갖는 외국인연수취업자의 관리 및 노동권보호는 노동부에서 관장
- 총 정원 관리제 도입 및 업종별 정원 조정

(단위 : 명)

구 분	계	중소제조업	연근해어업	건설업	농·축산업
연수생 정원	84,500	79,000	3,000	2,500	-
총 정 원	145,500	130,000	3,000	7,500	5,000

- 연수취업기간 조정에 따라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위해 연수생 기존 정원관리방식에서 총 정원관리제로 전환
 - * 총 정원관리제는 산업연수생과 연수취업자, 이탈자 전체를 대상으로 정원 관리
- 국내 산업인력 부족 및 불법체류자 출국에 대비하여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결과를 토대로 업종별 정원 조정
- 중소기업분야 산업연수생 2만명을 2003년 1월 말까지 도입하고, 나머지 2만명은 불법체류자 출국과 연계하여 도입 추진
- 농축산업·건설업 연수생 각 5천명은 2003년 초에 도입
 - * 내국인 대체효과가 높은 건설업 연수생의 체류기간은 '연수 1년+취업 1년'으로 축소
- 산업연수생제도 관리체계 효율화
 - 산업연수생제도 관계부처(기관) 간에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업무연계를 강화
 - 연수생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송출기관으로부터 일정배수의 연수생을 추천받아 연수추천단체에서 컴퓨터 추첨 통해 선발

- 연수추천단체에 대한 소관부처의 정기감사를 실시(연 2회)
- 산업연수생 관리강화
 - 연수생의 모집 및 입국까지 출국까지 연수생운영 전체과정에 대해 송출기관의 책임 강화
 - 국내 사후관리회사의 위탁관리제도를 폐지하고, 송출기관이 국내에 사무소 설치 및 통역원 등을 파견하여 책임관리
 - 송출기관의 연수생관리와 송출국가 감독책임을 연계·평가하여 과다 이탈 발생 시 송출국가 지정취소, 쿼터 축소 등 강력한 제재 추진
 - 불법체류자 고용주에 대해 출입국관리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불법체류자 고용,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연수생 배정 및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중단
 - 소규모 제조업체에도 산업연수생이 배정될 수 있도록 상시 50인 이하 제조업체에 대한 연수생 배점기준 상향 조정(현행 10점 → 20점)
 - 모범 연수생(전체 10% 수준)에 대해 1년간 체류기간을 연장(특정활동 부여)하여 총 4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모범적인 연수 완료자에게 관광 목적의 체류기간을 연장(30일)
 - 송출국가 주도로 연수생 선발 시 한국어 소양시험을 실시할 경우 정원조정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
- 산업연수생 계약이행보증금 폐지
 - 사업장 이탈방지효과가 미미하고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연수생 계약이행보증금을 폐지
 - 산업연수생의 경우 고용주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분야 취업관리제의 경우 고용주로부터 신원보증서만을 징구

(3)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의 보완

- 연수허용대상 구체화
 - 연수허용대상을 구체화하고, 위장도입 방지를 위해 현지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등 제출)
 - 우리나라기업의 현지법인, 기술도입 외국기업(미화 10만달러 이상), 산업설비수입 외국기업(미화 50만달러 이상)의 직원으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연수생의 요건 명시: 과거 불법체류 사실이 없을 것, 18~4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하

고 현지근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한국어 기초실력을 구비할 것

- 연수 허용인원 비율축소
 - 현행 연수허용비율의 비율(15~20%)이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인력도입 활용수단으로 오용되고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축소
 - (1차) 상시직원의 15% → (중·장기) 연차적으로 5% 이내로 조정
 - * 다만, 업종별로 특별한 수요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연수인원 증원을 허용
- 연수 실시 기준 강화
 - 실무연수시간을 전체 연수의 70% 이내로 한정하고, 연수기간을 단축(2년 → 1년)
 - 야간·휴일·시간 외 연수는 원칙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연수를 위하여 필요해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방안 검토
 - 단순작업이나 단순지식 습득을 위한 연수 금지
 - 연수업체의 체불방지 보증보험, 의료보험 가입, 연수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및 숙박시설 구비 의무화
- 관계부처 간 업무연계 체제 구축
 - 법무부·노동부 간에 해투기업 연수생 DB 공유체계 구축
 - 법무부에서는 해투기업 연수생의 체류관리, 노동부에서는 연수생의 권익보호를 위해 연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활동 강화

(4)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취업 관리제 도입

- 취업허용 방문동거 사증발급 대상자
 - 일반 대상자 : 국내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 있거나 대한민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의 직계 존비속으로서 40세 이상인 외국 국적 동포
 - 특별 대상자 : ①독립유공자의 직계혈족, ②외국동포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③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이탈하지 않고 귀국한 자, ④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한 자
- 취업허용 업종 및 규모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 등을 위해 불법체류자 취업실태를 토대로 취업허용 업종과 규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2003년 중 경기 전망, 서비스 분야 인력부족 실태 등을 반영하여 확대 검토

- 음식점업(일반 음식업, 기타 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건축물 일반 청소업, 산업설비 청소업), 사회복지사업, 청소 관련 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가사서비스업에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을 허용
- 도입정원은 5만명으로 설정하고 금년 12월부터 우선 2만5천명을 도입하되, 나머지는 불법체류자 출국상황을 고려하여 도입
- 특정업종으로의 외국인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 간 인력이동 실태를 감안 취업허용 업종별 정원을 설정
- 외국국적동포 취업절차
 -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자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서를 제출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고용안정센터에 구인등록 후 1개월간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고용주에 한해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구인신청을 허용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등록된 구직신청자 중에서 조건에 맞는 신청자를 선정하여 고용주에게 추천하고, 고용주는 적격자를 선발하여 표준근로(고용)계약을 체결
 - 고용주와 표준근로(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국적동포가 법무부에 체류자격 외 활동(취업활동) 허가를 신청하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전력, 고용계약 체결 여부 등을 검토하여 체류자격 외활동을 허가
 - * 취업허용 기간은 1년의 기간을 허용하되, 1년 연장 가능(최장 2년)
- 외국국적 동포의 고용·체류 관리
 - 취업한 외국국적동포에게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관계법령을 전면 적용
 - 다만, 가사사용인은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 이들의 적정한 고용조건 확보를 위해 고용주에게 상해보험, 보수체불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함.
 - 최초 취업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의 휴·폐업,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 절차를 통해 근무처 변경을 허용
 - 법무부와 노동부 간에 외국국적동포 전산관리시스템을 연계, 현황통계·전산자료 공유하여 적정한 고용·체류관리를 실시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매년 관내 외국국적동포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5) 외국인력 권익보호 대책

- 임금체불 해소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해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추진
 - 외국인근로자·고용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고용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보건 점검을 시행
 - 상시 임금체불 및 산재 다수발생 등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금지하고, 정책자금·신용보증·산업기능요원 배정 등의 지원대상에서 배제
- 외국인근로자 고충상담체계 확립
 - 지방노동관서에 「외국인근로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취업알선, 임금체불·산업재해 관련 상담을 실시
 - 노동부에 ‘콜센터(Call Center)’를 설치하여 해당국가 언어로 상담을 실시
 - 법무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외국인근로자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외국인근로자 상담코너」를 개설하여 고충상담을 실시
-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및 홍보활동 강화
 - 외국인근로자인권대책위원회(위원장 : 법무부장관)를 활성화하여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활동을 강화
 - 정부부처와 주한 외국대사관(노무관)과의 협의채널을 구성하여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불법채류 방지 등을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협의
 -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취업·고용절차 및 출입국관리법·노동관계법 등 준수사항을 담은 가이드북을 제작·배포

라.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외국인력제도 개선 후속대책」(2002. 11. 25)에서 2003년 3월까지 보다 현실성 있고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발표
 -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민·

관·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력제도개선기획단」 설치한 바, 이를 통해 외국인력의 합리적인 활용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

* 「외국인력제도개선기획단」 구성

- 단장 :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 위원(19명) : 관계부처 국장, 연구기관(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인권단체(서경석 목사, 이정호 신부), 교수(이윤보, 이상윤), 국민일보 논설위원(김상온)

제3절 _ 건축·소방 등 국민생활 관련 규제개혁

*집필자 : 손방 사무관(Tel. 3703-3935, sonbang@opc.go.kr)

김진남 사무관(Tel. 3703-2186, twinjin@opc.go.kr)

이장호 사무관(Tel. 3703-2160, youngstone@opc.go.kr)

1. 소방 관련 규제개혁 방안(행자부)

가. 소방검사제도의 개선

(1) 검토배경

- 우리나라 소방은 지난 10여 년간 외형적으로 고속성장을 하였고 소방 서비스의 질과 양에서도 괄목한 만한 성장을 거듭하여 국민으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고 있음.
- 그간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정착, 안전의식수준 향상에 비례하여 안전욕구의 증대로 종전의 일률적, 양적,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이고 양질의 소방행정 서비스가 요구되는 시점임.
- 따라서 현행 소방검사업무가 소방행정의 주체인 소방공무원이 소방검사제도의 기본 취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검사업무를 수행하여 소방행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또는 소방행정의 수혜자인 국민에게 소방행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지는 않는가 등을 분

석,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국민과 국가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소방검사제도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임.

(2) 개선방안

(가) 중복규제의 철폐 : 소방검사와 화재보험(안전점검)과의 연계

① 규제현황

-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된 이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검사를 법제화하고 소방검사의 대상은 소방법시행령에서, 소방검사의 종류와 횟수는 소방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소방검사와 관련된 제도는 사회 여건의 변동에 따라 많은 변천을 해왔으며 현행 소방검사제도는 다음과 같음.
 - 예방검사 : 화재의 예방을 위한 확인 검사
 - 연 1회 검사대상
 - 2년 1회 검사대상
 - 경방조사 : 화재의 경계·진압 및 인명의 구조·구급을 위한 자료 조사
 - 소방대상물조사 : 특수 장소의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조사
 - * 자체점검(소방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9조):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물의 소방 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가 행하는 점검

소방검사 대상물

구 분		대상 건수
예방검사	연 1회 검사대상	2,469
	2년 1회 검사대상	325,269
	소 계	327,738
경방조사		253,279
소방검사 면제대상(자체점검 대상)		3,676
총 계		584,693

*자료 : 2002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 행정자치부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 의해 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은 손실의 예방활동으로 손해 규모를 줄이고 인명 및 재산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화재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기본자료조사 및 소방시설 현황조사를 말함.

- 점검대상
 - 국유재산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
 - 연면적 3,000㎡ 이상인 종합병원, 콘도, 호텔, 공연장 등
 - 바닥면적 2,000㎡ 이상인 학원,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
 - 16층 이상 아파트 및 11층 이상의 건물, 공장 등
- 점검횟수 : 연 1회(신규 보험계약 시, 보험계약갱신 시)
- 소방검사와 화재보험(안전점검)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
 - 보험의 보장적 장치에 의한 합리적인 보상으로 사회 안정
 - 건축물 및 신체손해배상 책임보험을 통한 국민생활안정
 - 소방검사결과 우수대상 인센티브, 불량대상 보험요율 할증제 실시
 - 인센티브 또는 할증을 위한 평가 : 보험사 · 소방관서 합동
 - 합동점검은 외국보험사와의 재보험계약 시 유리한 평가
 - 다중이용업소의 보험대상 확대로 화재 시 정부의 부담해소
 - * 사망자에 대한 정부보상은 우리나라밖에 없음.

지방자치단체 보상 사례

사망자 1인 기준

구 분	화성 '씨랜드' 화재	인천 '라이브 호프' 화재	광주 '예지학원' 화재
보 상 액	1억8천만원	1억8천만원	1억8천만원
보상주체	경기 화성군	인천시청, 중구청	경기 광주시, 교육청

*정부가 관계자에 대한 구상권은 있으나 당사자 능력부재인 경우 기대 불가

② 문제점

㉠ 소방관서의 소방검사와 화재보험협회 안전점검의 필요성

- 소방검사
 - 국민의 신체 · 재산보호를 위한 복합 기능의 소방기본 업무
 -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활동의 전략적 인프라 구축수단
 - ⇒ 건축물의 구조 등 상황변화 정보수집 효과적 대응
 - 화재예방조치(법 제4조) · 개수명령(법 제6조) 및 방화관리 지도 · 감독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불량 시 의법조치 등

- 안전점검
 - 화재보험 요율 산정을 위한 기본조사 업무
 - ⇒ 화재피해의 적절한 보상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 화재 예방 활동으로 화재 피해 손해 규모 축소 ⇒ 보험사 손실방지
 - 일정 규모 이상 건축주의 화재보험가입 강제로 안전의식 제고

소방검사와 안전점검의 법적 지위

구 분	소방검사	안전점검
목 적	화재예방·진압·구조를 위한 조치와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화관리 확인 지도	손실의 예방활동으로 손해규모의 축소 화 인명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성 격	화재예방조치 및 개수명령 등 행정강제를 통한 행정행위	화재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기본 자료조사 및 소방시설 관리유지 실태조사
검사구분	예방검사 : 1년 1회, 2년 1회 경방조사 : 3년 1회 소방대상물조사 : 1년 1회	신규보험계약 시 보험계약갱신 시

* 외국 사례 : 외국의 경우도 소방관서 소방검사와 보험사 안전점검을 분리 시행

㉞ 소방안전점검의 책임과의 한계

- 안전점검을 실시한 대상의 화재로 책임진 사례가 전무하며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양호한 대상 인센티브가 인색
- 시설불량대상 보험료할증 등 제도 미비 및 화재발생 대상에 대한 보상금액이 비현실적인 면이 있음.
 - 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손해보험사의 이윤창출과 협회 존립을 위한 유료점검
 - 인명피해(사망) 1인당 현실적인 보상은 1억8천만원 내외인데 신체손해보상규정 6천만원선

③ 개선방안

〈제1단계〉 : 소방관서·화재보험사 등과 합동소방검사 실시(2001년 하반기)

- 소방법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바목을 개정하여 소방관서장의 화재보험협회 등과의 합동 점검반 편성·운영규정을 마련(2001. 6. 22)
 - 합동점검에 따른 소방검사의 객관성 유지, 보험협회의 기술지원으로 합리적인 검

사를 실시

- 각종 검사에 따른 중복출입으로 인한 국민부담 해소 및 보험인센티브·할증 등 평가 시 투명성을 확보

〈제2단계〉 : 소방검사 횟수 규정 폐지(2003년 말까지)

- 소방법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검사 횟수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과 화재진압 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소방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방검사 횟수 규정 폐지계획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
⇒ 소방관서장이 화재위험도 및 필요에 따라 계절별·장소별 화재위험요인 발생 시 또는 화재위험건축물 등을 고려 검사주기를 결정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④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시 반영(2003년 하반기)

(나) 자체점검제도의 개선

① 규제현황 및 문제점

- 소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정상 상태 유지를 위한 관리행위로 상반기 작동기능점검, 하반기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며, 소방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대상은 소방검사 중 예방검사를 면제
 - 점검을 받아야 할 대상은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만㎡ 이상인 특수장소(아파트 제외)의 소방시설
 - 점검내용은 상반기 작동기능 점검, 하반기 종합정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동기능 점검은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 또는 그 특수 장소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분야를 겸하여 취득한 자)가, 종합정밀 점검은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 또는 그 특수장소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가 실시
-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가 자체 점검을 실시한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검사 중 당해연도 예방검사를 면제하도록 소방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서 규정
 - 그러나, 소방관서는 자체 점검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또다른 소방검사가 실시되고 있는 실정
- 자체점검의 실시자격을 소방시설관리사만이 자체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제한

- 자체점검 대상 중에서 일부특수장소의 경우 사실상 자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능력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소방시설관리사를 추가로 고용하거나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에게 자체점검 용역을 의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인건비 또는 점검수수료 등의 추가부담이 발생
- 또한 발주를 위한 업자 간의 과당경쟁으로 건물주 등의 요청에 미비사항이 축소·왜곡되거나 은폐되는 사례가 종종 적발
⇒ 이러한 점들로 인해 소방시설 자체 점검 그 자체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됨.

② 개선방안

〈제1단계〉 : 자체점검 자격기준 완화(2003년 하반기)

- 소방법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바목을 개정하여 소방관서장과 화재보험협회 등과의 합동점검반 편성·운영규정을 마련(2001.6.22)
- 합동점검에 따른 소방검사의 객관성 유지, 보험협회의 기술지원으로 합리적인 검사

〈제2단계〉 : 자체점검대상 확대(2005년 말까지)

-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에 의한 의무점검대상 면적(현행 1만㎡ 이상)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소방시설은 할로겐화물 등 가스계소화설비 설치대상과 스프링클러설비와 대체되는 물분무소화설비 설치대상으로 확대
⇒ 기능작동이 가능하도록 연중관리체제로 전환
- * 특정 점검항목·시기별 구분은 사실상 시설관리에 실익이 없으며 형식적 점검에 그칠 개연성이 있어 상시 소방시설의 기능작동이 가능하도록 연중관리체제로 전환

③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시 반영(2003년 하반기)

나. 소방검정제도 개선

(1) 현황

(가) 소방검정의 내용

- 소방용기계 기구 등의 제조(수입포함)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함.
-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 기구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정(사전, 사후)을 받아야 함.(소방법 제50조)

- 특수장소에 사용하는 방염대상물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방염성능검사를 받아야 함.(소방법 제12조)
- 소방용 기계 기구 등에 대하여 관계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성능시험을 실시(소방법 제50조의4)
-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형식승인 검정 심사 및 형식승인의 변경 등에 관한 업무와 방염성능검사 업무는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위탁(소방법 제108조 및 영 제63조)

(나) 검정 및 성능시험 품목

- 검정대상 품목 : 38개 품목
 - 사전 제품검사 대상(30개 품목)
 - 소화기, 소화약제, 스프링클러헤드, 소화전, 구조대 등
 - 사후 제품검사 대상(8개 품목)
 - 방수구, 송수구, 살수헤드, 방염제, 방열복 등
- 성능시험 품목
 - 성능인정시험 대상 : 25개 품목
 - 축광유도표지, 표시등, 소화전함, 물분무헤드 등
 - 성능확인시험 대상 : 검정대상 품목 및 방염성능검사 대상 품목

(2) 문제점

(가) 검정기관 선택권 제한 및 품질 향상 저해

-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38개 품목에 대한 검정과 방염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단일 기관에서 독점하여 운영함으로써 제조업자의 검정기관 선택권이 제한됨.
- 경쟁요인의 부재로 검정기술의 발전 지연 및 제품의 품질향상에 장애와 제품의 내구성 저하를 초래

(나) 국가검정제도 운영으로 국제경쟁력 약화 초래

- 제조업자는 최소한의 의무 검정기준만 충족하려고 할 뿐 신제품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꺼리고 있어 소방용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이 곤란
- 국가검정이 WTO 체제에서의 무역장벽요인으로 작용하여 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민간검사기관을 이용한 인증제도를 운영
 - 일본에서는 소방법령에 의한 국가검정제도를 운영(의무검정대상은 15개 품목임)

(3)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가) 개선방안

-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검정은 국가고유 업무로 단일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성능시험의 경우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개방
 - 소방기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기기이므로 유사시 그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가에서 제품생산단계에서부터 국가차원의 검정제도가 불가피
 - 검정업무는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제도개선을 검토하였으나 국가검정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금까지 존치하고 있는 제도
- 검정대상 품목은 일본 정도의 수준으로 대폭 축소
 - 국내소방기기의 기술수준 및 품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과의 연관성이 낮고 제품 품질의 안정성이 확보된 소방기기에 대하여 검정대상에서 제외하여 성능인정시험 대상으로 전환
 - 38개 품목 → 23개 품목만 국가관리(15개 품목 축소)

(나) 추진실적 및 추진일정

- 성능시험을 민간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성능시험기관지정에관한기준고시 제정(2003. 2.)
- 검정대상 축소를 위하여 소방법시행령 개정
 - 소방법시행령 개정으로 검정대상 38개 품목 → 34개 품목으로 조정(2002. 3. 30 시행)
 - 그 외 11개 품목의 축소를 위하여 소방법시행령 개정 추진(2003년 말 개정공포, 2004년부터 시행)

2. 건축기준 합리화 방안(건교부)

가. 추진배경

- 현행 건축법령상의 각종 기준과 절차 가운데 현실과 괴리되어 실효성이 부족하거

나,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사안을 주요 대상으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 이에 부합하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의 용역 수행을 거쳐 개선방안을 수립
 - 연구용역 수행결과를 토대로 시·도, 전문가 단체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방향 및 방안을 마련

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현행 건축법령(기준)의 문제점

- 건축법령은 1962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수십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는 장기적 비전 없이 단기적으로 시대적 배경에 따라 관련기준 및 절차를 개정
 - 법체계상의 혼란과 최근 대형화·고층화되어가는 건축물의 안전 및 쾌적한 주거·도시환경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대 변화에 적극 부응하지 못한 문제
- 건축허가·신고 및 용도변경 등 건축절차가 국제적 기준 등에 부합하지 못함.
 - 감리제도 및 피난·방내화 기준 등이 선진화되지 못하여 대형화·고층화되는 건축물에 적용하기 곤란
 - 일조기준 및 공기기준 등 주거 및 도시환경과 관련된 기준이 미약하여 최근 경제·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함.

(2) 주요개선방향

- 개선 검토 대상
 - 현행 건축법령을 중심으로 건축기준과 절차 가운데 현실과 괴리되어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사안을 주요 검토대상으로 설정
- 개선방향
 -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향후 선진적인 건축 문화제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법상의 미비점을 세부적으로 검토·보완
 - 법령의 명확화·구체화·실용화와 도시 및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건축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건축절차 체계화와 건축기준 선진화, 친환경적 건축기준 마련 방안을

강구

- 단기적 개선이 가능한 사항과, 규제의 영향이 크며 충분한 여론수렴 및 검토가 필요한 장기적 개선방향으로 나누어 개선을 추진

다. 개선방안

(1) 중·장기 추진사항

- 건축물의 건축 중 우선 시공하고 사용검사 시 일괄 신고하는 대상을 조정
 - 현황 :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공사 중 연면적 합계의 1/10 이하 또는 변경되는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우선 공사를 시행하고 사용검사 시 일괄신고로 처리
 - 개선 : 일괄신고 대상 중 연면적 합계 1/10의 규모를 하향조정
-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의 개선
 - 현황 :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신고, 건축물대장기재사항 변경신청 등에 의함.
 - 개선 : 용도변경 시 허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행위의 절차 등 개선
 - 현황 : 대수선 행위는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신고대상이며, 건축사에 의한 설계 및 감리를 받지 않음.
 - 개선 : 대수선하는 건축물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허가 사항으로 전환
- 감리제도의 개선
 - 현황 :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의 감리는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가 감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리의 방법도 감리보조인 건축사보가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하는 상주 감리와 필요 시 현장을 방문하여 감리하는 비상주 감리제도가 있음.
 - 개선
 - 건축법령은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에 대한 기본법이므로 여러 법률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리제도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는 건축법령에서 이를 반영하여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통폐합하는 방안으로 개선
 - 건축물 건축공사의 감리 방법을 다양화하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

(2) 단기 추진 사항

- 건축물 표시변경 사항의 촉탁등기 확대

- 현황 :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중 지번·행정구역의 명칭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관할 등기소에 등기축탁
- 개선 : 건축물의 구조·용도 등 표시변경 시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소에 축탁등기하도록 하여 대국민의 편의를 도모
- 재해위험구역 내 건축기준의 완화
 - 현황 : 재해위험구역은 제1종 내지 제3종으로 구분하고 건축물의 건축제한 및 금지 조례로 규정
 - 동 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및 도로폭에 의한 높이 제한 및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규정을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20%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완화
 - 개선 : 재해위험구역의 지정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의 범위를 120%에서 140%로 확대
- 차면 시설의 설치 의무화
 - 현황 : 종전 건축법령에 차면(遮面)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었으나, 정부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1999. 5)되어 현재 건축법상의 근거는 없음.
 - 개선 : 차면시설의 도입 추진
- 불연재료 등을 사용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의 확대
 - 현황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내부마감재료로 불연재료 등을 사용
 - 개선 : 학원 및 독서실은 규모에 관계없이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사용토록 의무화
- 직통계단 설치 대상 확대
 - 현황 :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바닥면적이 400㎡ 이상의 건축물은 2개 이상의 계단을 설치
 - 개선 : 3층 이상인 학원 및 독서실은 규모에 관계없이 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를 의무화

라. 심의결과

- 장기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제도 전반과 타 부처의 관련법령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일반국민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적·체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관련법령의 규제심사 시에 제출토록 하고, 구체적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 시에 재검토

3. 광고물 관련 규제개혁방안(행자부)

가. 검토배경

- 옥외광고물의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국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므로 옥외광고물의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고자 규제개혁위원회 주관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검토과제로 행자부에 통보(2001. 11)
- 서울시는 건축물과 옥외광고물을 연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현실에 부응하는 광고물관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광고물실명제 도입 등 7개 과제를 선정,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 개정을 행자부에 건의(2002. 10. 21)
- 행자부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와 서울시에서 제안한 과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행 옥외광고물관리실태 등을 감안하여 옥외광고물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나. 개선방안

- 옥외광고물관리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서울시가 제안한 과제는 대부분이 규제신설이나 규제강화로 도시미관 제고 등 입법목적에는 부합하나 국민경제활동에 제한 및 부담을 주게 되므로 이를 제도개선의 필요성, 효과성 및 제도개선에 따른 충격 등을 고려 단기, 중·장기, 수용곤란과제로 분류, 추진
 - 단기 추진 과제(5건) : 옥외광고사 자격제도 도입, 옥외광고업 등록제 전환, 광고물의 유형별 구분 축소, 광고물표시허가·신고 대상의 합리적 조정, 교통수단이용 광고범위를 확대

- 중장기 추진 과제(4건) : 건물연면적에 의한 광고물총량제 실시, 옥외광고물에 대한 보험가입, 건축허가 시 광고물허가 연계처리,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원제도
- 수용 곤란 과제(5건) : 광고물구역제 도입, 광고물설치허가·신고실명제 실시, 건물층수에 의한 광고물유형규제, 업소별 간판설치 수량 축소, 옥외광고물 임대제도의 도입
- 이 중 중장기추진과제에 대해서는 관내 전 건물의 실태조사 및 설치 가능 수량 산정 등의 부담과 건축관련법규와의 연계가 요구되는 등 당장 시행이 곤란한 측면이 있고, 사유재산에 대한 보험강제나 세제지원 등은 관련법규 및 타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수용 곤란한 것으로 잠정 결정된 5건의 과제 중에서 광고물구역제는 구역분할이 용이치 않고 현행법상으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용도에 따라 차등 규제하고 있어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임.
- 광고물허가·신고 실명제는 1998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개정 시 지나친 규제라는 이유로 폐기된 사항으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의 소지가 있어 법제화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 또한 건물층수에 따른 광고물 부착가능 유형규제나 업소별 간판설치수량 축소는 기존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된 간판의 정비문제와 표현의 자유 제한, 영업활동의 지나친 규제라는 반발이 예상
- 옥외광고물 임대제도는 사인 간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이라는 반발이 예상되고 현행대로 시·군의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유도함이 바람직하므로 우선적으로 단기과제에 대해서만 금년 내 추진키로 결정

다. 단기추진과제(5건)

(1) 현황 및 문제점

- 옥외광고사 자격제도 도입
 - 옥외광고업은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청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상 누구나 신고만으로 영업을 가능하여 저질 및 불법간판이 난립
- 옥외광고업의 등록제 전환
 -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에서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아무런 시설

기준 없이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업체난립 및 과당경쟁 등으로 저질간판 및 불법광고물 양산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광고물의 유형별 구분 축소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옥외광고물을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현수막 등 16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광고물의 형태별, 내용별, 위치별, 소재별 분류가 복잡하여 법령이해나 광고물관리 측면상 어려움이 있음.
- 광고물 표시허가 신고대상의 합리적 조정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서 면적 5㎡ 이상인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현수막은 신고대상이나 면적 1㎡ 이상 돌출간판, 옥상간판,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은 허가대상으로 형평성을 저해
- 교통수단이용 광고범위 확대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8조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외부에는 타인 광고가 허용되며, 자기소유 차량은 자기광고만 가능하여 대부분 물품운송차량이 소위 지입차량으로 타인광고를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규제하기가 어려움.

(2) 개선방안

- 옥외광고사 자격제도 도입
 - 법령숙지 및 설계·제작기술을 겸비한 자가 옥외광고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불법광고물 단속권 등을 부여하기 위해 시험에 의한 옥외광고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국가가 공인하는 방안 강구
- 옥외광고업의 등록제 전환
 - 일정 사업장 등 영업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받아 옥외광고업을 허용
- 광고물의 유형별 구분 축소
 - 현행 16종의 옥외광고물 분류체계를 외국과 같이 벽면 부착 간판, 전기이용광고물, 임시광고물 등 9개종으로 분류체계를 통·폐합
- 광고물 표시허가 신고 대상의 합리적 조정
 - 허가신고 대상을 도시 미관이나 안전성 및 광고물별 형평성 등을 고려, 조정하여 규제순응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
 - 허가대상 : 면적10㎡ 이상 벽면부착광고물, 면적5㎡ 이상 돌출광고물 등
 - 신고대상 : 면적 5㎡ 이상 10㎡ 미만 벽면부착광고물, 면적5㎡ 미만 돌출광고물

등

- 교통수단이용 광고범위 확대
 - 불법광고물 양산방지와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물품 운송 차량에 대한 타인광고 표시를 허용

(3)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그간 추진실적 및 향후 일정
 - 옥외광고물 제도개선을 위한 담당자회의 개최 : 2002. 10. 17
 - 규제개혁위원회(행정사회분과위) 개최 : 2002. 12. 18
 - 옥외광고물제도 개선자료 수집 : 2002.11~12
 - 자료수집 및 개선과제별 검토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 마련 : 2003. 1~4
- 개정안 작성, 시도 의견 수렴 등
 - 관계부처 의견조회 : 2003. 4~5
- 규개위 및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정부안 확정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 국회 이송 : 2003. 7
- 규제개혁위원회와 서울시 제안내용을 토대로 하고 그간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동시에 검토하여 상기 단기추진과제를 포함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전반적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장기과제는 물론 수용곤란 과제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폭넓은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개정 시 수용할 계획

4. 교육과정 개편 관련 규제개선방안(교육부)

가. 추진배경

- 교육과정은 일정 주기로 현재까지 여섯 차례(현행 7차) 개정하였고, 개정작업은 교육부, 교육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장교육전문가 등 3주체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진행

- 국가가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하면 학교는 새 교육과정에 따라 교원, 교육시설 등 제반 여건을 갖추어야 하고, 입시준비를 중심으로 학생, 학부모, 교재출판시장, 학원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 현재와 같이 교육과정을 일정주기로 전면 개정하는 방식으로는 교육과정 개편 필요성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학교 등 현장에서의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준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국가기준으로 제시한 필수 교과목이 너무 많으며 일선학교의 선택 폭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나. 7차 교육과정 주요 개편내용(2000년도부터 단계적 시행)

(1) 기초·기본교육 충실

- 국민공통 기본 교육기간 중에 기초·기본교육 강화 방안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자율권을 부여
-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방법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

(2)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 도입

- 필수교과 이수기간 단축 : 12년 → 10년
 - 초 1~고 1(10년간) :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필수교과 이수)
 - 고 2, 3(2년간) : 선택 중심 교육과정(선택과목 이수)
- 선택교과목수 확대
 - 중학교 : 3개 → 10개
 - 고등학교 : 보통교과(60 → 79과목), 전문교과(378 → 445과목)

(3) 학교의 자율성 확대

- 교육과정 구조의 개편
 - 1~5차 교육과정 : 국가주도, 필수교과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 6차 교육과정 : 시·도 교육청, 학교의 자율권 부여
 - 7차 교육과정 : 학교의 자율권 확대, 학생의 선택권 부여
- 국가 지정 필수 교과 비중 축소

- 초등학교 : 필수 교과수(10교과)는 불변이나 필수교과 수업시간 수 감축(주당 3~4 시간 감축)
- 중학교 : 필수 교과수 축소 (11교과 → 10교과)
- 고등학교 1학년 : 필수교과 이수단위 및 비중 축소
- 고등학교 2, 3학년 : 이수과목 전체를 '선택'으로 운영하며,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일부를 지정하고, 학생 선택권(최대 50%) 신설

다. 개선방안

(1) 교육과정심의회 운영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전교조 등 교직 단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현장적용상의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바,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가 필요
- 일정 주기마다 전면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함으로써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나) 개선방안

- 교육과정심의회의 수시 운영 체제로 전환
 - 교육과정의 일정주기 전면개편 방식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심의회를 수시 운영 체제로 전환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시로 개선
 - 학교현장의 교육과정 운영실태 점검 및 국가·사회적 요구의 수렴 등 지속적인 조사·연구 기능을 확보
- 위원회 다단계 구성·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
 - 먼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교육과정심의회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학교별위원회 및 교과별 위원회는 필요시 구성·운영
- 교육과정심의회 위원에 교육 수요자 포함 확대
 - 위원(30명)이 현직 교원 16명, 교육전문가 7명, 학부모 3명, 당연직 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공급자 중심으로 구성
 - 교육과정 개정과정에서 교육분야 및 비교육분야의 전문가도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교육과정심의회규정 개정 : 2003년 중 개정 추진

(2) 학생의 교과 선택폭 점진적 확대

-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능력·적성·진로를 고려하면서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중·고교의 선택과목을 확대
- 고등학교 학생의 교과목 선택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3) 시도 및 학교의 자율성 확대

- 재량활동 시수 확대, 특별활동 영역별 이수단위 등 학교 재량권 강화
- 고교과목 이수 단위 증감에 관한 사항 등 시도 위임사항 확대
- 지역, 학교, 학생의 특수성 및 필요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 마련 등

제4절 _ 환경규제의 합리화

*집필자 : 김영환 사무관(Tel. 3703-3946, hwan49@opc.go.kr)

1. 연료사용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환경부)

가. 검토배경

- 경제발전과 도시화로 인해 연료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오염배출 증가가 대기오염의 주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연료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저황유 사용 의무화’, ‘자동차용 연료 및 첨가제의 품질기준 설정’ 등 연료사용을 규제하고 있음.
 - 이러한 연료사용규제는 대기오염 저감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연료공급자 및 사용자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
- 연료규제로 인한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월드컵 대비 대기질 개선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등을 기하기 위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나. 개선방안

(1) 0.3% 저황중유 공급지역의 합리적 조정

(가) 규제현황

- 연료사용량 증가로 인해 아황산가스와 미세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및 대기오염 악화가 우려되는 실정
 - 중유, 경유 등 유류 사용량이 1887년에는 23백만kl에 불과하던 것이 1999년에는 62백만kl로 2.7배나 증가
 - 이러한 연료사용량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미세 먼지 등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저황유 사용을 확대
 - 현재 서울 등 7개 지역은 황함량 0.3% 이하, 광주 등 53개 지역은 0.5% 이하, 기타 지역은 1.0% 이하 중유를 사용하고 있음.
- 0.3% 저황중유 공급계획
 - 0.3% 저황중유를 2001년 7월부터 2003년까지 총 29개 지역에 단계적으로 공급하도록 예고(1996년 12월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 개정)
 - 2001년 7월 공급예정 14개 지역 중, 대기오염도가 개선된 7개 지역을 제외하고, 서울 등 7개 지역에 공급하도록 조정(2001. 6)

0.3% 저황중유 공급·사용 시기 및 지역 현황

지역 \ 시기	2001. 7	2002. 7	2003. 7
대상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울산·수원·안산시 (7개 지역)	광주·대전·군포·오산·강릉·청주·전주·군산·여수(구 여천시)·광양·구미·창원·마산시 (13개 지역)	제천·서산·여수(구 여수시)·김해시 (3개 지역)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1996년 12월, 2001년 6월 개정)

*여수(구여천시, 구여수시)는 1개 지역으로 고려(1998년 4월 여수시로 통합)

(나) 문제점

- 1996년 당시 지역별 오염도와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예측하여 0.3% 중유 공급지역을 고시
 - 그러나 5년이 경과한 2001년의 대기오염도 측정결과, 대기오염이 개선된 지역이 포함되고 대기오염도가 높은 지역이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
- * 2001년도 지역별 대기오염도 측정결과는 별첨 참조

- 월드컵 개최 도시 중 광주, 대전지역은 대회 이전에 저황중유를 공급할 필요가 있으나 월드컵이 끝난 7월 이후 0.3% 저황중유를 공급토록 예고

(다) 개선방안

- 지역조정 범위
 - 현재 예고된 2002년 7월 및 2003년 7월 0.3% 중유 공급 예정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대상지역을 검토(56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지역)
 - 지역조정기준에 미달되는 지역은 제외하고, 조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은 2002년 7월부터 0.3% 중유 공급지역으로 선정
 - 월드컵 개최도시인 광주, 대전은 2002년 7월에서 2002년 5월로 공급시기를 조정
- 지역조정 기준
 - 2001년 대기오염도가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을 선정
 -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국가환경기준 연평균치의 80% 이상 또는 단기환경기준 초과 또는 지역환경기준 연평균치를 초과하는 지역
 - 미세 먼지 오염도가 국가환경기준 또는 지역환경기준 연평균치를 초과하는 지역 (월드컵 개최도시는 국가기준 연평균치의 80% 이상)
 - * 국가환경기준 : 아황산가스 - 연간 0.02, 24시간 0.04, 1시간 0.12 ppm 이하
미세 먼지 - 연간 60 μ g/m³ 이하
 - * ppm(parts per million-백만분율), μ g/m³(백만분의 1g/m³)
 - * 지역환경기준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서울 등 5개 자치단체별로 국가기준보다 엄격한 환경기준을 설정 운영 중
- 지역조정 결과
 - 2002. 7월 이후 공급대상 16개 지역 중 전주시 등 10개 지역을 제외, 성남시 등 7개 지역을 추가(13개 지역으로 조정)

구 분	기 준	조 정		조정 결과
	대상지역	제외지역	추가지역	조정 후 지역
2002. 7. 1 공급지역	광주·대전·군포· 오산·강릉·청주· 전주·군산·여수 (구 여천시)·광양· 구미·창원·마산시	오산·강릉· 전주·광양· 구미·창원· 마산시	성남·평택· 구리·시흥· 부천·춘천· 익산시	광주·대전·군포· 성남·평택·구리· 시흥·부천·춘천· 청주·군산·익산 시·여주시(구 여천

구 분	기 존	조 정		조정 결과
	대상지역	제외지역	추가지역	조정 후 지역
				시, 구 여수시) *광 주 · 대 전 은 2002. 5. 1 시행
	13개시	7개시	7개시	13개시
2003. 7. 1 공급지역	제천·서산·여수 (구 여수시)·김해시	제천·서산· 김해시	-	-
	3개시	3개시	-	-
공급량 (2000, 천kℓ)	2,353(100%)	1,130	216	1,439(61%)

(라)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 별표 2. ‘0.3% 이하 중유 공급·사용지역’ 개정 (2002. 3)

(2) 초저황경유 보급 확대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 자동차용 경유의 황함유기준을 종전 500ppm 이하에서 2002년 1월부터 430ppm 이하로 강화하여 시행 중(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03조 별표 30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 외국의 사례
 -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은 1990년대부터 황함량 10ppm 이하 초저황 경유를 공급·사용 중
 - 미국은 2006년부터 경유의 황함유 기준을 15ppm(현재 500ppm) 이하로, 일본은 2005년부터 50ppm(현재 500ppm) 이하로 강화할 예정
- 경유 자동차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 요인
 - 1999년 기준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56%가 수송부문에서 배출한다.
 - 전국 차량대수(1999년 11,164천대)의 29%에 불과한 경유자동차(3,280천대)에서 자동차 오염배출량의 52%를 배출
-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일본에 비해 대기오염도가 열악한 수준

한국·일본 월드컵 개최도시의 대기오염도 비교(2000. 6월 기준)

구 분	아황산가스(ppm)	이산화질소(ppm)	오존(ppm)	미세 먼지($\mu\text{g}/\text{m}^3$)
한 국	0.008	0.026	0.026	54
일 본	0.006	0.022	0.027	36

*주 : 한국과 일본의 월드컵 개최 도시의 오염도 평균치이다.

- 월드컵 개최도시의 미세 먼지 평균 오염도가 일본의 1.5배 수준
- 오존의 평균 오염도는 유사하나, 단기(8시간, 1시간) 오염도는 전국적으로 기준 초과 횟수가 1998년 532회에서 2001년 784회로 증가

(나) 개선방안

〈월드컵 개최 이전 추진방안〉

- 월드컵 대비 대기질 개선을 위해 황함량 15ppm 이하 초저황경유 보급
 - 기 간 : 2002. 5~6(2개월간)
 - 대상지역 : 서울, 인천, 수원(수도권 월드컵 개최 도시)
 - 공급물량 : 27,700배럴/일(2001년 3개 지역 주유소 경유 판매량의 86%)
 - 추진방법 : 환경부와 정유4사(SK, LG-Caltex, 현대정유, S-oil 등) 간에 자발적인 합의로 자율공급 실시
 - 공급가격 : 일반경유와 동일한 가격에 공급(리터당 600원)

〈월드컵 개최 이후 추진방안〉

- 초저황경유 공급 확대
 - 정유사의 연료 탈황시설 증설·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연료품질기준 강화로 초저황경유를 지속 공급
 - 현재 한국석유포럼 주관으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차기 연료품질기준 강화방안 연구'를 추진 중(2002년 4월 종료)
 -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유사, 자동차제조사,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2002. 6)

(다)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03년 중)

(3) 바이오디젤(경유 대체연료) 보급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 현재는 자동차용 첨가제로서 검사받아 시중에 보급·사용 중
 - 익산 시내버스 55대, 종로구 청소차 35대 등에 사용한 결과, 연비 등 자동차 성능은 동일한 반면 매연 등 대기오염은 대폭 감소
 - * 시중 경유가(리터당 600원)보다 다소 비싼 가격(리터당 600~660원)에 바이오디젤을 구입, 20% 혼합 사용
 - 월드컵 대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도권 매립지에 출입하는 청소차량(약 400대)을 대상으로 2002년 5월부터 시범보급사업을 추진 중
 - * 수도권매립지 내에 자가 급유시설을 설치하고, 자치단체(서울, 경기, 인천)와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매립지공사에서 급유시설을 운영
- 바이오디젤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외국 사례와 같이 주유소 판매가 허용되어야 하나, 현행 석유사업법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등 석유제품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석유제품 범위에 바이오디젤을 미 포함(석유사업법 제2조 석유제품정의)

(나) 개선방안

- 바이오디젤과 경유를 혼합한 연료(바이오디젤 혼합연료)를 석유사업법상 석유제품으로 인정
 - 석유제품의 정의에 '경유와 바이오디젤을 혼합한 연료'를 추가(석유사업법 개정)
 - ⇒ 산업자원부 원칙적 동의
 - * 산업자원부는 바이오디젤 품질테스트 용역결과(2002년 하반기), 재경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자동차 정유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 감안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 예정

(4)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굴뚝높이 제한규정 개선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수도권 등 오염원이 밀집된 지역을 석탄 등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으로 지정(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
 - 2002년 현재 20개 지역(7개 특·광역시, 수도권 13개 시·군)을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으로 지정(「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 제11조)
 - 다만, 굴뚝높이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체연료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고체연

로 사용을 허용(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0조의3 고체연료사용승인, 별표14의2 고체연료사용시설 설치기준)

- 굴뚝높이 : 석탄사용시설 100m,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 20m
- 2000년 3월 기준, 총 55개 업체에서 산업용 열병합발전시설, 소각보일러 등에 ‘고체연료사용승인’을 받아 석탄 등 고체연료를 사용 중
-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굴뚝높이를 규제하는 것은 오염물질의 확산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과도한 오염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임.
- 대기 중 오염물질의 확산정도는 굴뚝높이뿐만 아니라, 배출가스의 속도와 온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
- 그러나 현재는 배출가스의 속도와 온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굴뚝높이를 제한함에 따라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
⇒ 굴뚝높이 이외에도 배출가스의 속도와 온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굴뚝높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나) 개선방안

-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굴뚝높이 제한규정 개선(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0조의3, 별표14의2 ‘고체연료사용시설의 설치기준’ 개정)
- 현재는 굴뚝높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배출가스 속도 및 온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굴뚝높이를 결정(단, 최저굴뚝높이는 규정)

(다)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2003년 중)

2. 폐기물 소각시설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환경부)

가. 검토배경

- 현행 소각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을 저해하거나 또는 소각시설 설치가 어렵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

- 현재 적용되는 규제기준은 80년대 중반에 설정된 이후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일부 규제기준은 현실성이 미흡한 실정
- 따라서 중복되거나 과도한 규제기준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

나. 개선방안

(1) 소각시설 연소실 출구온도 현실화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 소각시설 연소실 출구온도를 일률적으로 규정(일반소각시설 850℃ 이상, 고온소각시설 1,100℃ 이상)하고
 - 기계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일시적으로 규정 온도를 준수하게 되어 운전·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됨.

(나) 개선방안

- 예상치 못한 기계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규정온도 준수가 가능하도록 소각시설 연소실 출구온도를 합리적으로 개정
 - 일반 소각시설 : $850 \pm 20^\circ\text{C}$, 고온 소각시설 : $1,100 \pm 50^\circ\text{C}$
- 다만, 평상시 소각시설 연소실 출구온도를 최저 규정온도로 유지하다가 규정온도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다)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2003 상반기

(2) 소각시설 바닥재 강열감량기준의 합리적인 조정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 소각시설의 완전연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각재에 대한 강열감량기준(10% 이하)을 규제하는 한편,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동시에 규제함에 따라 중복규제라는 의견이 제기
 - * 강열감량 기준이란 : 배출가스의 완전연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각재중에 연소되지 않은 물질의 함유량을 규제하기 위한 기준
- 건류식가스화 소각시설은 소각시설 구조상 강열감량기준을 완화(10% → 15% 이하)

하더라도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가능함에도 다른 소각시설과 동일한 강열감량기준을 적용

(나) 개선방안

- 대기자동측정기(TMS) 설치로 항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각 시설은 강열감량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
 - TMS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건류식가스화 소각시설에 한하여 강열감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현행 10%에서 15%로 조정)

(다)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2003 상반기)

(3) 소각시설 운전·관리기준 현실화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 폐기물관리법상의 운전·관리기준 위반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해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각각 행정처분을 받게 됨
 -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소각시설 운전·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과태료 10백만원 등) 실시
 - 대기환경보전법에서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과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
- 예)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유가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 및 보수를 하지 않는 사유로 판명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과는 별도로 폐기물관리법으로 처벌

(나) 개선방안

-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처벌만 받도록 소각시설 운전·관리기준을 보완

(다)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 일정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2003 상반기)

(4) 자동온도기록계 등 연속 측정·기록 유지 현실화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 자동온도기록계 등 계측장비는 소각시설의 가동 시간(회분식의 경우 1일 8시간 가동)과는 관계없이 24시간 연속적으로 측정·기록을 유지

- 연속적으로 측정·기록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됨.
- 회분식 소각시설의 경우 가동되지 않더라도 24시간 연속 측정을 위하여 계측기기의 전원이 켜져 있어 화재 위험이 상존하고, 전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 * 회분식 소각시설이라함은 1일 가동시간이 8시간 미만으로써, 가동하지 않을 경우 연소실을 냉각한 후 소각 잔재물을 한 번에 제거하는 소각방식(8,173개소 중 3,717개소가 회분식 소각시설임)

(나) 개선방안

- 간헐적으로 가동하는 소각시설에 대한 자동온도기록계 등 계측기기에 대한 측정시간을 소각시설 가동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소각시설 운전·관리기준을 조정
 - 소각시설 가동을 위한 전원 스위치와 계측기기 스위치를 1개의 스위치로 연결·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설치기준을 개선
 - 자동온도기록계 등 계측기기 측정시간을 소각시설 가동시간과 일치토록 함.

(다)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2003 상반기)

(5) 폐기물 투입 조성비 변경 시 변경허가(또는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 소각시설에 대한 허가나 승인 당시에 소각대상 폐기물의 종류별 조성비율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산출하고, 그에 적합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음.
 - 실제 운영 과정에서 폐기물 종류별 조성비율이 변경될 경우 변경허가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폐기물 종류별 조성비율이 변경되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어 불필요한 규제라는 문제점이 제기
 - * 다만, 폐기물의 종류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어려움.

(나) 개선방안

- 당초 허가나 승인을 받은 소각대상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지 않는 상태에서 폐기물 종류별 조성비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허가나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

(다)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2003 상반기)

(6) 상호 변경신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처벌기준 현실화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 폐기물관리법상 상호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 또한 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 * 수질환경보전법(100만원이하 과태료) 등 다른 환경법규에 비하여 벌칙 규정이 과도하여 형평성 문제 제기와 경제적 부담 가중 등으로 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

(나) 개선방안

- 상호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벌칙 조항 개선(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태료 2백만원 이하로 한다.)
 - 배출자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벌칙조항 개선(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서 과태료 1천만원 이하로 한다.)

(다)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03 상반기)

(7) 폐기물 투입과정에서 적용되는 온도기준 완화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 소각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료를 투입하여 800℃까지 승온을 한 후에 폐기물을 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승온과정에서 연료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 * 800℃ 이하에서 폐기물을 투입할 경우 승온 과정에서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폐기물 투입을 금지
- 일부 소각시설에서 400~600℃에 폐기물을 투입한 결과,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다소 높게 배출되나, 적절한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 허용기준과 폐기물관리법상 다이옥신 배출기준 준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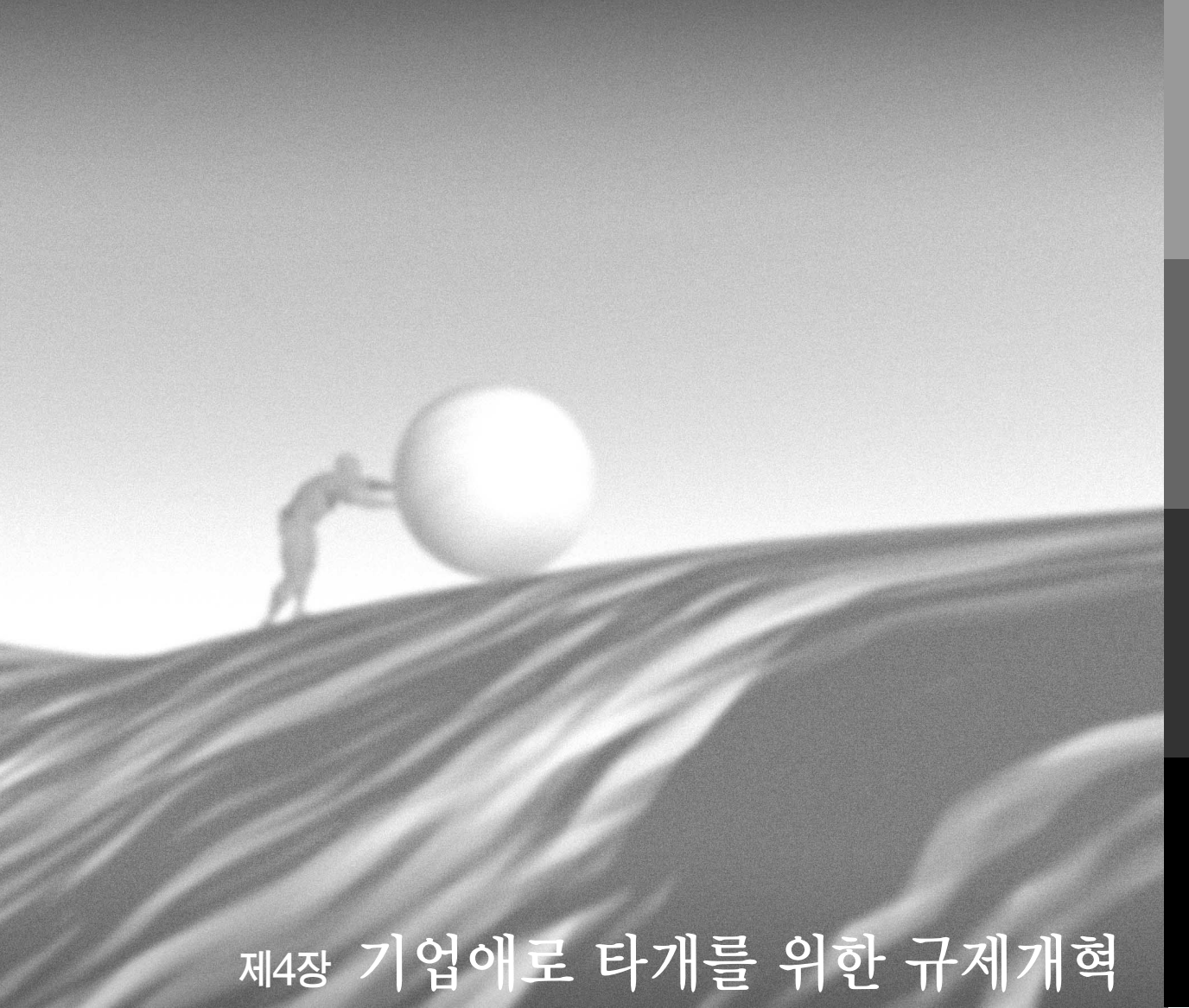
(나) 개선방안

- 400~600℃에서 폐기물 투입을 허용하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상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가능한 지에 대하여는 실제 소각시설에서의 승온과정에 따른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배출실태와 방지시설의 저감효율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2004 상반기)



제4장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규제개혁

제1절 _ 추진개요

제2절 _ 추진실적

제1절 _ 추진개요

*집필자 : 민용식 서기관(Tel. 3703-3931, kantmin@opc.go.kr)

국민의 정부는 출범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 목표로 1998년도에 11,000여 건의 행정규제 전수를 재검토, 절반 이상을 철폐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결과 OECD는 우리나라의 성과를 APEC 국가에 확산토록 요청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기업활동 및 국민생활 관련 규제가 대폭 정비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그 동안의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정책 등 핵심적인 규제의 정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도 여전히 많아 일선 기업의 규제 개혁 체감도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들도 한국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노사문제와 더불어 기업규제를 주요 장애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추가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집중적인 기업 규제개혁 작업을 추진키로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 단체의 건의과제 수렴·개선과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정비하는 한편, 재계와 합동으로 기업규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소위 「찾아가는 규제개혁」을 2000년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분기별로 경제5단체의 건의과제를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현지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하기 위해 2001년 8월에는 경제5단체 등 재계와 합동으로 기업규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민·관 합동 기업규제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총 7회에 걸쳐 428개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접수하였으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69%인 294개 과제에 대해 수용기로 하였다.

경제5단체 건의과제 처리실적

총계		1차 (2000. 10)		2차 (2001. 2)		3차 (2001. 5)		4차 (2001. 8)		5차 (2001. 10)		6차 (2002. 3)		7차 (2002. 9)	
건의	수용	건의	수용	건의	수용	건의	수용	건의	수용	건의	수용	건의	수용	건의	수용
428	294 (69%)	22	18 (82%)	37	22 (60%)	48	35 (73%)	35	23 (66%)	221	154 (70%)	43	28 (65%)	22	14 (64%)

제2절 _ 추진실적

*집필자 : 민용식 서기관(Tel. 3703-3931, kantmin@opc.go.kr)

1. 제1차 건의과제 및 처리실적

제1차 건의과제(2000. 10) 수는 총 22개이며 이에 대한 심의결과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폐지 등 18개 과제는 수용(일부 및 조건부 수용 포함)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애인 의무고용 완화 등 4개 과제는 수용이 곤란한 것으로 의결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첫째,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현재는 부채비율 100% 이하,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50% 이상(1999년 4월 1일 이전에 설립된 상장회사는 30% 이하), 다른 회사 주식의 지배목적 소유 금지 등을 규제하면서, 현물출자 후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1~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5단체에서는 상장회사 및 협회등록법인을 자회사로 하는 경우 설립시점에 관계없이 지분율을 30%로 완화하고 회사분할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부여해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이를 수용키로 하였다.

둘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지를 취득한 경우 공장설립 전에는 산업용지를 임의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리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일정한 가격기준 내에서 처분토록 규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경제5단체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동 규제의 폐지를 건의하였는 바,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가격기준은 존속하되 처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하였다.

셋째,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업체는 장애인을 5%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면서,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직종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일정한 제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경제5단체에서는 조선업 등 기타 업종의 적용 제외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적용 제외율은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25%에 비해 우리나라의 현행 기준도 높은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경제5단체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경제5단체 1차 건의과제 목록 및 처리 결과(2000. 12)

연번	건의과제명	심의결과
1	• 해외현지금융 제한 폐지	수 용
2	•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환급 원료 후 추가 세액 납부 개선	수 용
3	• 수입세금계산서 EDI서식 허용	수 용
4	• 화물입출항료 폐지	일부수용
5	• 입항 전 수입신고 확대 적용	수 용
6	• 반출입 승인권의 민간 이양	수 용
7	• 북한물품 통관 시 검사완화	수 용
8	•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공장의 처분제한 폐지	수 용
9	• 유통점 출점관련 규제완화	일부수용
10	• SOC민자사업 대출자산 BIS자기자본율 적용 규제 완화	비 수용
11	• 자연녹지 내 대형할인점 형질변경면적 제한 완화	비 수용
12	• 금융기관 자산운영관련 규제완화	일부수용
13	• 환경규제의 합리화	수 용
14	• 폐기물 예치금제도 개선	일부수용
15	• 지주회사 요건 완화	수 용
16	• 여성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의 제한 완화	수 용
17	• 근로계약기간 연장	수 용
18	• 일정지역 내 동일기업 사업장의 의무 고용 완화	수 용
19	• 장애인의무고용 적용 제외율 현실화	비 수용
20	•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문제 시정	수 용
21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납부방식 전환	비 수용
22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및 지정절차 완화	수 용

2. 제2차 건의과제 및 처리실적

제2차 경제5단체 건의과제(2001. 12)는 총 37개이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 중 22개 과제를 수용하고, 15개 과제는 수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첫째, 현재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이 외국인과 공동최대출자로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외국인 측이 이사의 과반수·대표이사·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동 합작회사는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 주고 있는 바 앞으로는 외국인 측과 동일인 측이 동수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 대기업의 외자유치를 지원토록 하였다.

둘째, 현재 회사정리절차(청산 등)가 진행중인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지배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집단에 포함되며, 채무보증해소 등 각종 제재를 하고 있으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주기업체에 대해서는 화의조건상의 보증채무 상환기한까지 채무보증상환의무 유예 또는 과징금 부과수준 완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부담을 완화키로 하였다.

셋째,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의 주주가액 합계액이 자기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지주회사는 부채비율 100% 이하 유지, 자회사 주식 30~50% 이상 보유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 바, 자회사의 주가 등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갑작스럽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되어 각종 행위제한을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금번에 자회사의 일시적인 주가 상승 등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화되는 경우 지주회사 전환시점 또는 각종 행위제한을 1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경제5단체 제2차 건의과제 목록 및 처리 결과(2001. 5)

연번	건의과제명	검토결과
1	• 외국과의 합작법인의 계열 분리 요건	수용
2	• 주기업체가 화의중인 그룹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	수용
3	• 금융회사의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	수용
4	• 지주회사로 전환할 의도가 없는 기업의 자회사 주식평가방법 개선	수용
5	• 화물차량의 도심 진입 제한 완화	기수용
6	• 특수화물차량의 운행허가기간 연장 및 허가노선 확대	수용

연번	건의과제명	검토결과
7	• 임시운행 허가를 신고제 또는 자율관리로 전환	비 수용
8	• 화물자동차의 길이 기준 완화	비 수용
9	• 주유소 이동판매소 용량 제한 완화	수용(장기)
10	• 철도하역 근로자 복지·후생시설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비 수용
11	• scoured wool의 검역절차 간소화	비 수용
12	• 산업단지 지원시설 내 공용화물터미널 부대시설 영업행위 허용	비 수용
13	• 진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면제	비 수용
14	•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용지의 조성원가 분양	비 수용
15	• 수입주류보관창고의 면허개설수의 제한 완화	비 수용
16	• 수출선적 기간의 연장 및 적용 예외	비 수용
17	• 동일한 보세공장이나 격지 간 수입통관절차 간소화	수 용
18	• 수입신고 심사절차의 개선	비 수용
19	• 학술감면용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 단축	비 수용
20	• 보세운송 승인품목 완화	수 용
21	• 보세운송 신고 승인 신청 시 운송수단 기록항목 폐지	일부수용
22	• 보세공장 반입 원자재의 일괄 사후신고 허용	비 수용
23	• 보세공장 내 내국작업 허가절차 간소화	일부수용
24	• 안전관리규정 작성의무 중복	수 용
25	• 동시검사제도 개선	수 용
26	• 항만시설 소방관리 중복	수 용
27	• 고압가스설비의 정기검사주기	수 용
28	• 열사용 기자재 법정안전검사 주기	일부수용
29	• 위험물 저장탱크 구조 안전 점검 시행자 자격 제한	수 용
30	• 위험물 저장탱크 구조 안전 점검 수수료	수 용
31	• 위험물 저장탱크 구조 안전 점검 주기	수 용
32	• 방재설비 국내재 승인제도	수 용
33	• 위험물 옥외 저장탱크의 물분무 설비기술 기준	비 수용
34	• 냉동제조(건축물) 신고 사항	수 용
35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처벌 조건	비 수용
36	• 고압가스 안전 관리 기준	수 용
37	• 재해자 과실상계 적용	비 수용

3. 제3차 건의과제 및 처리실적

제3차 경제5단체 건의과제(2001. 5)는 총 48개이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 중 35개 과제를 수용하고, 13개 과제는 수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첫째, 현재 30대 계열기업군의 경우 본사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한도를 1998년 말의 보증잔액 범위 내에서 현지법인별로 관리하고 있어, 현지 시장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금번에 해외현지금융한도를 본사별로 관리토록 전환하여 현지 법인들 간에 보증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전체 해외지급보증한도는 증가하지 않으면서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다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현재 공모(50인 이상)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과거 2년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금액을 합산하여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경제 규모의 확대, 소액 공모에 대한 공시의무부과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공모대상 금액기준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상금액 산정기준을 과거 2년에서 과거 1년으로 단축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키로 하였다.

셋째, 현재 환기 등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할 경우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화뱀퍼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반도체 사업장의 경우 뱀퍼 오작동으로 인하여 폐쇄될 경우 가스질식 및 제품하자 발생 등의 문제를 유발하므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뱀퍼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였다.

경제5단체 제3차 건의과제 목록 및 처리결과(2001. 7)

연번	건의 과제명	심의결과
1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완화	일부수용
2	•불성실공시법인의 관리종목지정제도 개선	일부수용
3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자율화	비 수용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폐지	수 용
5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광고물 부착 허용	장기검토
6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분리발주 활성화	비 수용
7	•벤처캐피탈의 주식매각제한 완화	일부수용
8	•고용보험요율 결정방식의 변경	수 용

연번	건의 과 제 명	심의결과
9	•공사예비비제도의 도입	비 수 용
10	•해외 현지금융 한도 확대	수 용
11	•유독물 수출입신고 절차 간소화	일부수용
12	•남북협력사업 승인 시 중복 승인제 폐지	일부수용
13	•불합리한 항만하역 요율체계 개편	일부수용
14	•운임 및 부대비 결정체계 개선	규제제외
15	•석유화학제품 품목분류 정정	비 수 용
16	•국유지 소유권 취득기한 연장	일부수용
17	•도시계획사업 시행구역내 무상귀속 규정 적용 개선	비 수 용
18	•토지수용 가격과 국유지매입 가격의 일원적 적용	비 수 용
19	•산업단지내 허용되는 개발행위 명확화	비 수 용
20	•산업단지 내 발전설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선	비 수 용
21	•중소유통업 물류센터의 자연녹지 입주 허용	비 수 용
22	•혼합물질에 대한 유기화합물질(VOC) 농도기준 신설	수 용
23	•VOC 배출시설 신고절차 간소화	일부수용
24	•대기환경 규제지역의 VOC 대상시설 재조정	일부수용
25	•대기측정기기 중 적산전력계와 유사한 기기 인정	수 용
26	•대기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에 대한 특례시설의 초과 인정시간 연장	일부수용
27	•0.3% 이하 중유 사용규제 개선	수 용
28	•청량음료 및 주류 제조 관련 적용 규정의 일원화	기 수 용
29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관리와 관련된 서류의 축소	일부수용
30	•반폐기물의 간이인계서 폐지 또는 간소화	수 용
31	•직선거리 100km(시·군·구 경계 밖) 이상 이동하는 일반폐기물의 간이인계서 사용 허용	수 용
32	•재활용 대상 폐기물 보관기간 완화	수 용
33	•폐수처리장 오니의 재활용	수 용
34	•폐기물 감량화 실적 및 계획 보고제도 간소화	기 수 용
35	•폐기물 부담금(폐수지 처리 부담금) 개선	일부수용
36	•폐기물 소각로의 국고 지원	일부수용
37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 명시	수 용
38	•다이옥신 의무측정 대상에서 시멘트 소성로 제외	비 수 용
39	•유독물 영업자의 시설·장비 등 기준 명시	수 용
40	•환경친화기업 지정 제도의 개선	일부수용

연번	건의 과제명	심의결과
41	• 소방펌프의 기동용 압력탱크 설치규정 개선	수 용
42	• 스프링클러의 하향식 배관설치 개선	일부수용
43	• 제조소(시설물)의 안전거리 확보 개선	기 수용
44	• 위험물 제조소의 건축물의 구조 개선	기 수용
45	• 분말소화기 비치 의무 완화	비 수용
46	• 소방시설 인허가 시 부분 승인제 도입	수 용
47	• Fab, Filter 상부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완화	수 용
48	• 방화 댐퍼 설치 의무 완화	수 용

4. 제4차 건의과제 및 처리실적

제4차 경제5단체 건의과제(2001. 8)는 총 35개이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 중 23개 과제를 수용하고, 12개 과제는 수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첫째, 지금까지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공정설립 후 잔여토지를 매각할 경우 투기방지, 산업단지 내 타 시설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매각만 허용해 왔으나 2002년부터는 잔여용지를 필요에 따라 분할하여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하였다.

둘째, SOC 민자사업자의 산업재해를 산정기준 개선하였다. 지금까지는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각 사업자에게 출자지분율대로 배분하여 실재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도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관리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SOC 민자사업을 수주하여 공구별로 시공(책임분할시공)하는 경우, 자기가 맡은 공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개선하였다.

셋째, 불개항장 출입허가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출입허가 이후 계획이 변경되어 출입항을 바꾸더라도 이는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보아 수수료(하루당 선박 : 100원/톤, 항공기 : 1200원/톤)를 환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불개항장에 출입허가를 받은 선박 또는 항공기가 허가받은 정박기간 전에 세관에 출입허가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 허가 당시 납부한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경제5단체 제4차 건의과제 목록 및 처리 결과(2001. 10)

연번	건의과제명	심의결과
1	• 과오납·위약 물품 환급신청 절차 간소화	수 용
2	• 불개항장 출입허가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	수 용
3	•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 고시요건의 완화 및 절차의 간략화	비 수용
4	• 보세공장 설명인 명의 이외의 수입원자재 보세공장 반입 허용	비 수용
5	• 타소장치 허가절차 간소화	비 수용
6	• 보세공장 수용능력증감 승인 개선	일부수용
7	• 해외 직접 투자 업체 산업연수생 사증발급 심사기준 개선	비 수용
8	• 수출입 관련 우편물에 대한 결정 체계 개선	수 용
9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비 수용
10	• 개별공장 입지선정 기준 명확화	수 용
11	• 개발계획 변경 대상의 제한 사항 완화	비 수용
12	• 국유재산법상 용도폐지 및 매수신청 절차 개선	비 수용
13	• 국·공유재산 무상귀속 허용 범위 확대	비 수용
14	• 국유 기부채납 재산의 제3자 전대 허용대상 확대	비 수용
15	•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의무자 변경	비 수용
16	• 산업용지 분할매각 허용	수 용
17	• 산림 형질변경 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수 용
18	• 문화재 발굴비용의 사업 시행자 부담 완화	일부수용
19	• 직업능력개발 기업 규모별 차별제도 개선	일부수용
20	• 안전보건진단 대상사업장 선정기준 개선	수 용
21	•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개선	수 용
22	• 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 개선	수 용
23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자격 확대	비 수용
24	• 위험물 지정 수량의 적용 범위 개선	수 용
25	• 근로자 채용 시 건강진단 기준완화	수 용
26	• 도급사업의 사업주 점검의무 개선	일부수용
27	• 작업환경 측정 횟수 완화	수 용
28	• 소방법에 의한 황산(H ₂ SO ₄)의 위험물 분류 제외	수 용
29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변경 허가 개선	수 용
30	• 천장크레인(호이스트 포함) 정기 검사 주기 조정	비 수용

연번	건의 과제명	심의결과
31	• 가스연료 사용 소형관류보일러의 설치검사 및 계속사용검사 면제	수 용
32	• 화물운송 위·수탁증의 교부 완화	일부수용
33	• 휴지차량에 대한 검사의 자동연기	수 용
34	• 짐보컨테이너 차량의 도로통행 허가절차 개선	일부수용
35	• 주류구매 전용카드 대금결제방식 개선	수 용

5. 제5차 건의과제 및 처리실적

제5차 건의과제(2001. 10)는 지난 2001년 8월 산자부를 중심으로 하여 경제5단체 등 재계와 공동으로 기업규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굴된 511개 애로사항 중 규제 관련 221개 과제를 경제5단체의 2002년도 4/4분기 건의과제로 처리한 것이다. 행정규제과 관련이 없는 290개 과제는 재경부에서 정부합동 작업단을 구성하여 처리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첫째, 현재 자산기준 1,000억원 이상인 자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대상회사의 규모에 관계없이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결합대상회사의 규모가 자산기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토록 완화하여 기업의 기업결합관련 부담을 완화하였다.

둘째, 외국인 투자변동신고 대상을 완화하였다. 현재 외국인 투자 시 투자금액, 투자비용 등을 신고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신고토록 되어 있어, 단순한 환율변동 등으로 투자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신고된 투자금액과 실제금액이 일정비율 이내로 변동될 경우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신고를 생략토록 개선키로 하였다.

셋째, 의약외품의 범위를 확대키로 하였다. 가정상비약인 소화제, 지사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자양강제 등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품목이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국에서만 판매하여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안정성이 확보되고 사용법이 잘 알려진 품목은 약국 외 판매(슈퍼 등)를 확대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 편익을 도모키로 하였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 및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넷째, 타인 소유 차량에도 옥외광고를 허용키로 하였다. 현재 옥외광고물관리법상 타인 소유차량에는 옥외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2003년 1월 1일부터는 이를 허용키로 하였다.

경제5단체 제5차 건의과제 목록 및 처리 결과(2001. 11)

연번	건의과제명	심의결과
1	•5톤 카고 차량의 적재함 규격 변경	비수용
2	•개발부담금 납부시기 조정	비수용
3	•개발제한구역 내 집배송센터의 설치 규제 완화	비수용
4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감면	비수용
5	•건축허가 시 진출 입구(차량) 폭제한 및 출입개수 기준 명확화	수용
6	•공동주택 지하층에 변전소 건설 허용	비수용
7	•국토이용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일부수용
8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에 대한 공장 입지 규제 완화	일부수용
9	•녹지지역 내 건폐율 규제의 완화(2건)	비수용
10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중복심의 폐지	비수용
11	•대형점의 주주거지역 출점 시 지자체의 사후적 출점 제한 방지	비수용
12	•도시계획구역내 첨단공장 등 입지규제 완화	장기검토
13	•도시공원내 도시가스정압시설 점용허용	수용
14	•미관지구내 층수제한을 높이제한으로 변경	수용
15	•수도권 공장건축 총량제도 개선	일부수용
16	•수입 대형트럭 적재함(트레일러)의 형식승인제도 개선	수용
17	•여름철 도시가스배관 설치공사관련 도로굴착 금지기간 완화	비수용
18	•일반주거지역내 1,000㎡ 이상의 판매시설 입주 허용	비수용
19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연구시설 건축시 건폐율 완화	기수용
20	•차고지 보유의무 완화	비수용
21	•폐기물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에서의 분리발주와 관련된 법체계 정비	수용
22	•하도급통지 및 승인의 개선	일부수용
23	•하수급자 부도시 체불노임 채권의 최우선 변제 명시	기수용
24	•환경소요비용에 대한 원가산정방안, 처리비용등의 산정방법 현실화	비수용
25	•환경업체의 건설공사 참여 방법 개선	비수용
26	•택배차량의 도심 내 주정차 허용	비수용
27	•기업결합 신고범위의 완화	수용
28	•대규모 소매점업자의 판촉사원 파견요청 등에 관한 요건 완화	비수용
29	•병행수입제도의 품목에 대한 재검토	수용
30	•영업용 보세창고 보관료 자율화에 따른 과다인상 억제	비수용

연번	건의 과 제 명	심의결과
31	• 인사·노무 아웃소싱 담당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기 수 용
32	• 법정(국가유공자) 의무고용비율 현실화	비 수 용
33	• 주채무계열 신용공여 잔액산출기준 명확화	일부수용
34	•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개선	기 수 용
35	• 고용보험요율 결정방식 변경	일부수용
36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의무 완화	비 수 용
37	• 보건, 환경 관리자 지정의무 완화	기 수 용
38	• 보건안전을 위한 작업환경측정회수 축소	수 용
39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선	일부수용
40	• 시설안전점검의 중복 해소	수 용
41	• 안전보건교육 내실화	수 용
42	• 안전보건진단 대상사업장 선정기준 완화	비 수 용
43	•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연장 등에 관한 제도 개선	기 수 용
44	• 유해물질의 상품표시 규정 정비	수 용
45	• 장애인 의무고용 규제 완화	수 용
46	• 장애인 의무고용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제도의 조정	수 용
47	• 재해자 과실상계 적용 현실화	비 수 용
48	• 직업능력개발기업 규모별 차별제도 개선	일부수용
49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납부방식 개선	비 수 용
50	• 해고 시 중복신고제도의 일원화	비 수 용
51	• 500㎡ 미만 공장의 농지전용 용도변경 허용	기 수 용
52	• 농산물 스티로폼 포장상사 표준 출하규격 제정	비 수 용
53	• 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용도변경승인 제도개선	일부수용
54	• 농지전용 의제처리시 과다면적의 공장건축 요구	수 용
55	• 농지조성비의 분할납부기간을 3년으로 연장	수 용
56	• 목재방역체계 개선	기 수 용
57	• 유통업체 농약잔량검사 사업 실효성 확보	비 수 용
58	• 유해물질 비산 방지 단속 일원화	기 수 용
59	• 제약 부산물의 비료 활용 허용	기 수 용
60	• 제약업종의 부산물 퇴비화 허용	기 수 용
61	• 준농림지역의 공장건립기간 1년 단축	기 수 용

연번	건의 과 제 명	심의결과
62	•지자체의 농지전용 허가권한 확대	일부수용
63	•해외투자업체 연수생 사증발급기준 완화	비 수용
64	•국민건강보험(민원업무 처리 및 제도 개선)	수 용
65	•사업장부속 요양기관 검사로 합리화	비 수용
66	•식품검역 업무의 개선(복잡한 검역체계 개선)	수 용
67	•식품 관련 제품의 수출 관련 서류의 신속한 발급 및 절차 간소화	비 수용
68	•식품매장의 인·허가 사항 절차 간소화	비 수용
69	•업무 매뉴얼(Manual) 책자화(환경, 안전, 보건, 노동 관련)	수 용
70	•의약외품 약사고용의무의 폐지	수 용
71	•의약외품의 범위지정 및 판매품목 확대	수 용
72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개선	수 용
73	•직장피부양자의 건강검진 행정절차 간소화	수 용
74	•고압가스 사용시설 및 냉동제조시설 안전밸브 자체 검사 허용	비 수용
75	•공장설립승인제도의 개선	수 용
76	•국가공인시험기관(KOLAS 인증기관) 시험결과 인정	수 용
77	•냉동제조시설(프레온)정기 및 자율검사 완화	수 용
78	•도시가스 공급시설 점검 일원화	수 용
79	•산업안전 중복규제 개선	수 용
80	•산업용지의 분할매각시 일반매각 허용	수 용
81	•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기준공장면적율 건축 유예기간 연장	수 용
82	•수도권내 기존 공장 신·증설 허용확대	비 수용
83	•외국인투자 변동신고 절차 간소화	수 용
84	•재활용을 위한 고지(폐지)의 수분 및 협잡물 측정방법 개선	수 용
85	•향온향습실의 온·습도 조건의 조정	수 용
86	•LPG자동차충전시설의 저장탱크능력 증설 허용	수 용
87	•건강식품 및 기능성 식품에 대한 허가기준·절차개선	수 용
88	•공동 생산시설에 의한 제품 생산 허용	수정수용
89	•기능성 식품관계법 및 관련 표기기준 마련	수 용
90	•식품 관련 단속 및 점검기관 단일화	수 용
91	•식품첨가물 등록절차 간소화	수 용
92	•연구개발용 수입 임상시험시약의 제출서류 간소화	수 용

연번	건의 과 제 명	심의결과
93	• 의료기기제조업 허가기간 단축	수 용
94	• 의료용구 소분업 허용	비 수용
95	• 체외진단약품의 의약품 분류·관리제 완화	일부수용
96	• 공동도급내용의 변경문화의 개선	비 수용
97	• 국내법인 설립 전(前) 창업비 등의 송금 보장	기 수용
98	• 금융기관고객센터 정보 제공	수 용
99	• 담배소매인 사업자 변경 시 허가 승계의 제한적 인정	비 수용
100	• 상호계산 제출서류 및 절차 간소화	기 수용
101	• 수급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선수금 사용 제한 개선	비 수용
102	• 인터넷을 통한 금융계좌 개설 근거 마련	비 수용
103	• 환경설비 구매계약 서류 간소화	수 용
104	• 환경설비 최저가 낙찰제도 개선	일부수용
105	• 물류업의 중소기업 범위 확대	일부수용
106	• 지식 서비스 분야 벤처기업 지정	기 수용
107	• 표준산업분류상 아웃소싱코드 신설	일부수용
108	• 표준산업분류 및 표준직업분류 재정비	수 용
109	• 산적액체 위험물 선박시설 기준 개선	비 수용
110	• 선박 내의 일상생활 폐기물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완화	기 수용
111	• 수출상품의 위험물검사 시 적시검사와 검사의 신속성 제고	일부수용
112	• 유조선의 해양시설 이용 현황보고 간소화	기 수용
113	• 해양시설 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금지 규제완화	기 수용
114	• 해양시설 안의 기름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비 수용
115	• Oil Fence에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 예외 인정	수 용
116	• 소방기술기준에 의한 필수 누유검사관 설치 완화	비 수용
117	• 옥외광고물의 색상규제 완화	장기검토
118	• 원전 소방시설공사의 자체 감리 대상 포함	수 용
119	• 위험물 제조소에 대한 소방검정 공사의 검사배제기준 마련	일부수용
120	• 위험물제조소 등의 시설기준의 완화	비 수용
121	• 위험물탱크 정기점검 검사기관에 민간기관 포함	일부수용
122	• 인·허가 관련 해지 및 신규등록 절차 간소화	비 수용
123	• 타인소유 차량에 대한 옥외광고 허용	수 용

연번	건의 과 제 명	심의결과
124	• 강원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철회	기 수 용
125	• 고상 폐유독물의 폐기물 처리방법 완화	비 수 용
126	• 공공공사 발주 시 폐기물 처리부분 분리 발주	비 수 용
127	•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	수정수용
128	• 관련 법령별로 동일 물질에 대한 규제의 합리화	수 용
129	• 국토이용관리법의 폐수처리용 정수시설 행위제한 규제의 개선	수정수용
130	•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 등의 부착대상시기 연기	비 수 용
131	• 기본 배출 부과금 관련 행정서류 작성 면제기간 설정	수 용
132	• 기초성된 부지 내 유류저장시설은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	일부수용
133	• 대기 배출시설 및 VOC 배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적용 제외	비 수 용
134	• 대기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완화 및 대상시설 확대 적용	기 수 용
135	• 대기배출시설 이중 규제의 조정	비 수 용
136	• 대기오염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완화	비 수 용
137	• 대기환경보전법 환경관리인 채용의무 완화	수 용
138	• 도장작업장 발생오염 물질 중 악취 측정기준 개선	수정수용
139	• 발전용 내연기관의 표준산소 농도 적용 허용기준의 개선	수정수용
140	• 방류수 수질기준 점검방법의 개선	기 수 용
141	•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확인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기기의 종류 조정	수정수용
142	• 배출시설설치 사업장 지도 점검 시 시료채취 및 측정방법 개선	수정수용
143	• 벵커-C유의 유황함량규제 개선	비 수 용
144	• 벤토나이트 제조 부산물의 재활용 확대	수 용
145	• 부산물 비료 및 토지개량제 사용 가능 원료의 업종별 규제 해소	수정수용
146	• 분진 배출 부과금제도 개선	비 수 용
147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발생 억제 유도	기 수 용
148	• 샘플용 소량화학물질의 수입 시 화학물질확인증명서의 발급 개선	비 수 용
149	• 생태·자연도 1, 2등급 지역의(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개발 제한 해소	수정수용
150	•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 관련 부담 완화	수정수용
151	• 소성로 굴뚝 배출가스 측정기기 부착 설치시기 연장	비 수 용
152	• 소성시설 설비 가동개시 시점의 배출 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개선	기 수 용
153	• 수도권 발전소 LNG 사용 의무화 조치 완화	비 수 용
154	• 수입 유해화학물질 통관제의 개선	기 수 용

연번	건의 과 제 명	심의결과
155	•수질배출시설 허가/신고제도 개선	비 수용
156	•수질자동연속측정기(TMS) 부착 유인제도 도입	기 수용
157	•시멘트생산시설로 자체 발생 폐기물 처리시 별도의 인허가 면제	비 수용
158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안전성)시험 및 검사지원	수 용
159	•신규 화학물질 활용규제 개선	수 용
160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중복 해소	기 수용
161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중 유전독성시험 자료제출 간소화	기 수용
162	•실내 VOC 규제일정 및 기준 명확화	수 용
163	•악취 공기희석관능법 삭제 또는 완화	수정수용
164	•악취배출허용기준 중 공업지역 500배 공기희석관능법 개선	비 수용
165	•악취측정방법 중 「직접관능법」항목 삭제	기 수용
166	•오폐수 병합처리 특례 확대(허가 병합처리)	수정수용
167	•위탁 재활용업체의 발생 폐기물에 대한 수탁 기업 재반입 처리	비 수용
168	•유독물 및 관찰물질에 대한 연간보고 폐지	수 용
169	•유독물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설비 설치 의무규정 개선	비 수용
170	•유분분석과 관련한 폐기물의 공정시험방법 개선	비 수용
171	•유해물질 비산 방지 관련 단속기준 구체화	수 용
172	•유해화학물질 심사신청 및 등록 절차 간소화	수 용
173	•인·허가 협의 시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완요구 금지	수 용
174	•일산화탄소(CO)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합리화	수 용
175	•입자의 크기가 1mm 이상인 계량시설은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제외	수정수용
176	•저유황유 사용시기 연기	비 수용
177	•정부 규격 통일화(상위 기간에서의 통합)	기 수용
178	•제지슬러지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	기 수용
179	•준공업지역 내 소음규제 완화	비 수용
180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또는 예외 인정	일부수용
181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산정 시 NO ₂ 에서 NO로 변경	비 수용
182	•철강 슬래그 재활용 용도 확대	기 수용
183	•총인, 총질소 규제시기 연기 및 업종별 배출허용기준 차등 적용	수정수용
184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특례상의 초과인정시간 적용방법 개선	기 수용
185	•토양오염 검사규정 완화	기 수용

연번	건의 과 제 명	심의결과
186	• 특정 토양오염유발시설별 토양오염 검사항목 중복의 개선	기 수 용
187	• 폐기물 관련 관할기관의 일원화	수정수용
188	• 폐기물 배출의 원단위 산정근거 명문화	수 용
189	• 폐기물 예치금 부과면제업체의 폐기물 예치금 반환	수 용
190	• 폐기물 처리용 시멘트 소성로에서의 다이옥신 측정 면제	비 수용
191	• 폐기물 처리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	일부수용
192	• 폐기물관리대장 작성 간소화	기 수 용
193	• 폐기물관리법 배출자 변경신고 완화	수 용
194	• 폐기물의 보관기간 현실화	수 용
195	• 폐기물의 재활용 적용 기준의 설정 현실화	수 용
196	• 폐기물의 재활용 시 일지 작성 및 실적보고 개선	수 용
197	• 폐기물처리단가 고시제도 개선	수 용
198	• 폐수 배출시설 분류기준 축소	기 수 용
199	• 폐수 위탁처리업무 개선	수 용
200	• 폐수 재이용 목적의 정수시설(역삼투시설 등)에 대한 규제 완화	기 수 용
201	• 폐전선 재활용가능업체의 확대	기 수 용
202	• 폐주물사 처리방법 구체화	수 용
203	• 포장공간비율의 합리적 조정	수정수용
204	• 품질관리·환경관리의 합리성 제고	수정수용
205	• 하수종말처리 구역 내 자체처리 후 방류수 허용기준 완화	비 수용
206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상 대상면적 조정	비 수용
207	• 환경 관련 기술자문기관 확대지정	일부수용
208	• 환경 관련 중요한 법이나 제도의 변경 시 사전 공지	기 수 용
209	• 환경관련법에 대한 지자체 해석상의 혼선 개선	수 용
210	• 환경영향조사 기간 단축(법적기준과 협의내용 기준의 상이)	비 수용
211	•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 위한 공고·공람 행위 주체 범위 확대	수정수용
212	• 환경(수질)오염방지 관련법 시행기간 유예	비 수용
213	• 환경측정장비(TMS) 정도 검사 주기 완화	기 수 용
214	• 환경 특별대책지역 내 굴뚝배출 가스자동측정기의 부착의무 유예	수정수용
215	• ISO 14000과 환경친화기업제도의 통합	수정수용
216	• NOx 배출에 대한 부과금 면제점 설정(면제점 미확정)	수정수용

연번	건의 과제명	심의결과
217	• TMS 부착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연장	기수용
218	• VOC 배출시설 및 억제·방지시설 신고제도 통합	기수용
219	• VOC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및 신고 완화	기수용
220	• VOC 배출시설 신고절차 간소화	기수용
221	• VOC 저장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폐지	기수용

6. 제6차 건의과제 및 처리실적

제6차 건의과제(2002. 3)는 총 43개이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 중 28개 과제를 수용하고, 15개 과제는 수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첫째, 관세 사후 납부 시 신용담보업체 지정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비제조업체라도 신용담보업체로 지정하는 반면, 국내기업은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수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체로서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하거나 주식이 상장된 업체 또는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등으로 신용담보업체 지정을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관세 사후 납부 관련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을 비제조업체까지 확대하여 적용토록 하였다.

둘째, 사전환경성평가제도는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운영중인 공장의 인접 부지에 동일한 사업자가 공장확장 또는 신규 설립을 하려는 경우, 확장 또는 신규 설립하는 사업계획 면적(공장면적)이 소규모인 경우에도 기존 공장면적과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사전환경성 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므로 공장증축을 할 때마다 사전환경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점이 불합리하였다.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사업자가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용이하게 작성하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셋째, 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제조하는 자는 전년도에 제품출고 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폐

기물부담금 납부대상인 경우에도 제품을 용기에 담아 납품하고 사용 후에는 용기를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은 회수할 시 부담금을 감면해 준다는 규정이 없어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점이 불합리하였다. 따라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도 예치금 납부대상처럼 제품 회수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부담금 납부를 감면토록 하였다.

넷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해 직전 사업년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 지정되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 외부감사제도는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고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투명성 제고 등 건실한 기업경영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으나 영세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그 실효성에 비해 외부감사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인적부담이 과중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외부감사제도는 기업재무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속적인 강화가 필요한 사항이며 특히, 중소기업은 소유분산이 미비하여 내부통제 및 감사기능이 취약하므로 그 필요성이 더욱 큰 제도이다. 또한, 전체 기업 중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극히 일부밖에 불과하며 감사 보수도 큰 부담을 주는 수준은 아니며,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범위가 넓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경제5단체 제6차 건의과제 목록 및 처리결과(2002. 3)

연번	건의과제명	심의결과
1	•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자산기준 상향 조정	비 수용
2	• 유상증자 발행기간 단축	비 수용
3	•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 유예 및 도입 대상 조정	일부수용
4	• 해외 현지금융 제한 완화	기 수용
5	• 관세 사후 납부 시 신용담보 지정대상업체 요건 완화	수 용
6	• 향정약품 건품 통관 원활화	수 용
7	• 수출입 중량화물의 육상운송 요건 완화	비 수용
8	• 관세감면 · 분할납부용 중소기업체 확인서 첨부 폐지	수 용
9	• 화재위험이 적은 업종의 내화구조 적용 제외 확대	일부수용
10	• 소규모 공장증축에 대한 사전환경성평가제도 개선	수 용
11	• 산업용지의 양도가격 제한규정 완화	비 수용

연번	건의 과 제 명	심의결과
12	• 공익성 개발사업에 대한 농지소유 제한 완화	비 수 용
13	• 공장창고용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등 완화	일부수용
14	•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에 폐수종말처리시설 포함	비 수 용
15	• 지하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부과제도 개선	비 수 용
16	• 스티로폼 샌드위치 판넬에 대한 불연성능시험 관련 지침 철회	비 수 용
17	• 백화점 주차장 면적 교통유발부담금 선정기준에서 제외	기 수 용
18	• 사업용 화물차 외부광고허가제도 및 표시 제한 개선	비 수 용
19	• 도시지역 내 집배송센터 건립 허용	비 수 용
20	• 수질환경보전법 기본부과금제도 개선	수정수용
21	• 폐기물 부담금 납부제도 개선	수 용
22	• 폐수 샘플 채취 및 분석 개선	수정수용
23	• 질소(N), 인(P) 배출 허용기준 확대적용 완화	비 수 용
24	• Zinc Dross(아연 부산물)의 폐기물 지정에 따른 문제점 개선	비 수 용
25	• 환경기술평가 관련 평가대상기술 범위 확대	수 용
26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방치 시 행정처분의 기준 명확화	수정수용
27	• 재활용 신고대상에서 보드업체 제외	수정수용
28	• 항공기 제방빙액 규제 완화	기 수 용
29	• 먹는 샘물 허가연장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제도 개선	수 용
30	• 재활용 대상 사업장 폐기물의 보관 방법 명문화	수정수용
31	• 혼합물질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규제의 현행 유지	수 용
32	• 악취배출 허용농도 규제 대상에서 VOC 저장시설 제외	수 용
33	• TMS 부착 대상 시설 및 측정항목의 세분	수 용
34	• TMS의 부착·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예외 인정	수정수용
35	• TMS 측정기 개선계획서 제출 개선	수 용
36	•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 내부 칸막이 설치기준 완화	조건부수용
37	• 고압가스관리법의 허가대상시설에서 가스계 소화설비 제외	일부수용
38	• 공정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자체검사를 자율관리로 변경	일부수용
39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완화	비 수 용
40	• 외국인산업연수생 중 연수취업자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비 수 용
41	•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신고제 전환 및 영업신고 관한 시·군·구 이양	일부수용
42	• 국방부 조달본부의 적격심사기준 등 개선	비 수 용
43	• 품질관리 담당자 의무고용 완화 관련 제도 개선	일부수용

7. 제7차 건의과제 및 처리실적

제7차 건의과제(2002. 9)는 총 22개이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 중 14개 과제를 수용하고, 8개 과제는 수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첫째, SOC 민자사업 투자회사는 민간투자법, 주주협약 및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서 등에 의해 사실상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지분율에 따른 지분법 적용대상에서 일괄 제외하여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표준 공사계약서 및 주주협약서를 근거로 한 투자의 경우는 지분법 적용을 일괄 제외토록 하였다.

둘째,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황유 및 청정연료 사용규제 등의 중복규제가 존재하므로, 현행 연료사용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농도규제로 일원화하여 줄 것과 대기질이 나빠 저황유 사용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 해당지역의 대기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제외할 수 있도록 제외기준을 마련하여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선진국에서도 배출허용기준 규제와 함께 연료사용규제를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기오염이 악화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할 때, 연료규제를 폐지하고 농도규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수용 곤란하나, 향후 수도권 지역의 경우, '수도권대기질특별법' 제정(2003) 및 '대기오염 총량규제' 도입(2005)을 전제로, 총량 규제 대상사업장에 대해 연료 사용의 선택권을 부여토록 하였다. 또한 저황유 사용지역 제외기준 마련은 해당지역의 오염도가 일시적으로 낮아져 대상지역에서 제외할 경우, 개선된 환경이 다시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저황유 공급체계나 연료사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수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셋째, 고압가스 특정제조자의 용기 등에 대한 수리검사와 관련하여 단순교체·수리용접 등은 사업장의 자체검사로 대체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수리검사를 받도록 개선하여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용접수리에 대한 검사는 안전성 확보상 불가피하나,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미한 수리의 기준을 폐지하고, 용접수리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키로 하였다.

넷째, 배출시설 설치 변경과 관련하여 최초 배출시설 설치 시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공장 증설 시에도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기업부담이 가중되므로, 최종 오

염행위에 대해서만 철저히 단속하고, 배출시설 설치 변경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고제로 전환하여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허가제는 인체에 위해한 특정유해물질 또는 특별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대책지역 내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규정으로, 유해 물질의 철저한 사전관리 및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므로 건의내용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경제5단체 제7차 건의과제 목록 및 처리결과(2002. 9)

연번	건의과제명	심의결과
1	• 타조가족 수출 시 비용 및 시간 부담 경감	일부수용
2	• 페인트 수입 시의 통관규제 완화	비수용
3	• SOC 민간투자자에 대한 지분법 적용 제외 인정	조건부수용
4	• 군사시설보호법 적용 완화	비수용
5	• 오폐수 병합 처리시 폐수 중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정 개선	비수용
6	• 연료사용규제 개선	수정수용
7	•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개선	기수용
8	• 배출시설 설치·변경 관련 규제 완화	비수용
9	•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검사 횟수 단축	비수용
10	• 기 설치된 공통 연돌에 대한 NO _x 기준 완화	비수용
11	•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 시 배기가스 중 일산화탄소 규제사항 제외	조건부수용
12	• 압력방출장치의 검사주기 조정	기수용
13	• 작업환경 측정 완화	기수용
14	• 주유소 인접부지에 LPG 충전소 설치에 따른 안전거리의 적용 개선	기수용
15	• 고압가스 특정제조자의 용기 등에 대한 수리검사 완화	일부수용
16	• 고압가스 제조시설 내 저장탱크의 제품 변경저장에 대한 변경허가 개선	기수용
17	• 가스연료 사용 소형관류 보일러의 설치검사 및 계속사용검사 면제	비수용
18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검사주기 완화	비수용
19	• 위험물제조소 등의 구축안전검사 시 두께측정기준 개선	일부수용
20	• 산업기능 요원 활용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완화	수정수용
21	• 렌터카 사업의 관리위탁제도 개선	기수용
22	• 옥외광고물의 흑색 및 적색 규제 개선	기수용



제5장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제1절 _ 전자정부 구현의 실효성 확보

제2절 _ 국민생활의 편의 증진

제3절 _ 금융산업의 선진화

제4절 _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제고

제5절 _ 산업기반 구축

제1절 _ 전자정부 구현의 실효성 확보

*집필자 : 손방 사무관(Tel. 3703-3935, sonbang@opc.go.kr)

이종협 사무관(Tel. 3703-3927, bird@opc.go.kr)

김진남 사무관(Tel. 3703-2186, twinjin@opc.go.kr)

1. 전자정부 구현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행자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인터넷 사용자가 2,000만을 넘는 등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음.
 - 민원서비스는 대면처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의 불편 초래
 - 행정기관에서 보유한 정보에 대해서도 기관 간 공동이용이 되지 않아 민원인에게 별도의 구비서류로 제출받고 있는 등 대민서비스의 개선이 미흡한 상황
- 인터넷을 통한 민원안내·신청서비스와 행정기관 간 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대민서비스 제고와 행정업무 효율화가 필요한 실정

나. 개선방안

- 민원서비스 혁신(G4C)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 * G4C : Government for(4) Citizen
 - 전자정부단일창구를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한 민원안내와 신청서비스 실시

-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대 분야 정보를 공동 이용하여 민원구비서류와 증명민원을 대폭 감축하고 민원처리시간을 단축
- 인터넷 민원서비스와 정보공동 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법령 정비

다. 추진실적

- 민원서비스 혁신(G4C) 시스템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실시
 - 2002. 2월 1,000여 종 민원의 인터넷 안내, 50여 종 민원 신청, 주민등록정보 공동 이용
 - 2002. 4월 2,000여 종 민원안내, 140여 종 민원신청, 국세납세증명·사업자등록 정보 추가 공동 이용
 - 2002. 11월 4,000여 종 민원안내, 390여 종 민원신청, 주민, 토지대장, 호적 등 20종 주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본격 실시
- 구비서류의 폐지 등을 위하여 2002년 12월 말 현재 25개 개별법령 개정 완료(법률 6, 시행령 6, 시행규칙 등 13)
 - 구비서류가 줄어드는 680여 종의 민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민원서무처리기준표 변경고시(2002. 11)
 - 「민원구비서류감축을위한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총리훈령 제435호)을 제정하여 감축대상 민원구비서류 명시(2002. 12)

2.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화 추진(행자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의 정보화 정책이 중앙, 시·도 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시·군·구 정보화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정보화 투자 또한 단체장의 관심도와 조직·재정 능력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어 시·군·구간정보화 격차가 갈수록 심해졌으며 중앙부처의 조율 없

이 정보화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복개발에 따른 예산낭비, 시·군·구간 시스템의 호환성 부재 등 많은 문제가 발생

- 민원인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방문하는 등 민원인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행정기관에서도 문서 위주의 비효율적 사무처리를 하고 있으며 기관 간·부서 간·업무 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비생산적 요인이 많음.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단일 민원창구를 통한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도 기관 간·부서 간·업무 간 정보공유를 통해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고, 복잡한 사무처리도 전자결재·전자유통 등을 통해 간소화함으로써 국민에게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는 원스톱(One-Stop), 논스톱(Non-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작은 정부 구현의 기반을 구축
- 민원접수에서부터 처리결과, 내부 행정통계, 보고업무 등 정형적·반복적 업무가 자동화됨으로써 모든 정보가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하며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필요한 때 필요한 자료를 직접 검색·활용함으로써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이 가능
- 국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자료작성 및 조사의 경우 서식은 15종에서 1종으로 통합하였고, 처리일수는 30일에서 7일 이내로 그리고 자료조사는 20일에서 4일 이내로, 신청자 기각처리는 20일에서 즉시 처리로, 신청자 급여처리는 7일에서 2일로 단축
- 옥외광고물 인허가 민원의 경우 자료작성 및 조회기간이 2일에서 1~2분으로 단축되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경우 부과처리 소요일수가 44일에서 8일로 단축되었고, 각종 고지서 반송률은 0.5%로 감소하여 연간 22억원 정도의 세수가 증대
- 지방세 과세자료 추출업무의 경우 과세대상 자료 및 주소확인이 시기확인에서 실시간 확인으로 자동화했을 뿐만 아니라 거주지 이동 시 주소 이전 신고의 경우 주민등록등 초본을 수시로 발급·제출하거나 공무원이 열람하여 정정하였으나 10종에 대한 관련업무 주소를 일괄적으로 자동 갱신되도록 개선
- 시·군·구 행정민원에 필요한 제 증명 서류 중 거주지 이동 시 자동차주소 이전신고를 폐지(미신고 시 과태료 30만원)하는 등 총 22종의 제 증명 서류를 폐지

- 전자정부 기반조성 측면에서 시·군·구에 지적·차량 등 10종 2억 8천여 만건의 DB를 구축하여 수평적(시·군·구 내, 시·군·구 간), 수직적(시·도, 중앙)으로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근간인 국가주요 DB를 구축하여 공동활용의 기반을 마련
-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에서는 인터넷 민원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시스템에서 정보열람이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민원신청서만 작성하여 신청 가능
- 지하수 개발업체 등록/변경의 경우 과거에는 타 시·군·구에 공문으로 문서를 발송하여 확인함으로써 누락 및 업무처리 지연요소가 있던 것을 지하수 개발업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즉시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1주일 소요되던 민원처리가 즉시 처리 가능
- 전국분 자동차 정보 조회의 경우 정보연계를 통해 조회가 가능해짐으로써 업무처리 기간이 14일에서 즉시 단축
- 불법어업 이력 파악을 위해 전국에 공문을 통해 파악하던 방식에서, 불법어업 이력 통합관리를 통하여 어업 인·허가 업무의 조회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업무처리기간이 3일에서 1일로 단축
- 민방위 인력의 자격면허관리 시 자격면허정보를 중앙에서 정보망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처리기간이 3개월에서 3일로 단축
- 전국의 각종 행정처분사항 확인에 약 1주일 정도가 소요되고 정확한 파악이 어려웠으나, 중앙의 전국분 행정처분 통합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불법 인·허가를 방지하고 업무처리 기간도 1주일에서 1일로 단축
-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의 정량적 효과는 민원처리 시간단축, 민원서류 감축, 증명서 발급 및 발송 건수 등의 정보화 효과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분석. 지표의 도출은 인터넷민원을 포함한 10개 업무영역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업무영역별로 도출된 정보화지표를 대민 서비스, 행정 효율화, 행정혁신 및 발전영역의 3가지 부문으로 구분

다. 향후 추진계획

-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안정화 추진
-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대상업무의 지속적인 발굴 등 대국민 서비스 확대

3. 행정정보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행자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그동안 행정정보화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통해 개별 행정업무의 효율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됐지만 다음의 문제 발생
 - 행정기관 간 정보공동활용이 미흡
 - 민원처리를 위한 구비서류가 과다하여 국민의 불편 초래
 - 행정체계가 아직 종이문서나 대면처리 위주로 되어 있음.
 - 국민들이 피부로 체험할 수 있는 인터넷 대민 서비스가 미흡한 실정
- 따라서, 행정기관 간 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민원구비서류를 감축하고, 일반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 공동이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와 법령개선이 필요

나. 개선방안

- 전자정부법을 제정하여 관련 개선사항 규정
 - 행정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한 민원인 제출요구를 금지(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 행정기관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 이용하게 함.(행정정보공동이용의 의무화)
- 민원서비스 혁신(G4C) 시스템 구축
 - * G4C : Government for(4) Citizen
 -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대 분야 정보를 공동 이용하여 민원 구비서류와 증명 민원을 대폭 감축, 민원처리시간을 단축

다. 추진실적

- 전자정부법 제정
 - 전자정부법을 제정·시행하여 민원구비서류 감축 및 정보공동이용 근거를 마련

(2001. 2)

-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개정 고시하여 구비서류가 감축되는 민원에 대한 안내를 함.(2002. 11)
 - 「민원구비서류감축을위한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총리훈령 제435호)을 제정하여 감축대상 민원구비서류를 명시(2002. 12)
 - 민원서비스 혁신(G4C) 시스템 구축
 - 2002. 2 주민등록정보 공동이용서비스 실시
 - 2002. 4 국제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공동이용서비스 확대
 - 2002. 11 주민, 토지대장, 호적 등 20종의 주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 본격 실시
- * 이를 통해 680여 종 민원의 구비서류가 1~4종 감축

4. 민원사무의 정보통신망 사용 관련 규제 정비(행자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은 민원신청 시 종이문서로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민원신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컴퓨터통신’ 용어 해석이 불명확
 - 정보통신에 관한 용어는 관련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지고 있으므로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아니한 ‘컴퓨터통신’은 새로운 용어로 바꿀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개별법령 조문에서도 종이문서로 민원신청 또는 통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이 전자문서로 신청을 하거나, 공무원이 전자문서로 민원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
- 전자적 업무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 미비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의 ‘컴퓨터통신’을 ‘정보통신망’으로 용어를 변경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신청 및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컴퓨터통신’을 ‘정보통신망’으로 변경(2002. 3. 25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개정)
- 전자정부법에 전자적 업무처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
⇒ 또한 관계법령에서 종이문서로 신청·신고 또는 제출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종이문서로 통지·통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 또는 통지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행정기관의 주요업무는 전자화되어야 한다는 전자적 처리의 원칙 등을 마련(2001. 3. 28 전자정부법 제정)

5. 정보통신망 이용 민원의 신분확인 관련 규제 개선 (행자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대부분의 민원사무는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본인 확인용으로 징구
- 행정기관 등은 민원서류를 접수하거나 신분확인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음.(주민등록법 제17조의 9)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제출이나 주민등록증 제시 불가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공인인증기관에 의해 인증된 전자서명을 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여 신원 확인 의

무를 배제

-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는 전자서명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에 송신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제18조)을 제정(2001. 3. 28)
 - *민원사무처리법시행령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KIOSK)에 의한 민원 서류 교부 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전자적 매체를 사용해 확인 가능
- 국민이 관청 방문 횟수를 줄이거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PC 하나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 구축 및 개통(2002. 11. 1)
 - ⇒ 2003.1월 현재 G4C를 통해 신청한 전자민원 66,006건 중 본인확인이 필요한 21,393건을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처리

6. 전자서명시스템 구축(산자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1999년 2월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전자거래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빠른 전자거래의 확산·기술발전·환경변화 등에 따라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

나. 개선방안

-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보호 확대와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시책을 강화하는 규제방안을 마련

다. 추진방향

- 전자거래의 법률관계 명확화

-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및 장소, 수신확인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
- 전자문서의 효력발생 기준을 발신주의에서 도달주의로 변경
- 개인정보의 보호, 영업비밀의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민간인증을 장려
- 공인전자서명을 기술 중립적으로 정의
 -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등을 전자서명 요건으로 규정
-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지침·시설요건을 규정
- 인증서 관련 사고 발생 시 입증 및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
- 소비자보호 확대
 - 소비자 피해의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확대 규정을 신설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의 자율규제를 장려하고, 민간에 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제를 지원
- 기반 조성 시책 및 분쟁 조정 기능 강화
 - 공공부문 전자조달·전문인력 양성·실태조사 등을 규정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의 조정안에 대한 합의에 대해 민법상의 효력을 인정

라. 필요 조치 사항 및 추진 일정

- 「전자거래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완료 : 2002년 7월부터 시행

7. 전국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교육부)

가. 추진배경

- 국가경쟁력 강화와 정보화 추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파급효과가 큰 행정, 교육 등 주요 분야별 정보화와 국가정보자원의 효율적 연계·이용 체계 조성을 주요 정보화

정책사업으로 설정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추진 중

- 교육부는 2000년에 교육 정보화 인프라 조기구축 완료를 통하여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나 교육정보유통의 핵심인 교육행정부문의 정보화는 단위기관별 개별적 추진으로 기관간 연계이용을 위한 정보유통환경의 개선이 필요
 - 교육청별로 단위업무 중심의 시스템 개발로 서식, 코드, 업무처리 절차 등의 표준이 미비
 - 전산기종, 응용 S/W의 다양성으로 정보 공동 활용의 연계 및 호환이 결여
 - 도시화, 정보 통신 발달 등에 따라 교원, 학생, 학부모의 교육정보 서비스의 요구 증대로 교육행정 서비스체제 혁신이 필요
 - 지역, 창구에 무관한 원/논 스톱(One/Non-Stop) 민원 서비스
 - 교육행정정보 공유를 통한 행정 서비스의 신속, 정확한 처리 요구
- ⇒ 따라서 기존의 비효율적 요인을 제거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행정정보화의 추진으로 교육행정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시스템 개발 (6,570여 본의 프로그램 개발) : 2001. 10~2002. 9
- H/W 설치 등 물적기반 구축 및 운영환경 조성 : 2002. 6~2002. 9
- 전담강사 및 업무담당자 등 사용자 교육 실시 : 2002. 7~
- 공인인증서 발급 협약 체결 및 교부 (43만명) : 2002. 7~
- NEIS 시스템 개통 : 2002. 11. 4
 - 인사, 회계, 재정 등 22개 업무 영역에 대한 서비스 실시
 - 교무/학사, 보건, 체육, 입학, 교구/기자재 등 5개 영역은 2003년 2월까지 시범운영 후, 2003년 3월부터 전면 시행(예정)
- 인터넷 민원서비스 실시 : 2002. 12. 2
 - 인터넷 민원 신청 :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관련 증명 등 13종
- 교원에 대한 2차 집중교육 실시 : 2002. 12~2003. 1
 - 전체 34만 교원을 전담강사교육(완료), 학교대표자교육(실시 중), 학교별 전달교육(2002. 12~2003. 1)의 3단계로 실시
- 학생, 학부모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 개인 신상정보 입력항목 축소조정 및 최신의 기술을 적용한 완벽한 보안 차단(침입 탐지, 침입차단, 서버보안, 암호화) 시스템 구축
- 24시간 전산전문직에 의한 감시·운영 등으로 정보유출 우려 불식 등
- 기타 교원의 업무부담이 되는 부문에 대하여는 교원단체 등의 의견 수렴 후, 입력 범위를 조정

다. 기대효과

- 졸업증명서 등 제증명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어 출신지 또는 소재기관을 직접 방문하는데 따르는 비용, 시간, 노력, 불편 등이 경감
- 유관기관의 정보 공동활용으로 학교 전·편입, 학비지원 신청, 검정고시 응시, 공무원 임용시험 신청 등에 필요한 민원 구비 서류 감축
- 365일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되는 시스템을 통해 학부모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시간에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어 학교 방문 또는 교사 직접 대면에 따른 불편과 부담, 관련 부조리 등이 경감
- 수작업으로 처리중인 단순 반복 업무의 수행, 통계 작성, 공문서 작성 등에 따른 교원의 행정 업무 부담을 경감
- ICT를 이용한 열린 교육행정의 구현으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와 학부모들을 학교 교육행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제2절 _ 국민생활의 편의 증진

*집필자 : 김진남 사무관(Tel. 3703-2186, twinjin@opc.go.kr)
이호모 사무관(Tel. 3703-2177, yhomo@opc.go.kr)
정일황 사무관(Tel. 3703-2156, ihwang@opc.go.kr)
정대우 사무관(Tel. 3703-2182, dw0327@opc.go.kr)
손 방 사무관(Tel. 3703-3935, sonbang@opc.go.kr)

1. 교육과정 관련 법령 정비(교육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초·중등교육법 제23조는 학교의 교과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고 하였으나,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교과명칭이나 분류의 체계성이 없어 정비가 필요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교과)에 직접 명시하는 교과의 일관성이 부족
 - 중학교는 필수 교과 및 선택 교과를, 고등학교는 필수 교과 중심으로 제시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교과)의 교과명과 7차 교육과정에서 정한 교과명이 불일치하여 교과명 혼용에 따른 혼란이 야기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국민공통기본 교과와 기타 교과 제시방법 차별화
 - 이전에 제시되었던 선택 교과를 조항에서 삭제
 - 국민공통기본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교과는 고시문서인 교육과정에 제

- 시하도록 함으로써 법 체제의 위계성 및 적용의 융통성을 제고
-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교과)에 제시된 교과명을 새 교육과정의 교과명으로 개정
 - 국민 공통기본 교육과정 교과명의 일관성 제고
 - 초등학교 자연을 과학으로
 - 고등학교 윤리를 도덕으로
 - 가정, 기술·산업 교과와의 통합에 따라 기술·가정 교과로 개정

다. 필요 조치사항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3. 1)

2. 사회교육 체제 운영 관련 규제개혁(교육부)

2-1. 평생 학습 체제 및 사이버 교육 체제 구축·운영

가. 현황 및 문제점

- 2000. 3월부터 평생교육법 제정·시행으로 글로벌 평생학습사회 건설에 필수적인 사이버 교육체제 근거를 마련하여 원격대학,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설립·운영
- 그러나 원격교육 수요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
 - 평생교육법에 사이버교육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01년도부터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이 설립되어 현재 15개 대학이 운영 중에 있으나, 설립 초기단계로서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학습자에 대한 지원 체제가 미흡
 - *학원의 교습과정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습방법에 대하여는 학원운영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법령에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등록된 수강생에 대하여 출석강의

이외에 원격강의도 가능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과의 차별적 대우 해소
 - 병역 입영연기대상 교육기관에 사이버대학 포함
 - 소득세 연말정산 시 교육비특별공제 및 대학기부금 손금 산입 인정
 - 학자금 대부자격 부여
 - 사회복지사·평생교육사 등 자격증 부여 및 응시자격 부여
 - 장기부사관, 산업체 근로자를 위한 산업체 위탁생제도 도입

다.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계획

- 각종 국가기술자격증 응시자격에 사이버교육 이수자도 포함하는 방안 추진(2003년)
- 원격대학 콘텐츠 개발비 지원 사업 추진(2003. 2~5월)
 - 1개 교과목당 개발비의 50~100% 차등 지원

2-2. 사설학원의 안전대책 마련

가.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 예지학원 화재사고(2001. 5. 16) 발생을 계기로 다중 이용시설인 학원의 안전대책에 대한 문제가 제기
- 학원에 대한 건축법, 소방법 안전관리실태 점검, 시설관리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
- 경기도 예지학원 화재 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사로부터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며, 전체 학원의 보험 가입률도 매우 저조한 실정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학원, 고시원 등 교육관련시설 안전점검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 총 6,868건 시정(소방 5,924건, 건축 565건, 가스 109건, 전기 67건, 기타 203건)
 - 방범쇠창살 256개소 철거 등
- 학원의 시설·설비 등 구조개선 강화
 - 시설의 내부 마감재·칸막이 등 내부자재 불연재 사용 권장
 - 학원의 면적이 적더라도 소화기를 10~15m마다 비치토록 권장
 - 옥외 피난계단 및 옥상 피난광장 설치 등의 기준 강화
 - 시설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복도·통로 폭을 조례로 규정하고 내부구조가 화재 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지도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 학원 등 화재발생 위험이 타 업종보다 높은 업종의 특수건물 면적 기준을 현행 3,000㎡에서 2,000㎡로 조정하여 화재보험 의무가입 추진
 - 2002.5.1일 기준 사설학원 61,592개소 중 19,914개소가 보험에 가입하여 가입률 2.7% → 32.3%로 증가
- 학원 신설 또는 위치변경 등록 시에 관할 소방서에 의뢰하여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를 받고 등록 수리

다.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계획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학원의 등록 또는 위치 변경 시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를 제출”토록 반영
- 학원설립·운영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강화, 보험가입 적극권장 및 유인책 강구

3. 의료정보 유통의 원활화를 위한 기반 구축(복지부)

3-1. 대국민 의료기관 정보제공 허용범위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기관 간 광고경쟁에 의한 환자유인 및 의료비 상승방지를 위해 의료인의 학력·경력, 의료시설·장비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 의료인 성명·성별·면허종류·진료과목 등 8개 항목만 예외적으로 허용
 - 허용광고도 TV·라디오는 금지, 일간신문은 월 1회로 제한
- 이에 따라, 의료소비자의 의료기관 탐색 비용 등 직·간접 의료비 증가, 광고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병원의 광고기회 제약으로 전문화 및 특화발전 저해 등 문제점 발생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 추진
 - 의료인의 경력사항에 대한 광고 허용(2002. 3 의료법 개정, 2003. 3. 31 시행)
 - 의료인 학력·수련경력, 수술건수, 의료기관의 의료인력·병상 이용률, 의료기관 평가결과 등에 대한 광고 허용범위 확대 추진 중(2003. 4 시행계획)
 - * 다만, 논란이 있는 ‘학력’ 광고는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행
-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의료광고는 원칙허용방식으로 개선
 - 의학적으로 합당한 의료광고는 허용하되, 비윤리적 행위·할인 및 경품행사·객관성이 결여된 미사여구 등 광고는 금지(2003. 4 시행 예정)
- 방송광고는 현행대로 제한하되, 일간신문 광고횟수 확대 검토

3-2.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건강상담 허용범위 설정

가. 현황 및 문제점

-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한 곳에서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상담 및 의료행위는 금지
- 이에 따라, 의료소비자의 시간·교통비용 및 불편을 초래하고, 질환 초기단계에서의 의료개입이 곤란함.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원격의료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의료법 개정, 2002. 3. 30)
 - 의료인간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보를 공유하여 환자진료에 편의 제공(2003. 3. 30 시행)
 -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원격의료 범위 확대 추진
- 인터넷홈페이지 건강상담 추진
 - 의료기관홈페이지 인증제도 시행 시(2003. 4) 오프라인시설을 갖춘 개설병원(의료기관)에 대하여 건강상담에 대한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마련·운영토록 유도
- 온라인을 통하여 허용하는 의료행위와 금지된 의료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허용된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외 허용의료행위」 규정에 포함
 - * 인터넷을 통한 의료 행위에 대하여 수가·보험급여 등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사이버 의료기관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이는 우리 의료현실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사이버의료기관 허용문제와 연계 검토

3-3. 의료 관련 정책 변경과 의료정보시스템의 수정·보완의 상호 연계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관련 정책 고시가 사전 의견수렴 및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청구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수정을 위한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되어 환자·의료기관의 불편 및 전체 의료시스템의 혼란을 초래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2002. 1)
 - 건강보험가입자, 의약계 및 공익대표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요양급여 및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의결

- 위원회 심의를 거친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15~2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두어 운용
- 의료정보시스템의 변경이 수반되는 고시에 대해 의료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 변경 등 사전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시기 적용
 - 매월 15일 이전 고시할 경우 : 다음달 1일 시행
 - 매월 16일 이후 고시할 경우 : 다다음달 1일 시행

4. 의약품 등 구매·유통의 편의 및 효율화(복지부)

4-1. 종합병원 의약품 유통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의약품 유통의 부조리 방지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약회사와 종합병원 간 직거래를 금지(1994. 7)
- 이에 따라, 의약품 유통의 효율성 저해 및 거래비용 증가, 계약 자유원칙 침해 등 문제점 발생
 - 또한, 종합병원 직거래를 허용하는 “특별한 사유” 개념이 불명확함.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직거래를 허용하는 ‘특별한 사유’의 명확화
 - 종합병원에 직거래를 허용하는 경우를 “재난구호, 의약품도매상의 집단 공급중단 등”으로 규정(2002. 11. 5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 의약품 유통개혁 추진
 -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구축·운영(2001. 7)
 - 제약업소 등이 의료기관에 공급한 의약품 거래내역 보고 의무화(2002. 7)

- 의약품 유통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공동물류센터 건립 추진
- 종합병원 의약품 직거래 허용 방안
 - 의약품 유통시스템의 이용촉진 등 의약품 유통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과 함께 2003년 중 검토·추진
- 의약품 유통개혁 추진상황과 종합병원 의약품 직거래 허용 대책에 대해 규제위 보고(2003년 상반기)

4-2. 보험약가의 실거래가 상환제도 보완

가. 현황 및 문제점

- 실거래가 상환제도 운영결과 저가구매에 대한 유인이 없고, 상환금액이 실거래가에 연동되어 인하됨에 따라 담합 등으로 상환금액 이하의 거래를 차단하는 등 자율경쟁에 의한 가격인하가 미흡
- 상환금액의 상한을 정하고 시장조사를 통하여 실거래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 부당·적법거래 여부에 관계 없이 상환금액 하향조정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구입한 약품비는 실거래가로 비용을 상환하되, 상환금액 조정에는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입찰담합을 방지하고 저가구매 유도(2001. 12 관련 고시 개정)
- 실거래가 판매유인을 위해 실구입 가격과 상환금액의 차액 5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 방안 마련(2002. 4)
 - 단, 2002년 9월~2003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최저실거래가제도」에 대한 효과 분석이후 단계적으로 실시

4-3.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허용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 의약품(전문·일반)은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종전의 일반의약품 중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하여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의약외품의 범위 확대
 - 자양 강장 드링크제 등 표준제조기준을 마련하여 의약외품 범위 확대
*의약외품의 범위 확대 : (2000. 7) 62개 → (2001. 7) 117개 → (2002. 7) 212개 품목
 - 소화제·해열제는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 및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에 배치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후 추진 예정
-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불편 최소화
 - 지역거점별로 심야 약국(새벽 2시까지 운영) 또는 24시간 개방약국을 지정·운영하고, 지역언론 및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역 내 의료기관과 약국의 운영정보를 적극 안내
- 소화제·해열제·강장제 등도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은 선진 외국 사례를 감안하여 의약외품으로 재분류 확대하고 추진상황을 규제위 보고(2003년)

4-4. 비타민 및 무기질 보충제 등의 관리제도 보완

가. 현황 및 문제점

- 영양보충용 식품의 비타민·무기질에 대한 함량제한(상한)이 없으며, 의약품·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비타민 및 무기질제제와 중복관리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영양 보충용 식품 중 비타민 A, D의 상한치 설정(2002. 12월)
 - 과잉섭취로 인한 독성이 우려되는 비타민 A와 D에 대해서 영양소 기준치의 100% 이하로 설정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리강화
 - 건강기능식품을 일반가공식품과 차별화된 법률체계에서 관리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을 제정(2002. 8월)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규격 등의 설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공전」 제정 추진(2003년 시행예정)
- 비타민·무기질류의 과잉섭취에 따른 부작용 등 소비자 홍보·교육 실시

5. 의료서비스분야 보완·발전(복지부)

5-1. 의료 취약지역 의료기관 인력·시설기준 완화 등 의료서비스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종별 인력·시설·설비기준을 대도시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
-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병원설립 기피,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공급 한계 등으로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미흡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의료기관 설립이 용이하도록 설립요건 완화
 -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진료과목 : 9 → 7개 이상으로 완화
 - 전반적인 의료기관시설·인력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추진
- 농어촌지역 공중보건의 확대배치 및 의료기관 설치지원
 - 공중보건 의사 배치지역을 특별시·광역시 이외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
 - 농어촌지역 의료기관 신·증축 시 정책자금 장기 저리 융자 지원(5년 거치 10년 상환, 연 5.5%)

-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시설·인력기준의 합리적 재조정 및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운영 활성화 유도(연구용역 중)

5-2.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보완적 연계·발전

가. 현황 및 문제점

-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1987. 7)하고 있으나, 환자본인부담이 크고 급여수준이 미약하여 의료보장에 한계
- 다양화·고급화되는 의료욕구 대응에 미흡하고 의료선택권을 제약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보완적 발전방안」 연구용역 실시(2000. 3~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요양기관당연인정제」 관련 헌법소원 재판결과에 따라 개선방안 마련하여 규제위 보고(2003년)
 - * 현재 민간보험 도입에 대하여는 각계의 입장이 상이하므로,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

6. 유통 농산물의 중량 허용오차 개선(농림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실량표시상품등)」에 의해 실량 또는 함량으로 표시되는 상품의 허용오차의 범위를 규정
- 농산물의 일부품목은 유통과정에서 수분증발 등으로 인한 중량 감소가 발생하여 중

량 허용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

- 농산물도 출하하면 상품이므로 소비단계에서의 중량문제는 이미 정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소관의 법령에 따라 적용
 - * 소비자에서 유통되는 포장상품에 대해서는 1, 2차 상품 구분 없이 산업자원부의 「계량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정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현행 신선 농산물의 표시량별 허용오차 중 불합리한 부문에 대하여는 소비자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조사·연구된 자료 검토 후 산업자원부의 「계량에관한법률」에 반영되도록 추진
 - 농협 및 소비자단체를 통하여 실태파악 후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개정 추진

7. 포장 농산물의 의무표시 사항 정비(농림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나 농산물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일부 사항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포장 후 거래되는 농산물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표시제도를 정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
 - 현재 농산물표준규격(농관원 고시)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품목별 표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
- 특히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내용과 농산물표준규격에 의한 표시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표시내용과 방법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할 필요 있음.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포장한 신선 농산물의 표시기준 정비
 - 농산물은 유통과정에 있어서 식품과 달리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농산물품질 관리법에 품목별로 별도의 표시기준을 도입하고 품명·중량·생산자 또는 포장자·포장일자 등을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강구
 -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청 고시) 및 농산물표준규격(농관원 고시) 등에 의무화하고 있는 표시내용의 정비를 위하여 식품 및 농산물관련 법령의 표시기준 등을 조사·검토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령 등을 개정

8. 농작업 재해의 산재보험대상 확대(노동부)

가. 추진배경

- 농업·어업·임업 및 수렵업 종사자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근로자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2년도 지식정보화과제로 선정 추진

규제개혁위원회 의결내용(제85차 본회의, 2001. 10. 26)

- 현황 및 문제점
 - 5인 미만 농·임·어·수렵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농작업 재해로부터 영세 소규모 농·임·어·수렵업 종사 근로자 보호
 - 5인 미만 농·임·어업 및 수렵업은 업무특성상 고용관계 및 사업기간이 불명확하여 적용 및 보상에 상당한 기술적 어려움 예상
- 개선방안
 - 다른 업종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추이 및 행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시

행시기 검토 후 도입

- 향후 계획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 공포(2003년도 상반기)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제도의 의의

- 산재보험은 1964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최초의 사회보험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노동력회복, 사업주의 보상부담 경감을 통한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2) 연혁

-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법률 제1438호)
- 1964년 동법 시행(500인 사업체 중 광업과 제조업 적용)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경과

연도별	1964년	1967년	1968년	1986년	2000. 7월
확대내용	500인 이상 제조업 및 광업	100인 이상 사업장	50인 이상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1인 이상 사업장

다. 농작업 재해 산재보험 확대방안

(1) 현황 및 대안

-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은 1,208천개 사업장, 9,269천명임.
 - 현재 5인 미만 농림어업 · 수렵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향후 법인인 5인 미만 농림어업 · 수렵업의 종사자는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임.

(2) 5인 미만 농·임·어·수렵업 법인에 대해서만 확대 적용하는 이유

- 법인이 아닌 농림어업 및 수렵업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강제 가입토록 할 경우
 -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신분을 수시로 교체하여 적용·징수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보상만 이뤄져 재정악화 요인으로 작용 우려
 - 고령 농어민 등이 많아 노화와 산재의 구별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평균 임금에 대한 확인 곤란, 조작가능성 등으로 분쟁의 소지가 많음.
 - 보험가입 없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급여징수로 자영농 등의 생활안정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봄.
- 따라서 적용대상 및 소득과약, 징수 등이 가능하고 공단의 보험 사무 처리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법인 아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일용 농어민에 대해서는 행정여건 등을 보아가며 장기적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 * 일본 등 주요 외국에서도 5인 미만 농림어업 분야는 법인종사자에게만 산재 보험을 적용하고, 일용 종사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음.

(3) 대상사업체 수 및 근로자 수

구 분	법인수	근로자수	비 고
법인인 5인 미만 농림어업 및 수렵업	1,284개소	2,246명	

* 법인 사업체수는 2000년도 통계청, 근로자수는 노동부 조사결과임(수렵업은 자료 파악 불가)

라.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 2002. 12~2003. 1
- 법제심의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상정·공포 : 2003. 2~5

*〈참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 ①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 ① 생략

현 행	개 정 안
<p>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2.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3.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사서비스업 5. 제1호 내지 제4호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6.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p>1.~5.(현행과 같음)</p> <p>6.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자의 사업으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p>

9. 소방과 화재보험제도 연계를 통한 재해 예방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보험 가입대상을 살펴보면 자체 방화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건축물에 국한
 - 현재 가입대상건물은 17,501건이며 대상업종은 12개 업종
-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화재발생의 우려가 높은 대상임에도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
 - 전체업소수(601천개)의 1.8%(11천여 개)만 보험에 가입(2001. 12 손해보험협회 조사결과)
- 사고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보상 후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당사자 보상능

력이 없어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지장 초래

지방자치단체 보상사례(사망자 1인 기준 합의)

구 분	화성 '씨랜드' 화재	인천 '라이브 호프' 화재	광주 '예지학원' 화재
보 상 액	1억8천만원	1억8천만원	1억8천만원
보상주체	경기 화성군	인천시청, 중구청	경기 광주시, 교육청

-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예방과 보상을 위한 화재보험 가입이 절실한 실정임.
- 책임자 부담원칙에 따른 적절한 보상체계 확립 및 건물 소유주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안전의식 하락을 방지하고 자기 고객에 대한 안전관리책임 강화가 절실하다.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소방법상 다중이용업소 모두를 의무가입대상으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점차 확대한다는 목표 하에 재정경제부(보험제도과)와 법령개정을 협의한다.
 - 의무가입대상을 콘도, 숙박업소, 농수산물매시장, 일반음식점 영업 및 단란주점 영업 등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추가하고 학원 등 일부 특수건물의 면적기준을 현행 3천㎡에서 2천㎡로 조정한다.(제2조제1항)
 - 다른 의무보험과 형평성을 맞추고 보상액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사망 및 후유장애 보상한도를 현행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제5조제1항 및 별표 2)
 - ⇒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은 특수건물의 종류와 면적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화재로 인한 재해의 복구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다.(2002. 12 .5 화보법 시행령 개정)

제3절 _ 금융산업의 선진화

*집필자 : 이용의 사무관 (Tel: 3703-2158, yonguei@opc.go.kr)

1. 투신관련 공시제도 개선(재경부)

가. 공시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

- 자산운용업은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받아 유가증권 등 자산에 투자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업무로서
 - 투자자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에 소극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므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됨.
- 특히, 자산운용회사는 운용정보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럴 해저드(Moral Hazard)의 가능성이 있음.
-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에게 자산운용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즉시 취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

나. 제도개선 내용

- (1) 투자신탁설명서의 역할 및 기능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투자신탁설명서는 신탁계약의 내용을 보완하며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의 정보를 주는 중요한 자료임.
 - 약관 등의 변경에 따라 투자신탁설명서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및 검증장치가 부족

(나) 개선 방안

- 투자신탁설명서를 일정 주기(예 : 1년)로 갱신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함.
- 투자신탁설명서 작성 및 변경 시 약관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도록 함.
- 투자자에게 제공된 투자신탁설명서를 위반하여 재산을 운용할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법령에 반영

(2) 약관 및 정관변경에 대한 공시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약관 및 정관에는 집합투자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임.
- 현행 약관변경 절차 및 약관 변경에 따른 공시 수단이 없어 투자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나) 개선 방안

- 환매연기 여부 등 중요한 약관 및 정관변경 사항은 수익자 총회 또는 주주총회를 거쳐 변경토록 함.
- 중요한 약관 및 정관을 변경할 경우 개별투자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함.
 - 아울러 변경된 약관 및 정관은 위탁회사 및 판매회사를 통해 공시토록 의무화함.

(3) 수시공시제도 마련

(가) 현황 및 문제점

- 신탁재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가 없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음.

(나) 개선방안

- 수시 공시할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유 발생 시 위탁회사 및 판매회사를 통해

수시 공시하도록 함.

* 수시공시 사유 : 약관 주요사항 변경, 운용전문인력 변경, 부실자산발생 시 그 내역 및 상각률, 급격한 기준가격 변동 시 그 사유 등

(4) 신탁재산운용보고서제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신탁재산운용보고서는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실적을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자료이나
 - 매 6개월 단위로 작성하도록 하여 과거 정보제공으로 인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있음.
 - 제공하는 정보내용도 건전한 펀드 운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이를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함.

(나) 개선방안

- 신탁재산운용보고서 제공 주기를 단축(6개월 → 3개월)하되
 - 자산운용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익자 동의를 전제로 전자메일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신탁재산운용보고서에 매매회전율, 개별주식의 매수·매도 내역인 매매거래내역 및 거래수수료에 관련한 자료도 제공

다. 향후 추진계획

- 자산운용업법령 제정 시 공시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

2. 금융신상품 개발과 관련된 규제의 완화(금감위)

가. 현황

- 위탁회사가 신탁약관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표준신탁약관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제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증권투자신탁업법 제22조제1항)

나. 문제점

- 금융감독위원회가 표준신탁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것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투자신탁운용회사 등이 신상품을 개발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함.
 - 시장수요에 따라 신상품을 개발하려는 금융기관들은 표준신탁약관의 적용범위의 협소로 인하여 아직도 감독당국에의 사전보고절차 등으로 인해 적시에 상품출시를 할 수 없다는 불편을 제기하고 있음.
 - 신상품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경쟁사들이 즉시 유사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어 상품개발의 인센티브가 없는 실정임.

다. 개선방안

- 신탁상품개발의 자율성·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신탁약관의 제·개정 권한을 현행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투자신탁협회로 이관

라. 조치사항

-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2002. 4. 27)
 - 투자신탁협회는 표준신탁약관의 제·개정 시 금감위에 사전 보고하고, 금감위는 표준신탁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수익자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변경·보완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함.

마. 개선효과

- 업계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급속히 이루어지는 시장변화를 적시에 표준신탁약관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표준신탁약관의 제정·변경권한 이관 후 투신협회는 11월 22일 현재까지 투신운용사로부터 약관제정보고 66건, 변경보고 224건, 설정보고 52건을 사후보고 받아 처리하였음.
- 현재 투신협회는 업계와 공동으로 새로운 표준신탁약관을 마련코자 변경안을 준비 중임.
 - * 투신협회는 신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전문가로 구성된 상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상품에 대해 배타적 우선판매권을 6개월 이내에서 부여하고 있음.(2001. 12)

3. 신용카드 가맹점공동망 가입 관련 규제완화(금감위)

가. 현황

- 카드사 간에 타사 카드로 결제된 매출전표를 상호 접수하여 정산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신용카드 가맹점공동망)을 7개 전업카드사(2001. 12월 말 기준)가 구축했음.
 - 카드사들이 가맹점을 공동 이용할 경우, 소비자는 1개의 카드로 모든 카드사의 가맹점 이용이 가능하고, 카드사들은 가맹점 중복 모집·관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됨.
 - 여전협회(구:신용카드협회)는 재경부의 1998년 1월 8일 지시공문에 따라 1999년 4월 22일 상법상 주식회사인 한국신용카드결제(주)를 가맹점공동망 운영기구로 설립하여 1999년 9월 1일부터 운용 중임.

나. 문제점

- 복수가맹점 체제 정착으로 제도도입의 취지 상실
 - 가맹점 공동망 구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가맹점들이 복수가맹 거래에 따른 이점 때문에 전업사와 중복 가맹

- * 가맹점은 공동망 이용 시 대금회수기간(통상 7일)이 자체 가맹점 이용시보다 장시간이 소요되어 여러 전업사와 중복가맹을 선호
- 신용카드 가맹점공동망 이용 실적 미미
 - 복수가맹점체제 선호 등으로 공동망 이용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
-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 가맹점공동망 직접 가입 시 약 400억원의 가입비 요구
 - * 한편, 독자적 가맹점망(최근 1개월 내 사용실적이 있는 유효가맹점 약 73만개) 구축에 필요한 모집비용은 약 15~20억원 정도
- 전업카드사가 겸영은행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방해
 - * 가맹점 공동망은 표준 가맹점수수료를 정하여 운영한 바 가맹점수에서 열세인 겸영은행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를 통한 자체가맹점 확보에 애로
- 신용카드 사업자 간 형평성 저해
 - 공동망을 간접 이용하는 겸영은행의 경우 과도한 정산대행 수수료(S은행의 경우 2000년도 중 약 46억원) 납부
 - 뿐만 아니라, 전업카드사는 공동망이용 제휴계약을 통해 겸영은행들의 독자적인 가맹점 영업을 사실상 제한
- 공정위도 전업사의 공동망 가입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하는 등 규제완화 방향에도 역행
 - * 공정위는 여전협회와 7개 카드사에 대하여 가맹점 공동 이용망 사용을 거절한 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2001. 3. 14)

다. 개선방안

- 현재의 가맹점공동망 이용제도를 개선하여 가맹점 공동망 이용을 자율화하고 공정한 협상조건을 통한 적절한 가입비 책정을 유도
 - 겸영은행들도 직접 가맹점을 공동 이용토록 함.

라. 조치사항

- 2001년 12월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이용에 관한 조치안」을 의결하여

가맹점 공동이용제도 개선

-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가맹점공동망 이용” 또는 “자체 가맹점 확보”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가맹점공동망 이용을 자율화

마. 개선효과

- 신용카드시장의 공정경쟁여건 조성 및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자율성 제고
 - 자율화조치 이후 카드사는 자체 가맹점확보 경쟁에 주력하여 2002년 11월 현재 가맹점 공동망 신규가입자는 없는 상태
 - 과점적 집단 시장구조를 타파하여 경쟁의 효율을 극대화
 - 7개 전업카드사 위주의 시장구조를 26개 신용카드업자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경쟁 시장구조로 유도
 - 일부 카드사를 중심으로 가맹점수수료 인하 촉진 및 대금지급 주기 단축 등 신용카드 서비스 개선 등
- *국민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 2.54%(2001. 12) → 2.30%(2002. 9)

4. 상호저축은행의 점포설치 규제완화(금감위)

가. 현황

-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은행 등 여타 금융기관과 달리 지점 및 출장소 설치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임.
 - 지점 설치기준
 - 자기자본이 법정자본금의 2배 이상일 것
 -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있을 것
 - BIS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일 것 등
 - 지점 설치 시 증자 의무액(다음 중 적은 금액)

- 본 지점 법정자본금을 합한 금액에서 자기자본을 뺀 금액
- 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의 소재지 해당 법정 자본금
- * 지점설치기준에서는 법상 자본금 이외에 지점 설치시마다 증자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자본잉여금 등이 풍부한 저축은행의 경우 자본전입 등의 불필요한 절차 등을 감안 자본금증자는 자기자본으로 대체

나. 문제점

- 상호저축은행은 ‘단일점포주의’ (구상호신용금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점포신설을 불허
 -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퇴출된 일부 지역에서는 금융애로가 발생하고, 우량 상호저축은행까지 점포계약으로 영업이 위축
- 다만, 예외적으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합병상호저축은행에 한하여 지점 신설을 허용하고 있음.
 - 「금융기관의합병등에대한인가기준및지원사항」(1998. 9. 7 재경부 고시) 2. 가.에 의하여 동종금융기관 간 합병의 경우 기존점포 이외에 1개 점포신설을 허용

다. 개선방안

- 지점설치 요건을 완화하되 준칙주의에 입각하여 실질적인 자율화 유도
 - * 정부는 2001년 7월 19일 서민의 사금융 피해를 중이고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민금융활성화 방안」을 수립·발표하면서 일정규모와 건전성을 갖춘 우량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지점신설을 허용키로 하였고, 금감위는 2001년 10월 5일 규개위의 「지식정보화 사회구현을 위한 2단계 규제개혁방안(금융부문) 심사안」에서 그 필요성 제시
 - * 제153차 경제1분과위(2001. 11. 28)는 동 개선방안에 대한 금감위의 조치사항을 심의함과 아울러 동 조치사항에 의거한 인가요건에 대하여 향후 지점설치 추이 및 업계의 요구 등을 토대로 전반적인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한 후 2002년 말까지 규개위에 보고할 것을 의결

라. 조치사항

- 점포설치기준을 완화함과 아울러 일정한 규모와 건전성을 갖춘 우량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상호저축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점포 신설을 허용
 - 시행령 개정사항
 -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 삭제
 -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이 정직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2년으로 완화
 - 감독규정 개정사항
 - 최근 3년간 경영지도 또는 경영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삭제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출장소의 경우 3등급) 이상에 해당할 것 ⇒ 삭제
- 합병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점신설 외에, 상호저축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에 피합병상호저축은행 수만큼 출장소 신설을 추가 허용
 - * 계약이전 받은 상호저축은행 및 금융지주회사로 통합하는 상호저축은행 포함
- 이는 규모가 영세한 상호저축은행의 합병 등 대형화를 유도하는 한편, 소수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2001년 7월 “서민금융활성화방안”에 의한 우대 조치 사항

상호저축은행 지점설치 인가요건 비교

	변경 전	변경 후
시행령*	1. 저축은행 자기자본이 법정최저자본금의 2배 이상일 것 2.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것 3. 최근 3년간 저축은행 임직원이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경영평가 및 신용조사결과 저축은행 재산 및 경영상태가 건전하다고 인정될 것	좌동 (삭제) 3. 최근 2년간 저축은행임직원이 정직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금감위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및 자산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감독규정	1. BIS비율 8%(출장소의 경우에는 6%)이상일 것 2. 최근 3년간 경영지도 또는 경영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출장소의 경우 3등급) 이상일 것	1. BIS비율 8% 이상일 것 (삭제) (삭제) 고정 이하 여신비율 8% 이하

* 2001. 11. 7 개정시행령 공포·시행

마. 개선효과

- 2001년 11월 말 규제완화 이후 저축은행의 2002년 11월 말 현재 17개 저축은행이 18개 점포를 설치
 - 우량저축은행의 경우 12개 상호저축은행이 12개 점포(지점 9개, 출장소 3개)를 설치
 - 합병저축은행의 경우 5개 저축은행이 6개 점포(지점4개, 출장소 2개)를 설치

제4절 _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제고

*집필자 : 김진곤 사무관 (Tel. 3703-3947, number4@opc.go.kr)

1. 소출력 FM방송국 제도 개선(정통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소출력 FM방송은 관광지, 경기장 등의 안내방송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운영하는 지역방송 등 1W이하의 방송을 말함.
- 소출력 또는 한시적 FM방송의 경우, 방송위원회의 추천 등 전파법과 방송법에 의한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음.
 - * 현재 방송국 허가는 방송위원회의 허가 추천(90일 이내), 정통부장관의 허가(60일) 등 보통 5~6개월 이상이 소요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설립자격, 방송구역 등 소출력 FM방송국 허가요건을 완화(전파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련 고시 개정 예정)
- 허가요건을 만족시킬 경우 체신청장의 허가만으로 방송 가능토록 개선(방송위 추천 절차 생략(방송법 개정 필요))

2. 시내전화 · 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성제도 도입 (정통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번호이동성제도는 가입자가 자신이 사용중인 전화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동일 통화권 내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4에 근거규정 마련(2001. 1)
- 번호이동성제도는 사업자 간 공정경쟁 여건 조성과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므로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나 시행이 지연
 - * 2000년 6월 OECD는 규제개혁보고서를 통해 번호이동성제도 조기 시행을 권고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시내전화서비스에 대한 번호이동성 세부시행계획을 마련(2002. 10)
 - 대상사업자 : KT, 하나로통신

도입 시기	지 역 (21)
2003년 상반기	안산, 청주, 김해, 순천 (4)
2003년 하반기	수원, 성남, 안양, 고양, 구리, 김포, 의정부, 대전, 광주, 울산, 전주, 천안, 마산 (13)
2004년 4월	인천, 대구 (2)
2004년 하반기	서울, 부산 (2)

- 도입시기 : 2004년까지 전국 모든 경쟁 통화권(21개 지역)에 도입 완료
- 착신과금(080)서비스 번호이동성 세부시행계획 마련(2002. 10)
 - 대상사업자 : KT, 하나로통신,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 도입시기 : 2003년 상반기까지 전국 도입 완료

3. 요금규제제도 개선(정통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통신업체 요금은 원칙적으로 신고제이나, 시장규모·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은 원가보상률(수익/비용)에 의한 인가제로 운영
 - 요금인가대상은 한국통신 시내전화, SK텔레콤 이동전화임.
- 원가보상율 100%를 기준으로 요금이 조정될 때, 통신사업자의 자발적인 비용절감 유도 곤란
 - * 2000년 6월 OECD 규제개혁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시내·외 전화, 전용회선 등에 가격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시내전화서비스 및 시내전용회선서비스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도입하여 통신사업자의 자발적인 비용절감 유도(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필요)
- 이동전화는 가격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선택요금제 등을 통한 우회적인 요금인상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보신고제로 전환(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필요)

4. 주파수 경매제도 도입(정통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전파법(제9조)에 의거 국방·치안, 주파수 이용현황, 국제적인 주파수 사용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통부장관이 주파수를 할당
 - 경제적 가치, 경쟁적 수요 등이 관련될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를 받고 주파수를 할당
- 전파사용대가를 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가격으로 정함으로써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할당절차의 불투명성, 각종 거래비용 부담 등의 문제점 발생

* 2000년 6월 OECD 규제개혁보고서는 주파수 배분의 기본원칙으로 주파수 경매 제도 도입을 권고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현행 주파수할당 방식 외에 주파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파수 경매제도를 도입
 - 전파법(제11조)을 개정하여 주파수 경매방식을 추가 규정하고, 주파수이용권 등은 현행제도 유지(전파법 개정 필요)

5. 무선국 준공기한 신설(정통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무선국 운영을 위해서 무선국 개설허가, 준공신고·검사 등의 절차가 요구되는 바, 현재 처분청에서는 무선국 개설허가 시 시설자가 요구한 준공기한을 토대로 적정한 준공기한을 결정
-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 및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무선국 허가 취소 사유가 되나, 전파법 상에 무선국의 준공기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법률관계에 문제 발생
 - * 현재 처분청(체신청)에서 통상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적정기한을 검토, 준공 기한 설정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권리발생·소멸 등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무선국시설 준공기한 기준을 전파법 상에 명시
 - 전파법 제21조에 무선국 준공기한 관련규정 신설(전파법 개정 필요)

제5절 _ 산업기반 구축

*집필자 : 김진곤 사무관(Tel: 3703-3947, number4@opc.go.kr)

이호모 사무관(Tel. 3703-2177, yhomo@opc.go.kr)

이장호 사무관(Tel. 3703-2160, youngstone@opc.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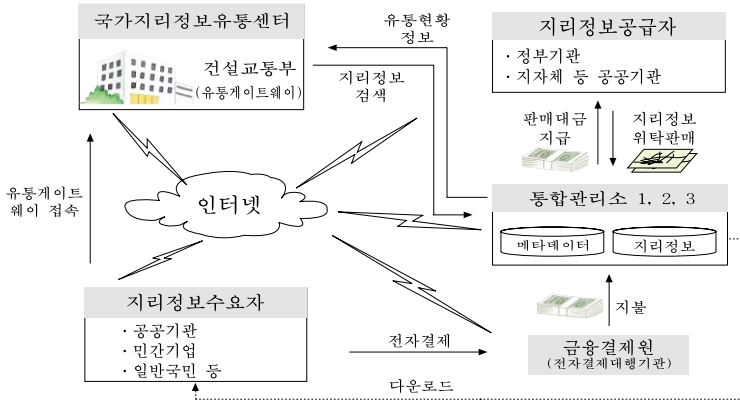
1. 지리정보유통 관련 제도 정비(정통부 · 건교부)

가. 현황 및 문제점

(1) 국가지리정보 유통현황

- 지리정보유통망을 2001. 5. 2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제공
 - 현재까지 유통망 접속건수가 67,016건, 그 중 지리정보 유통 건수는 총 7,178건
 - 현재 국가지리정보유통망에 등록되어 있는 지리정보는 수치지형도, 토지이용현황도, 녹지자연도, 산림이용기본도, 토지피복도 등 총 19종 109,737매(2002. 11. 27 현재)

지리정보 유통흐름도



(2) 문제점

- GIS사업을 통해 구축되고 있는 지리정보가 각급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분산되어 있어 구축된 지리정보 소재와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어렵고, 제도적 기술적인 이유로 접근이 제한
- 국가지리정보유통망의 이용이 증대됨에 따라 유통정보의 확대 및 유통가격 설정 등에 대한 수요자 요구 증대
 - 2002. 5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보다 더 다양한 지리정보 확충 요구

나. 개선방안

- 각 지리정보공급기관이 구축한 다양한 지리정보가 다른 기관 또는 일반 이용자에게 손쉽게 유통될 수 있도록 지리정보유통시스템 일원화 추진
- 다양한 지리정보가 유통망에 등록되고 이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 및 공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지리정보유통 가격기준 설정
- 지리정보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광역지자체 등 주요 거점에 설치·운영하는 지리정보통합관리소의 확대 구축 추진

다. 추진현황

- 「지리정보목록의작성·관리에관한지침」 제정(2002. 7. 16)

- 지리정보유통 메타데이터 표준 제정(2002. 10)
- 1/1000 수치지형도의 일반공급(2002. 11)

라. 향후 추진계획

(1) 지리정보유통시스템 일원화 추진

- 인터넷을 통한 자료검색 및 자료 획득 방법을 일관성 있게 제공하고 유통되는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유통흐름 파악
 - 지리정보 유통의 활성화를 장려하여 데이터 관리의 체계화, 구축의 효율화, 활용의 극대화 도모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교부 유통시스템과 기관 간의 지리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정통부 유통시스템을 통합
 - 양 시스템의 핵심기술을 도입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단계적 통합방안 마련
 - 도엽(圖葉)단위 정보와 DB기반 정보를 병행하도록 기능개선
 - 별도 프로그램 없이도 인터넷 상에서 지리정보를 볼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개발

(2) 지리정보유통체계 활성화를 위한 가격기준 설정

- 이용자 및 공급자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인 유통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과 공급자의 실질적인 비용측면을 고려한 지리정보 유통구조의 확립 도모
 - 합리적 지리정보 유통가격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공공성·경제성·현실적용 가능성 측면에서의 가격기준 설정 필요
 - 지리정보의 접근확대 원칙과 비용회수 원칙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단계별 가격정책과 지리정보의 종류에 따른 무상·유상 판매원칙, 정보사용의 영리·비영리 목적 등에 따른 차별적 가격정책 설정

(3) 지리정보통합관리소 추가 구축

- 지리정보통합관리소의 추가 구축으로 유통망을 물리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지리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2001년~2002년에 걸쳐 국립지리원,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에 지리정보통합관리소를 설치한데 이어 2002년~2003년까지 3개소의 지리정보통합관리소를 추가로 구축하고 지리정보를 확대 등록하는 등 지리정보유통망 확대 추진

- 지리정보유통센터와 지역 거점별 지리정보통합관리소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유통체계를 보다 확장하여 각 지리정보공급기관이 유통노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산형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추진

마. 필요 조치사항

- 지리정보유통시스템 일원화 추진
 - 사용자 편의를 위한 통합 유통시스템 구축 : 2002. 9~2003. 8
 - 지리정보공급기관의 지리정보 유통노드화 추진 : 2003. 9~
- 지리정보 유통가격기준 설정
 -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활성화를 위한 유통 가격정책 설정 연구(국토연구원) : 2002. 9~2003. 8
 - 연구가 종료되는 2003. 8월 이후에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정비 추진
- 지리정보통합관리소 추가 구축 : 2002. 9~2003. 8
 -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02년도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에 지리정보통합관리소 추가 구축
 - 분산형 유통체계 구현을 위한 ISP 수립

2. 지하시설물 수치지도의 표준화 추진(산자부 · 정통부 · 건교부)

가. 현황 및 문제점

(1) 지하시설물 수치지도 구축 현황

- 1995년 제1차 국가GIS기본계획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지속적 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 중
 -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대상 시설물 중 지자체가 관리하는 상·하수도 시설물의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신규로 조사·탐사하여 DB를 구축하고 상·하수도 관리시스템 개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현황

구 분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비 고
사업 기간	1998~2002년	2003~2007년	
사업 대상	19개 거점 도시	60개 시급 지자체	
총 사업비	1,452억원	5,548억원	
사업 규모	80,414km(상·하수도)	120,000km(도로, 상·하수도)	

(2) 문제점

- 지하시설물은 도로를 기반으로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전산화 방법·절차 등이 유사
 -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통신·전력·가스 관련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전산화작업이 추진됨으로써, 지하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와 호환성 확보 곤란
- 정보공유와 표준화에 따른 세부 규정 미비
 -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유관기관(통신·전력·가스공사 등)의 경우 통합 관리에 필요한 정보공유 대상시설물, 정보공유 항목, 정보공유를 위한 체계, 정보갱신 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 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음.
 - 다른 기종 S/W에 따른 상호연계도 어려운 실정

나. 개선방안

- 중복투자 해소와 자료의 공유 및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지하시설물 수치지도의 표준화 추진
 - 지하시설물과 도로의 통합 DB 구축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기술적 방법 및 표준 제정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시기와 대상지역 등을 조정하여 전산화사업을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안 강구

다. 추진현황

- 지하시설물(상·하수도) 관리를 위한 전산화 기반 마련(2002. 7)
 - 상·하수도관리 업무영역의 공통요소를 도출하여 데이터의 통일성을 확보한 범용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의 품질인증 시행으로 신뢰성 보장 및 고품질의 소프트웨어 공급
- 국토연구원 외 3개사에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및 표준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2001. 9~2002. 11)
 - *대상시설 : 청주시 일부지역에 대한 도로 및 7대 지하시설물

라. 향후 추진계획

(1) 지하시설물 수치지도의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 도로기반시설물 공동추진을 위한 협의회 등을 통한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 지자체 단위로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를 구성하여 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방안, 사업추진계획, 공동추진 시 비용분담, 정보공유항목 등을 협의
 - * 구성인원(20인 이내), 위원장(시장, 부시장) 등
 - 전산화사업 공동추진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도로, 상·하수도를 기본으로 하고 전기·가스·통신 등의 시설물은 협의회를 통하여 공동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지하 시설물 관리기관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안 강구
 - 비용분담(지자체 출연) 방안 제시와 공동 추진 시 주체를 지자체로 하는 등 관리기관을 설정

(2) 도로기반시설물 정보공유항목 표준화 추진

-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정보 공유 항목 선정 및 정보 공유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마련
 - 정보 공유 항목은 도로 굴착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
 - *정보 공유 항목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시범사업 추진협의회에서 합의(2002. 5)
- 지하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해 지하시설물과 도로의 통합 DB 구축의 기술적 방법 및 표준 설정

- 구축자료의 공유,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추진에 사용되는 기본도 제시
- 작업의 효율성과 비용절감을 할 수 있도록 품셈 적용기준 설정

정보 공유 대상 및 정보 갱신 방법

정보 공유 대상 기관	지자체, 통신·전력·가스공사 등 기반시설물 관리 기관
적용 대상 시설물	도로, 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력, 가스, 난방열관, 송유관 등 도로기반시설물
정보 공유 항목	도로굴착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하여 공유항목을 표준화
정보 갱신	도로기반시설물의 신설 및 유지관리 자료를, 변경 즉시 자료를 갱신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함.

마. 필요 조치사항

- 도로기반시설물통합관리에관한지침 제정(2003. 1)
 - 동 지침에 도로기반시설물 정보공유항목 표준화 사항도 포함.

3. 건설기능 인력의 효율적 경력 관리 체계 구축(건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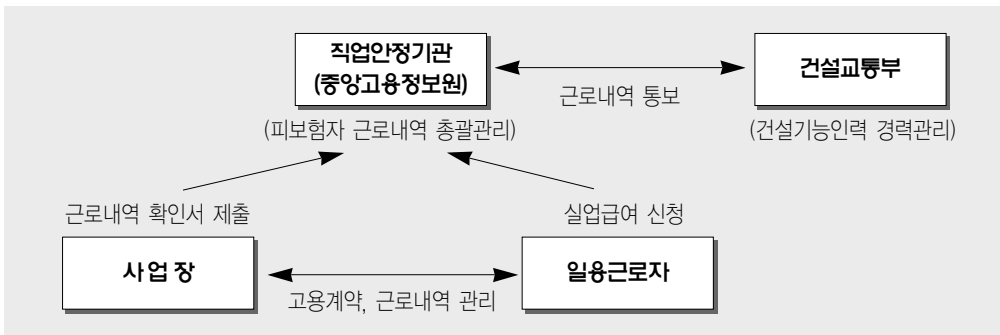
가. 현황 및 문제점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관리
 -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력 등을 작성
 - 30일 미만 일용 근로자에 대한 적용 유예 규정을 빌미로 대부분의 건설 일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 경력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개별사업주 수준에서의 근로 경력 관리에 한정되며,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없어 정보집중에 의한 체계화가 불가능

-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상의 근로자 관리
 - 퇴직공제회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피공제자별로 건설 근로자 복지수첩을 발급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수첩에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공제증지 첨부
 - 적용대상공사의 한계로 경력관리체계 구축에 활용하기 곤란
- 「고용보험법」 상의 근로자 관리
 -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직업 안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 기존 근로자 관리방식 중 경력관리체계 구축에 가장 적당
 - 일정한 피보험자 신고서식에 의하므로 정보의 표준화가 가능하고 개별사업주가 아닌 중앙고용정보원에서 총괄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정보집중에 의한 체계화 가능
 - 1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으나, 2004. 1월부터 일용건설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 예정

나. 개선방안

- 고용보험과 연계한 건설 기능인력 경력 관리 체계 구축 추진



다. 추진현황

- 노동부 · 건설교통부 · 노사단체 · 노동연구원 및 건설산업연구원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마련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기본계획」에 고용보험과 연계한 경력관리시스

템 구축계획 반영(2002. 11)

라. 향후 추진계획

- 2004. 1월 고용보험의 확대적용과 함께 건설 일용 근로자에 대한 경력관리시스템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노동부와 협조)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내역 자료를 경력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업무흐름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2003 상반기)
 - 개발된 프로그램의 시범운용 및 중앙고용정보원의 근로내역자료를 개발된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2003 하반기)
 - * 프로그램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은 건설단체총연합회 부설기구인 건설인력관리센터에서 주관
-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DB가 구축되면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경력관리시스템으로 발전(관계부처와 공유)

마. 필요 조치사항

-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 업무흐름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2003 상반기)
 - 시범운용 및 네트워크 구축(2003 하반기)
- 경력관리시스템 운영(2004. 1~)

4. 산업단지 관리기관 범위 확대(산자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법령상의 관리기관은 관리권자·지자체의 장·산업단지관리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입주기업협의회로 한정되어 있어 토지이용이나 물적 시설관리 위주로 지원

- 산업단지의 관리는 토지이용이나 물적 시설관리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업 간 및 산·학·연간의 교류협력 증대 등이 요구
- 선진국의 성공적 산업단지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관리자가 기업에게 직접 다양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 개선방안

- 지식기반산업의 경우 전문화된 기업지원 서비스에의 의존도가 높으므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이나 대학 등이 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방

다. 추진방향

- 산업단지의 관리기관 확대
 - 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지방공기업·대학 등이 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라.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 추진(2003년 7월 시행 예정)

5. 국가기술자격 신뢰도 제고 관련 규제개혁 추진방안 (노동부)

가. 검토배경

(1) 국가기술자격의 운영상의 문제점

-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수요 및 직종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면제범위의 확대 등으로 자격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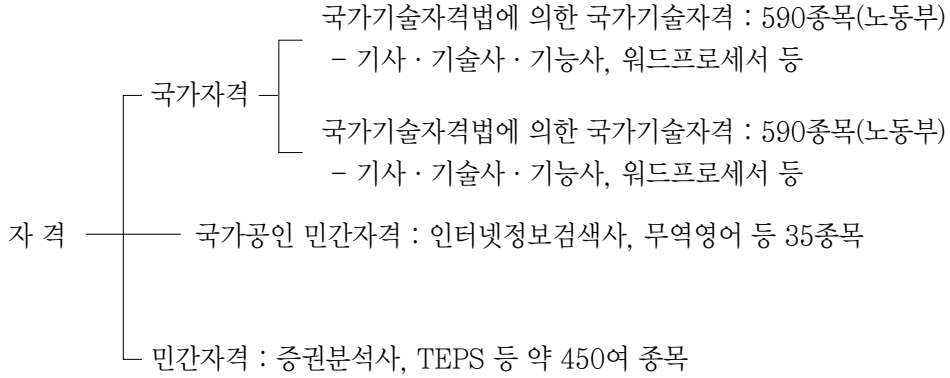
- 국가기술자격 관리는 지나치게 낮은 검정수수료로 인해 내실 있는 검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자격검정 업무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두 기관에서만 독점적으로 위탁·관리하여 서비스의 저하 등 운영상의 문제 초래
-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서는 국가 외의 검정시행 금지종목을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민간자격의 운영을 위축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에 관한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국민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등 문제 발생

(2)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 추진 경위

- 정부는 지식기반사회 대비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개혁방안」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중심으로 중점과제로 추진하여 개선(안)을 마련
 - 각 법령에서 정한 자격관련제도를 통합법으로 제정하고 개별법에 규정된 120개 자격을 포함
 - 자격관련 심의기구의 일원화하고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의 개선(학력·경력조건의 합리적 조정, 국가기술자격 검정·위임·위탁 범위 확대 등)
 - 그러나 정부조직개편, 부처 반발 등으로 최종입법을 보류하고 그 중 120개 자격 중 1차로 수용이 가능한 자격 58개 자격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 통합 반대 : 10개 부처 38개 자격(65.5%)
 - 의견 유보 : 3개 부처 7개 자격(12%)
 - 통합 동의 : 5개 부처 13개 자격(22.5%)
 - 그 후 부처협의·국무조정실 조정결과 개선안에 대해서는 개별법으로 운영하면서 보완하기로 협의
 - 통합법 대신 국가기술자격법 및 자격기본법 개정을 통해 당초 통합취지 반영
 - 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부총리, 부위원장은 노동부장관
 - 자격기본법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관장하되, 민간자격 분야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가기술자격은 현행과 같이 노동부에서 주관
 - 국가의 직무능력표준제도, 학력-교육훈련-자격의 연계, 기초 소양인증제 도입 등은 법 근거 마련 후 시행방안 향후협의
- ⇒ 따라서 개별법으로 운영한다 해도 개선안의 근본취지는 반영가능

나.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요

(1) 우리나라의 자격의 구분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현황

구분	종목수	직무 분야	관련 기관	비고
현황	590	25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개별법령에 의한 국가자격 현황

구분	종목수	직무 분야	관련 기관	비고
현황	120	18	교통안전공단, 한국보건직업인국가시험원 등 67개 기관	

• 민간자격 현황

구분	종목수	직무 분야	관련 기관	비고
현황	약 450	-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외국어능력평가원 등 84개 기관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으로 2002년 7월 1일부터 국가기술자격 33종목이 추가로 시행 (총 623종목)

다. 국가기술자격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내용

(1) 규제개혁 내용별 규제합리화 방안

(가) 국가기술자격의 타당성 제고

① 자격기준 체제개편

[현황 및 문제점]

- 자격과 산업현장의 연계가 부족하고, 검정내용이 직무수행능력 평가가 아니라(비용 문제 등으로) 교육훈련 내용에 대한 평가로 공급자 중심체제로 운영
- 이로 인해 국가기술자격의 신인도가 저하되고, 자격이 노동시장의 신호기제(信號機制)로 역할 미흡

[개선방안]

- 산업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자격종목은 대폭 정비
 - 응시인원 추이 분석, 관련단체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 노동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자격관리·운영
 - 산업현장 직무수행능력에 맞춘 시험과목 정비
 - 출제기준 상세화 및 산업현장과 일치 여부 주기적 검토
- 추진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개정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4 및 제28조 개정
 - 출제기준(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정비

②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과목면제 범위 축소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기술자격법 제7조 제1항에서 기술자격과 동등 이상의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실업계고등학교 이수자, 근축법에 의한 1년 이상의 과정 직업훈련 이수자 및 학원 등의 이수자에 대해 기능사 검정 필기시험 면제(동법 시행령 별표 7의2 제3호 나목,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4)
- 그러나,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는 자격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여 자격 신인도 제고 우려
 - 실제로 교육훈련기관에서 자격검정 합격을 위해 이론을 등한시키고 실기만을 준비하는 등 교육훈련과정의 파행을 초래하는 현상 발생

[개선방안]

- 시험과목 면제범위 축소 여부 검토

- 20년간에 걸쳐 시행되어온 기능사 필기시험의 면제를 일시에 없앨 경우 혼란 야기되므로 점진적 축소 검토
- 핵심적인 시험과목의 필기시험 면제를 제외하는 방법 등을 검토

• 추진방법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4조의4개정

(나) 국가기술자격 관리·운영의 내실화

① 검정수수료 현실화

[현황 및 문제점]

- 검정수수료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해 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물가안정예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재경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
- 현행국가기술자격 검정수수료는 민간자격에 비해 매우 낮음.
 - 필기시험 : 국가기술 6,200~39,000원, 민간자격 30,000~50,000원
 - 실기시험 : 국가기술 8,200~50,000원
- 이로 인해 출제문제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출제 수당 및 검정을 위한 시설·장비 임차 비용이 매우 낮아 국가기술자격의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수입대체경비로 운영되는 검정수수료를 민간과의 경쟁에 맞추어 현실화할 필요성 대두

[개선방안]

- 검정수수료 현실화
 - 민간자격의 검정수수료 수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자격의 신인도, 정부출연금의 수준 등을 검토하여 검정수수료 결정

② 자격검정의 위임·위탁기준 설정 및 위탁기관의 확대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기술자격검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하도록 규정(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36조제2항)
- 양 기관에 한정하여 자격검정이 위탁됨으로 국가기술자격검정의 비경쟁체제로 인한 서비스의 저하 초래 우려

[개선방안]

- 자격검정의 위임·위탁 기준의 설정

- 국제기준(ISO), 영국의 인증기관·평가센터 승인기준 등을 고려

- 위탁기관 확대

- 고도의 전문성 및 자격의 관리·운영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종목을 대상으로 검정 위탁기관 확대

- 산업 및 직능단체 대표기구를 위탁 대상기관으로 설정

- *신뢰성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자격검정 위탁기관이 확대

- 추진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6조 개정

(다) 자격의 효율적 운영

① 국가외의 검정시행 금지기준 구체화 및 금지종목 축소

[현황 및 문제점]

- 자격기본법 및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국가 외의 자가 검정을 행할 수 없도록 하는 분야 및 자격 설정

- *국가기술자격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국가 외의 자의 검정금지 자격)

-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기술자격

- 사회통념에 반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술자격

-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기술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6의2에서 국가 외의 자가 검정을 행할 수 없는 기술 자격을 명시(총 590개 기술자격 중 329종목을 국가 외의 자의 검정금지 자격으로 한다.)

- 그러나, 국가기술자격종목은 주로 능력인정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금지종목이 과반 수가 넘는 것은 지나치게 많으며, 이로 인하여 민간자격의 활성화 저해

[개선방안]

- 능력인정형 자격종목에 대해서는 금지기준을 보다 명확히 적용

- 금지종목의 수를 축소 조정하여 민간자격의 활성화 도모

- 다만, 개별사업법에 의한 면허종목은 현행과 같이 국가 외의 자가 검정금지

- 추진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3조의2, 별표6의2 개정

② 민간자격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처벌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순수 민간 자격은 증권 분석사, TEPS 등의 450여 종목이 있으며, 국가공인 민간자

격은 신용분석사, 인터넷정보검색사 등 35개 종목임(2002년 4월 현재)

- 국가공인을 받지 않은 순수 민간자격 시행기관이나 자격관련 교육·훈련기관들이 마치 국가공인을 받은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 발생
- 이들에 대한 제재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로 규정되어 있으나(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9-19) 이를 전문적으로 신고 및 고발할 수 있는 기구 구성 미흡

[개선방안]

- 국가자격, 민간자격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금지 규정 마련
 - *현행 자격기본법에는 공인 민간자격의 허위·과장광고 금지만 규정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경찰청 등과 협조 강화
- 민간자격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전문적인 신고 및 고발센터의 구축 및 운영
- 추진방법 : 자격기본법 제30조 개정

라. 향후 조치계획

(1) 자격제도개선 기획단 구성·운영(2002. 2~2002.12)

-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자격제도 구축을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 인력공단, 교수, 연구원, 산업현장 전문가 등으로 자격제도개선 기획단 구성(33명)
 - 선정된 의제별로 발표와 토론형태로 연구수행,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관련단체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 국가기술자격 활용 실태 조사(2002. 6~9)
 - 기업체 인사담당자, 자격취득자, 산업현장 전문가 등
- 외국의 자격운영 시스템 비교, 분석(2002. 5~2002. 8)
 - ※ 참고자료
- 국가기술자격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마련(2002. 12)

(2)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2003년 이후)

- 연구결과에 대한 관련단체·관계부처 의견수렴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참고자료》 외국의 자격제도

□ 영국

- 국가자격인 NVQs(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와 일반자격인 GNVQs(General NVQs)이 있으며, 민간 검정단체에서 관리하는 민간직업자격이 있음.
 - 민간검정단체 : Edexcel, City & Guilds, RSA, BTEC
- 디자인 분야를 예로 들면, 각 분야별로도 국가자격, 일반자격, 민간직업자격이 다양하게 분포
- 자격제도에 관한 규제 · 평가 · 인정기관으로 1997년 교육고용부(DfEE) 산하에 국가자격위원회와 교육과정평가위원회(SCAA)를 통합한 자격교육과정원(QCA) 설립 · 운영

□ 미국

- 전통적으로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자격제도 발전
- 최근 연방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갖춘 자격제도로 정비
 - 1994년 교육부와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국가기술표준법」(National Skill Standards Act of 1994)을 제정하고 1995년 국가기술표준위원회(National Skill Standard Board)를 설립 · 운영

□ 독일

- 대부분이 국가자격인 독일의 자격제도 운영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연방직업교육훈련연구소(BIBB : Bundesinstitute für Berufsbildung)의 지원을 받아 분담 관할
- 직업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국가법령인 「직업교육훈련법(Berufsbildungsgesetz)」에 따른 직종별 직업교육훈련규정에 포함시켜 교육훈련과 자격시험이 계열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시행

□ 프랑스

- 국가 주도적으로 자격제도를 관리 · 운영하는 프랑스는 기존의 자격제도를 사회 · 경제적인 상황 변화에 맞게 개선
 - 학력과 자격을 6단계로 분류하는 국가자격수준체계를 개발하여 졸업증(학위), 공인자격증, 전문직업능력자격증(CQPs: Certificats de Qualification Professionnelle) 등 다양한 자격들 간에 연계체제 구축을 시도

□ 일본

- 국가자격과 함께 민간자격을 발전시켜온 일본의 자격 유형은 국가자격, 민간자격, 공적자격(국가가 인정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
 - 국가자격 중 기술계 자격은 각 성청에서 개별적으로 관장하고 민간협회나 단체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능계 자격은 노동성에서 통합하여 관장하고 중앙직업능력개발협회에 위임하여 운영
 - 공적자격은 민간 부분이 운영의 주체가 되지만 중앙행정부처가 그 효용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주는 자격으로 각 부처가 관장하는 기능심사인정제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인
- * 일본의 자격 분야와 종목수(총 564종목)

6. 과학기술 연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기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산업계 공동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간 연구개발 컨소시엄 및 공동벤처(Joint Venture)가 설립
- 연구조합은 세제지원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부여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법인격 연구조합으로 인가가 필요
- 그러나, 동법에 의해 인가된 연구조합은 민간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서를 과학기술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동법 제16조) 과도한 규제적용의 문제가 있음.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매년 제출토록 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서 제출의무 폐지(2002 .12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개정)



제6장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심사

제1절 _ 공정거래분야

제2절 _ 재경금융분야

제3절 _ 산업자원분야

제4절 _ 건설교통분야

제5절 _ 보건복지분야

제6절 _ 일반행정분야

제7절 _ 교육분야

제8절 _ 문화관광분야

제9절 _ 노동분야

제10절 _ 외교·국방 및 보훈분야

제11절 _ 환경분야

제12절 _ 해양수산분야

제13절 _ 농림분야

제14절 _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

제1절 _ 공정거래분야

*집필자 : 민용식 서기관 (Tel. 3703-3931, kantmin@opc.go.kr)

1. 공정거래위원회

가. 지난 5년간 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총 24개의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21건의 규제를 신설, 25건의 규제를 강화, 55건의 규제를 구체화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이 사업자단체가 가입사업자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혐의사항에 대한 금융기관과의 거래내용자료 요구권을 신설
- 100억원 또는 자본금의 10% 이상의 내부 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하는 대상기업집단의 규모를 상위 10대 기업집단에서 30대 기업집단으로 확대
- 신문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구체적인 적용 유형과 기준을 마련

나. 2002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 2002년도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등 6개 법령에 대해 신설 2건, 강화 4건, 내용심사 51건 등 총 57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57건 중 23건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권고하고, 34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2002년도 신설규제는 2건임.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규제강화 2, 내용심사 1)

- 자산기준 상위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상호출자, 채무보증, 출자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던 방식에서 규제목적에 따라 규제대상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 상호출자금지 및 채무보증금지 대상 기업집단의 범위를 현행 자산기준 2.5조원 이상에서 2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확대(대상 기업집단이 30개 → 38개)하고, 공기업도 규제대상에 포함.
 - 출자총액제한 규제대상은 5조원으로 완화
-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예산액의 5/100 이내에서 예산액의 범위로 확대(최고한도는 5억원)
- 출자총액한도(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하는 출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에 갈음하여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

■ 심사결과(2002. 2. 22)

-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 규제의 기본원칙인 출자총액 제한 규제는 시장규율이 정립되는 수준과 연계하여 완화해 나가고,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내용과 일치하므로 원안의결
-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은 법률에서 과징금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용의 소지가 없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출자총액한도 초과시 의결권 제한 절차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의 취지

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심사요청 규제내용(규제신설 2)

- 표준약관 사용 권장을 받은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개별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이 아님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 약관심사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 사업자단체 등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양 당사자가 요청하는 사업자와 고객 간 약관 분쟁에 대하여 사실 확인 또는 조정 업무를 관장하며, 조정결과와 경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 ■ 심사결과(2002. 5. 1)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요한 거래분야의 표준약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았으면 서도 표준약관과 다른 개별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이 아님과 그 다른 주요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토록 하고,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 표지를 정할 수 있으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표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표준약관에서 정한 기준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을 권리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함.
 -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한 것을 양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개선권고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규제강화 2, 내용심사 19)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방문판매업자와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신고사항과 신고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방문판매업자와 전화권유판매업자는 방문판매원 또는 전

화권유판매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함에 따라, 명부 작성 내용과 비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방문판매업자와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설명하여야 하는 항목의 일부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설명 대상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청약철회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에 따라,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방문판매업자와 전화권유판매업자가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허용범위를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법령 등의 준수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행위로서 2만원 이내의 교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로 정함.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다단계판매업자는 3억원 이상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자본금 규모를 5억원 이상으로 함.
-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대상을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정함.
- 다단계판매업자가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총액의 한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의 합계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 조건으로 당해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의 최소 판매 단위를 1회에 한하여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 이외에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 1인에 대하여 2만원을 초과한 가입비를 징수하거나 회원자격을 갱신하기 위해 연간 1만원을 초과하여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 판매보조 물품의 대가를 특정 재화 등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원 1인당 연간 5만원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행위, 개인 할당 판매액을 부과하는 행위, 다단계판매원에게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그 대가를 징수하는 행위(1인당 연간 3만원 이내는 제외) 등을 금지하며,

다단계판매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은 150만원 미만으로 제한

- 다단계판매업자의 배상책임의 기준은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그 위반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함.
- 계속거래업자가 계약체결 전에 상대방에게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대상을 10만원 이상의 금액, 3개월 이상의 기간 이상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경우로 정함.
-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계약해지가 제한되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계속거래 해지 시 계속거래업자가 취해야 하는 대금환급 또는 위약금의 경감 등의 기준을 정함.
- 계속거래업자 등은 재화 등의 거래기록 등을 소비자가 방문,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우편 등에 의해 열람 요청을 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송부하도록 함.
- 등록하고자 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계약기간 2개월 전에 갱신하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방문판매업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한 사업자가 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함.
- 특수판매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의 평가·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인증기관의 명칭, 주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평가·인증범위, 평가·인증업무개시일, 평가·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범위 및 크기 등을 참작하여 공표의 내용 및 횟수, 크기 등을 정하여야 함.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처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1년간 3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만으로는 소비자의 피해회복이 곤란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복 불가능하거나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처분에 처함.
- 특수판매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의 제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

자단체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한 정관에 인력·재정상황 및 재원확보방안, 주요설비의 목록 및 성능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시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심사결과(2002. 6. 19)

- 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사항 중 영업장의 소유 및 임차관계와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표등본을 삭제토록 하고, 시행령에서 변경신고 사항을 새롭게 정하는 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를 삭제토록 개선권고
- 명부비치 또는 방문판매원 신원확인 등의 목적은 무자격 방문판매원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의결
- 계약서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당해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한 약관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내용”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삭제토록 개선권고
- 채무상계 시 소비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규정한 것은 근거법률에서 결제업자에게 상계 시 조건을 부여하는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토록 개선권고
- 방문판매업자 등의 방문판매원에 대한 의무부과 행위를 제한한 것은 방문판매업자의 우월적 지위로부터 방문판매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기준 중 ‘실질자본금’ 5억원 이상을 ‘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 수정하도록 개선권고
- 등록부 비치 또는 다단계판매원 신원확인 등은 무자격 다단계판매원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의결
- 다단계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기준 및 한도는 다단계판매원에게 피해방지의 목표와 다단계판매업과 일반유통업 간의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의 목표 간의 조화에 대한 것으로 타당하나, 후원수당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임의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후원수당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법률의 취지에 반하므로 이를 삭제토록 개선권고
- 다단계판매원에게 상품구매 요구를 금지하는 것은 다단계판매회사의 기본적인 영업활

- 동 자체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되,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하는 재화 등의 최소 판매단위를 1회에 한하여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의결
- 다단계판매원의 유형별 의무부과 금액 상한 (150만원)은 과도한 상한가격 규제시 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높아지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측면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다단계판매업자의 연대책임을 다단계판매원의 위반행위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 “사업권유거래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한 약관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한 것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함이 타당하므로 삭제토록 개선권고
 - 재화 등이 당해 소비자를 위해 특별히 공급되는 등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당사자간에 해지불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소비자의 해지권을 제한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손실을 방지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의결
 - 재화 등의 거래기록을 소비자가 방문·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타당하므로 원안의결
 - 청약철회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환급의무의 불이행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타당. 다만, 다단계판매업자가 개별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매매대금 결제와 함께 계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위임범위를 일탈한 내용이므로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공제조합은 보험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엄격한 수준의 관리·감독이 필요함. 다만, 공제사업의 범위, 분쟁조정, 업무상황 조사, 인가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 평가·인증사업자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 다만, 평가·인증기관의 법률적 책임의 범위와 면책에 관한 사항 등의 공시항목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삭제토록 개선권고
 -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서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의결

- 영업정지는 침해적 행정행위이므로 이를 결정함에는 위반행위의 횟수, 유형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여야 함. 따라서, 처분요건으로서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가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부과에 불응할 의사를 표명한 경우”는 이를 삭제토록 개선권고
- 사업자 단체의 등록기준을 정한 것은 유사입법례 등 일반적인 경우를 비교하여 적정하므로 원안의결
- 과태료 부과·징수의 절차 및 기준은 적정한 수준이므로 원안의결

(4)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내용심사 20)

- 사업자가 소비자와 사전에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여 지정한 주소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지 않은 경우 당해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소비자와 특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수차에 걸쳐 거래한 경우에 그 전자우편 주소로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함.
-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보존기간을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은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은 3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은 3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은 3년으로 정함.
- 당해 결제수단의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및 당해 결제수단을 통한 결제서비스의 이행을 보조하거나 중개하는 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정보의 보안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전자적 대금 지급방법에 이용되는 결제수단 중 3개 이상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소비자가 이를 이용한 거래대금의 지급에 앞서 구입·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형식의 결제수단은 당해 결제수단의 신뢰도의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밖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함.
- 전자결제업자 등은 분쟁 해결을 위하여 사업자나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과 관련된 정보 및 대금지급에 대한 전자결제업자 등의 보안유지 조치관련 정보의 열람·복사 등을 허용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에 따른 재화의 배송사업자는 배송관련 기록 및 사고 또는 장애관련 사실의 확인을 위한 기록을 열람하도록 하여야 함.
-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사이버몰의 이용

약관 등을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무선통신단말기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인터넷 사이버몰 표준약관을 준용하는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함.

- 전자거래사업자는 소비자의 정보가 도용되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변조된 정보의 원상회복 및 도용에 관한 피해의 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통신판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소·전화번호, 인터넷 도메인 이름·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등을 신고하고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명확인이 된 통신판매대금의 지급계좌 등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통신판매업자는 신원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재화 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에 관한 사항, 재화 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재화 등의 가격 이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항,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기재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제공하여야 함.
- 통신판매 시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판매자 또는 제3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도록 함.
-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상호, 주소, 전화번호, 피해발생 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거래 신용도에 관한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전자상거래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됨. 다만 재화 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위하여 배송 또는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해당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함.
- 전자결제수단 발행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피보험자를 전자결제수단의 구매자로 하고, 계약금액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가 발행하는 전자결제수단 발행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전자결제수단의 상법상 채권 유효기간 이상으로 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받은 기관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 기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 시에는 사전에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사업자의 평가·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는 명칭, 주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평가·인증범위, 평가·인증업무개시일, 평가·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공시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피해의 범위 및 크기 등을 참작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1년간 3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만으로는 소비자의 피해 회복이 곤란한 경우, 위반행위자가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부과에 불응할 의사를 표명한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기준을 당해 위반행위가 매출이 일어난 주요 원인이 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매출액 전액, 당해 위반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 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발생시점으로부터 그 종료시점까지의 매출액의 10%로 함.
-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업 관련 사업자 단체 등록 시 재정 상황, 주요설비의 목록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고, 목적·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 성명·설립연월일·회원의 수·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의 조사·확인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심사결과(2002. 6. 19)

- 전자문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한 적정한 내용이므로 원안의결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과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감안하여 5년으로 조정하도록 개선권고
- 보안조치 의무는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내용이므로 원안의결

- 결제수단의 신뢰도의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밖의 주의사항 등 소비자 보호와 직결되는 사항을 표시·고지하는 것은 특별히 업계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원안의결
- 통신판매에 따른 재화배송사업자의 분쟁해결 협조의무의 대상은 구체적·객관적이어야 하므로,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무선통신단말기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인터넷 사이버몰 표준약관을 준용하는지 여부를 표시토록 하는 것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맞추어 시행함이 합리적이므로 삭제토록 개선권고
- 소비자정보의 도용에 대한 전자거래사업자의 책임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정한 내용이므로 원안의결
-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 중 ‘실명 확인이 된 통신판매대금의 지급계좌’는 사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관련이 적으므로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통신판매업자의 신원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제공 대상 중 개별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한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를 경우 이를 계약서에 기재토록 하는 것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맞추어 시행함이 타당하므로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청약철회는 소비자를 위한 것이므로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은 경우’를 ‘서면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은 경우’로 한정하도록 개선권고
-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에게 통신판매 의뢰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경매 등 중개물을 통한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의결
- 전자상거래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본인의 허락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것은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부합하는 정한 것으로 원안의결
- 전자결제수단발행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기준 중 보험계약 금액은 외국의 입법례나 유사 입법례를 검토하여 100분의 30으로 하향 조정토록 개선권고
- 기관 또는 단체가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도록 개선권고
- 정보공개 시 당해 사업자에게 미리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개인정보

의 정확성 유지 등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타당하므로 원안의결

- 평가·인증사업자의 평가·인증업무 수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것으로 적정한 내용
이므로 원안의결
- 위반행위에 대한 공표 시 고려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한 적정한 내용으로 원안의결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중 ‘위반행위자가 시정조치
나 과징금의 부과에 불응할 의사를 표명한 경우’는 주관적인 기준으로 부적정하므로
삭제토록 개선권고
- 사업사단체의 설립기준이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
이므로 원안의결
- 과태료 부과·징수의 절차 및 기준을 정한 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5)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1건)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는 가맹본부의 일
반현황, 가맹본부 임원의 가맹사업거래 관련 범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
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교육·훈련프로그램 등을 수록하여야 함.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중단한 경우 가맹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
고, 가맹사업 중단일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중단일을 통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통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달된 날 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
업자에게 미리 통지함이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비,
상품, 용역 등의 거래를 20일 이상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거래 재개일
을 정하여 거래재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에는 서면으로 정한 거래 재개일로 정함.
- 가맹본부에 제한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거래거절(영업지원 거절,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한 계약종료), 구속조건부 거래(가격의 구속, 거래상대방의 구속, 상
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구입강제, 부
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의 간섭), 기타의 불공정거래행
위 등을 정함.
- 가맹본부가 계약 만료일 90일 전에 가맹사업자에게 계약만료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화의신청 또는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 있어 가맹사업의 연속성이 상실된 경우는 예외로 함.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해지일로부터 2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3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화의신청·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 있어 가맹사업의 연속성이 상실된 경우 등은 예외로 함.
 - 가맹사업 당사자의 분쟁으로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 협회에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토록 함.
 -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직·운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협회가 정하도록 함.
 - 협의회는 당해 조정사항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가맹사업거래상당사의 자격기준으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공정거래관련업무에 종사한 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가맹사업 거래업무에 관련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상담사 2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 정함.
 - 가맹사업거래상당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록번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사항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가맹본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매출은 당해 가맹본부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으로 정함.
- 심사결과(2002. 9. 6)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는 가맹사업의 전망과 사업실태 및 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하므로,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이를 공개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외결
 - 가맹사업의 중단일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상거래 관습과 거래의 안전에 비추

어 적정하므로 원안의결

-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규정에 주관적·추상적인 내용이 있으나, 준사법적 기능인 분쟁조정과정에서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 가맹본부나 가맹사업자에게 파산,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및 부도 등의 경우까지 계약의 갱신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원안의결
- 가맹사업거래를 지속하기 곤란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시정요구 절차에서 제외토록 함이 타당하므로 원안의결
- 관련단체의 현실정을 고려 분쟁조정협의회를 1개 기관에 설치하는 것을 원안의결하되, 향후 2년 내 분쟁조정실적 및 그에 대한 분쟁당사자의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규개위에 보고토록 함.
-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운영규칙은 자율적으로 규정하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공정위의 사전승인은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 분쟁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적정한 준비기간의 확보가 필요하고, 입법례에 의하면 7일 정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석통지 시기를 출석요구일 7일 전으로 조정하도록 개선권고
-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시험시행횟수를 1년에 1회 이상으로 하되 시행령에서 명문화하고, 시험면제 대상 범위를 객관화·구체화하도록 개선권고
- 상담사 등록 시 기재사항과 등록사항 변경 시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등록증 재교부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적정한 내용이므로 원안의결
- 과징금 산정기준인 매출액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내용이므로 원안의결

제2절 _ 재정금융분야

*집필자 : 이용의 사무관(Tel. 3703-2158, yougeui@opc.go.kr)

이종협 사무관(Tel. 3703-3927, bird@opc.go.kr)

1. 재정경제부

가. 지난 5년간 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총 76개의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213건(의원입법에 의한 신설 6건 제외)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등록규제 중 48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예금보험료율의 상한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금융기관별로 차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예금보험료율의 상향조정에 대해 5년의 규제존속기한을 설정(1998. 6)
- 증권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 운용전문인력 확보, 증권투자회사의 차입 및 보증제한 등 증권투자회사제도를 도입함에 따른 필요규제를 신설(1998. 7 및 1998. 9)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인가요건, 업무범위 기타 감독 관련 규제들을 마련하여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제도를 도입(1998. 11)
-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기타 광고금지, 금융업오인 명칭사용을 금지(1999. 11)
 - 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일정 금융기관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적으로 운용토록 함.(1999. 11)
 -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예금보험관계 표시 이행여부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차등보험료를 비교광고를 금지토록 하되, 5년의 규제 존속기한을 설정(1999. 11)
 -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업무범위, 행위제한 등 관련 사항을 정함.(2000. 6)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을 제정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업무범위, 자산운용제한 등 관련 사항을 정함.(2000. 6)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불법자금세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2000. 10)
 - 상호신용금고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를 부과(2000. 11)
 - 여행자휴대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반송신고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신고시기 및 방법에 의하도록 반송신고시기 및 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2002. 6)
 -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을 통합하는 자산운용업법을 제정하여 동일한 자산운용업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기능별 규제원칙을 구현하고, 동 원칙하에 자산운용대상의 확대, 투자자 보호장치의 강화, 기타 자산운용회사의 허가, 신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 등의 등록요건 등을 정함.(2002. 11)
 -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하여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절차, 전자금융업의 인가 및 등록요건, 전자화폐거래의 법률관계, 기타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감독, 전자금융 이용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2002. 12)

나. 2002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 2002년도에는 예금자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관세법, 자산운용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24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58건, 강화 17건, 내용심사 26건 등 총 10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01건 중 2건은 철회권고, 12건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권고하고, 87건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한 바, 재정경제부의 2002년도 총 신설규제수는 57건

(1) 증권거래법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를 증권회사의 겸업업무로 허용하되 종합증권회사로서 영업용 순자본비율을 300% 이상 유지하는 증권회사 등으로 한정하고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및 그 중개를 영위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
- 심사결과(2002. 1. 16)
 - 원안의결

(2) 세무사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누락규제 1, 강화 1, 내용심사 3)
 - 현재 세무사는 보수 있는 공무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나, 공무원 중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비상근 공무원의 겸임을 허용하고, 영리업무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되 다만, 학교 출강·사외이사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영리업무 종사자(법인 포함)의 사용인은 될 수 없도록 함.(내용심사)
 - 세무사의 공인회계사·변호사 이외 다른 영리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세무사가 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경영지도사 등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도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토록 함.(내용심사)
 - * 현재 세무사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업무는 겸업할 수 있으나 별도 사무소는 설치할 수 없음.
 - 세무법인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법인의 구성원 및 자본금 요건을

- 강화하고,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며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한편, 세무법인의 설립 및 운용과 관련한 절차 등을 명확히 함.(누락규제)
- 세무법인은 재경부장관에게 등록
 - 5인 이상(사원 3인 이상)의 세무사로 구성
 - 자본금 2억원 이상
 -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 각 사무소마다 1인 이상 세무사 상근
 - 세무법인 해산 시 재경부장관에게 통보
- 세무법인 소속세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세무법인 소속세무사이었던 자는 당해 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세무법인이 수행 또는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세무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도록 함.(신설)
 - 세무법인의 정관 기재 사항 중 명칭, 사원, 자본금, 업무 등 주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경부장관에게 신고도록 함.(신설)
 - 현재 세무사 등록자 외에는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무사”라는 명칭은 물론 “이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하지 못함.(강화)
 - 2001년 1월 1일 전에 국세관서에 종사한 자는 향후 종전규정에 의해 요건(국세경력 10년 이상이고 5급 이상 5년 이상)을 갖추는 경우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도록 함.
* 1999. 12. 31 세무사법 개정안 부칙 경과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보완(내용심사)
- 심사결과(2002. 1. 18)
- 세무사 자신이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비상근감사의 겸직은 허용하되 세무사 자신이 기장대행·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비상근이사 또는 사외이사의 겸직은 제한하고, 경과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도록 개선권고(2002. 4. 12, 2002. 5. 1 재심사)
 - 세무법인의 정관변경신고에서 ‘사원 및 이사의 주소’는 변경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권고
 -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는 절대평가제로 선발하는 최소합격예정자수는 전년도 합격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pm 20\%$ 범위 내에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세무사 최소합격자수를 매년 500명 이상

이 되도록 시행하는 조건으로 원안의결

- 기타 사항은 원안의결

(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내용심사 1)

-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범위를 기존의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
- 외부감사 대상인 회사가 분할하거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 회사들이 합병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아니라 설립시점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
-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감사 및 사외이사를 제외한 임원을 배제하고 채권자 요건은 금융기관으로 한정

■ 심사결과(2002. 5. 1)

- 원안의결

(4) 관세사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내용심사 1)

- 관세사는 그 직무와 관련된 장부를 작성·비치하도록 함.(신설)
-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관세행정에 근무한 자가 일정기간 근무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사자격을 부여(내용심사)
 - 5급 이상 : 관세행정분야 10년 이상 근무하고,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연수를 마치면 관세사자격을 부여)
 - 6급 이하 : 관세행정분야에 20년 이상 근무한 자(특별전형을 거쳐 관세사자격을 부여)

■ 심사결과(2002. 6. 7)

- 관세사의 직무관련 장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로 수정하여 직무관련 장부의 범위 및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 20년 이상자에 대한 관세사자격 부여는 추후 시행령 개정 시 일반시험에 의한 최소 합격인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을 전제로 원안의결

(5) 관세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내용심사 1)
- 여행자유대물품의 반송신고시기 및 방법의 제한 근거를 마련(내용심사)
 - 여행자 휴대물품에 대하여는 그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여행자 휴대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반송신고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신고시기 및 방법에 의하도록 함.
- 통관전산망의 전산업무 수행대행자 지정·운영의 근거를 마련(신설)
 - 관세청장은 신고 등 통관관련 전산처리설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전산망의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심사결과(2002. 6. 7)
- 여행자유대품에 대한 반송제한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규제순응도 평가결과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과 “반송제한 대상물품·신고시기·신고방법 등에 대해 시행전에 규개위의 심사를 거치는 것을 전제로 원안의결
- 전산처리운영대행업자의 지정사항은 원안의결

(6)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내용심사 1)
- 신용카드업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유통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의 평균잔액이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에 의해 물품구매·용역제공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의 평균잔액을 초과해서는 안 됨.
- 신용카드 위·변조 시 예외적으로 회원이 책임지는 고의·중과실의 사유를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신용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로 정함.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자를 대신하여 신용카드 회원 등에 대해 주문취소, 환불 등에 대한 결제대행업체의 책임 등 결제대행업체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함.
- 심사결과(2002. 6. 14)
- 원안의결

(7) 증권거래법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내용심사 1)
- 단일거래당사자 원칙이 제외되는 대상 외국거래소시장을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거래소시장으로 정하는 등 증권회사가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를 할 경우 지켜야 할 거래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함.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감사종료보고서(감사보고서 포함)의 제출대상을 피감사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도 제출하도록 함.
- 심사결과(2002. 6. 19)
- 원안의결

(8) 은행법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시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단일거래금액 요건을 정하고 금감위가 금융기관에 대해 신용공여 제한을 명할 수 있는 부실 대주주의 요건을 정함.
- 심사결과(2002. 7. 3)
- 원안의결

(9)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2)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시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단일거래금액 요건을 정하고 금감위가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신용공여 제한을 명할 수 있는 부실 대주주의 요건을 정함.
- 금융지주회사가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등의 취급방침에 들어가야 할 사항을 정하고 동 취급방침의 교부·설명의무를 부과
- 심사결과(2002. 7. 3)
- 금융지주회사가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등의 취급방침의 교부·설명의무와 관련하여 “교부·설명하거나 통지하여야 하며”를 “교부·설명(컴퓨터 통신으로 게재를 개설하

는 경우 통지)하여야 하며”로 수정토록 권고

- 기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10)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내용심사 3)

- 상장지수증권투자신탁의 지수요건, 등록기간 및 설정·환매방법 등을 규정.
- 위탁회사가 각 신탁재산의 100분의 5(각 신탁재산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을 투자(주식 보유)한 경우 그 발행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여부 및 그 내용을 신탁재산운용보고서 및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함.
- 위탁회사와 계열회사 또는 판매회사간 인사 및 정보교류 등의 제한을 일부 완화하되 일정한 요건 하에 금감위 승인을 얻어 가능하게 함.
- 간접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여야 하며 사모발행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일정한 운용상의 제한을 설정함.

■ 심사결과(2002. 7. 3)

- 원안의결

(11)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1, 내용심사 2)

-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지수요건 및 설정·환매 등에 대해 정함.
- 증권투자회사는 당해 증권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당해 증권투자회사 순자산총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을 투자(주식 보유)한 경우 그 발행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여부 및 그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 및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함.
- 간접증권투자회사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여야 하며 사모발행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일정한 운용상의 제한을 설정함.
- 증권투자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4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되 최저 순자산액요건은 종전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임.

■ 심사결과(2002. 7. 3)

- 원안의결

(12) 담배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4)

- 담배 1개비의 연기 중에 포함된 성분 및 함유량 중 표시해야 하는 성분 및 표시대상·표시방법을 규정함.
 - 담배성분 표시값의 허용오차범위 및 허용오차범위의 초과여부에 대한 결정기준을 규정 함.
 - 담배성분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 함.
- 담배성분의 측정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하고 있는 연기성분 시험방법에 의하도록 함.
 - 성분측정은 매분기마다 품목별 샘플(궐련 60개비)로 실시하며, 판매개시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부터 판매중단 통보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측정을 받도록 함.
- 담배성분 측정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
 - 측정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 함.
 - 측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함.
- 재경부장관은 측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측정기관은 측정결과내역을 당해년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재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측정기관은 측정결과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재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심사결과(2002. 8. 2)
- 측정기관에 대한 관계장부 등의 확인 시 감독권 남용의 방지를 위해 점검공무원의 점검목적·내용·점검자 등을 기록하는 점검실명제를 반영하도록 개선권고
- 기타 사항은 원안의결

(13)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신용카드회사가 공시하여야 하는 대상에 신용카드 회원 등에 적용되는 신용등급의

분포현황을 추가함.

- 심사결과(2002. 8. 28)
- 원안의결

(14) 보험업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금융기관의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등 보험대리점 등으로 등록하는 금융기관이 모집을 함에 있어 금지되는 사항을 정함.
- 심사결과(2002. 9. 6)
- 원안의결

(15)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3)
-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대부거래 상대방이 20인 이하로서 광고를 하지 않는 자 등으로 정함.
- 대부업자가 대부계약 체결 시 교부하여야 하는 대부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 이자율 등을 다음과 같이 제한
 - 대부업자가 대부계약 시 수취할 수 있는 이자율의 상한을 연 100분의 66으로 정함.
 - 이자율 제한대상 소규모법인의 범위를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에관한법률상의 소기업으로 정하고 이 법 적용대상 대부금액의 한도를 3천만원으로 함.
 -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이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대부이자율의 100분의 130을 상한으로 설정함.
- 심사결과(2002. 9. 25)
-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와 관련하여 안 제2조제1호의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수정하도록 권고
-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과 관련하여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이 100분의 25 이내일 경우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연 100분의 66 이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금융권별로 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

- 나머지 사항은 원안의결

(16) 예금자보호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강화 2)
- 예금보험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정치활동을 금지
- 예금보험공사 임·직원 직무 외 영리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비영리업무의 경우 임명권자의 승인을 얻어 하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가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불이행자에서 부실관련자로 범위를 확대
- 부보금융기관은 매년 예금 등의 잔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연간 특별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함.
- 심사결과(2002. 9. 25)
- 원안의결

(17) 여신전문금융업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강화 6)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결제카드 발급 시 약관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
-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자격을 신설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등록토록 함.
- 신용카드업자는 분실·도난된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회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출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위하여야 함.
- 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이사·감사 또는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도 동 규제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일부 자격요건을 추가
- 금감위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일부사항을 추가
- 심사결과(2002. 10. 2)
- 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수정하도록 권고

-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다만,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자격에 대해서는 2004년 말까지 그 효과성에 대하여 재심의를 받고, 여신전문회사의 대출업무에 대해서는 2004년 9월 말까지 경과보고, 2006년 말까지 재심의를 받도록 권고

(18)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안)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6)

-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경제특구 내에서 토지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등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함.
-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특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기한 내에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재경부장관에게 개발사업시행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완료 시 재경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함.
- 외국인은 복지부장관의 허가·등록 시 경제특구 내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외국 의사·약사 면허자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약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되,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약업을 행하는 것은 금지
- 재경부장관이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및 시설에 대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경제특구의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로 제한하고,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심사결과(2002. 10. 9)

- 원안의결

(19) 신용협동조합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4)

- 단위조합의 임원 선거 시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금지

- 단위조합은 매사업년도의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입출자금 총액에 달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토록 하였으나 동 적립한도를 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로 인상
- 중앙회 임원은 그동안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었으나 금융전문가 등의 활용을 위하여 총 임원수(이 법안에 의해 15~25인)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인(회원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닌 자)으로 함.
- 중앙회는 이사회 내에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외부전문이사로 하도록 함.
 - 심사결과(2002. 11. 1)
- 원안의결

(20) 자산운용업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7, 강화 3)
- 자산운용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자본금 100억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추어 금감위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자산운용회사는 경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고유재산으로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투자증권의 취득 등을 할 수 없음.
- 금감위에 신탁약관을 보고하기 전에는 신탁형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금지.
- 판매회사의 임직원은 간접투자증권 판매 시 수익보장행위 등을 금하며, 판매하는 펀드의 정보를 고유재산 운용 등에 이용할 수 없음.
- 공인회계사에 의한 펀드 외부감사결과 회계처리 및 기준가격 계산 등이 회계처리기준 및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판매회사는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의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품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함.
- 판매회사의 판매가격은 자금납입 후 최초로 산출되는 기준가격(미래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판매회사 보수 또는 수수료는 투자자 또는 펀드에서 부담하여야 함.
- 투자회사의 이사는 자산운용회사인 이사(법인이사)와 감독이사로 구분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이사로 참여하도록 함.
-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자산운용과 관련된 확인 및 감독사항을 기재한 수탁회사보고서 또는 자산보관회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은행이 불특정금전신탁 운용 시 자산운용정보의 타용도 이용 등을 금지하며, 자산운용업 관련업무 영위 시 은행업과 직원겸직 등을 금지
 - 보험회사가 변액보험 운용 시 자산운용정보의 타용도 이용 등을 금지하며, 자산운용업과 보험업 간 직원겸직 등을 금지
 - 종금사가 자산운용회사 기능 시 자산운용정보의 타용도 이용 등을 금지하며, 자산운용업과 종금업 간 직원겸직 등을 금지
 - 펀드의 투기적 자산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 외에는 성과보수를 금지
 -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야 하고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자는 “자산운용” 또는 “투자신탁”이라는 문자를 상호에 사용할 수 없음.
 - 미성년자, 파산자, 수형자, 허가 취소된 금융기관 임직원, 해임된 금융기관 임직원 등은 자산운용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음.
 - 투자회사는 “투자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야 하고 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투자회사” 및 유사명칭을 상호에 사용할 수 없음.
 - 환매가격은 환매일의 직전 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하며 환매수수료는 투자자가 부담하고 간접투자재산에 귀속시켜야 함.
 - 투자회사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자기발행주식의 취득 및 질권 설정을 금하며 불가피하게 취득한 주식은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함.
 -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포함)는 원본보전과 분배의 평준화를 위해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으나 금감위는 필요시 동 적립을 명령할 수 있음.
 - 투자자문회사가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에 있어 이익상충 등 공정한 자산운용업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투자자문회사(겸영회사 제외)는 “투자자문”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야 하고 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는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이라는 문자를 상호에 사용할 수 없음.
- 심사결과(2002. 11. 15)
- 판매제한과 관련하여 상기 다섯 번째 규제내용만으로는 사유해소시기를 객관화하기 어려우므로 시행령에 사유해소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
 -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21) 신용협동조합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신협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회원은 동 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심사결과(2002. 11. 15)
- 원안의결. 다만, 보호대상에서 출자금 제외여부에 대한 여건판단기준 설정과 현황점검을 포함하는 출자금 제외여부에 대한 종합방안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규개위와 재협의할 것을 권고

(22) 예금자보호법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2)
- 예보가 부보금융기관의 보험사고 위험을 판단하기 위해 업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부실우려’ 대상기관의 기준을 금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금감위가 정하는 적기시정조치기준으로 함.
- 법에서 정한 한도범위 내에서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특별기여금의 부과요율을 예금잔액의 0.1%로 함.
- * 5년간 예금잔액의 0.3%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함.(법 제30조의 3 및 부칙 제2조)
- 심사결과(2002. 12. 4)
- 원안의결

(23) 관세사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3)
- 관세사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함.
 - 제2차 시험 합격자가 공고된 최소 합격 인원 미달하는 경우 공고된 인원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 관세사 일반시험의 최소 합격예정자수는 전년도 합격자의 $\pm 20\%$ 범위 내에서 정하되, 매년 70명 이상이 되도록 함.
- 비치의무 장부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고, 장부의 보관기간을 5년으로 규정.
 - 장부에는 업무의뢰자의 성명·주소, 의뢰내용, 처리내역 및 보수금액을 기재하도록 함.
- 심사결과(2002. 12. 4)
- 원안의결

(24) 세무사법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세무법인의 등록 시 구비서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 세무법인에 두는 대표이사의 수를 3인 이내로 함.
 - 세무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기준을 당해사업년도 매출액의 2%를 매년 적립 하되, 누적한도는 매출액의 10%까지로 함.
 - 세무법인의 타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25%로 함.(타인의 채무보증 10% 포함)
 - 세무법인이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경우의 상근세무사수를 1인 이상으로 함.
 - 세무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을 세무사회에 예치하도록 하고, 예치금의 실질잔액은 예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반환하도록 함.
- 심사결과(2002. 12. 4)
- 원안의결

(25) 전자금융거래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2)
 - 전자금융거래에서 금융기관 등은 이용자가 요청 시 2주 내에 서면 거래명세서를 제공하고 이용자로부터 오류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처리하고 2주 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함.
 - 금융기관 등이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급인으로부터 사전에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출금수권을 받도록 함.
 - 전자화폐의 발행자는 전자화폐 보유자가 요청 시 전자화폐를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하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도 카드결합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잔액이 20% 미만인 경우 반드시 잔액 전부를 환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여야 함.
 -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자는 전자화폐 등을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발행자를 제외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
 - 금융기관만 전자채권을 양수할 수 있도록 제한
 - 금융기관 등은 전자금융거래를 추적·검산하고 오류 발생 시 이를 확인·정정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 기록을 생성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함.(보관할 기록의 종류 및 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

- 금융기관 등은 계약체결 시 약관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요청시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약관의 변경 시는 변경약관 시행 1개월 전에 게시 및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해야 함.
- 금융기관 등은 이용자에 대해 전자금융거래의 이용 또는 계약체결 강제나 권리의 포기 또는 부당한 면책을 강요할 수 없음.
-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된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법령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 전자화폐를 발행하기 위해 인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최저 자본금 및 자기자본이 각각 50억원 이상이고, 기타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채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최저 자본금 및 자기자본(또는 기본재산)이 각각 5억원 이상으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에 대해 대출 등 신용공여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자지급 등 시행령이 정하는 수신행위를 할 수 없음.
- 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직불카드 등) 발행자는 가맹점 모집 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여부 등을 확인해야 함.

■ 심사결과(2002. 12. 13)

-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절차중 이용자가 거래명세서 등을 수령한 후 1개월 이내에 오류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 등은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초과 기간에 대한 이자지급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용자에게 부당한 손실부담을 주므로 삭제토록 권고
-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보존의무와 관련하여 소액의 반복적 거래에 대해서는 기록보관 부담 완화를 위한 근거규정을 두도록 권고
- 약관변경사유와 관련하여 변경요건 중 “제도의 개선” 부분은 약관의 긴급변경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삭제토록 권고
- 전자채권의 양도제한(상기 다섯 번째 규제내용)과 금융기관에 의한 이용강제의 금지 및 권리포기 강요금지(상기 여덟 번째 규제내용)은 철회권고
- 기타 나머지 사항은 원안의결

2. 금융감독위원회

가. 지난 5년간 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총 98개의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213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등록규제 중 83건의 규제를 강화함.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증권투자회사의 설립 시 모집에 의한 주식발행의 신고, 증권투자회사의 등록신청 및 자산운용회사(외국자산운용회사 포함)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증권투자회사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1998. 10)
-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관련 사항, 유동화자산의 관리 및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건전성 확보와 관련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자산유동화제도 도입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1998. 11 및 1999. 7)
- 잔존만기 90일 이내 단기외화부채에 대한 외화자산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유지토록 의무화함.(1998. 12)
- 전자문서 제출인의 등록 및 전자문서의 작성과 그 제출절차를 명시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해 금감위·증권거래소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보고 및 기타서류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1999. 1)
- 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일정 금융기관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 설정, 준법감시인 선임 등의 의무를 부과함.(1999. 11)
- 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등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기준을 설정하고 리스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토록 하는 등 리스크관리체제 구축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1999. 6 및 1999. 12))
- 증권회사 등의 무보증증권 인수를 제한하고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3개월도 단축하는 한편, 정기 또는 수시평가 결과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조정된 경우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에 불구하고, 새로운 신용평가를 의무화함.(1999. 12)
- 전화에 의한 보험모집(TM)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사이버몰의 설치·운영기준을

- 마련하여 보험영업범위를 확대하고 모집질서 유지를 위한 사항을 정함.(2000. 2)
- MMF의 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 발생 시 금융감독원장 앞으로 보고토록 하여 투자자보호를 기함.(2000. 10)
 - 금융기관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을 제정하여 전자금융업무 영위와 관련한 안전대책기준 마련, 거래내역·조건의 공시 등 안전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사항을 정함.(2000. 12)

나. 2002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 2002년도에는 보험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자산운용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증권업감독규정 등 20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42건, 강화 39건, 내용심사 18건 등 총 99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99건 중 2건에 대해서는 철회, 21건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권고하고, 76건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한 바, 금융감독위원회의 2002년도 총 신설규제수는 41건

(1) 보험업법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내용심사 1)
- 보험회사의 소유가능 자회사 업종을 늘리고 일정 업무의 경우 신고만으로 소유가 가능하도록 하되, 자회사에 대한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로 정함.
-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대표보험계리인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날까지 해임할 수 없는 등 대표보험계리인의 독립성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
- 심사결과(2002. 1. 30)
- 원안의결
 - 다만, 향후 보험업법 개정 시 보험사의 자회사 설립·감독근거를 마련한 후 보험계약관리업 및 보험자산운용업도 금감위 신고대상으로 함.
 - 향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 보험사에 대한 외부감사 시 독립보험계리인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2) 증권업감독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국내 상장·등록법인이 외국유가증권시장에 동시상장하기 위해 모집·매출하는 원주를 취득한 외국인은 취득한 원주를 증권예탁원에 보관하여야 함.
- 심사결과(2002. 2. 20)
- 원안의결

(3) 증권업감독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증권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당해 회사의 유가증권 매매권유 전에 일반고객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관련사항을 정함.
- 심사결과(2002. 3. 6)
- 매매권유의 공시에 대한 내용 중 “유가증권”을 “주식 및 주식관련채권”으로 수정하고 동규제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2002년 9월 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

(4)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재심사 1, 신설 1, 강화 1)
-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기준 및 전환금지기간 등을 마련하고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일정기간 분리된 사채만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함.
- 상장법인 등이 주식을 해외에서 발행하는 경우 일정한 적격시장에 한해 할 수 있도록 함.
- 해외 원주상장과 관련한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공시사항을 정함.
- 심사결과(2002. 3. 20)
- 원안의결

(5) 상호신용금고업감독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3)
- 요주의 분류자산에 대해 상호신용금고가 적립하여야 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100분의 1 이상”에서 “100분의 2 이상”으로 상향조정

- 상호신용금고의 결산공시기한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서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단축
- 상호신용금고의 자기자본비율을 “100분의 4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적기시정조치의 발동기준을 경영개선권고의 경우 “100분의 4 미만”에서 “100분의 5 미만”으로, 경영개선요구의 경우 “100분의 2 미만”에서 “100분의 3 미만”으로 강화
 - 심사결과(2002. 3. 27)
- 원안의결

(6) 보험업감독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이연법인세차를 차감하도록 함.
- 심사결과(2002. 4. 24)
- 원안의결. 다만, 2002년 9월까지 50%를 차감하고 내년 3월까지 나머지 50%를 차감하도록 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

(7) 상호금융업감독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 중앙회장의 부실조합에 대한 재무개선 요구사항에 출자금 감자를 추가
- 경영관리인은 경영관리 대상 조합의 이사장 등 임원에 대해 2주 이상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경영정상화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심사결과(2002. 5. 1)
- 원안의결

(8)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신용카드의 발급 및 모집관련 준수사항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소득증빙을 제출하는 자에 한해 발급하여야 하며 갱신·대체발급의 경우 발급 예정일로부터 6월간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회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이 확인되는 자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소득기준이 적정한 지를 심사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모집인에 의한 모집, 가두모집, 경품제공을 통한 모집 등을 금지하고 사업장 방문을 제외한 방문모집의 경우 사전동의를 얻도록 함.
- 심사결과(2002. 6. 14)
- 금감위의 소득기준에 대한 시정명령권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접적인 위임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추후 법제처 법안심사 시 동 조항을 삭제하고 금감위에 대한 시정명령권 부여 대신 기타 세부발급기준을 금감위가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
- 여전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모집인에 의한 모집금지의 경우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추후 법제처 법안심사 시 삭제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권고
- 모집행위와 관련하여 “경품을 제공하거나 여·수신 등의 거래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중 “여·수신 등의 거래조건으로”를 삭제하고 경품에 대해서는 추후 법제처 심사 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도록 권고
- 가두모집 및 방문모집 제한 등 모집방법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되, 2003년 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재심사를 받도록 권고
- 기타 나머지 사항은 원안의결

(9) 증권거래법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공매도 금지 및 내부자거래 제한 대상 유가증권에 개별주식옵션을 포함.

- 심사결과(2002. 6. 19)

- 원안의결

(10)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6, 강화 1, 내용심사 4, 기타 1)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
- 방문모집 시 사전동의를 받는 방법 및 사전동의 적용 예외 대상인 사업장의 범위를

정함.

- 결제능력 심사를 위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심사기준 변경 시 금가위에 보고토록 함.
-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과 가맹점 계약을 맺을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 신용카드 회원 신용정보의 유출 등 금지 및 신용정보제공 동의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
-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추심할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 카드이용대금에 대해 신용카드회원의 이의제기 시 조사 및 통보절차를 정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개시될 경우 신용카드대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분류시 신용도를 수익기여도보다 높게 책정하고 회원이 적정하게 분포되도록 함.
- 신용카드업자가 약관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 회원모집행위가 금지되는 길거리의 범위를 도로 및 사도, 공원, 역, 상가 등으로 정함.
- 연회비가 없는 경우 평균연회비를 1만원으로 정함.
- 업무제휴 등을 한 경우 오인의 소지가 있는 카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됨.
- 심사결과(2002. 6. 26)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과 관련하여 원안의결하나 다만, 동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권고
 - 사업장의 범위에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건물의 업무용시설을 포함하도록 권고
 - 결제능력 심사기준 등과 관련하여 신규회원과 기존회원의 구별 없이 월평균결제능력과 신용도 및 이용실적(기존회원의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하도록 수정하도록 권고
 - 신용카드 가맹점계약과 관련하여 본인확인에 관한 사항을 대면거래 시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전자상거래 시에는 전자인증, 비밀번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수정하도록 권고
 - 채권추심 시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본문의 괄호를 삭제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채권을 양도할 경우 준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양도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며, 조문내용 중 “정당한 사유”를 “채무이행의무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로 예시하여 구체화할 것을 권고

- 신용카드회원의 분류기준 내용 중 “회원의 결제능력을 포함한 신용도를 수익기여도 보다 높게 반영하고 등급별로 회원이 적정하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회원의 결제능력을 포함한 신용도, 수익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토록 권고
- 길거리의 범위 내용 중 ‘지하철역’ 및 ‘기차역’을 ‘역’으로 하고 ‘놀이공원’, ‘버스터미널’, ‘운동경기장’을 각각 ‘놀이동산’, ‘여객자동차터미널’, ‘운동장’으로 수정하도록 권고
- 업무제휴 등과 관련한 카드발급 준수조항은 철회를 권고
- 기타 나머지 사항은 원안의결

(11)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정확하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시의 금지사항을 정함.
- 심사결과(2002. 6. 26)
- 공시시의 금지사항은 삭제하도록 권고

(12) 은행법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자은행은 모은행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다음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모은행의 다른 자은행에 대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안 됨.
 - 다른 자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 당해 자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 다른 자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 : 당해 자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 심사결과(2002. 7. 3)
- 원안의결

(13) 증권업감독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내용심사 1)
-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기타보고 관련사항을 정함.

- 외국환업무취급 증권회사의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월별로 외국환포지션 상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심사결과(2002. 7. 10)
- 원안의결

(14) 보험업감독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1)
- 보험회사가 재보험계약을 할 경우의 인정요건을 마련하고 금융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재보험 관련 사항을 정함.
- 외국환업무취급 보험회사의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월별로 외국환포지션 상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심사결과(2002. 7. 10)
- 원안의결

(15)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MMF의 가중평균 잔존만기 산정 시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도 포함시키고 잔존만기 역시 120일 이내로 정하는 등 MMF의 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
 - 심사결과(2002. 7. 10)
- 원안의결

(16) 증권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재심사 1)
- 장외 외환파생금융거래(증권회사) 및 외환시장(증권회사·보험회사)에 참여하는 회사의 외국환포지션 관리의무를 월별관리에서 일별관리토록 수정하여 재심사를 요청
 - 심사결과(2002. 7. 24)
- 원안의결

(17)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외부감사 대상 신용협동조합 선정시 제외기준으로 운용되는 신협중앙회의 계량지표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등급기준을 폐지하고 감사의뢰대상에서 제외되는 회계분식조합의 자산총액기준을 현행 1백억원에서 70억원으로 축소
- 심사결과(2002. 8. 14)
- 원안의결. 다만, 추후 동 규제를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에 상향 규정화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4조의 개정을 추진토록 함.

(18) 증권업감독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 국내 증권·보험사의 해외지점 및 해외현지법인을 경영실태 계량평가 대상에 포함.
- 심사결과(2002. 8. 14)
- 원안의결

(19) 보험업감독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3)
-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자회사의 자본과부족을 반영하고 생보사의 지급여력 기준금액 산출 시 위험보금기준금액 산출항목에 재보험 수재분을 반영하는 등 지급여력비율과 관련한 제도를 강화
-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도 결산서류 제출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화재보험의 보험안내자료에 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청구방법 및 절차, 재조달가액담보특별약관의 내용,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보험금이 다르게 결정되는 점을 명시하도록 함.
- 심사결과(2002. 9. 4)
- 원안의결

(20) 보험업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5, 강화 4)
- 임원의 자격기준 규제 대상에 사실상 이사 또는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시키고 자격기준 일부를 강화.

- 보험모집종사자 등이 부당한 보험전환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당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부활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으로,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2008년 3월 말까지 동 한도에 적합하도록 유예기간을 설정.
- 보험회사가 대주주와 직 · 간접으로 해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을 설정하고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 이사회 전원의결을 거치도록 함.
-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일정한 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 및 업무수탁자에 대해서도 금감위는 자료제출 · 보고 · 검사를 할 수 있음.
- 금감위는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영치, 물건 · 장부 등의 조사 등을 할 수 있음.
- 법령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의 경우 제3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함.
- 가입대상을 일반인으로 하는 공제 및 가입대상을 조합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공제로서 일정 공제에 대해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고 금감위는 공제에 대해 감독기준을 제시할 수 있음.
- 금감위는 보험회사에 대해 일정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심사결과(2002. 9. 6)
 -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시 계약부활의무와 관련하여 기타 제도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
 - 대주주에 대한 투자한도규제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고, 금감위앞 계획안 제출도 2004년 3월 말까지로 하도록 권고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내용 중 ‘규정을 위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로 하도록 권고
 - 기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21) 은행업감독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내용심사 2)
- 비금융주력자가 금융주력자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승인요건을 정하고 2 이상의 외부전문기관부터 평가를 받도록 함.
- 은행의 대주주 발행 비상장 · 비등록 주식의 취득한도를 자기자본의 1천분의 1로 정하고 대주주와의 거래 시 공시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 자은행이 모은행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경우 확보해야 할 담보비율을 정함.
 - 심사결과(2002. 9. 11)
-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의 평가를 의뢰하는 주체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로 수정하도록 권고
- 대주주 발행 비상장·비등록 주식의 취득한도를 1천분의 5로 수정하도록 권고
- 기타 나머지 사항은 원안의결

(2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3)
- 비금융주력자가 금융주력자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승인요건을 정하고 2 이상의 외부전문기관부터 평가를 받도록 함.
-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 발행 비상장·비등록 주식의 취득한도를 자기자본의 1천분의 1로 정하고 대주주와의 거래시 공시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정보관리인이 작성해야 하는 업무지침서에 들어가야 할 사항을 정하고 개인신용정보 등의 취급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 심사결과(2002. 9. 11)
-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주체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로 수정하도록 권고
- 대주주 발행 비상장·비등록 주식의 취득한도를 1천분의 5로 수정토록 권고
- 기타 나머지 사항은 원안의결

(23) 증권업감독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외국인이 ETF에 투자할 경우 환매청구 시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취득한도 제한 대상 주식에 대한 일시적 한도초과 보유를 인정하되 매각의무를 부과
 - 심사결과(2002. 9. 18)
- 원안의결

(24) 신용협동조합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6, 강화 3)

- 조합원의 출자금을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담보대출을 금지함으로써 출자금의 자본금 성격을 명확히 함.
 - 중앙회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회 임직원이 직무수행 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내부통제기준”)을 정함.
 - 또한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준법감시인”)를 1인 이상 두어야 함.
 - 신탁중앙회는 현재 신용사업 등 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자금차입 및 타법인 출자 시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수납한 예적금 및 상환준비금 등의 자금을 조합에의 대출, 유가증권의 매입, 금융기관 예치 등으로 제한하고 유가증권의 종류 및 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중앙회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사업년도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매월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달까지 조합은 중앙회에, 중앙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금감원의 조합에 대한 검사 결과 재무건전성 등이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경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 관리인을 선임하여 경영관리를 할 수 있게 함.(현재는 재무건전성 악화 시 중앙회장의 건의를 통하여 경영관리 가능)
 - 조합 또는 중앙회가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지 않거나 업무보고서의 미제출 또는 허위 기재 등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함.
- 심사결과(2002. 11. 1)
-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일상적인 업무활동에 필요한 차입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
 - 기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2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학원·유흥주점 등 화재발생 위험이 타 업종보다 다소 높은 특수건물의 면적기준을 하향조정(3,000→2,000㎡)하고, 휴양콘도미니엄업·여관업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을 특수건물의 범위에 신규로 추가

- 심사결과(2002. 11. 6)
- 원안의결

(26)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2호의규정에의한여신
금융기관의연체이자율에관한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비은행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이 연 25%를 초과하는 경우 연체이자율의 상한은 대출이자율에 연 12%를 가산한 이율로 함.
- 심사결과(2002. 11. 6)
- 원안의결

(27) 은행업감독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1)
- 금융기관은 매 회계년도의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 이상을 단순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5에 달할 때까지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 현재 은행은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5단계로 분류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데, 이번에 가계자금대출금 및 신용카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비율을 과거평균손실률을 감안하여 상향조정.
- 심사결과(2002. 11. 13)
-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적립은 경영지도 차원에서 지도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화할 경우 경영자율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회권고
-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의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2003년 6월 말까지 대출종류별로 평균손실률을 반영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재설정하도록 권고

(28) 자산운용업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6, 강화 6)
- 수탁회사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및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 금감위에 등록하여야 함.

- 자산보관회사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및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 금감위에 등록하여야 함.
- 판매회사(증권사, 은행, 보험사)는 금감위에 등록하여야 하며, 판매회사의 본 지점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음.
- 신탁약관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중요사항 변경은 모든 수익자에게, 기타사항 변경은 신문공고를 통해 공시하여야 함.
- 펀드의 건전한 재산운용을 위해 유가증권 동일인투자한도와 유사한 재산운용규제를 파생상품 및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등에도 적용
- 자산운용회사는 건전한 재산운용을 위해 일정한 행위준칙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관계인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
- 자산운용회사는 펀드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내부에 자산평가위원회와 간접투자재산평가기준을 설치·마련하여야 함.
- 펀드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모든 펀드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나 휴면펀드 등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는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 정관을 투자자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하며, 운용전문인력의 변경과 같은 중요사항은 수시로 공시하여야 함.
- 신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부당한 운용지시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준가격 산정 등 투자자 보호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펀드운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간접투자재산평가회사는 금감위에 등록하여야 하며 일정한 행위준칙을 준수하여야 하고펀드 내 채권 등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도 금감위에 등록하여야 함.
- 자산운용회사는 결산기마다 결산서류를 작성하고, 이사회 승인 후 금감위에 제출하며 대차대조표는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신탁의 경우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영업소 및 판매회사에 송부하여 비치하여야 함.
- 심사결과(2002. 11. 15)
- 원안의결

(29) 증권업감독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당일 결제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채권장외거래 결제일을 T+0~T+14에서 T+1

~T+30일로 변경

- 다만,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소매채권매매 및 MMF의 채권거래는 예외적으로 당일 결제를 허용하고, 결제일 변경에 따른 전산정비 및 관행개선 등을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2003. 6. 1 시행)을 정함.

- 심사결과(2002. 12. 11)

- 원안의결

(30)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등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6, 강화 2, 내용심사 2)

- 위탁회사의 운용전문인력은 금융회사 1인의 사모단독펀드를 운용할 경우 공모펀드를 동시에 운용할 수 없음.

- 유가증권 등을 납입받아 신탁펀드를 설정할 경우 수익자가 1인인 사모단독펀드로 하고 가격의 정당평가가 곤란한 유가증권* 등의 편입을 금지

* 부도채권, 관리 및 투자유의종목, 비상장·비등록주식, 기타 즉시 유동화가 곤란한 유가증권

- 사모단독펀드에 대해서는 다른 펀드와의 주식 및 채권의 자전거래(투자신탁 상호간에 동일종목을 동일한 수량으로 동일한 시기에 일방이 매도하고 다른 일방이 매수하는 거래)를 금감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 제한

- 자산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신탁펀드 또는 뮤추얼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모단독펀드로 하고 자산운용지침서를 마련하는 한편 내부통제기준에 주요 절차 등을 명시하여야 함.

- 또한 일부 금융권의 경우 위험가중치 계산이나 유가증권투자한도 준수여부 판단 시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 심사결과(2002. 12. 11)

- 사모단독펀드의 운용기준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은행의 경우 근거 마련시까지 당분간 유가증권투자한도 등 관련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사모단독펀드제도를 제한적으로 이용토록 관리할 것을 권고

- 기타 나머지 사항은 원안의결

(31) 전자금융거래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8)

- 금감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금감위는 필요한 경우 공인인증서 사용 등 인증방법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금감위는 전자화폐 등 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충전한도와 전자자금이체·지급결제대행의 이용한도를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
- 전자금융거래 약관은 미리 금감위에 보고하고, 금감위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음.
- 전자화폐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금감위의 인가를 필요(은행 및 시행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예외)하고 전자자금이체업무 등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금감위에 등록해야 함.(은행 및 시행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예외)
- 금감위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에게 총발행 잔액의 10% 범위 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금감위는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업무 및 재무 상태에 대해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고, 전자금융보조업자와의 업무제휴 약정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일정한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감위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전자화폐 발행자로 인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합병·해산·폐지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심사결과(2002. 12. 13)

- 전자금융업의 등록말소 중 신청에 의한 경우는 등록취소에 비해 등록신청 제한시 “차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금지기간을 1년으로 하고 전자금융업의 인가·등록취소 요건중 대통령령에 위임된 세부요건은 인가·등록 요건 중 물적시설 및 재무건전성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로 변경하도록 권고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공탁의무와 관련하여 전자금융업자에 한하여 공탁제도를 운영하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제도와 중복 규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 기타 나머지 사항은 원안의결

3. 관세청

가. 지난 5년간 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총 1개의 법률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1건의 규제를 신설.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외국에서 1년(가족 동반의 경우 6월) 이상 거주한 자가 입국 시 전 거주지에서 자동차를 반입 시에는 전 거주국에서 등록하여 3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2001. 8. 29)

나. 2002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내역 : 없음

제3절 _ 산업자원분야

*집필자 : 이종협 사무관(Tel.3703-3927, bird@opc. go. kr)

1. 산업자원부

가. 지난 5년간 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총 23개의 법률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122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등록규제 중 119건의 규제를 강화함.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요금의 100분의 7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100분의 6.5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연차적으로 부담금을 축소해 나가도록 권고(전기사업법)
- 송전사업의 통합운영을 지속해야할 필요성 때문에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 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송전사업에 대하여는 2 이상의 사업자를 허가하지 않고자 했으나 철회하도록 권고(전기사업법)
- 전기판매사업자에 의해 발행되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 등 각 단계별로 발생한 요금을 구분하여 명시(전기사업법)

- 유통중인 가스용품을 수집·검사하여 불량품인 경우 기존에 회수 명령만을 할 수 있던 것을 불량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은 허용하는 한편, 불량제품의 교환과 환불도 가능하도록 개선명령 사항에 추가할 것을 개선 권고(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 에너지 수급상황의 변화 또는 에너지 가격의 변동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에너지 공급자가 수립하여 제출하는 수요관리 투자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시행토록 강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전력시장의 경쟁체제가 도입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토록 일몰제(5년) 도입 권고
- 산업자원부장관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에너지 사용자 및 공급자에 대하여 동 기자재의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의 신설을 인정하되, 모든 소비자에게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 판단하여 공공부문에 한정하도록 개선 권고(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수출자유(자유무역)지역물품의역외수리가공승인요령등에관한고시”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던 물품 처분시 신고 의무, 물품관리 상황의 기록보존 의무를 법률에 규정토록 하고, 물품의 폐기, 양도, 임대 등을 업체의 자율에 맡기도록 개선 권고(자유무역지역지정등에관한법률)
- 입주허가의 취소요건에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기업체가 장기간 휴·폐업하는 경우에 입주허가를 취소하는 근거를 신설(자유무역지역지정등에관한법률)
- 천연가스 인수기지에 설치하는 초저온 저장탱크에 대해 저장성 탱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특정설비의 허가범위를 확대하고자 했으나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규정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품검사를 받도록 개선 권고(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최근 3년간 이월결손금이 연속 발생하거나 부채비율이 업종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 등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의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기업으로 경영정상화가 필요하거나 부채비율이 업종 평균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사업전환이 필요한 기업으로 경우로 개선할 것을 권고(산업발전법시행령)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등록 후 2년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납입 자본금의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을 기업인수와 인수한 기업의 정상화 및 매각사업에 운용하여야 하며, 2년 이후에도 동 비율이상의 금액을 계속 기업인수와 인수한 기업의 정상화 및

매각사업에 운용하도록 기준을 제시(산업발전법)

- 승강기의 범위에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휠체어리프트(경사형·수직형)을 포함시켜 법정검사(기관검사·자체검사)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 충전사업자·집단공급업자·판매업자·저장자 등이 사업 또는 사용을 휴지·폐지 또는 재가동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업재개시의 신고의무는 삭제하도록 개선권고(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 동일 주유소 내에서 공급자(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가 다른 복수상표의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장시설 및 주유기를 공급자별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하여 “비상표제품”은 하나의 공급자제품으로 인정하도록 개선권고(석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1. 7. 25)
-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기준(기술능력·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별로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제를 강화(전기공사업법, 2001. 8. 22)
-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후가스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밀 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도록 명문화하고, 검사주기를 4년으로 운영하도록 권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001. 10. 17)
- 에너지 최저 소비효율기준 달성 및 효율등급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품목에 식기세척기와 전기냉온수기를 추가함.(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운영규정, 2002. 1. 16)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자본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하고 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 또는 예치·출자하여 전기공사에 필요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며, 사무실의 면적기준을 30㎡로 함.(전기공사업법시행령, 2002. 6. 26)
- 단란주점·유흥주점 및 사용승인 신규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완성검사를 받도록 함.(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2002. 10. 23)

나. 2002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 2002년도에는 산업발전법시행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등 22개 법령에 대해 신설 10건, 강화 35건, 내용심사 11건, 누락규제 4건 등 총 60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60건 중 3건(신설 1, 강화 1, 내용심사 1)에 대해서는 철회, 21건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권고하고, 36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산업자원부의 2002년도 총 신설규제 수는 9건임.

(1)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규정(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현재 승용차에 한정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연비측정대상을 특수형을 제외한 15인승 승합자동차까지 확대.
- 심사결과(2002. 1. 9)
- 원안의결

(2)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운영규정(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에너지최저소비효율기준달성 및 효율등급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품목에 식기세척기와 전기냉온수기를 추가
- 기시행 중인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 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가정용가스보일러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조정
- 심사결과(2002. 1. 16)
- 원안의결(단, 최저 소비 효율 기준을 80% 수준까지 상향조정하도록 권고)

(3)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PE 배관의 맞대기 용착은 두께가 같은 관을 사용하도록 하고, 용착에 사용되는 용착기는 연 1회 제조(수입)자의 점검을 받도록 함.
- 심사결과(2002. 2. 27)

- 용착기의 검사기관을 제조(수입)사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변경하고, 검사수수료는 최소한의 비용이 되도록 운영하도록 개선권고

(4)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4)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LPG충전시설의 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함.(강화)
 - LPG충전사업자에 대해 매분기별 거래상황(제품별 매입·매출 상황)을 산업자원부에 보고토록 함.(신설)
 - 가스사고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가 특히 큰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을 다중이용시설로 규정(강화)
 - 용기보관실 내에서 가스폭발 시 발생하는 압력을 지붕방향으로 분출하여 피해범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 지붕을 가벼운 불연성재료로 설치하도록 함.(강화)
 - 용기보관실 협소로 용기를 노상에 방치하거나 차량에 적재보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보관실의 면적을 19㎡ → 30㎡로 상향조정
 - LPG자동차를 직접 취급하는 정비업 종사자 및 폐차업 종사자에게 가스안전에 관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여 가스사고를 방지(강화)
- 심사결과(2002. 2. 27)
 - 판매업소 용기 보관실의 면적상향에서 “판매업소 용기보관실의 허가면적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개선권고
 - 기타 신설 1건, 강화 3건은 원안의결

(5) 산업발전법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6)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납입자본금을 상향조정(30억원 → 70억원)하고, 전문인력의 보유기준을 설정.
 - 보유기준 : 3인 이상
 - 자격기준 :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및 학위소지자, 변호사·공인회계사로서 구조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구조조정대상기업 요건 판단 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사인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의하도록 규정
- 전문회사의 핵심업무 이행비율을 상향조정
 -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 → 100분의 20 이상
- 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신청 시 조합출자금에 대해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운용 하도록 명시
- 조합의 핵심업무 이행비율 상향조정
 - 조합출자금의 100분의 20 이상 → 100분의 40 이상
 - 조합재산의 독립회계 관리, 사업계약변경 시 조합총회 승인, 수탁기관의 선관주의 및 조합재산과의 구분관리
- 전문회사의 결산서 제출 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첨부
 - 반기별 제출서류를 명시(최근 6월간의 투자실적, 자금조달방법, 주주변동 현황, 이사회 의사록 등)
- 심사결과(2002. 3. 6)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전문인력 자격기준 중 학위소지 등과 관계 없이 일괄 3년의 근무경력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학위·자격 소지자, CRC·CRV·CRV의 AMC 종사자에 대하여는 근무경력을 2년이 상으로 수정하도록 개선권고
- 전문회사의 반기별 제출서류 중 ‘이사회 의사록’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기타 강화 4건은 원안의결

(6) 가격표시제실시요령(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매장면적 33㎡ 이상의 도·소매 병행점포를 소매점포와 마찬가지로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에 포함.
 - 특정시장 또는 지역에 대하여 일정 매장면적 이상 또는 매장면적에 관계없이 시·도지사가 가격표시 의무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심사결과(2002. 3. 20)
- 시·도지사가 시장 또는 지역을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 또는 지역의 상인협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하고, 도·소매

병행점포의 경우는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을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 또는 지역의 점포로 한정하고, 판매가격표시대상도 소매하는 물품으로 한정하도록 개선권고

(7) 한국전력공사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한전에 대한 정부지분이 5할 미만으로 감소하였으나, 한전을 정부투자기관으로 존속 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보유한 한전주식을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한 경우에도 정부투자기관으로 간주하도록 특례를 규정
- 심사결과(2002. 4. 10)
 - 원안의결

(8)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1)
 - 외국용기등 제조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외국용기등 등록대상을 용기(부속품 및 안전밸브 포함), 고압가스특정설비중 저장탱크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규정.(신설)
 -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았을 것”을 추가하고, 기존 검사기관에 대하여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동 기간 내에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강화)
- 심사결과(2002. 6. 12)
 - 원안의결

(9)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 송유관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건축물, 공작물 설치공사 시 산업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건축물·공작물 연면적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의 변경은 신고토록 함.
 - 신설되는 송유관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술기준을 적용토록 함.
- 심사결과(2002. 6. 12)
 - 원안의결

(10) 해저광물자원개발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1)
- 해저조광권을 상속, 양도 및 법인의 합병에 따라 승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되, 해저광물자원 개발활동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자에게 승계 되도록 사전에 산업자원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함.(신설)
- 탐사권 및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다음사항을 추가(강화)
 - 제12조에 의한 조광계약을 위반하거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과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
- 심사결과(2002. 6. 19)
- 원안의결

(11) 전기공사업법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1)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강화(강화)
 -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하고 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 또는 예치·출자하여 전기공사에 필요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며, 사무실의 면적기준을 30㎡로 함.
-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요건을 정하고, 학력·경력에 의한 초급 및 중급전기 공사기술자에 대하여 3년마다 20시간의 양성교육훈련을 실시(신설)
- 심사결과(2002. 6. 26)
-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은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상향 변경 시에만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선권고

(12) 전기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3, 내용심사 2)
- 전기사업용 전선로가 당해 전선로의 이설계획에 따라 이설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는 이설비용을 전액면제하며, 당해 전선로가 설치되어 30년이 경과된 후 국가시행 공익사업으로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게 되어 이설하는 경우는 이설비용의 30% 감면(내용심사)
- 기력·가스터빈 등 화력발전설비에 일정한 최고사용압력 이상으로 설계된 압력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등 변경공사 시 용접부분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함.(강화)

- 풍력발전설비의 풍차 설치 또는 대체 등 변경공사 시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함.(강화)
- 자가용전기설비의 수력발전설비에 대하여 4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강화)
-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기화재사고, 감전사고 및 전기설비사고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사고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내용심사)
 - 심사결과(2002. 7. 3)
- 전기화재사고 등 중대한 사고의 통보기준 중 “전기화재추정사고”는 삭제하도록 개선 권고
- 기타사항 강화 3건, 내용심사 1건은 원안의결

(13)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누락 3, 강화 1)
 - 승강기 안전관련 종합정보(시설 및 환경, 유지관리품질, 검사이력, 운행상태 등)를 이용하여 개별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평가를 실시하고, 동 평가결과에 따라 개별 승강기에 대해 안전관리등급을 3단계로 구분(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하여 차등 관리(신설)
 -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요건에 안전관리평가결과 ‘중점관리등급’에 해당하는 승강기 중 검사기관으로부터 지정요청이 있는 승강기를 추가(누락규제)
 - 검사기관은 ‘중점관리대상등급’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특별관리대상승강기 지정요청을 위해 승강기의 관리주체·제조업자·보수업자에 대하여 승강기의 제조·보수 또는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서류와 기타 물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연장 요건에 안전관리평가결과 ‘우수관리등급’에 해당하여 산자부장관이 정기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할 것을 추가(누락규제)
 -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사후관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자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고시의 근거를 마련
 - 승강기의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다음사항을 추가(강화)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 행정처분의 기준을 경고에서 지정취소까지 처리절차를 세분화(누락규제)

■ 심사결과(2002. 7. 10)

-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평가규정 신설은 철회권고
-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누락규제의 강화)은 철회권고
-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연장을 안전관리평가와 연계하는 규정(내용심사)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승강기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누락규제)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개선권고
 - 본문 규정 중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
 -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별표 7의 5 중 1차 위반 시 지정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를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별표 제7의 5 검사기관의 행정처분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
 - 제4호에 “검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검사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를 추가
 - 제3호의 “가목 및 나목을 삭제”하고 처분기준을 가목기준으로 수정
- 승강기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강화는 원안의결

(14) 액화석유가스공급구역제한에관한조정명령공고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LP가스공급자가 허가를 받은 허가지역 내(시·군·구)에서만 LP가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공급구역을 제한하는 규제의 존속기한을 8개월간 연장(현행 2002년 7월 31일까지에서 2003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

■ 심사결과(2002. 7. 24)

- 철회권고

(15)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이동식 CNG(천연압축가스)충전소의 시설기준에 현행 고시에 규정된 고정식 자동차 충전소의 설치기준을 동 별표로 이기하고, 이동식 자동차 충전소의 설치기준을 신설

■ 심사결과(2002. 8. 14)

- 원안의결

(16)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내용심사 3)

-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협의대상을 확대(강화)
 - 대상시설
 - 연간 연료 및 열사용량이 1만TOE 이상 → 5천TOE 이상
 - 연간 전기사용량이 4천만kW/시 이상 → 2천만kW/시 이상
 - 대상사업
 - 도시개발 60만㎡(단 유통단지개발 40만㎡) 이상 → 30만㎡ 이상
 - 산업단지개발 30만㎡ 이상 → 15만㎡ 이상
 - 관광단지개발 50만㎡ 이상 → 30만㎡ 이상
 -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
- 효율관리기자재 시험기관 지정요건을 강화(강화)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자”를 지정요건에 추가하고, 기 지정받은 시험기관에 대하여는 1년 6월의 유예기간을 부여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방법, 개선기간, 공표방법 등에 대해 규정(내용심사)
 - 대상기자재를 자동차로 정함.
 - 개선이행기간을 개선명령일로부터 그 익년도 말일까지로 함.
 - 공표는 관보 또는 일간지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함.
 - 에너지소비효율산정방법을 정함.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에너지관리대상자 등에 대한 각종 보고 및 검사의 내용에 대해 규정(내용심사)
 - 보고사항 : 영업실적 등 2종
 - 검사사항 :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 8개 사항
- 법률개정 시 신설된 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를 추가(내용심사)
 - 민간사업주관자의 에너지사용계획 제출의무 위반시 등
- 심사결과(2002. 8. 28)
 - 에너지사용계획 제출·협의대상의 확대(강화)는 공공사업주관자에 한정하고, 민간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현행기준을 유지하도록 개선권고

- 규제대상을 공공사업주관자와 민간사업주관자로 구분하여 규제내용을 명확하게 할 것.
 - 민간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권고내용의 수용여부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한 자료의 제출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할 것.
 - 과태료부과기준(내용심사) 중 공공사업주관자에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선권고(사업주관자 → 공공사업주관자)
 - 기타 강화 1건, 내용심사 2건은 원안의결
- * 기타사항 :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협의 등”에 대하여는 시행 후 규제 순응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규제위에 보고하도록 권고

(17)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내용심사 1)

- 법률에서 위임한 기타 대체에너지이용 의무화 대상기관 및 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정함.(강화)
 - 기타 의무화대상 :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연기관 및 지자체가 납입자본금을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회사,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
 - 대상건축물: 적용대상기관이 신축하는 1,000㎡ 이상의 건축물(용도에 따른 대상 범위와 요건, 대체에너지설비의 종류·설치기준, 이용비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산자부장관이 고시로 정함.)
- 의무화 대상기관의 장은 이행현황 및 매년 전년도 이행실적을 산자부장관에게 제출하고도도록 함.
 - 신축 건축물에 대한 대체에너지이용 의무화 이행현황 제출(건축물 준공 후 3개월 이내)
 - 전년도 대체에너지 이용실적 제출(매년 1월 말까지 제출)
 -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이용 의무화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함.
- 대체 에너지설비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사항 및 인증의 사후관리사항을 규정(강화)
 - 산자부장관은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 시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산

자부장관이 고시로 정함.

- 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심사기준, 인증절차, 인증의 사후관리 등을 규정
- 대체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를 규정
- 과태료의 금액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기준으로 규정(내용심사)
 - 심사결과(2002. 9. 4)
 - 대체에너지의 이용의무 강화에서 대상자기준 중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 및 대상 건축물’을 삭제하고, 이용의무화 대상기관장에 대한 ‘의무화 이행현황 및 이행실적의 제출의무’도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 시 산자부장관이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규제의 객관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제처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개선권고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산자부장관이 임의적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18)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누락규제 1, 강화 2, 내용심사 1)
- 설계사·감리원에 대해 인정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신설)
 - 전력기술인의 기술부재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사는 최초로 설계사 면허증을 발급 받을 때, 감리원은 학력·경력 및 순수 경력에 의하여 감리원 수첩을 발급 받거나 상위 등급을 받을 때, 해당 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인정교육과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다만, 감리원 중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 전력기술인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경력신고·관리 수수료는 산업자원부장관의 고시기준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함.(누락규제)
- 감리업자 이외에 공공기관이 소속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자체 감리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감리원 배치현황(변경포함)을 14일 이내에 산자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신고하도록 함.(강화)
- 설계업·감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준자본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단체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강화)

-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수수료 기준을 조정(내용심사)
 - 심사결과(2002. 9. 11)
- 인정교육대상자 중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사면허를 발급받은 자”는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를 “산자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로 하도록 한 사항을 “산자부장관”으로 수정하도록 개선권고
-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수수료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개선권고
-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경력신고관련 사항(누락규제)은 원안의결
- 설계업·감리업의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의무(강화)는 원안의결

(19)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4)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단란주점·유흥주점 및 사용승인 신규건축물을 추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액화석유가스시설에 대하여 완성검사를 받도록 함.
- 가스공급자의 부담으로 공급·소비설비를 설치하고 체적거래방법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상의 계약기간을 설정하도록 함.
 - 가스공급자의 부담으로 공급설비만 설치시 : 주택 1년 이상, 주택 이외 6개월 이상
 - 가스공급자의 부담으로 공급설비 및 소비설비 모두 설치 시 : 주택 2년 이상, 주택이외 1년 이상
 - * 소비자와 가스공급자간의 합의에 의해 가스공급자의 부담으로 체적거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공급자에게 자기가 공급하는 사용자시설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동·호수를 표시하도록 하고, 안전수칙에 관한 계도물을 제작하여 사용자시설 주위에 부착하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배달원에게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 심사결과(2002. 10. 23)
- 신규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완성검사 의무화는 그 적용대상을 주택용으로 한정 하고, 도서지역 중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완성검사신청서 사본’만을 첨부하도록 개선권고

- 안전공급계약의 기간설정시 주택용에 대하여는 용기집합설비(용기접합장치+자동절체조정기)를 설치하여 중량거래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체적거래와 동일한 계약기간을 적용하도록 개선권고
- 가스배달원의 안전교육시간은 3시간 이내로 운영하도록 개선권고
- 가스시설에 동·호수표시 등의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은 원안의결
- * 기타사항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중 저장탱크의 저장능력기준을 현행 200톤이상에서 100톤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기존규제정비)하도록 개선권고

(20) 석유사업법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석유비축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상향조정
 - 과징금의 산출식에 적용하는 “60일간의 내국수입유전스올 및 환율”을 “한국석유공사가 비축유대여 시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및 환율”로 상향조정
- 심사결과(2002. 11. 6)
- 원안의결

(21)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안전검사기준(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 중 비비탄총 등 7개 공산품에 대해 안전검사대상 범위의 확대 등 검사기준을 강화
 - 비비탄총 : 탄환의 세기가 0.08J 이하인 어린이용 장난감도 안전검사대상에 추가
 - 스포츠용 구명복 : 부력보조복도 안전검사대상에 추가
 - 이륜자전거 : 유아(취학 전 어린이)용 자전거에만 적용하는 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특수자전거의 일종인 산악용 자전거를 안전 검사 대상에 추가
 - 저독성 페인트 : 어린이 실내·실외 놀이시설에 대한 페인트도 안전 검사 대상에 추가
 - 주택용 사다리 : 안전검사 시 사다리의 길이별로 모델을 구분하여 검사하도록 함.
 - 가정용 헬스기구 중 달리는 운동기구 : 안전장치 성능에 대한 시험항목을 신설하고, 소음 등에 대한 시험방법을 보완
 - 보온·보냉용기 : 검사대상 용량의 범위를 확대
- 심사결과(2002. 11. 20)

-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공산품별 안전검사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해당 공산품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사항을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명시하도록 본문의 규정을 보완하도록 개선권고

(22)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내용심사 4)

-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s=Living Modified Organisms)의 수출입, 생산 등에 따른 인체 및 환경에 미칠 위해성을 예방하기 위해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따라 LMOs의 수입·생산 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승인, 수출 시 산자부장관에 통보, 경유 시 산자부장관에 신고토록 함.(내용심사)
 - LMOs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체 및 환경위해성을 예방하기 위해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허가를 얻거나 신고토록 함.(내용심사)
 - LMOs의 안전한 유통관리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LMOs를 개발·생산·수입하는 자는 당해 LMOs에 대한 명칭, 종류 등을 용기 등에 표시토록 함.(내용심사)
 - 국내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위해성 평가 체계를 확립하여 LMOs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관을 지정토록 함.(신설)
 - 사후 LMOs 위해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고 위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LMOs의 수출입등, 연구시설 설치·운영 등의 기록을 5년간 보관토록 함.(내용심사)
- ### ■ 심사결과(2002. 12. 4)
- 원안의결
 - * 기타사항 : 동법령의 시행 후 2년 이내에 규제순응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권고

2. 중소기업청

가. 지난 5년간 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총 7개의 법률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9건 신설하고, 기존 등록규제 중 8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연구개발기업과 특허 및 신기술의 사업화 기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총액 매출액 기준을 설정하여 산정기간이 1년인 경우 9,600만원, 2분기 이상인 경우는 4,800만원 이상으로 규정
- 창업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자 했으나 대표이사에 한하여 자격요건을 제한하도록 수정 권고
- 공장을 경영할 의사가 없는 자가 공장을 설립한 후 제조활동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창업자는 사업계획을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토지 및 공장건축물을 전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도록 규정
-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아닌 자는 동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철회토록 권고
- 벤치기업의 확인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며 사후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창업투자회사·조합은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납입자본금·출자금의 5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을 창업가 또는 벤치기업투자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한 창업투자회사는 창업투자회사로서 영위하는 사업과 기업구조조정회사로 영위하는 사업을 구분 계리토록 규제를 신설(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01. 10. 10)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출자금총액의 최저한도를 상향조정(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2002. 6. 7)

나. 2002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내역

- 2002년도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에 대해 내용심사 1건, 누락규제 1건 등 총 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중소기업청의 2002년도 신설규제는 없음.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누락규제 1, 내용심사 1)
- 조합설립 출자금총액의 최저한도를 상향조정(누락규제)
 - 지방조합·사업조합·연합회 : 2천만원 → 4천만원
 - 전국조합 : 4천만원 → 8천만원
- 법률에서 위임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내용심사)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그 채무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이거나 또는 그 법인의 대표이사
 - 수인(數人)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자로서 선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심사결과(2002. 6. 7)
- 원안의결

3. 특허청

가. 지난 5년간 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총 2개의 법률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기존 등록규제 중 3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신청 시 제출서류를 구체화(발명진흥법시행령, 2001. 6. 4)

- 2001년 1월 1일 전에 특허청에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변리사자격 자동부여 규정을 적용하고, 절대평가시험제도 시행에 따른 최소합격규모를 매년 200명 이상이 되도록 함.(변리사법, 2001. 12. 7)

나. 2002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내역

- 2002년도에는 변리사법시행령에 대해 강화 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02년도 신설규제는 없음.

(1) 변리사법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변리사 2차 시험(최종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특허청장이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 1차 시험의 합격자수를 최소합격인원의 일정배수 범위로 할 수 있도록 함.(5배수 시행계획)
- 심사결과(2002. 2. 27)
- 원안의결

제4절 _ 건설교통분야

*집필자 : 이장호 사무관 (Tel. 3703-2160, youngstone@opc.go.kr)

1. 건설교통부

가. 지난 5년간 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총 353개(1998년 61개, 1999년 110개, 2000년 99개, 2001년 36개, 2002년 47개)의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령을 대상으로 477건(신설 159건, 강화 232건, 내용심사 86건)의 규제에 대한 심사를 통해 127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규제 중 213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공동주택의 전기설비 기준 강화
 - 공동주택 단지 내 폭 12m 이상의 도로에는 폭 1.5m 이상의 보도를 설치하게 하던 것을 8m 이상의 도로에도 보도를 설치하게 하고, 공동주택의 전기설비 용량을 3kW를 기본으로 하고 60㎡를 초과하는 10㎡마다 0.3kW씩을 추가하도록 하던 것을 0.5kW씩을 추가

- 자동차 창유리 안전기준 강화
 - 자동차의 창유리를 원뿔치 전동식으로 한 경우 어린이 등의 오조작으로 인해 유리 틈에 손가락이나 목 등이 끼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승용자동차와 총중량 4.5톤 이하 승합자동차의 창유리를 원뿔치 방식의 전동으로 할 경우에는 오동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물질 감지장치 설치를 의무화
-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 사무실 기준 강화
 - * 일반건설업(토목, 건축, 조경공사업(33㎡ 이상), 토목건축, 산업설비공사업(50㎡ 이상), 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12㎡ 이상), 기타(20㎡ 이상))
 - 건설업자는 건설업등록기준을 3년경과시마다 건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증가능확인서는 1년마다 제출
- 학교 등에 대한 총량규제 대상 확대
 - 수도권 내의 대학원대학도 총량규제 대상에 포함하여 연간 300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원대학의 신·증설을 허용하도록 제한(컴퓨터·통신·디자인·영상·신소재·생명공학 등 첨단전문 분야의 대학원 대학은 정원 범위에서 제외)
- 시설물의관리에관한특별법 관리대상 시설물 추가
 - 지하차도, 지하상가, 복개구조물, 옹벽, 절토사면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시 특별 관리 대상시설물로 포함하여 지정·관리
- 건축물에 설치되는 냉방시설 기준 강화
 -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도로의 보도에 면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장치는 건축물 내에 설치하여야 하고, 배기구의 높이는 보도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함.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 축소
 - 국립대학병원 및 지방공사 소유 병원에 대한 부담금 감면조항을 삭제
- 투기과열지구내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시기를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로 제한
 - 다만,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지구단위계획 지정 기준 강화

-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 확대 : 30만㎡ 이상인 지역으로서, 시가지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어 개발예정인 지역과 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 계획 수립을 의무화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신설 :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아파트·연립주택 건설을 위한 경우에는 30만㎡ 이상,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각각 10만㎡ 이상이고 연결도로 설치가 가능하며 그 총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 지정 가능, 기타의 경우에는 3만㎡ 이상으로 지정
- 개발밀도 관리 구역의 지정기준 강화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대해 최대 50%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행위제한 강화
 - 기존 수산자원보호지구의 공해배출이 없는 시설에 대한 건축제한 등 제한행위 열거방식에서 허용하는 행위 열거방식으로 변경
- 불연재료의 사용대상 확대
 - 거실의 마감재료를 불연·준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화재위험이 큰 공연장,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연장, 당구장, 음식점, 생활권·자연권수련시설, 여관·여인숙 등을 추가
- 지하층의 설치기준 강화
 - 화재 발생 시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50㎡에서 200㎡인 지하층에는 비상탈출구 설치와 관계없이 직통계단 2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함.
- 복합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도입
 - 공동주택 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 등의 출입구를 30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 공동주택 등과 위락시설 등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 건축물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고, 거실의 벽 등을 불연·준불연 재료 등으로 마감하게 함.

나. 2002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 2002년도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규칙 등 45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28건, 강화 45

- 건, 내용심사 25건 등 총 98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98건 중 5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48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4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건설교통부의 2002년도 총 신설규제는 28건

(1) 공동주택관리령·관리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행위허가 및 부대 복리시설간 용도변경 허가기준을 강화
 -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동 또는 단지 단위로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구조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때 (이 경우 시장 등은 리모델링 행위의 내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에 의한 구조안전의 확인을 거쳐 인정할 수 있도록 함)에 리모델링을 허용
 - 사용검사를 얻은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로서 부대·복리시설(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내의 도로, 조경시설에 한함)에 대하여는 부대·복리시설간에 설치기준의 1/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대·복리시설간 용도변경을 허용
- 유치원 부지의 용도변경 제한
 - 2천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된 유치원 부지에는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승인받은 유치원 용도로만 신축을 허용

■ 심사결과(2002. 1. 9)

- 리모델링 허용시기를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되, 건축기준 완화 적용 대상은 20년 이상으로 개선
 - 건축기준 적용완화 범위 구체화(주택법 개정 후 공동주택관리령 개정 시 반영)
 - 리모델링 시 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
 -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한 리모델링 형태를 구체화
- 사업계획승인상의 부지를 다른 용도로 편법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동의

(2) 도로와다른도로등과연결에관한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부가차로 설치 및 연결로 등의 공동사용기준 강화
 - 부가차로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가차로가 상당기간 연속될 경우 500m마다 진·출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함.
 - * 부가차로 설치기준 : 부가차로의 폭은 3.0m 이상, 부가차로의 포장은 본선도로와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횡단 경사는 부가차로의 표면수가 본선 도로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설치
 - 관리청은 인접된 시설의 진·출입에 필요한 연결로 등을 공동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결로 등을 공동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게 함.

■ 심사결과(2002. 1. 9)

- 교통소통 원활화와 도로관리의 효율화 측면에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3)

- 건설기계의 범위 조정
 - 3톤 이상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포함하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를 받고 사용 중인 타워크레인은 제외(건설기계에 포함시 등록 및 등록번호표 부착, 신규 및 정기검사, 형식승인, 임대·정비·매매업 영위시 신고, 조종시 면허 등의 규제 대상이 됨.)
- 당사자 거래용 양도증명서에 대한 시·도지사 제작·검인
 - 당사자 간 건설기계를 매매할 때 사용하는 양도증명서는 시·도지사가 제작하고 검인한 것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인상
 - 정기검사 : 25,000원 → 60,000원(검사장), 45,000원(출장, 일부면제)
 - 수시검사 : 25,000원 → 45,000원
 - 타워크레인(신설) : 100,000원(설치검사 포함)

■ 심사결과(2002. 1. 23)

- 안전관리 제고를 위한 근거 없이 재산권 행사를 위한 방안으로만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포함하여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민간 자율로 장비보유 내용

을 인증하는 등 비규제적 대안을 채택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철회권 고

- 위장신고와 미신고사업자의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수수료 신설은 삭제토록 개선권고

(4) 도로법시행령·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3)

- 도로점용시의 교통소통대책 수립기준 구체화
 - 도로점용 시 현장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수립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사항을 조례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주요지하매설물의 범위 확대
 - 준공도면을 제출해야 하는 주요 지하매설물의 범위에 고압가스이송배관, 소방법상 위험물 이송배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유독물이송배관을 추가
- 권리·의무의 승계신고기한 구체화
 -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기한을 30일 이내로 구체화

■ 심사결과(2002. 2. 27)

- 교통소통 대책의 수립기준을 객관화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 위험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자료 관리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의결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기한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5)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7)

- 체류지역 확대 허가기준 신설
 -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주도 외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도록 함.
 - 체류지역 확대허가의 요건 : 기상악화, 결항 등의 사유로 다른 지역에서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 외국인 학교 입학자격 특례기준 설정
 - 제주도에 설치되는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자격을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설정
 - 지정 기준 : 총 사업비 2천만불 이상의 종합휴양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총 사업비 1천만불 이상의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유원시설업
- 휴양펜션업의 등록기준 설정
 - 휴양펜션업의 등록자는 사업장에 휴양펜션업 등록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휴양펜션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 휴양펜션업 분양 및 회원모집절차 구체화
 - 휴양펜션업의 시설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와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휴양펜션업 회원권발급 및 회원보호규정 도입
 - 휴양펜션업을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자는 회원에게 회원권 발급하여야 함.
 -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시설의 이용, 비용의 징수, 입회금의 반환, 회원권의 발급 및 확인, 대표기구 구성 등에 관하여 제주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토록 함.
-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 구체화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의 종류·규격·설치장소·표시기간 등을 제한
 - 구체적인 설치장소와 수량에 대해서 설치 전에 행자부장관과 협의토록 함.
- 심사결과(2002. 3. 6)
 -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한 다른 지역으로의 체류 확대에 대한 허가기준이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 외국인학교설립·운영에관한규정 중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에 대한 부처간 협의결과, 입학자격이 5년으로 제한될 경우에는 특례법상 입학자격은 외국거주 3년 이상으로 하되 3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입학자격 제한이 4년 이하로 결정될 경우 1년 이하로 변경하도록 개선권고
 -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규모와 대상 업종의 제한은 합리적인 관광기반 구축하고 투자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 휴·폐업 통보제는 동의하되, 휴양펜션업의 표지 부착의무는 유사 명칭의 사용 금

지 규정이 있어 불필요하므로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휴양펜션업 피분양자 또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 휴양펜션업의 피분양자와 회원의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해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 규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하위규정으로 광고물 심의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광고내용의 색채 사용 제한 중 ‘흑·적색류’는 불명확하므로 구체화하도록 개선권고

(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이축부지에 대한 세부입지기준 설정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익사업으로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주택의 이축부지에 대한 세부입지기준을 설정
 - * 세부기준 : 당해 시·군·구내의 토지일 것, 우량농지가 아닌 곳, 산림이 포함되는 경우 산림법시행령 제24조제2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을 위한 보전입지의 전용허가가 가능한 곳, 하천 또는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곳,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곳

■ 심사결과(2002. 3. 20)

- 입지 제한대상 중 “호소로부터 500m 이내”는 삭제하되, 수질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형호소는 제외되도록 적용대상 호소의 범위를 정하도록 개선권고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 사업용자동차 차량충당연한 설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록·증차 및 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을 승용자동차는 6월, 승합자동차의 경우 2년 이내로 설정
- 여객운수사업용자동차의 운행안전장치에 대한 사후관리의무 도입
 -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속도제한장치나 운행기록계가 장착된 사업용자동차는 운행안전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운송사업자의 준수의무를 도입

■ 심사결과(2002. 4. 10)

- 차량충당연한을 승합차 3년, 승용차는 1년으로 수정하도록 개선권고
- 여객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8)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규정 신설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 등을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의 50%를 청약 1순위자로서 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공급하도록 함.

■ 심사결과(2002. 4. 12)

- 규제도입에 동의하되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등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하고 5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하도록 개선권고
 -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해제하도록 함.
 -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

(9)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 학교 등에 대한 총량규제 대상 확대
 - 수도권 내의 대학원대학도 총량규제 대상에 포함하여 연간 300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원대학의 신·증설을 허용하도록 제한
 - 수도권 내 산업대학·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의 증원 허용범위를 전년도 전국의 총증가수의 20% 범위 내에서 10% 범위 이내로 하향조정
- 개발사업의 연접규제기준 구체화
 - 10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개발사업과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3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 연접해서 동일 목적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

는 각 사업면적을 합산하여 규제

■ 심사결과(2002. 4. 26)

- 형평성 측면에서 대학원대학이 총량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는 동의하나, 교육부장관이 건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는 컴퓨터·통신·디자인·영상·신소재·생명공학 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원 대학은 정원범위에서 제외토록 개선권고
- 자연보전권역은 연접개발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연접개발에 대한 기준을 이전 사업과의 시기, 사업시행자의 동일여부, 구역경계와의 이격 정도 등에 대한 기준을 예규 등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10) 측량법시행령·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1)

- 측량성과 심사 수탁기관 지정기준 신설
 -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 지정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기준을 정하고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 신청 및 지정절차를 구체화
-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강화
 - 측량분야 초급기술자·중급기능사의 학·경력자에 대한 자격인정 요건에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에 초급기술자는 1년 이상, 중급기능사는 2년 이상의 해당분야의 업무경력을 추가
- 심사결과(2002. 6. 7)
 - 공공측량성과의 공정성·정확성 확보를 위해 수탁기관의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으나, 수탁기관 등록에 필요한 장비를 장기 임차한 경우에도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보는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개선권고
 - 중급기능사의 요건 강화에는 동의하되, 초급기술자의 경우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자격기준간 형평성 유지에 바람직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11) 항공법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2)

-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접근, 착륙 및 이륙절차 신설
 - 항공기가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접근·착륙 및 이륙 비행시 관제기관(군 관제기관 포함)의 지시 및 계기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하도록 함.

- 시계(Visuality)가 낮은 경우에 적용되는 정밀계기방식(ILS : Instrument Landing system) 제2종 및 제3종 접근절차에 있어, 비행시 조정사의 기량유지, 비행기에 탑재하는 장비기준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함.
- 비행장의 설치 및 시설관리기준 강화
 -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비행장에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시설 및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제장비를 설치하도록 함.
 -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비행장에 설치된 시설의 운영절차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세부 비행절차를 구체화
-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등 강화
 - 무지향표지시설(NDB), 전방향표지시설(VOR), 거리측정시설(DME), 계기착륙시설(ILS/MLS), 레이더 등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강화
- 심사결과(2002. 6. 7)
- 국제기준(ICAO)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기준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의결

(1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4)
- 시특별 관리대상 시설물 추가
 - 지하차도, 지하상가, 복개구조물, 옹벽, 절토사면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시특별 관리 대상시설물로 포함하여 지정·관리
 - 지하차도 1종 : 연장 500m 이상
2종 : 연장 100m 이상
 - 지하상가 1종 : 연면적 10,000㎡ 이상
2종 : 연면적 5,000㎡ 이상
 - 복개구조물 1종 : 폭 6m 이상, 500m 이상
2종 : 폭 6m 이상, 100m 이상
 - 옹벽 2종 : 높이 5m, 연장 100m 이상
 - 절토사면 2종 : 높이 50m, 연장 200m 이상
- 안전점검 책임기술자 교육 강화
 - 시설물안전진단 책임기술자 등에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기간을 현행 '5일 이상' 에서 '10일 이상' 으로 연장

-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참여하는 기술자(참여기술자)도 교육이수 대상으로 포함
- 정밀안전진단 면제요건 강화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다음 1회에 한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면제하는 기준을 현행 '시설물의 안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서 '최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강화
-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요건 강화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에 사무실(전용면적 50㎡이상) 확보 의무를 추가하고, 기술인력의 요건을 강화
 - * 기술인력기준 중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사1급의 자격을 가진 자 3인 이상(토목·건축분야의 기술인력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함)을 →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 강화
 - * 사무실 : 사무실 전용면적 50㎡ 이상
- 심사결과(2002. 6. 12)
 - 현재 시특법상의 관리대상인 도로, 건축물 등과 비교하여 지하차도, 지하상가 등에 대하여도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 안전진단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의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 면제범위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A 등급)'로 한정됨으로써 면제요건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철회권고
 - 전문기관의 기술력 확보 차원에서 기술인력에 관한 등록요건 강화에는 동의하되, 사무실 보유의무 추가는 안전진단의 질 확보에는 직접 관련되지 않으므로 삭제토록 개선권고

(1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3)
 - 선수금의 수납승인 및 분양이행보증서 제출의무 도입
 -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준공 전에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함.
 - 시행자가 파산 등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게된 경우 사전에 제출한 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부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절차를 보완
 - 개발계획고 시 이전의 공사 등의 신고절차 도입

- 개발촉진지구내에서 개발계획의 고시 이전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및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하여 허가받은 서류 사본을 첨부한 신고서류를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토록 함.
- 특정지역 실시계획 승인신청절차 도입
 - 사업시행자가 특정지역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내용을 기재한 신청서에 관련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함.
- 심사결과(2002. 6. 12)
 - 피분양자 보호를 위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시장·군수 등이 허가권자이거나 위임을 받은 경우에 당해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두도록 개선권고
 - 특정지역 개발 승인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14) 임대주택법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내용심사 1)
 -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 강화
 - 민간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중 최초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지역별로 징수한도를 차등 제한하여 일정부분 자기자본 투입을 의무화
 - 수도권 : 건설원가에서 기금을 차감한 금액의 90% 이내
 - 기타지역 : 건설원가에서 기금을 차감한 금액의 80% 이내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 개선
 -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매월 총건축비의 3/10000에서 1.5/10,000로 하향조정하고, 시행시기를 동법시행령 개정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
- 심사결과(2002. 6. 14)
 - 사회적 약자계층인 임대주택 입주민의 피해예방 측면에서 임대보증금의 징수한도를 일정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의결
 - '임대주택건설 활성화 관련 규제정비계획'에 대한 규제위 의결 시 현재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부담 경감차원에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금의 하향조정을 권고한 바 있

으므로 현재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 임대주택에도 적용하도록 개선권고

(15)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기준 강화

- 도시계획으로 설치되는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사도와 경사로의 참(站) 설치기준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 최대경사도 : 현행 1/10(약 5.7도) → 1/18(약 3.2도)

* 연속된 경사로에 대해 30m마다 1.5m×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 3만㎡ 미만인 유원지의 용적률 기준을 현행 2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강화하고, 유원지의 일부만 개발할 경우에도 전체를 조성할 때와 같은 기준(건폐율 20%, 용적률 200%)을 적용

- 민간이 설치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시설의 일부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포함하여 도시계획차원에서 관리되도록 함.

■ 심사결과(2002. 6. 26)

• 완만한 경사의 유지와 참의 설치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반보행자의 보행 편의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 등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16)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3)

• 건축설비의 설치기준 강화

- “건축설비”의 범위에 기타 정보통신설비·자동제어설비 및 절수설비를 포함하여 설계·시공·감리 등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건축법령의 규정을 따르게 함.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객실·조리장 관람석 등은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 설치 등의 조치를 하게 함.

- 수도배관 보온재의 설치기준과 수도계량기 보호함 단열기준을 ‘수도배관 및 수도계량기 보호함’을 일정 두께 이상의 보온재로 밀실하게 감싸도록 하고 복도형 아파트 등의 외기에 노출되는 곳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 보호함은 외기 온도가 강하할

경우 자동으로 작동하는 발열선을 설치' 하도록 함.

-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도로의 보도에 면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장치는 건축물내에 설치하여야 하고, 배기구의 높이는 보도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함.
- 배연설비의 설치기준 도입
 - 소방법에 규정된 배연설비의 설치대상과 배연구획의 기준 등 건축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건축법령에 규정하고 배연창의 배연성능 확보를 위해 배연창의 설치위치와 유효면적 산정기준을 마련
-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를 위한 신청절차 강화
 -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에 제출하도록 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용도변경 신고 시에도 제출하도록 의무화
- 심사결과(2002. 6. 28)
 - 정보통신 관련분야의 설계·공사·감리 등은 정보통신공사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므로 건축설비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규제의 측면이 있으므로 철회권고
 - 실내공기질에 관한 기준은 “다중이용시설등에관한실내공기질관리법(국회계류중)”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철회권고
 - 지역의 기후여건에 따라 단열재 부착과 보온재 삽입 등의 조치로써 동파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전기발열선의 설치의무화는 삭제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조례로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 적용 대상지역을 건축법상의 도로로 적용지역을 명확히 하되, 길이 10m 미만의 막다른 골목은 제외하도록 하고 배기장치의 설치기준을 규제준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 또는 배기장치의 열기 등이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설치하도록” 수정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배기장치의 개선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기존의 배기장치는 2년 이내에 개선토록 유예기간을 두도록 개선권고
 - 배연설비의 근거법률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간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부처 간 합의안을 마련한 후 재상정하도록 개선권고
 -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에 건축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용도변경뿐만 아니라 건축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용도변경의 경우도 포함하도록 개선권고

(17)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2)

-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시설물 지정기준 등 설정
 -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기준 : 시간대별 평균통행속도가 10km/h 미만인 상태가 평일평균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도로에 면한 구역으로서 해당도로의 한쪽 방향 교통량 15% 이상을 유발(진입·진출)시키는 구역 또는 그 주변 영향권
 -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 : 교통 유발량이 가장 많은 날을 기준으로, 평균통행속도가 10km/h 미만인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도로에 접한 시설물로서 해당도로의 단방향 교통량 10% 이상을 유발(진입·진출)시키는 시설물
 - 교통수요관리 대상이 되는 특별관리구역 내 시설물 및 특별관리시설물 기준 :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 축소
 - 국립대학병원 및 지방공사 소유 병원에 대한 부담금 감면조항 삭제

■ 심사결과(2002. 7. 3)

-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기준 설정의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국립대학병원 등도 부담금 부가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18) 골재채취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신설 2)

- 골재채취업의 등록사항 신고의무 도입
 - 골재채취업에 등록한 자에 대해 3년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사항을 신고를 하도록 하며,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
- 골재채취 허가대상 확대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서 따라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도 그 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인 때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게 함.
- 골재채취단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신설
 - 골재채취단지 안에서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공제사업 허가 및 분담금 부담의무 신설
 - 한국골재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 사업을 할 수 있게 함.
 - 공제사업에 가입한 골재채취업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함.
- 심사결과(2002. 7. 10)
 - 사후적 등록취소 제도가 있음에도 사전적 신고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철회권고
 - '다른 법령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부수적으로 채취하는 골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이거나 주된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채취하는 경우' 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권고
 - 단지 내 사유지까지 행위제한을 하는 것은 단지지정 목적에 비해 과도한 권리의 침해이므로 행위제한의 적용지역을 국·공유지 내에 설치된 골재채취단지로 한정하도록 개선권고
 - 공제제도 도입에는 동의하나 공제조합의 출자 및 용자에 관한 사항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개선권고

(19)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6, 내용심사 2)
 - 건설업의 등록기준 강화
 - 건설업자는 건설업등록기준을 3년 경과 시마다 건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증가능확인서는 1년마다 제출하게 함.
 -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기재사항 중 변경신청대상 규정
 - * 건설업등록증 :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건설업등록수첩 :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경력임원, 업종별 필수 기술자
 -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한 토목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구비요건을 4인에서 5인으로 상향조정
 -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원칙 강화

- 발주자로부터 도급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도급 계약체결일부터 30일 내에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토록 함.
 - 영업정지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 금액기준 상향조정
 -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 2.5 → 5억원
 -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산업설비공사업 : 6 → 10억원
 - 전문건설업(가스 2,3종 및 난방 1,2,3종은 제외) : 5천만원 → 1억원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제도 강화
 - 시공능력의 평가에 있어서 민간발주 건설공사의 실적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세무서제출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토록 함.
 -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확인된 때에는 향후 2년간 평가 및 공시 거부
 -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를 위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
 - 신청서 등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공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년간 평가 및 공시를 거부
 - 평가를 위한 건설사업 관리인력의 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건축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설기술 관련분야 기능장 등으로 함.
 - 건설공사표지 게시의무 도입
 - 공사표지 기재사항 : 공사명,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기술자, 공사비, 착공년월일, 준공예정년월일
 - 표지판은 석재,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
 - 준설공사, 수중공사 등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표지판 설치를 면제
 - 전문경영 진단기관의 요건 강화
 - 건설산업분야 기업경영연구 또는 경영진단업무 수행실적의 보유 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공인회계사 2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함.(단 2인 중 1인은 경영지도사로 대신할 수 있다.)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준 강화
 -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 심사결과(2002. 7. 12)

-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신고기간을 법정 최장기간인 3년으로 규정함은 적정. 다만,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경우 발급기관이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시에는 신고에 같음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 경력임원과 업종별 최저 필수기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신청 항목에 추가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삭제토록 개선권고
 -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자 의무보유 인원을 4인에서 5인으로 상향하는 것은 이 업종의 역할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으므로 삭제토록 개선권고
- 통보방법에 따른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성과 업계의 부담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03년 1월 이후로, 도급금액은 3억 이상으로 한정하되, 2004년 1월 이후에는 도급금액 1억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개선권고
- 불공정거래나 특별한 법령위반 없이 단순히 공사실적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정지를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므로, 현행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철회권고
-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가 곤란하여 공사수주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제출서류, 평가방법, 공시방법 등이 적절하므로 원안의결
- 건설공사 업체나 참여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의결
- 경영진단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2년 많다고 해서 경영진단기관의 능력이나 책임이 더 많이 확보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삭제토록 개선권고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부담하는 발급비용을 건설공사의 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의결

(20) 항공기운항안전법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2)

- 탑승객의 안전유지 협조의무 도입
 - 항공기운항안전법 제5조의2 제7항에서 건교부령이 정하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탑승거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항공기 탑승을 거절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정함.

*무기,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의 휴대자 등

- 항공기이용 피해구제절차 도입

- 항공운송사업자는 자사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 내에 항공기이용 피해구제접수처를 설치하여 당일 마지막 항공기가 도착한 후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를 정함.
- 심사결과(2002. 7. 24)
 - 무기,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의 휴대자에 대한 탑승 거부는 항공법 규정과 중복되므로 삭제하도록 하고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권고
 - ‘자사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을 ‘자사 여객운송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관련규정을 구체화하도록 개선권고

(2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신설 1)
 -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의뢰절차 도입
 -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에게 추가로 평가의뢰하도록 한 경우에, 평가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을 규정
 - 추천기한 :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20일 이내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감정평가협회에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
 - 대상 평가업자의 적정성 확인 후 5일 이내에 결과통보 : 선정기관은 토지소유자가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대상 감정평가업업을 선정함에 이를 반영하여야 함.
 - 감정평가업자가 보상평가서 작성 시 평가자외에 심사자(감정평가업에 종사하는 감정평가사에 한함) 1인 이상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심사제도를 명문화
 - 이주대책수립 기준 강화
 - 이주대책 수립대상을 이주희망자 10호 이상에서 30호 이상인 경우로 축소하고, 이주정착금은 주거용건축물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설정
- 심사결과(2002. 8. 9)
 - 보상계획 열람기간(14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연장하도록 개선권고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요청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따로 두는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토록 함.
- 다만, 평가결과의 왜곡 방지를 위해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해당 감정평가업자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토록 한다. 조사결과에서 위법행위 적발 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조치되는 처벌 중 행정처분은 등록취소 또는 6월 이상 업무정지 등으로 강화토록 권고
- 감정평가의 심사제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심사내용을 명확히 하고 잘못된 심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 시 반영하도록 함.
- 이주정착금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주대책 수립대상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22)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의 공급절차 제한
 - 도시사가 청약경쟁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과 오피스텔(각 20호 이상)은 건축허가 후, 건설위치·공급세대수·분양가격 등에 대해 시장 등의 승인을 받은 후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입주자 선정은 일반공개경쟁 또는 추첨방식에 의하도록 함.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분양권 전매 제한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시기를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로 함.
 - 다만,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심사결과(2002. 9. 6)
 - 규제도입에는 동의하되, 입주자 보호 측면에서 모집공고의 방법을 구체화하도록 개선권고
 -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전매제한이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23)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유원지의 설치기준 강화
 - 유원지 설치를 위한 최소 규모를 현행 6천㎡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확대
- 심사결과(2002. 9. 18)
 - 관련 법령과의 기준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24)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3, 내용심사 1)
 - 불연재료의 지정기준 강화
 - 불연재료인 복합자재의 경우에도, 한국산업규격(KS)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것만을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함.
 - 거실의 마감재료를 불연·준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화재위험이 큰 공연장,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연장, 당구장, 음식점, 생활권·자연권수련시설, 여관·여인숙 등을 추가
 - 지하층의 설치기준 강화
 - 화재 발생 시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다중 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50㎡에서 200㎡인 지하층에는 비상탈출구 설치와 관계없이 직통계단 2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함.
 - 방화구획 및 방화벽 설치기준 강화
 - 복합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도입
 - * 공동주택 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 등의 출입구를 30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 공동주택 등과 위락시설 등은 내화 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고, 거실의 벽 등의 마감을 불연·준불연 재료 등으로 함.
 - 일정 제작방법에 따라 제작된 것(사양규제방식) 또는 KS에서 정한 시험에 합격한 것(성능규제방식) 중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는 방화문의 지정기준을 성능기준으로 일원화
 - 헬리포트의 설치기준 강화
 - 건축물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22m보다 좁을 경우, 현재 헬리포트의 각 10m 이상까지 감축 가능한 것을 15m 이상까지 감축 가능하도록 하고 헬리포트 중심에서 반경 12m 이내에서 헬기의 안전운행에 장애가 되는 난간의 설치를 제한

■ 심사결과(2002. 9. 27)

- 규제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소규모 공장에 대한 불연재료 사용을 제외하는 문
제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용역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공연장, 당구장, 예식장, 생활권·자연권수련시설, 여관·여인숙 등의 불연·준불
연재료 사용은 동의하되, 법상 근거가 없는 다중이용업에 대한 적용 확대는 시행령
개정 시 반영토록 개선권고
- 규제 강화에는 동의하되, 규칙 개정 당시에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권고
- 복합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정하고 방화문 지정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 헬리포트를 주변 구조물보다 높게 설치한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
하므로, 이에 대한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권고

(2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9)

- 지구단위계획 지정 기준 강화
 -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 확대 : 30만 m^2 이상인 지역으로서,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어 개발예정인 지역과 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
로 변경되는 지역 계획 수립을 의무화
 - 제2종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신설 :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아파트·연립주택
건설을 위한 경우에는 30만 m^2 이상,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각각 10만 m^2 이상이고
연결도로 설치가 가능하며 그 총면적이 30만 m^2 이상인 경우 지정 가능, 기타의 경
우에는 3만 m^2 이상 지정
- 개발행위 허가기준 강화
 - 개발행위의 허가 규모 : 개발행위허가제도가 비도시 지역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신설
 - 관리지역: 3만 m^3 미만
 - 농림지역: 3만 m^3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m^3 미만
 - 연접개발 제한 : 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

- 발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간주하여 그 면적을 산정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개발 행위 : 비도시지역에서 150톤 이하의 공작물의 설치, 660㎡ 이하의 토지형질변경, 250㎡ 이하의 토석 채취 등
 - 개발밀도 관리 구역의 지정기준 강화
 - 개발밀도 강화 범위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대해 최대 10분의 5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지정기준 : 당해 지역, 당해 행정구역 및 전국의 설치현황을 감안하여 산정,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되거나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강화
 - 구역 지정 :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지정하는 경우 10만㎡ 이상으로 지정
 - 지정 대상 :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 개발행위가 집중되거나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
 -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강화
 - 용도지역별 건축물, 그밖의 시설의 용도·종류·규모 등 제한 : 용도지역의 지정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건축물 입지 제한, 관리지역은 경관을 훼손하는 건축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층수를 4층 이하로 제한, 계획관리지역에는 근린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등에 한정하여 허용
 -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강화
 - 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
 -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
 - 주거기능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에 유해한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
 - 용도지역, 지구별 용적률 강화
 -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강화
 - 준주거지역 700% → 500%
 - 중심상업지역 1,500% → 1,300%, 일반상업지역 1,300% → 1,100%
 - 근린상업지역 900% → 800%, 유통상업지역 1,000% → 1,000%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행위제한 강화

- 기존 수산자원보호지구의 공해배출이 없는 시설에 대한 건축제한 등 제한행위 열거방식에서 허용하는 행위 열거방식으로 변경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절차 강화
 - 민간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
 -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등은 이행보증금을 예치대상사업으로 규정
- 심사결과(2002. 10. 2)
 - 지구단위계획 지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에는 동의하되, 개발행위허가 규모와 관련하여 연접개발의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개선권고
 - 개발밀도의 지정기준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강하므로 최소한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시설확충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되도록 개선권고
 -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주변지역으로 과도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주변지역의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개선권고
 -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건축제한은 개별입지기업의 입지난을 가중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장입지에 대한 업종제한을 두지 않고, 다음과 같이 개선권고
 - 개별 공장설립에 의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장부지면적 규모가 1만㎡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함.
 - 이 경우 2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할 경우에는 이를 합한 면적을 말하며, 연접한 공장의 부지면적과 합하여 1만㎡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하는 지역(면적이 1만5천㎡ 이상에 한함)에는 개별공장입지를 허용
 -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는 원안의결
 - 상업지역은 고밀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고, 용적률을 하향조정할 특별한 이유나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으므로 현행 용적률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개선권고
 -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지정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수산자원보호에 지장이 없는 일부 제2종근린생활시설 설치를 허용(단, 대형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토록 개선권고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26)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누락 1)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청약 1순위자격 제한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을 청약하는 1순위자 중에서 다음의 경우는 1순위 자격 제한
 -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자(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 ②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 ③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금·청약부금에 가입한 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
 - 국민임대주택 등의 우선공급 방법 개선
 -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공급물량의 10% 범위까지 우선 입주권을 부여
 - 공공주택 공급 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공급물량의 10% 범위까지 우선분양 받을 수 있게 하며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무주택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입주경쟁 시 가점 3점을 부여
- 심사결과(2002. 10. 23)
 -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노인부양 세대 등에 대해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동의

(27)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8)
 - 공항운영자 등의 시행계획 및 비상계획 수립의무 도입
 -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가 수립해야 하는 시행계획의 세부 내용을 정하고 도심공항터미널을 경영하는 자도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 보안검색방법 및 절차 규정
 - 보안검색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실시하도록 하고 공항의 보안검색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안전보안장비를 사용토록 하며 승객 및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화물에 대한 세부적인 보안검색 절차와

장애인 등과 같이 검색장소 이외에서 보안검색을 실시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의 보안검색절차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정함.

-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을 국제공항 및 국내공항으로 구분하여 정함으로써 보안검색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건실한 업체에 의해 보안검색업무가 실시되도록 함.
- 기내식 및 기내저장품에 대한 보안통제 절차와 보안검색 실패 시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경우를 정함으로써 항공기 및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
- 보호구역 지정 및 출입허가기준 설정
 - 공항운영자가 공항의 주요시설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공항지역을 정하고, 보호구역의 변경 및 취소시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항에 대한 불법행위로부터 정상적인 공항운영을 확보하도록 하며, 보호구역을 출입을 하고자 하는 인원 및 차량에 대한 통제절차를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정함.
- 조정실 출입문 안전조치 도입
 -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기의 보안 및 안전강화를 위하여 조종실 출입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조종실 출입문을 강화하는 등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안전기준을 정함.
- 비행서류의 안전 및 보안관리 규정
 -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할 수 있는 비인가자의 비행서류 불법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행서류에 대한 관리지침을 정함.
 - 승객 및 화물탑재명세서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1년 이상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보안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보안업무 점검을 위한 점검자료로 활용토록 함.
- 수감 중인 자 등의 호송방법 설정
 - 사법경찰관리 또는 법집행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의하여 범죄인 등을 항공기로 호송 시 항공운송사업자의 호송절차를 정함.
- 검색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설정
 - 검색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 포함될 내용과 지정기준을 설정
- 검색기록의 작성방법 설정
 -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및 보안검색을 위탁받은 검색업체는 검색요원의 업

무, 현장 교육훈련기록 등을 작성하여 1년 이상 유지하도록 함.

■ 심사결과(2002. 10. 30)

- 항공안전을 위해 공항운영자 등의 시행계획 및 비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 화물기에 탑재하는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및 화물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제기준 및 국제관행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 보호구역 지정 및 출입허가기준 설정의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 항공기의 안전 확보 필요성과 국제기준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원안의결
- 항공보안사고 발생시 원인규명 등을 위해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보안통제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 위탁업체 지정의 세부기준을 지정목적에 맞게 구체화도록 개선권고
- 보안사고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28)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강화
 - 조합주택건설예정지가 이미 인가받은 다른 조합의 예정부지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조합원 최다수 거주지역’ 또는 ‘조합주택건설예정지’에서 설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조합주택건설예정지’로 일원화
 - 설립 인가권자(시장 등)가 조합 설립인가 시 주택건설예정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상 기재사항의 적합성을 사전 검토하게 하고, 필요시 시장 등은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조합 설립인가신청일 현재, 조합설립인가 지역과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내에 6월 이상 거주한 자로 거주기간 제한 도입
 -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합비 사용내역 공개의무 등의 사항을 조합규약에 포함하도록 함.
 - 조합과 약정체결 후 조합업무를 시공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 300인 이상인 경우, 시공사의 조합업무 대행을 의무화

■ 심사결과(2002. 11. 6)

- 동일 부지에서 복수 조합 설립 금지에는 동의하되 무주택자 등의 주택 마련 기회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하에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추가 모집 허용하도록 하도록 개선권고
 - * 조합원 전체의 수가 조합설립 인가시의 사업계획서상의 건립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권자의 모집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총원하여 조합설립 인가 후 3개월 이내에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 추가 모집 허용
 - 주택조합원 보호를 위한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 조합주택에 대한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역조합원 자격요건 중 거주기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 조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 조합의 고유 권한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인 측면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300명 이상의 조합에 대한 등록업자의 업무대행 의무는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29)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에 관한 각종 조사·연구사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관을 둘 수 있게 함.
 -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관리를 협회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감정평가업자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 관련정보 및 자료 등을 제출받아 감정평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게 하고, 자료제출의 구체적 범위, 정보체계의 구축·운영·관리 등의 세부사항은 건교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심사결과(2002. 11. 13)
 -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개선이 필요
 -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별도 기관을 둘 수 있게 하는 안에 대하여는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할 사항이므로 삭제
 - 감정평가업자에게 제출 요구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의 범위를 '토지 및 건물의 평가에 관한 자료' 등 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본정보로 한정하고 '평가기관, 평가

목적, 가격시점 및 평가가액’, ‘대상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지목, 용도, 건물구조’ 등으로 구체화

- ‘감정평가정보 관리위원회’를 위탁기관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업무위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삭제
- 정보체계의 대상별 이용 제한 범위를 정보체계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와 개인비밀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명확히 함.

(3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2, 강화 1)

- 대물배상보험의 가입 의무화
 - 자동차 보유자에 대해, 현재 대인책임보험 가입만 의무화하고 있으나, 타인 소유 재물의 멸실·훼손 등 물적 피해보상을 위한 대물보험의 가입도 추가·의무화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관련 자료제출의무 신설
 - 건교부장관이 자동차책임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성·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자체, 보험사업자, 관련단체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함.
- 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 설정
 - 보험금의 공평·신속한 지급을 위해 보험금 지급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을 건교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음주운전 금지 위반 등으로 인적·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업자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우선 지급하되 가해자 등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구체적 금액은 건교부령에서 정함.)

■ 심사결과(2002. 11. 15)

- 주요선진국의 사례와 현재 임의보험인 종합보험 가입률(87%) 등에 비추어 규제편의이 클 것으로 보이므로 원안의결
- 보험 미가입자의 신속한 적발을 위한 자료 제출의무 부여에 동의하되, 다만, 자료제출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하위규정에서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개선권고
- 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 설정은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한 규제와 중복되므로 삭제토록 하고 음주운전 등의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자 등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자기부담금제 도입에는 동의

(31)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강화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거주자에게 축사 또는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동물사육장을 1가구당 각 1개씩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중 1개만 선택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제한
 - 개발제한구역 내 안에서는 사립미술관을 설치할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의 인정을 받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설치가 허용되고 있는 제조업소(대지면적 330m² 이하)의 설치를 금지
- 심사결과(2002. 12. 18)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없이 단편적인 규제 강화는 실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
 -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설치기준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정하는 배치계획에 의해 설치되도록 수정
 - 소규모 제조업시설을 일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허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주택 등에서 제조업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개선권고

(32)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5, 강화 1)
 - 자동차 자기 인증절차 등 규정
 - 종전의 사전형식승인제가 자기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인증기준, 제원통보, 자기인증 표시 등 세부절차 규정
 - 제작결함의 시정의무
 - 시정권고, 시정명령, 결함공개 등 제작결함 조사 및 시정조치(Recall) 관련 규정을 보강
 - 제작자 등의 자료 제공의무 신설
 - 자동차 제작자 등이 자동차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자료의 종류를 정하고 제작결함 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보관에 대한 규정 보완
 -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명령

- 자동차 정기검사 시 휠 및 타이어 돌출, 불법등화 등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함.
- 자동차 정기검사 시 안전운행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 부적합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 검사대행자와 지정정비업자가 자동차의 운행정지 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 함.
- 자동차정비 업자의 사후관리
 - 정비업자는 정비부품을 중고 재생품으로 사용가능할 경우를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함.
 - 원동기정비업자가 원동기(엔진)를 재생정비하는 경우 정비의뢰자에게 확인서 발급을 의무화
- 자동차 정비업자의 정비책임자 선임
 - 정비책임자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의무화
- 심사결과(2002. 12. 18)
 - 외국사례에 맞추어 자기인증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마련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 자기인증제 전환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리콜제도 강화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의결
 -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 법률상 시장·군수 등에 있는 운행 정지명령을 검사 대행자 등이 행사하게 한 것은 규제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삭제토록 개선권고
 - 자동차 이용자 보호차원에서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 보수교육 폐지 방침(규개위 1999. 10 의결)에 위배되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철회권고

(33)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자동차형식승인 기준 강화
 - 배력조향장치(power steering) 등이 고장난 경우에도 조향이 가능하게 하고, 장치 고장시 운전자에게 경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기준 강화
 - ABS장치 설치대상 확대
 - 승합 : 승차정원 16인 이상 → 모든 승합차
 - 화물 : 차량 총중량 7.5톤 이상 → 3.5톤 이상

-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임의 조작 방지를 위해 봉인 의무화
- 승차정원과 적재물의 위험정도에 따라 차량 적재 소화기 개수(1~2 이상)와 소화능력 단위(1~3)를 규정

■ 심사결과(2002. 12. 18)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34)건설분야외국인산업연수에관한지침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연수업체에 대한 교육 및 연수업체 준수사항 등을 강화
 - 건설협회 회장은 연수업체 대표 또는 연수생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토록 함.
 - 연수업체의 연수수당 체불 등에 대비하여 연수업체로부터 연수수당 등의 지불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건설협회 회장은 연수업체가 불법 체류자 사용 등의 준수사항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산업연수생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게 함.
- 외국인 산업연수생 자격조건 조정
 - 산업연수생 연령을 현행 45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변경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4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연수생 자격요건을 구체화
 - 연수생 보호 강화를 위해 연수조건을 “연수업체와 연수생간”의 계약에서 “건설협회와 연수업체간” 계약에 의하도록 변경
 - 연수조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 보장을 추가하고, 연수업체로 하여금 상해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함.

■ 심사결과(2002. 12. 31)

- 지불이행에 대비한 보험증권 제출, 연수업체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하여는 동의하되, 기존업체에 대해서도 반복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규로 연수생을 배정받은 업체’로 교육대상을 한정하도록 함.
- 연수업체 선정기준 등의 주요사항을 지침에서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35)공공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공공철도건설사업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개정법률의 위임에 따라 철도건설 예정지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제한 대상을 구체화
 -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나무의 식재(다만, 경작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관상용식물의 가식은 제외)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 공유수면의 준설 또는 굴착
 - 예정지역의 지정당시 공사 등에 이미 착수한 자에 대한 신고기한(1월 이내) 명시
 -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변경허가) 및 공사·사업신고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규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규정

■ 심사결과(2002. 12. 31)

- 유사입법례에 비추어 “경작을 위한 토지 의 형질변경”과 “농림수산물 생산을 위한 간이공작물” “경미한 토지의 이용행위” 등은 행위제한 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선
 - 사업 지정·고시의 행정조치에 대해 관계자가 충분히 인지·준비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을 1월에서 3월로 연장하도록 개선권고

2. 철도청

가. 지난 5년간 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총 15개의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기존 등록규제 중 5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철도소운송업에 대한 검사 사유 확대
 - 철도처장의 소운송업자에 대한 운임·요금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대상으로 철도소운송업 운임·요금 기타 취급조건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규정

나. 2002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 2002년도에 철도청의 신설·강화규제는 없음.

제5절 _ 보건복지분야

*집필자 : 정일황 사무관(Tel. 3703-2156, ihwang@opc.go.kr)

1. 보건복지부

가. 지난 5년간 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총 50개의 법률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94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등록규제 중 87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혈액관리업무를 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혈액원의 시설·장비에 대해 채혈업무, 혈액제제 제조업무, 혈액제제 보존·공급업무 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마련
- 약가거품 제거의 필요성과 건전 건강보험재정을 위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상한금액조정기준을 변경하여 향후 1년간 최저 실거래가 구입가 방식을 한시적으로 적용
- 부랑인 복지시설 시설장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부장급 이상 또는 사회복지행정분야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

-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등록절차 및 설치인정기준인 인력기준과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특수의료장비의 양도나 폐기 시, 인력 및 시설기준 변동 시 등록관청에 통보하도록 규정
- 특수의료장비 운영 의료기관은 품질관리검사기준(별표3)에 의한 서류검사(1년 주기)와 정밀검사(3년 주기)를 실시하도록 하고 품질관리검사기관은 품질관리검사업 무위탁기준(별표4)에 따라 지정·위탁하게 함.
-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외 응급의료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
- 구급차 등의 위탁기준 신설과 구급차 등의 장비 및 관리기준, 응급구조사, 응급환자 이송업의 준수사항을 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상한연령을 64세로 조정하고, 질병·부상으로 인한 근로무능력자를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제한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연령기준을 현행 61세 이상에서 2003년 63세, 2004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질병기준을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강화

나. 2002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 2002년도에는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약사법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17개 법령에 대해 신설 17건, 강화 26건 등 총 43건에 대한 규제심사를 실시한 결과
- 5건은 철회권고, 16건은 개선권고, 22건은 원안동의하여 보건복지부의 2002년도 총 신설규제건수는 11건.

(1)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약국개설자 등과 담합행위를 한 때 약사법상의 처분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월(현행 자격정지 15일), 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 시 업

무정지 3월(현행 자격정지 1월), 2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3차 위반 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토록 하고, 처방전 2부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5일, 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1월 등 처분기준을 강화

■ 심사결과(2002. 2. 7)

- 처방전 등 기재사항 위반 시 처분기준과 약국 개설자와의 담합행위시 약사법상의 처분기준과 일치시키는데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
- 의료법 제18조의2에 근거한 처방전 2부 교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모호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취지에는 동의. 다만,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와 1부만 교부한 경우는 위반의 정도가 다름에도 동일하게 처분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처방전 미교부와 1부 교부를 차별화하여 1부만 교부한 경우의 행정처분을 완화하도록 개선권고

(2) 요양급여비용대행청구인정범위등에관한기준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3)

- 의약단체 이외의 민간업자가 대행청구를 했을 경우는 벌금 1천만원을 부과
- 사인간의 거래에 관한 계약서 내용을 요구
- 대행청구제 개선을 위해 대행청구단체의 대행청구실시를 통지

■ 심사결과(2002. 2. 21)

- 고시안 제3조(대행청구 적용범위)의 의약단체 이외의 민간업자가 대행청구를 했을 경우는 벌금(1천만원)이 부과됨으로 즉시 시행하는 것은 곤란함. 따라서, 충분한 홍보 및 의약단체의 대행능력구비 등 준비기간을 둔 후 시행토록 개선 권고
- 고시안 제4조제1항(대행청구 요양기관의 대행청구 사실 통지) 사인간의 거래에 관한 계약서 내용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근거법령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도 계약 서류까지 첨부하여 통지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대행청구 통지서내 양식에 대행청구단체명 기입란이 적시되어 있고 신청인란 외 계약당사자인 청구단체 대표자 서명으로 의뢰사실 입증에 충분하므로 계약서 첨부는 삭제권고
- 고시안 제4조 제2항, 대행청구단체의 대행청구실시 통지는 대행청구제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감안, 의약단체의 대행청구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의견에 동의. 다만, 의약단체 지회·분회의 경우 중앙회를 경유하도록 하

는 것은 불필요 하므로 필요시 단체 내부적으로 하도록 개선권고

(3)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 현재 대규모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인 한강 수변구역 외에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변구역에서도 10만㎡ 이상의 대규모 묘지 및 납골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
 -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변경)신고 및 가격표 게시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행정 처분기준을 강화(1, 2, 3, 4차 위반 시 시정명령, 업무정지 10일, 20일, 1월을 업무 정지 7일, 15일, 1월, 3월로 강화)
- 심사결과(2002. 3. 28)
 -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을 기존의 한강 수변구역 외에 낙동강, 영산강, 금강, 섬진 강으로 확대는 원안대로 의결
 -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변경)신고 및 가격표 게시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행정 처분기준 강화는 원안대로 의결

(4) 건강검진실시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 검진기관에서 검진결과를 직접 수검자에게 통보하도록 강화
 - 검진기관의 검진결과 통보기한을 단축(30일 → 15일)
- 심사결과(2002. 4. 11)
 - 검진결과와 통보를 검진기관에서 직접 수검자에게 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 다만, 시행령에 공단이 직접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이 필요
 - 검진기관의 검진결과 통보기한 단축(30일 → 15일)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

(5)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자는 매일 조리·작업 개시 전에 종업원의 건강 및 개인위생 상태를 확인토록 하고, 설사·화농성 증상 등 감염우려가 있는 질환을 앓고 있는 종업원을 조리 및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
- 심사결과(2002. 5. 2)

- 규제내용(일과전 매일 종업원 건강진단 및 영업종사 배제의무)이 과도하여 영업주에게 준수 및 집행 가능성 없는 규제로 철회권고

(6) 피부양자인정기준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그 동안 소득이 없는 자로 간주하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여 보험료를 면제하였던 장애인(상이군경·북한귀순 상이자 포함)과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중 연간 500만원 초과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 독립적인 생활능력자로 간주하여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보험료를 부과
- 심사결과(2002. 5. 2)
 - 피부양자인정기준고시 개정안에 원안대로 동의. 단,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연간 합계액 개념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

(7) 혈액관리법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강화 1)
 - 혈액관리업무를 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혈액원의 시설·장비등 기준 마련
 - 헌혈자의 건강진단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문진 시 헌혈자의 건강에 대한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 혈액관리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 등(시설·장비대장 비치)에 대한 규제를 강화
- 심사결과(2002. 6. 21)
 - 혈액원 시설·장비 등 기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
 - 헌혈자의 건강진단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단체헌혈 시 문진을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을 강제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철회권고
 - 서류의 작성 등은 보고 및 검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고 시설·장비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규정이 있음에도 별도로 시설·장비대장을 비치토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로 철회권고

(8) 재해구호법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4)
 - 전국재해구호협회장은 의연금품을 사용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도

록 함. 다만, 응급구호(재해발생 후 7일간의 구호)의 경우 의연품은 미리 사용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재민의 재해구호 및 생계지원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연금품을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 및 수량의 범위 안에서 전국재해구호협회장에게 의연금품 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도록 함.
- 재해구호협회장은 의연금품의 사용·운용 또는 보관상태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연금품의 사용·운용 또는 보관상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전국재해구호협회장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예산서 및 의연금품 등의 관리운영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의연품 중 보관이 곤란하거나 이재민 구호에 필요 없는 물품의 처리(기부, 매매) 시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의연금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하도록 함.

■ 심사결과(2002. 7. 5)

- 의연금품 사용승인에 대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목적외 모집경비의 사용가능한 도를 2/100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모집·배분·관리경비와 협회 운영비 등을 포함한 비용도 2/100 이내임을 명확히 하고, 또한 “기타 복지부장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항은 보다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개선권고
- 의연금품 특별사용은 원안대로 의결
- 점검 및 조사는 원안대로 의결
- 중요사항 보고는 원안대로 의결. 다만, 협회의 보고의무, 자료제출의무 부과와 운영 관련 복지부장관의 승인제도 등은 법률적 근거가 다소 포괄적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

(9)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약제 및 치료재료의 보험상환 시 상한금액의 직권조정기준을 현행 가중평균가 방식에서 최저실거래가 방식으로 변경,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실구입가 자료 또는

요양기관 및 공급업자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결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요양기관의 품목별 최저 실구입가격으로 조정

- 다만,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공개경쟁입찰, 가격이나 도매업소의 과도한 할인판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방법에 의한 실구입 가격은 조정에 반영하지 아니함.
- 심사결과(2002. 6. 14, 6. 21, 6. 28, 8. 9)
 - 약가거품 제거의 필요성과 불합리한 건강보험재정지출을 억제할 필요성을 인정하되, 가격규제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동 제도를 개선·운영하도록 권고
 - 국·공립병원은 공개경쟁 입찰가격으로 비용을 상환하고 이를 점차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으로 확대적용하도록 유도함.
 - 공개경쟁 입찰가격을 적용하기 어려운 기관에 대하여는 향후 1년간 최저 실거래 구입가 방식을 적용하되 과도한 할인판매(공개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등 비정상적인 거래방법에 의한 실구입가격은 반영하지 아니함.
 - 최저실거래 구입가 산정에 있어 조사공개, 이의신청, 심사 등 제반 행정집행에 공평성·형평성·정확성 등을 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결과를 시행 1년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

(10) 약사법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4)
 - 임상시험용의약품품목허가제 폐지에 따라 임상시험 실시기준을 강화
 - 임상시험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상시험 개시
 - 임상시험자료집을 임상시험자에게 제공
 - 매년 임상시험 실시상황을 익년 2월 말까지 식약청장에 보고 등
 - 임상시험계획승인 신청 시 기준 및 시험방법, 안전성·유효성 자료 등 제출 첨부자료를 추가하고, 승인된 계획의 취소 및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사용금지 등 행정조치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함.
 -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토록 하는 표시기재사항을 추가함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경우 전제조공정을 위탁제조하거나 소분 또는 수입한 경우 제조원의 상호와 소재지(외국의 경우 국가명)를 기재
 - 임상시험용 의료용구의 경우 “임상시험용”이라는 표시, 제품의 모델명, 제조번호,

사용방법, 의료용구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임상시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표시, 수입 의료용구인 경우, 제조원의 상호와 소재지(외국의 경우 국가명)를 기재

-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동물 병원의 명칭, 연락처, 의약품명칭, 수량 및 판매일자 등을 판매관리대장에 기록·보관토록 함.
- 심사결과(2002. 8. 2)
- 신청자의 사정에 따라 임상시험의 1년 내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선진국과 같이 임상시험 승인후 개시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도록 개선권고
- 임상시험계획변경의 경우 기재출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식약청장에게 위임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제5호 “기타 식약청장이 고시한 자료”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도록 개선권고
- 의약품 등의 표시기재사항 관리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동의
- 판매방법의 제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동의

(11)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3)
- 담배영업소 내 표시판, 스티커, 포스터 전시 또는 부착을 금지하고, 잡지에 의한 담배광고를 품종군별로 연간 60회에서 30회로 축소하는 등 담배에 관한 광고 제한을 강화하고,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내에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금지 및 철거
- 담배 및 주류의 경고문구를 백색바탕에 선명한 적색글씨로 표기하도록 강화
- 공동이용의 사무실, 화장실, 실내계단, 복도 등에 대한 흡연구역 지정·설치 금지, 금연구역·흡연구역 구분시설에 실외체육시설·승강장, 게임방(PC방), 만화대여업소 및 150㎡이상 음식점 등의 시설을 추가하고,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중 연면적 1,000㎡이상의 정부청사, 의료기관, 영·유아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 및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지정에 의한 경우 당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는 금연시설을 운영하는 등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금지 규제를 강화
- 심사결과(2002. 9. 4, 9. 11)
- 담배에 관한 광고제한은 영업의 본질을 침해하고 제한 효과가 불분명하며, 기존자판기의 보상 없는 철거와 흡연구역에서마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철회권고
- 상품의 색상에 대한 단색 규제는 디자인에 대한 규제로 과도하므로 철회권고

- 공동이용 시설에서의 금지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규제이므로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며, 영세한 PC방·만화방 등의 비용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시행시기 조정을 권고(2003. 7. 1이후 시행)하고, 공익목적이 아닌 건물 소유자 등 개인의 의지에 의한 시설물 전체 금연시설 지정은 법적요건으로 부적절하므로 자율규제로 개선

(12) 불량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불량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장의 경우, 시설의 규모에 상관없이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을 소지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
- 심사결과(2002. 10. 9)
 - 시설장 자격요건은 규개위에서 기의결된 “사회복지시설 관련 규제개혁방안(2002. 2)”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설장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에만 한정하지 말고 각계의 뜻있는 사람들도 참여가 가능토록 확대 권고

(13) 특수의료장비설치및품질관리에관한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5)
 -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설치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한 경우 설치등록 취소 또는 사용금지 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설치인정기준과 관련하여 인력 및 주요 구성품의 변동이 있을 경우 등록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에 따른 운영의 적합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 또는 방사선사 1인을 장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중지·양도 또는 폐기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이 작성·비치·보존해야 할 서류의 종류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 시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사용 중지를 하였거나 사

용금지 명령을 받은 후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장비를 사용하기 전 품질관리검사(서류검사 및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의 경우 해당장비의 사용을 금지

■ 심사결과(2002. 10. 9)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과 같이 특수의료장비 설치등록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외 시·도지사를 포함하도록 개선권고하고, (병상수)시설기준과 관련하여 종합병원(100병상 이상)에 대하여 CT설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므로 종합병원의 CT설치는 허용하도록 권고
 -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및 운영·관리를 위한 상근 의사 또는 방사선사 1인의 장비관리자 선임은 원안 의결
 - 특수의료장비의 사용증지·양도·폐기의 사유발생시 신고는 원안 의결
 - 특수의료장비 운영 의료기관과 품질관리검사기관의 특수의료장비관련 서류 작성·비치·보존 및 요구시 제출은 원안 의결
 - 특수의료장비 운영 의료기관은 품질관리검사기준(별표4)에 의한 서류검사(1년 주기)와 정밀검사(3년 주기) 실시하도록 원안 의결
- * 품질관리검사기관은 별표 5 기준에 따라 지정·위탁

(14)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시장·군수·구청장의 장애진단 의뢰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제한하고, 장애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및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심사결과(2002. 11. 6)

- 장애진단기관을 사전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민원인의 접근편의성을 제약하고 의료기관의 의료행위를 차별화 하는 과도규제임. 다만, 현실적으로 장애인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법 제31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을 “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개정토록 개선 권고

(1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3, 강화 6)

•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강화

- 각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무선통신·전산시설 설치를 신설(장비기준 강화)
- 각 응급의료기관의 인력기준중 전문의(지역응급의료센터는 3년차 이상 수련의 1인,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전담의 또는 당직의사 중 1인 가능) 1인 이상을 24시간 상주하여 근무하도록 강화
- 권역응급의료센터(CT촬영실, 중환자실·입원실 별도설치), 전문응급의료센터(혈액성분·화학검사, 동맥혈가스분석 등 24시간 검사가능 장비 및 외상센터의 CT촬영실 별도설치) 시설기준 강화
- 권역응급의료센터 간호사(12인→15인),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응급구조사(구급차 1대당 2인 이상 의무화) 등 인력기준을 강화

- 시·도지사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특별·광역시에는 인구 100만명당 1개소로, 도는 인구 50만명당 1개소로 제한(초과지정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 응급의료기관외 응급의료시설의 시설·인력·장비등 설치기준 신설
- 의료기관의 응급진료비 미수금 대불청구 시 제출서류 중 진료비계산서, 대불동의서 추가 및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토록 강화
-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 등을 운영하는 자의 응급의료정보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종류를 주요 의료시설·장비 가용현황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정보로 확대 및 해당 의료정보의 변동즉시 통보로 강화
- 규칙 제20조의 비상진료체계에 누락된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의 당직응급의료종사자중 전문의에 대하여 상시 연락 가능하도록 규정
-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중 탑승 시 소속·성명·자격 등을 기재한 표식부착의무를 강화
- 특수구급차의 장비(자동제세동기, 휴대용산소포화농도측정기), 의약품(니트로글리세린 등) 및 구급차의 이송요금표 부착, 운행기록 보관(3년) 등 관리기준을 강화
- 응급환자이송업자의 지도의사·영업시설 변경 시 신고, 이송 치료 영수증사본 보관(3년) 강화 및 소속 응급구조사·직원에 대한 정기 교육 실시 등 준수사항을 신설
- 구급차량 1대에 대한 다수 의료기관 중복위탁 금지, 환자이송 시 법령에 의한 응급

구조사 등 탑승, 초과 요금징수 금지 등 구급차위탁기준 및 절차를 신설

■ 심사결과(2002. 11. 13)

-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
 - 각 응급의료기관의 무선통신·전산시설 설치, 전문의 1인 이상의 24시간 상주 근무 및 권역응급의료센터의 CT촬영실·중환자실·입원실 별도설치, 전문응급의료센터의 혈액성분·화학검사 장비 등 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
 - 시·도지사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에 대해서는 도지역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설치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고, 이미 지정된 센터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6월) 및 조건부재지정 등을 조치하도록 개선권고
- 응급의료기관외 응급의료시설 기준
 - 지정 응급의료기관등의 명칭과 혼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응급환자 진료기관임을 표기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표기금지 해당 기관명 등을 명시적으로 예시하도록 개선권고
 - 인력은(의사1인, 간호사 1인 등), 시설(30㎡ 이상), 장비(X-선 촬영기 등)기준 신설은 원안동의
- 미수금 대불청구 기한(응급의료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제출서류 추가(진료비계산서, 대불동의서) 및 관련서류 보관의무(3년간) 등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
- 응급의료 정보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 주요 의료시설·장비 가용현황 등 필요정보의 정보제공 확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
 - 해당 의료정보의 변동 즉시 통보는 정보요청 및 준수의무의 범규정과 일치하도록 개선권고
- 누락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당직전문의 전문과목 규정(내과·외과·흉부외과·정형외과·소아과 등)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
- 응급구조사 탑승시 표식 부착의무 부과는 원안대로 의결
- 구급차 등의 기준 및 장비(자동제세동기, 휴대용산소포화농도측정기), 의약품(니트로글리세린 등) 기준강화와 이송요금표 부착, 운행기록 보관(3년) 등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 및 준수사항중 지도의사·영업시설 변경시 신고의무 이송처 치료영수증사본 보관(3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실효성 없는 소속 응급구

조사·직원에 대한 정기교육 의무조항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구급차등의 위탁기준 및 절차에서 구급차량 1대에 대한 중복위탁 금지 및 환자이송 시 응급구조사등 탑승, 초과요금징수 금지 등 신설조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

(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상한연령을 64세로 조정하고, 질병·부상으로 인한 근로무능력자를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제한

■ 심사결과(2002. 11. 27)

- 인구 고령화 추세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취지를 고려하여, 자활의욕 고취 및 사업참여 기회확대 등 현실적합성 제고를 위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조건부 생계급여) 상한연령 조정에 동의
- 부정수급·도덕적 해이 방지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한 근로능력자 질병기준에는 동의 하되, 제도의 임의적용 방지를 위해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질병의 종류·유형 등 기준을 향후 고시로 명확히 정하여 규제위 심사를 받도록 권고

(17) 의료급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연령기준을 현행 61세 이상에서 2003년 63세, 2004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질병기준을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강화하며, 입원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입원 1회당 60일(정신 및 행동장애는 180일)로 제한 하되,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입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연령기준 및 질병·입원일수 기준을 강화

■ 심사결과(2002. 11. 27)

- 의료급여 수급권자 연령기준 조정 및 질병기준에 동의. 다만 질병·부상으로 인한 근로무능력자 판정기준과 관련하여 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질병의 종류·유형을 고시에 명확히 하여 규제심사
- 입원 상한일수 제한 및 연장승인 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는 시·도지사의 연장승인 결정에 따르는 등 중복 승인을 방지하고, 장기입원자중
무의탁자 등에 대하여는 복지·요양시설 입소 또는 입원연장 등 복지수혜가 가능하
게 관리·운영하도록 개선권고

제6절 _ 일반행정분야

*집필자 : 손 방 사무관(Tel. 3703-3935, sonbang@opc.go.kr)

임규호 사무관(Tel. 3703-3936, kh6663@opc.go.kr)

1. 행정자치부

가. 지난 5년간 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총 21개(1998년~1999년 1개, 2000년 4개, 2001년 7개, 2002년 9개)의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령을 대상으로 110건(신설 35건, 강화 65건, 내용심사 10건)의 규제에 대한 심사를 통해 47건(기타증가 8건, 누락 8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규제 중 49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화재관련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1999. 7. 15일 차관회의에서 규제를 강화토록 결정
 - 자동화재 속보설비의 설치대상 및 기준에 '노유자 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중 숙박 시설이 있는 청소년 시설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를 신설하여 강화
- 금고 임원이 지방의회의원 등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고, 현재에도 상당

수가 지방의회의원 등을 겸직하고 있음. 따라서 금고 또는 연합회가 공직선거에 관여할 때 조직의 운영이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거나 특정후보가 금고 및 금고연합회를 선거운동에 이용하지 못하게 함.

- 한국자원연구소 등 4개 검사기관으로만 제한된 온천전문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다른 기관 및 단체도 온천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신설
 - 온천전문기관은 정부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측면과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검사를 수행하는 양면성이 있는 기관으로 검사의 질에 대한 신뢰성 및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문인력 및 장비 구입을 의무화
- 광고물의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게시하거나 광고물의 모양·크기·색깔·설치방법 등을 위반한 광고물 등에 대한 시정조치대상을 광고물 설치자·관리자·광고주 또는 옥외광고업자 이외에 토지건물의 소유자·관리자 추가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 확보 및 불법광고물의 신속한 정비를 가능케 함.
- 정부의 세제·금융지원을 받았거나 적용특례를 받아 시설물 등을 건축한 지방소도읍지역안의 기업에 대하여 일정수 이상의 고용인력을 지역주민중에서 우선 고용토록하여 지방소도읍 지역의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배후 농어촌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함.
- 그동안 아파트에 설치하는 제연설비의 경우에 공기보충시설 및 과압방지시설을 제외하여 왔으나, 최근 아파트 높이·단지가 고층화·대형화되면서 화재발생 시 긴급피난이 불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에도 공기보충시설과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토록하여 피난자의 안전과 소화종사자의 원활한 소화활동을 도모

나. 2002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 2002년도에는 소방법·시행령·시행규칙,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연소방지도료의도포및성능에관한기준, 자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유선및도선사업법, 지방공기업법, 청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등 9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0건(누락 3건, 부활 2건 포함), 강화 19건, 내용심사 2건 등 총 3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1건 중 4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5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2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행정자치부의 2002년도 총 신설규제는 7건

(1)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정부의 지진방재종합계획 보완계획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시설에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송유관,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등 6개 시설을 추가
- 심사결과(2002. 2. 28)
 - 금번에 추가되는 6개 시설은 1999. 10월 재해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지진방지 종합대책으로 확정된 사항을 제도화하는 것으로써 지진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새로 지정된 6개 시설에 대한 내진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의

(2) 연소방지도료의도포및성능에관한기술기준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의 지하구에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과 설치기준을 설정
 - 연소방지도료의 도포방법 및 도포장소
 - 도료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함.
- 심사결과(2002. 3. 7)
 - 지도료의 도포방법과 장소를 정하는 규정이며, 감사원 등에서 지하공동구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한국통신·한국전력 등 관련기관과 의견조회 및 합동회의 결과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연소방지도료의 기본적인 품질이 유지되고 난연성능이 있는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산업규격을 준용하고 있고, 지하구에 설치된 통신·전력케이블 등의 화재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3) 자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형식승인품목인 자동식소화기중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비압력형이 개발됨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시험항목에 내구성 시험 등을 추가
- 심사결과(2002. 3. 21)
-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신기술로 개발된 제품을 생산·공급하여 다양한 제품의 선택의 기회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국내 제조업체의 기술개발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동의

(4) 소방법시행규칙 및 소방기술기준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4)
- 찻질방, 산후조리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장에 소방시설 등 안전에 대한 시설규정이 없어 화재시 대형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이들 업종을 다중 이용업으로 규제하여 소방·방화시설 설치 의무화
- 위험물배관의 경우 부식, 손상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보온을 위하여 단열재 등으로 배관을 감싸는 경우 쉽게 개폐할 수 없는 구조로 점검 시 불편 초래. 그래서 일정구간마다 점검 시 쉽게 탈착 등 확인가능한 구조로 개선
- 인화성 및 발화성이 강한 특수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시설에 있어서 위험물의 누설이나 정전 시에 대비하는 시설을 보완하여 화재예방과 피해를 최소화
- 소방법시행령에서 위험물을 제조 또는 저장하는 장소에서 부두 등 출하장소 또는 사용장소로 이송하는 파이프라인시설을 이송취급소로 규정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설치기준과 취급기준을 마련
- 심사결과(2002. 6. 24)
- 안전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자유업종에 대하여 소방·방화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고, 업주의 부담보다는 규제의 실익이 큰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
- 위험물 배관시설의 부식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구간마다 점검구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나 현재 정유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있고 업체가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행정지도 하여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철회권고
- 상온 등에서 쉽게 분해 폭발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등 특수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정전 시에도 냉각장치 등을 작동할 수 있는 예비전원을 설치토록 하

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

- 이송취급소 관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위험물 이송취급소의 안전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여짐.

(5) 소방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4, 내용심사 2)

-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화재현장 등에서 폭발 및 연소방지를 위하여 가스·전기·유류시설의 공급을 차단 등 필요한 조치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대여금지, 등록취소·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제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규정함.
- 소방·방화시설평가업·시설업 및 위험물제조소 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의 처분할 경우 국민이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2천만원(위험물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함.
-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신고 의무 조항을 신설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대형의 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함.
-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은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행하도록 함.

■ 심사결과(2002. 6. 28)

- 가스와 같은 폭발위험성이 큰 위험물질에 대하여 화재현장에 제일 먼저 출동한 소방대장에게 긴급조치권 부여는 바람직함. 다만 시행령 등 하부규정 제정 시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긴급조치 범위 등을 결정해야 함.
- 건축주 입장에서 업체의 공사중단 등을 조기 통보를 받음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관계인에게 통지의무는 필요하다고 판단
- 영업정지 등 처분으로 업체뿐만 아니라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과징금제도' 도입은 행정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이해관계인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보여짐.
-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건축주의 2차적 부담을 줄 수도 있으나 분리발주에 따른 업체선정 불편과 비용증가 등 이중적 부담의 소지도 있음. 따라서 건축주가 일

팔발주 또는 분리발주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동 조항을 삭제하여도 안전관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따라서 동 조항이 단지 행정청의 편의성만을 위한 제재수단으로 철회권고
- 운반용기 대형화를 위해서는 운반과정에서 안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세계 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검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됨.
- 위험물운송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과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량운전자에게 최소한의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규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6) 지방공기업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누락등록 1)

- 행정자치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기업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심사결과(2002. 9. 11)

- 1999년까지는 범칙금으로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로 완화하였으며, 지방공기업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영개선 능력은 미흡하여 공기업의 재정의 건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동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7) 유선및도선사업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누락등록 1)

- 유·도선 사업자 및 선원이 전복·충돌 등 사고가 발생한 때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와 유·도선 승객이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심사결과(2002. 9. 11)

- 유·도선의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유·도선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어 동의

(8) 소방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누락등록 1)

-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용수·소화기구 그밖의 소방상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하도록 규정
- 심사결과(2002. 9. 11)
- 화재경계지구는 화재의 위험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어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방용수 및 소화설비 설치가 요구되므로 동의

(9)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신규채용소방공무원 응시자격을 제1종 운전면허증 보통면허 또는 대형면허자격 소지자로 함.
- 신규채용 소방공무원의 응시연령을 남녀 공히 21세 이상 30세 이하로 조정
-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신장은 남자 : 165cm → 167cm, 여자 : 154cm → 157cm로, 체중은 남자 : 55kg → 57kg로 하며 색신은 색맹기준에서 색각(색맹+색약)기준으로 변경
- 심사결과(2002. 11. 20)
-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모든 소방공무원의 출동차량을 상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
- 분야별 행정의 능률성 및 직렬·직급별 업무의 전문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응시연령에 관한 합리적 개선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조건부 동의
- 국민평균신체지수가 대폭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소방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소방공무원의 신체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2. 법무부

가. 지난 5년간 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변호사법, 사법시험법, 민영교도소 설치·운영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총 14개의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43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23건의 규제를 강화함.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거소이전 신고 및 반납의무
 - 희망하는 재외동포에 한하여 거소신고증을 발급하는데,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재외동포가 거소를 이전할시 신고증의 증명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소이전 신고를 의무화
 - 소지할 수 없는 자격이 되거나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반납하도록 의무화
- 국내거소신고의 첨부서류 규정
 -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경우 영주권 사본, 호적등본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
- 외국국적 동포 체류기간 연장불허
 - 외국국적 동포가 체류기간 연장신청시 불허사유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규정
- 재외동포의 국내활동 제한
 -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 동포에 대하여 단순노무행위, 사행업종 등의 국내활동 제한
- 출국금지실무위원회 신설
 - 출국금지 결정을 보다 신중하게 함으로써 인권침해소지를 최소화하며, 출국금지기준 해당여부 등을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심사와 관련한 업무처리 및 자문을 위하여 출국금지실무위원회를 신설
- 사법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학사 이상의 법학과정 개설학교에서 법학사 이상의 법학과정 학위취득자 또는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이수자,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로 제한
- 외국변호사의 등록신청 절차
 - 개업이 허가된 외국 변호사는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신청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변호사 명부에 등록후 신청인에게 통지

- 비위전력자에 대한 법률사무소 직원채용 제한
 -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의 채용제한 사유를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일정범죄에 관한 범죄전력으로 규정
- 민영교도소의 상근직원 정수 승인
 - 교정법인은 위탁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민영교도소 등의 상근직원의 정수를 정하여야 하고, 그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기구도표와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를 명시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외국인 허위초청 등의 금지
 - 국내에 불법취업시킬 목적으로 외국인을 허위 초청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금지
- 민영교도소 수탁자 선정
 - 법무부장관이 교정업무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인력·조직·시설·재정능력·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고,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만 위탁할 수 있으며, 교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위탁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그 법인의 목적사업에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이 포함되도록 정관을 변경하도록 규정

나. 2002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 2002년에는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및외국인출국정지규칙개정안에 대해 강화 3건, 내용심사 2건 등 총 5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결과 대상 5건 중 원안의결 4건, 철회권고 1건

(1)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및외국인출국정지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3, 내용심사 2)
- 출국금지의 기본원칙(강화)
 - 출국금지대상에 거주목적의 여권발급대상자를 추가함.
- 출국금지 대상자(내용심사)
 - 현행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법무부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출국금지대

상자를 법무부령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에 직접 규정

- 기소중지자 중 출국금지 대상자의 출국금지 예정기간(강화)
 - 기소중지자에 대한 출국금지 예정기간을 현행 3월에서 6월로 연장
- 출국정지대상자(내용심사)
 - 출국정지의 근거인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제29조 및 제4조제1항)에서 외국인의 출국정지대상을 병역의무 관련사항을 제외하고 국민의 출국금지 대상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외국인 출국정지 대상자도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
- 출국정지 예정기간 등(강화)
 - 수사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은 1차 연장을 포함하여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그러나 체류외국인 및 외국인범죄자의 증가를 감안하고, 도망중인 자 등 그 소재가 불명인 경우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출국정지기간을 1월로 함.
- 심사결과(2002. 5. 2) : 원안의결 4, 철회권고 1
-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출국금지대상자, 출국정지대상자, 출국정지예정기간 등 4건은 원안의결
- 출국금지 예정기간 연장 : 철회권고
 - 기소중지자 중 출국금지대상자의 출국금지예정기간을 현행 3월에서 6월로 연장하는 것은 3월마다 출국금지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수요 감축 외에는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거가 부족함으로 철회권고함.

3. 경찰청

가. 지난 5년간 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경찰청에서는 총 18개의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20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등록규제 중 65건의 규제를 강화하였음.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8조제3항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의 범위 등'을 동법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 질서유지인의 명단통보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음.
- 경비업 허가업종에 특수경비업무 및 기계경비업무를 추가하고,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 및 갱신허가를 5년으로 신설하며 기계경비업자에 대한 오·경보 방지 및 대응체제 구축 등의 의무를 부과토록 하였음.
- 사격및사격장단속법의 신고대상 휴업을 15일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기 규정된 휴업신고시 법정 구비서류 중 완성검사합격증은 제출서류에서 삭제함.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상 장난감꽃불류의 저장 및 운반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화약류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필요한 조치이므로 규제강화에 동의하되, 동법 시행령제27조별표6의 판매업자와 토목업자 등에 대한 저장소 이외의 저장기준 25kg은 삭제하였음.
- 국내 운전면허 정지기간 또는 재취득 금지기간 중 외국에서 취득한 국제운전면허로 국내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무면허 운전으로 규정하여 처벌
-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 강의실·기능교육장·부대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시 재취득 금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2000. 8. 25)
- 위험물적재차량의 통행차로를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로 하고, 최고 속도를 80km/h(고속도로)로 제한
- 학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곳에서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강사의 자격을 취소·정지하도록 함.

나. 2002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 2002년도에는 도로교통법시행령·규칙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개정안 등 2개의 법령에 대해 강화 9건, 내용심사 2건 등 총 1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결과 대상 11건중 원안의결 7건, 개선권고 2건, 철회권고 2건

(1)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5, 내용심사 2)
 - 국내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자국 운전면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지 않는 국가의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국내운전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적성 및 학과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도록 함.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신청시 동 학원의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연습운전면허시험 평가기간을 6월 1년으로 연장하고, 지정에 필요한 연습운전면허시험 합격률을 70% 80%로 상향 조정
 - 현행 2단계(20km/h 미만, 20km/h 초과)인 과속단속기준을 3단계(20km/h 이하, 21~40km/h, 40km/h 초과)로 세분화
 - 구체적인 최고속도 감속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강풍이 불 때의 감속기준을 초속 15m 이상 20m 미만의 바람이 불 때에는 최고속도를 20%,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이 불 때에는 최고속도를 50% 감속하도록 함.
 - 운행기록계 미설치 또는 고장차 운전자에 대하여 범칙금 이외에 운전면허별점 15점을 부과
 -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에 대하여 운전면허별점을 15점 → 30점으로 상향 조정
 -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설비 및 인적기준을 정하고, 운영책임자의 선임·해임시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
- 심사결과(2002. 6. 14)
 - 외국면허증에 대한 국제상호주의 원칙에 의하여 우리나라 면허 불인정 국가에 대하여 운전면허 시험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로 볼 수 없고, 외국의 면허소지자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규 및 도로여건 등이 각기 다르므로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학과시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교통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1997년 전문학원제도 도입이후, 전국의 운전학원(553개) 중 471개(85. 2%)가 이미 전문학원으로 전환되었으며, 현재 일반학원은 61개(11%)로 대부분 시설요건 등이 전문학원 신청요건에 미달하거나 신설학원의 경우이며, 2001년도 서울·경기지역 지정전 전문학원의 연습면허 시험합격율이 92.6%에 달하고(최소 합격률은 87.9%)

있어 합격률을 8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 평가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는 것도 연장에 따른 운전학원의 질적 제고 측면보다는 전문학원의 진입규제 측면 및 평가기간 연장에 따른 지정전 전문학원의 비용부담 증가를 감안할 때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거가 부족하므로 동 개정안은 삭제하도록 철회 권고
-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8배에 달하고 있고, 과속의 정도가 높을수록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커지므로 현행 과속에 대한 처벌기준을 다소 세분화하여 차등 부과하는 것이 처벌의 형평성 및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바람은 시각에 따라 풍속이 계속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법제화하여 제한하는 데는 그 한계가 있고, 단속과정 및 운전자의 순응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바람에 의한 속도제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을 근거로 위험지역에 풍속전광판, 위험안내판을 설치하여 계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므로 개정안을 삭제하도록 철회권고
- 대형 화물자동차, 영업용자동차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철길 건널목사고의 경우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 철길건널목사고의 90% 이상이 운전자의 일시정지무시 등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에 기인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상 벌점 30점 대상인 중앙선침범·고속도로 갓길통행금지·버스전용차로통행금지 위반 등과 비교해 볼 때 처벌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다소 벌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지난 2001.12.31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기능시험 응시 전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운영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4)

- 총포등 제조·판매업의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의 같은 영업에 대한 허가를 제한
- 총포의 정의에 '총포의 부품'이 포함됨에 따라 기관부체와 총포신 등 총포의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경찰관서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살인·특수강도 등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총포 등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총포등 제조·판매업소의 양도양수시 행정처분중이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행정처분의 효과와 절차를 승계하도록 함.
- 심사결과(2002. 10. 30)
 - 총포·화약류등의 제조·판매허가는 공공의 안전문제와 직결되고 문제발생시 주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규정으로는 악의적 양도양수행위를 이용한 부적격 영업자를 배제할 방안이 없어 허가제한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함.
 - “다만, 영업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전 영업자의 영업허가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 조항은 타입법례 및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총기의 임의 개·변조나 불법사용 등을 위해 부품의 밀거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2001. 5.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부속의정서로 채택된 「총기류 불법제조·거래방지의정서」에도 총기류의 구성부분 및 부품에 대한 불법제조·거래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총기소지허가자중 상당수가 특정강력범죄경력자이고, 총기는 다수인의 생명·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경력자의 경우 비록 집행유예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므로 일정기간 총기소지허가를 제한하여 총기를 이용한 강력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총포·화약류의 효과적인 관리는 공공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측면을 고려할 때 악의적 양도양수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마련이 필요하므로 행정처분 효과승계는 동의하되,
 -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그러하지 아니한다” 조항은 입증 책임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법인에게 지움으로서 선의의 양수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양수인 등이 악의임을 행정청이 입증하는 것으로 개선권고

제7절 _ 교육분야

*집필자 : 김진남 사무관(Tel. 3703-2186, twinjin@opc.go.kr)

1. 교육인적자원부

가. 지난 5년간 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총 38개(98년 7개, 99년 5개, 2000년 9개, 2001년 8개, 2002년 9개)의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령을 대상으로 122건(신설 60건, 강화 31건, 내용심사 31건)의 규제에 대한 심사를 통해 58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규제 중 20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대학교원 신규채용 시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학교용지의 인접거리는 통학거리 1,000m 이내로 하고, 거리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토록 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함.
- 원격대학,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시 인가 신청토록 하고, 폐쇄 시 이

를 신고토록 함.

- 대학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교육여건과 학교현장을 공표하도록 함.
- 편제가 이미 완성된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을 당해연도 4월 1일 현재 당해 대학에 등록된 학생의 수로 함.
- 학력인정기준학점 중 18학점이상은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취득하도록 함.

나. 2002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 2002년도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평생교육법시행령·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영재교육법시행령, 고등교육법시행령, 산업교육진흥법,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시험시행규칙, 인적자원개발기본법시행령 등 총 9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7건, 강화 13건, 내용심사 2건 등 총 3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총 32건 중 5건에 대해서는 철회권고, 7건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20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교육부의 2002년도 총 신설규제는 13건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4, 강화 5)
-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교육감이 당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토록 함.(신설)
- 교육감의 자격조건을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양정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인 자에서 10년 이상인 자로 강화(강화)
-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의 선거인이 선거일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니거나 징역형의 선고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을 제한(강화)
- 교육감·교육위원 입후보자의 등록시 재산신고서, 병역신고서, 납세증명서, 범죄경력 조회서류 등을 제출토록 함.(강화)
- 후보자등록을 한 자가 현직에 있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그

직무를 정지(신설)

- 공무원·교육위원·정당원·방송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사무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그 직을 일정기간 전에 사퇴토록 함.(신설)
- 선거권자인 운영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교육·연수회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특정후보자를 지지·반대하기 위한 동문회·교원단체·연구회 등의 집회를 금지(신설)
-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대상으로 ‘허위사실공표죄’에 후보자 등의 출생지, 소속단체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고 신설되는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마련함.(강화)
- 심사결과(2002. 1. 10, 1. 17) : 원안동의 5, 개선권고 3, 철회권고 1
- 현직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경우 방대한 교육행정 조직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 등 부작용이 우려되며, 이는 다른 후보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부교육감이 그 직을 대행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동의
- 1997년에 교육감 자격요건을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 15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바 있고, 자격요건을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교육행정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 강화될 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제시가 불충분하므로 철회권고
- ‘선거인단의 선거권 제한’은 입법규정 불비를 보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동의
- 후보자 등록 신청자의 범죄경력에 관할 선거구에서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회·회보토록 하여 제출서류에서 제외토록 개선권고
- 후보자의 직무정지는 법률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동의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범위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제1항을 준용하여 동일하게 하도록 개선권고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비교하여 볼 때 행위금지의 주체(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과도하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의2항을 준용토록 개선권고
-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대상 확대 및 각종 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에 대해서는 동의하되, 다만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이 필요

(2) 평생교육법시행령·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4)

- 원격대학설치계획을 승인받은 신청인이 설치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원격대학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교사로 원격대학의 교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사를 원격대학의 교사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격대학의 교사로 이용될 면적을 제외하고서도 당해 학교의 교사는 대학설립·운영규정 등을 충족하도록 함.
- 원격대학에 학부를 설치하는 경우 전공별로 전임교원 또는 조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교원을 임면할 때에는 7일 이내 보고하도록 함.
- 원격대학의 수업료는 학점별로 징수하도록 함.
- 심사결과(2002. 2. 7) : 원안동의 2, 철회권고 2
- 원격대학설치계획을 승인 받은 후 설치인가신청서 제출을 단시일 내에 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3년까지 연기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통상의 원격대학 설립 준비기간의 단축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대로 3년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동 규제는 철회권고
- 원격대학의 교사기준 강화는 기존에 설립한 원격대학에 대한 신뢰성 및 일관성이 결여되고, 당초 원격대학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원격대학 시설기준을 오프라인 대학 시설 기준에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철회권고
- 원격대학의 교원 및 수험료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

(3) 학교보건법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3, 내용심사 1)
- 학교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기준을 강화
- 학교 교사 내 환경 및 식품위생 기준과 검사를 강화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하여 설정권자 및 관리자의 점검을 의무화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신청 시 제출서류 및 결과통보 서식 등을 명문화
- 심사결과(2002. 2. 28) : 원안동의 4
- 학교의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는 필요한 사항으로 동의

-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기준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학생 및 교직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동의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하여 당해 설정권자 및 관리자가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의 취지에 맞는 조치로 동의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신청서류 및 처리방법을 구체화 한 것은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므로 동의

(4) 영재교육법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3)

- 현행 영재교육진흥법상 교육감의 권한인 영재교육대상자 선정권을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최종 선정하도록 하고 영재교육대상자의 구체적 선정기준은 영재교육기관별 학칙으로 정함.
- 영재학교로의 전환이 가능한 대상학교를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학생이 수업시간중에 영재교육원에 출석할 경우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하도록 하며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에 필요한 기숙사, 학생세미나실 등 시설·설비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수는 20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현행 초·중등교육법령상의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규제를 영재교육기관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영재학교 졸업생의 정원의 특례입학은 인정하지 않음.

■ 심사결과(2002. 3. 7) : 원안동의 3

- 당초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안)의 일부 내용이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영재교육진흥법의 개정(당시 국회계류중)을 전제로 마련되었으나, 2002. 1. 24일과 1. 31일 두 차례에 걸친 규제개혁위원회(행정사회분과위) 심의결과 상위법인 영재교육진흥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시행령의 규제심사는 법리적인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동법 개정(안)이 처리된 후 심의하기로 결정
-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임시국회의 파행으로 개정법률(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반면 영재교육진흥법의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2차레(2002. 1. 24, 1. 31)의 분과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부가 보완·수정한 시행령(안)을 2002. 3월에 심사하여 원안동의

(5) 고등교육법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함.
- 심사결과(2002. 5. 2) : 개선권고 1
 - 허수지원에 따른 대학의 결원발생을 방지하고 학생간 균형적인 대학진학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동규제에 동의하되, 동법시행령 제49조①항의 '다른 수시모집'의 개념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 입시제도변경에 따른 대학진학 관계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홍보토록 함.

(6)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등에관한법률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8)
 -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와의 특약에 의해 학과 또는 직업훈련과정의 설치·운영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발, 정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산업체가 근로할 것을 약정하는 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고 근로제공기간에 따라 상환의무를 면제하는 계약 근거를 마련하고 상환을 면제받는 근로기간의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 산학협력단의 명칭과 설치·운영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교비회계의 산학협력단에의 전출 허용근거를 마련하고 전출용도·한도 및 전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산학협력단 회계운영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학교기업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종목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협동연구소의 설치·운영 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교육부장관은 산학협력단 사무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고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심사결과(2002. 8. 2) : 원안동의 3, 개선권고 4, 철회권고 1
 - 산업체의 필요한 인력수요를 대학교육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에 의한 학과 등의 설치에 동의하되, 시행령에서 학생선발 등 운영방법 규정 시 고등교육 법

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보다 강화되지 않은 수준에서 규정토록 함.

- 장학계약 도입에 대해 동의하되, 상환을 면제받는 근로기간의 기준은 용역 등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시행령에 규정하고 '장학계약'이라는 용어는 '학자금 지원계약'으로 수정토록 함.
- 산학협력단 명칭(안제25조④항)의 세부적 규제는 과도한 규제라 판단되므로, 대학 하부기구로서 산학협력단 명칭에 대학의 명칭만 포함되도록 하며, 산학협력단 설치·운영(안제25조⑥항)과 관련하여 위임할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삭제토록 권고
- 수업료가 주된 재원인 교비회계를 산학협력단에 전출토록 하는 것은 대학의 학문탐구라는 근본적인 목적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으나, 산학협력단 최초 설립 시 재원이 필요하므로 설립당시 법인회계 또는 교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산학협력관련 재원만은 산학협력단에 전출을 허용토록 개선권고
- 산학협력단 회계운영에 있어 대학의 일반 회계기준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또는 기업회계를 그대로 준용할 수 없으므로 산학협력단에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회계기준을 마련하는데 동의
- 실험용 공장 등을 활용한 현장실습을 통해 학교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문연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활동만 허용하고자 하므로 동의
- 협동연구소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범위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토록 하고 협동연구소 명칭사용 규제는 규제실익에 비해 과도한 규제이므로 안제35조④항중 '명칭사용' 부문은 삭제토록 개선권고
- 고등교육법상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시설·학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으므로 산학협력단 업무에 대해 별도의 시정 및 자료제출 의무 부과는 중복규제이므로 철회권고

(7)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있어서 부여할 수 있는 가산점의 배점비율을 15%에서 10%로 하향 조정
- 심사결과(2002. 9. 18) : 원안동의 1
 - 교사라는 직업의 특수성, 대도시의 교사 집중에 따른 일부시도의 교사충원 애로 및 사범대학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교사시험 응시자격

을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이미 제한하고 있는 점, 공개전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우수한 교사의 확보를 위해 교사임용시험도 현행보다 경쟁체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

- 따라서 가산점 축소(15% → 10%)에 동의하되 가산점 요소 중 개인의 능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범대 출신 등 지역가산점 부여는 개선대책 강구 필요
 -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헌법소원의 위헌 결정 시는 지역가산점 제도를 폐지
 - 합헌 결정 시에도 지역가산점 부여의 법령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산점 부여규모를 최소화(한도설정)

(8) 인적자원개발기본법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적자원개발관련 연구기관 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센터의 사업추진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소요설비 및 전문인력 등이 미비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교육부장관이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를 거쳐 협력망 주관기관을 인적자원개발관련 연구기관 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협력망 주관기관의 사업추진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소요설비·전문인력 등이 미비한 경우에는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함.

■ 심사결과(2002. 12. 18) : 원안동의 2

-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인력·시설 등에 대한 서류제출 및 사업추진 부진 시 지정취소 등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동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업무의 명확화를 위하여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제정 시 지정자격 요건, 심사기준 및 지정취소 사유 등을 구체화하도록 권고
- 협력망 구축을 위한 주관기관의 지정 및 취소시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나, 업무추진의 명확화를 위하여 협력망 구축을 위한 주관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칙에 자격요건, 심사기준 및 지정취소 사유 등을 구체화하도록 권고

다. 미등록규제 심사결과

(1) 개요

- 2001년도 규제개혁 추진 및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교육인적자원부의 38개 미등록규제에 대하여 심사
 - 초·중등 교육관련 규제(9건)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4건,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4건, 각급학교등에관한규칙 1건
 - 고등교육관련 규제(22건) : 고등교육법·시행령 12건, 대학설립·운영규정 6건, 기술대학 설립·운영규정 4건
 - 자격관련 규제 등(7건) : 교원자격검정령 3건,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1건,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3건

(2) 미등록 규제 내용 및 심사결과(2002. 11. 20)

-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 제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음.
⇒ 조기졸업, 무학년제 등 제도채택시 학제의 기본틀 유지를 위해 승인이 필요하므로 동의
- 고등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를 설치할 수 있음.
⇒ 지역 내에 학교를 신설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복잡한 학교신설 요건을 완화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존치하되, 집행과정에서 학교설립자의 판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운영
- 각종 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
⇒ '유사한 명칭'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동일한 명칭만 규제하거나, 유사한 명칭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함.
⇒ 전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므로 행정규제가 아님.
- 사립의 각급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은 그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수익이 있어야 함.

⇒ 사립학교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최소한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므로 동의

-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 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80/10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함.

⇒ 사립학교의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므로 동의

-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설립주체는 학교현장을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사전 제출

⇒ 학생의 교육권 침해 및 국가 교육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학교현장의 사전제출은 필요하므로 동의

-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제출

⇒ 매년 정기적으로 시설·설비 등 보유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피규제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현황 파악이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자료를 제출토록 개선권고

-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학식·덕망이 있고,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 자라야 함.

⇒ 학교의 설립경영자에 대한 선언적 규정으로 규제가 아님.

-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

⇒ 학교규칙의 법령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학칙의 보고의무는 불가피 하나, '지체없이' 보고토록 한 규정은 개념 명확성 차원에서 보고기한을 명확히 하되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시정요구권도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개선권고

- 대학, 대학원(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을 정함.

⇒ 교육의 기본학제에 따른 입학 자격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동의

- 학교가 시설·설비·수업·학사 등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위반 시 시정·변경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정원감축, 학과폐지, 학생모집정지 등 조치를 취함.

⇒ 법령위반이 아닌 학칙 위반 시에도 정원감축 등의 제재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령에서 위임된 학칙'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취소·정지하거나 정원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없는 바 이에 대한 법령보완이 필요

- 교육부장관은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는 경우에는 휴업 및 휴교명령을 할 수 있음.
⇒ 휴업 및 휴교사유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휴업 및 휴교명령을 발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화하거나 이를 사전심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개선 권고
- 학교의 명칭을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대학은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전문대학·기술대학은 대학으로 사용토록 함.
⇒ 4년제 고등교육기관과 2~3년의 단기고등교육 기관의 대학교명 혼란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의
- 대학의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내지 4학기로 함.
⇒ 현행대로 존치하되 특정한 학과 및 전공에 있어 일정기간의 집중적인 학습과 연구가 더욱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자유로운 학기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검토
- 대학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함.
⇒ 학생의 최소한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므로 동의
- 대학이 임시휴업을 할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 대학의 자의적인 학사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동의
- 대학의 장에게 재학생의 변동상황 등 교육정책수립에 특히 필요한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교육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 요구는 필요하므로 동의
-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함.
⇒ 대학의 모집단위별 정원이 공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인력수급 차원에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거나 법령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존치가 필요하나, 대학운영의 자율성 확보차원에서 중장기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반대학원은 학술학위,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전문학위를 수여하되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음.
⇒ 대학원을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일반·전문·특수대학원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대학원의 종류별 교육목적 등을 고려하여 수여학위를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 동의

-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함.

⇒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인력관리와 연구업적의 공동활용을 위해 필요

- 대학을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대학설립기준을 정함.

⇒ 대학교육의 안정성을 위해 현행대로 교사 및 교지를 설립주체의 소유로 하되, 대학 개방화·교육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교사·교지의 소유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권고

- 교지의 기준면적을 확보함에 있어 학생정원 기준 400명 이하, 400명 초과~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등의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규정

⇒ 교육 및 연구활동 여건 보장을 위해 필요

- 교원수 산출기준, 계열별 학생정원 산출기준, 겸임교원의 자격 및 최대 확보 가능 기준 등 교원산출 기준을 정함.

⇒ 교육여건 악화 및 대학교육 질 저하 방지를 위해 필요

-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의무 및 수익용 기본 재산의 산정기준 및 동 재산 중 일정액의 연간소득 발생을 정함.

⇒ 대학재정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대학교육의 질 보장 및 제고를 위해 필요

-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 중 일정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함.

⇒ 대학재정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대학교육의 질 보장 및 제고를 위해 필요

- 대학 및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시설·교원 및 수익용 기본 재산의 보유 현황을 보고

⇒ 대학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및 대학정책 수립의 기본적 요소로 필요

- 산업체의 기술대학 설립에 필요한 재산의 3분의 2 이상 출연을 의무화

⇒ 기술대학 설립을 활성화하고 학교법인과 산업체의 기술대학 설립에 있어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출연에 대한 제한을 완화(예:쌍방계약을 통해 재산을 출연)토록 개선권고

- 기술대학 교사면적 중 2분의 1 이상은 기술대학 전용시설로 확보토록 함.

⇒ 기술대학의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산업체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전용면적이 필요

- 기술대학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 중 100분의 80 이상을 기술대학운영에 지출하도록 의무화
 - ⇒ 대학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필요
- 기술대학은 시설, 교원, 수익용 기본 재산 보유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 ⇒ 대학정책 수립 및 행·재정적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필요
-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음.
 -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 일정기간 제한을 두는 것은 필요
- 교련교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예비역장교 또는 간호계·보건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여자)로 제한
 - ⇒ 비상대비와 관련된 교련교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련교사의 응시자격 제한은 필요
- 교수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하고 교육경력 및 연구실적 연수가 일정기간이상인 자 및 대학인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로 함.
 - ⇒ 대학교육의 질 보장차원에서 일정 자격기준이 필요
- 사립대학은 학과별 현원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여야 함.
 - ⇒ 획일적으로 모든 사립대학에게 단지 10%라는 하한선만을 제시하며 소속 학생들의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를 강제하지 말고, 학업성적·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토록 개선권고
-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업료는 2기로 나누어 균등하게 징수해야 함.
 - ⇒ 학점별, 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 기개정(1999. 1. 7)
- 수업료 및 입학금을 감면하는 경우에 그 감면상황을 매학기 초 1월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
 - ⇒ 관련 조항 기삭제(1999. 1. 7)
- 대학에서 교직과정 설치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교원자격증 남발 방지, 계획성 있는 교원양성을 위해 존치키로 기의결(1998. 10. 2)

제8절 — 문화관광분야

*집필자 : 정은영 사무관 (Tel. 3703-3938, eyjung@opc.go.kr)

1. 문화관광부

가. 지난 5년간 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총 39개의 법령 등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42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등록규제 중 37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공연장은 설계검토와 정기검사 등 정기적으로 안전진단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함.(1999. 7)
- 문화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연구소, 대학, 기타 관련기관 및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1999. 5)
- 무대예술전문인의 양성을 위하여 인적, 재정능력, 시설 등의 구비여부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1999. 2)
- 유원시설업자에 대하여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유지를 위하여 안전성 검

사를 받도록 함.(1999. 5)

- 축구 및 농구경기에 대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투표권의 종류, 발행대상, 위탁 승인 및 자격요건 등을 정함.(2001. 4)
-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관광사업의 종류에 국제회의시설업과 시내순환 관광업을 추가하고, 수세식 화장실의 설치 및 외국어 구사 종사원을 고용하도록 하는 등 관광호텔 등록기준을 강화(1999. 6)
-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운영, 사행행위 방지 및 청소년보호를 위해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방법 등 취급기준 설정(2002. 1)
- 청소년지도사 자격 부여 후 자율적 참여에 의한 연수를 자격검정 합격 후 연수 이수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지도사 연수를 의무화(2001. 12)
- 청소년수련시설의 임의적인 보험가입을 의무적인 보험가입으로 강화하여 사고발생시 적정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2001. 12)
- 제한상영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반 영화상영관보다 설치제한 장소를 확대(2002. 4)
- 문화지구 안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식품접객업을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으로 정함.(2002. 6)

나. 2002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 2002년도에는 영화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청소년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공연법시행령·시행규칙 등 7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4건, 강화 11건, 내용심사1건 등 총 16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6건에 중 6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10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문화관광부의 2002년도 총 신설규제는 4건

(1)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하는 경품의 기준을 정함.
- 심사결과(2002. 1. 31)
 - 원안동의

(2) 영화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2)

- 제한상영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시행령상에 일반 영화상영관보다 설치제한 장소를 확대하여 규정(신설)
- 재해대처를 위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영화상영관 등록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재해대처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할소방서장이 재해대처계획의 이행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보완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강화)
- 영화상영관의 형태 변화에 따라 기존에 세로방향으로 20석마다 폭 1m 이상의 가로통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15석마다 폭 1m 이상의 세로통로 설치로 강화(강화)

■ 심사결과(2002. 4. 11)

- 제한상영관 설치제한 장소를 규정한 시행령(안) 중 ‘영화전용 7층 이상 건물 제외’ 규정을 삭제
- 재해대처계획의 이행검사 및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 영화상영관 세로통로 설치 의무강화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3) 청소년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3, 내용심사 1)

- 청소년지도사가 이수해야 할 연수시간을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대하고 연수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강화)
- 소방차량이 원활하게通行할 수 있도록 진입로 또는 차량피양지를 확보토록 하고 야영지에 대피시설 또는 통신수단의 확보를 의무화(강화)
- 일정규모 이상의 수련시설은 보험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가입대상 시설의 종류 및 금액 등을 정함.(내용심사)
-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로 자격검정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선정하고 자격검정 이후에 실시되는 의무연수의 시간을 규정(강화)

■ 심사결과(2002. 6. 5)

- 연수시간을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변경하고 연수 내용을 ‘교양과목·전공과목·현장실습’ 등으로 세분화하였던 원안을 ‘이론강의 및 실습’으로 변경하도록 개선권고

-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허가 기준 강화는 원안동의
- 청소년수련시설 보험가입 종류 및 금액 기준 등은 원안동의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강화는 원안동의

(4)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문화지구 안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식품접객업을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으로 정함.(신설)

■ 심사결과(2002. 6. 5)

- 문화관광부안에 원안동의하였으나, 문화지구내의 기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분과위에 보고(2002. 7)토록 함.

(5) 공연법시행령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5)

-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또는 변경추천 시 추천기준을 영상물등급위원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 마련(강화)
- 등록대상 공연장을 현행 ‘객석 500석 이상이거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500㎡ 미만인 시설’에서 ‘객석이 100석 이상이거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100㎡ 이상인 시설’로 하향 조정(강화)
-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과 시기를 강화하고, 재해대처계획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장이 동 계획의 보완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강화)
- 무대시설 안전진단인 설계검토대상·정기검사대상을 확대하고, 모든 등록 공연장의 자체계획에 의한 수시 검사를 의무화(강화)
- 무대예술전문인 3급 시험과목에 1개 과목(공연제작과목)을 추가(강화)

■ 심사결과(2002. 6. 14)

-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또는 변경추천시 추천기준을 영상물등급위원장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안에는 원안동의
- 공연장 등록대상 확대방안은 원안동의하였으나, 공연장 미등록 시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벌칙조항의 경과규정을 두도록 함.
- 재해예방조치 강화는 소방서장의 보완 및 시정요구권을 삭제토록 개선권고

- 무대시설 안전진단 강화는 공연장 직원이 안전진단을 할 때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무대안전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한 의무를 삭제토록 개선권고
- 무대예술전문인 3급 시험과목 추가는 원안동의

(6) 게임제공업에서제외하는영업소의게임물설치범위등(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제공업소에서 제외하는 영업소’의 범위를 규정
- 심사결과(2002. 8. 28)
 - 고시(안) 중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3. 기타 일반영업소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를 삭제하고 게임물 설치장소는 규제일몰제를 적용, 1년의 존속기한을 설정·시행토록 개선권고

(7) 외국인국내공연추천및연소자유해공연물질확인기준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관광업소 공연물의 추천 대상 및 장소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연 질서의 유지를 위해 관광업소 공연물의 추천대상이라 하더라도 추천신청자의 자격, 공연단 구성인원, 공연장소, 공연기간 등을 제한
 - 공연법 제6조제4항에 의거, 관광업소 공연에 대한 추천 시 공연유형별로 추천조건을 추천서에 명시하여 이행토록 함.
- 심사결과(2002. 12. 11)
 - 추천 후 공연단의 입국완료전 공연단의 변경추천을 금지하는 사항은 인원변동의 경우를 제외한 공연기간·공연장소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추천이 가능하도록 개선권고
 - 자의적인 조건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부과하는 조건을 “공연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람객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 유지를 위해 개별 공연별로 명시하는 추천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개선권고

제9절 _ 노동분야

*집필자 : 이호모 사무관(Tel. 3703-2177, yhomo@opc.go.kr)

1. 노동부

가. 지난 5년간 신설강화 규제 현황

(1) 개요

- 총 32개의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118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등록규제 중 60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에 금융 및 보험업 추가
 - 보험급여 산정기준의 최고한도 설정, 일정연령 이상의 휴업급여 감액지급, 유족연금 수급 의무화 및 장의비 보상금액 설정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을 개정하여 건설공제회 가입대상 공사를 확대하고 퇴직공제회 가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강화
- 외국인의 불법체류 인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문동거자 및 외국인 연수 취업자의 고용, 연수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주 5일 근무제에 적합하도록 근로시간, 연월차휴가 등을 조정하고 휴가 미사용시 금전보상의무를 신설
-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 파견 금지대상 업무, 허가기준, 파견근로자 사용제한, 파견사업 허가신청서 제출의무, 변경허가, 사용사업자의 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을 신설
-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고용보험요율 등 조정과 전직지원장려금제도, 능력개발지원금, 실업자재취직훈련비 지원절차를 강화
- 근로자 직업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교사의 자격취득기준, 훈련비용지원신청서 제출의무, 훈련과정의 인정신청, 수강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신설
- 진폐의 조사·연구 및 진단 등을 위하여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령에 진폐전문기관을 두도록 강화
-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기준과 중증장애인 기준조정
 - 사업주및장애인등에 관한용자·지원규정, 장애인직업능력 개발규정고시 등
-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의 통폐합 및 종목 명칭을 변경
- 위험기계류에 부착되는 방호장치가 성능미달 등 불량상태로 제조·유통되어 사용될 수 있으므로 검정합격 당시의 성능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통단계에서 수거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을 높이 31m 이상 건축물인 경우 6월에 1회 이상에서 냉동창고·호텔건설공사에 대하여는 3월에 1회 이상으로 확인 주기 확대
- 리프트, 크레인, 압력용기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고시)에 설계시 지진하중 반영, 재료, 운반구, 브레이크 기준을 강화하여 안전성 규제를 강화
- 고용·산재보험징수법을 제정하여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징수특례제도,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제도, 보험변경관계의 변경신고 등을 신설 보완

나. 2002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

- 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등 11개의 법령과 9개의 고시 등에 대하여 55건의 규제심사
- 심사요청(55건) : 신설 9, 강화 34, 내용심사 12
 - 심사결과(55건) : 원안의결 42, 철회 4, 개선권고 9(신설규제 : 7건)

(1) 여성가장실직자취업훈련규정(고시)

- 심사요청 내용(강화 3)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가장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는 자는 훈련 실시기관의 장에게 여성가장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강화)
 - 여성가장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 위탁받고자 하는 훈련과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에서의 교육훈련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할 것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의 제한 조치중에 있지 아니할 것(강화)
 - 훈련생의 출석을 관리하기 위하여 훈련생의 지각·조퇴 또는 외출 3회는 1일 결석으로 간주하고 지각·조퇴 또는 외출로 인하여 훈련참여가 1일 50% 미만인 경우는 결석으로 간주(강화)
- 심사결과(2002. 1. 10) : 원안의결 3

(2)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 심사요청 내용(강화 5)
 - 국가기술자격 종목 33개(기술·기능분야 21, 서비스 분야 12) 종목을 신설하고 7개 종목을 통합 및 명칭을 변경(강화)
 - 통칭변경 : 소방설비기술사 → 소방기술사, 응용지질기술사·지구물리기술사 → 지질 및 지반기술사, 천정기중기운전기능사 →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공업배관기능사 → 플랜트배관기능사, 선박기관정비기능사 → 동력기계정비기능사, 전산회계사 → 전산회계운영사

- 신설자격 종목중 기술·기능분야는 기존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급의 응시요건에 따르도록 함.
 - 신설자격 종목 중 컨벤션기획사 1,2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 임상심리사 1,2급은 연구용역내용, 관련단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응시요건을 정하도록 함.(강화)
-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신설자격에 대하여 국가외의 자가 동 자격의 검정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함.(강화)
 - 기상예보기술사, 전기철도산업기사, 향료표지기사·산업기사·기능사
- 부실하게 운영되는 훈련과정에 대해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훈련과정으로서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강화)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출석부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 외국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검정과목을 면제하기 위한 자격증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명시하도록 함.(강화)
 - 외국취득자격자의 경우 해외 공관장 등이 확인한 자격에 관한 증명서류
 - 북한자격 취득자의 경우 당해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및 당해 자격에 관한 설명자료 등
- 심사결과(2002. 1. 10) : 원안의결 5
-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자격은 국가자격 710개 종목, 국가공인 민간자격 28개 종목 등 국가자격을 중심으로 운용
- 노동부는 현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관리상에 있어 적정 또는 과다한 측면이 없는지, 민간으로의 이양촉진 제고방안은 없는지 등 관리·개편방안에 대하여 검토 필요

(3) 장애인직업재활사업규정(고시)

- 심사요청 내용(내용심사 1)
- 지원고용실시 대상 장애인으로는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직업상담 및 평가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기능적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으로 규정
 - 지원고용 실시제외 장애인으로는 지원고용 이수 후 6개월 미경과 장애인, 지원고

용 실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 포기후 6월 미경과자, 지원고용과정을 이수할 능력이 없거나 지원고용과정을 이수하더라도 장애상태, 장애정도 등의 사유로 상당기간 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지원고용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원고용실시 동의서를 제출토록 규정(내용심사)
- 심사결과(2002. 1. 31) : 원안의결 1

(4)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고시)

■ 심사요청 내용(강화 2)

- 직업훈련 대상자는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과 직무능력이 필요한 자이며, 직업훈련 적용 제외 대상자는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1년 미경과자, 중도탈락 후 1년 미경과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직업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자(강화)

- 훈련생은 동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대상자중 훈련생을 선발하되 훈련희망자 부족시 공단의 승인을 받아 추가 모집하고 중증장애인 또는 여성장애인을 우대
- 지정받은 모든 훈련기관의 편의시설, 훈련장비·공구 등의 설치·구입 및 수리비로 5천만원까지 무상지원하고, 공공직업훈련기관이외의 시설에서 설치하는 훈련기숙사, 의무실, 부대시설의 확충 및 개선에 대하여 3억원까지 용자(강화)

- 용자·지원신청 여부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통지

■ 심사결과(2002. 1. 31) : 원안의결 2

(5) 사업주및장애인등에대한용자·지원규정(고시)

■ 심사요청 내용(강화 1)

- 창업자금용자·지원 대상자는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으로 하고 그중 제외 대상자는 ①만 20세 미만인자, ②재직근로자 또는 사업주, ③이 규정에 의해 창업자금 용자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정함.

-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댄스홀·댄스교습소·도박장 운영업, 시설규모가 35평을 초과하는 안마시술소, 기타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은 용자·지원제외

- 용자신청은 사업자등록증사본, 이행보증보험증권, 투자계획서, 장애인기준 해당증빙서, 특허권리증 또는 전문자격·면허자격증사본,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등

■ 심사결과(2002. 1. 31) : 원안의결 1

(6)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고시)

- 심사요청 내용(강화 1)
 - 화학물질노출기준(별표 1-1)과 발암성 노출기준(별표 1-2)의 벤젠 노출기준을 10PPM(30mg/m³)에서 1PPM(3mg/m³)으로 10배 강화(강화)
- 심사결과(2002. 4. 18) : 원안의결 1
 - 벤젠은 백혈병 등 혈액암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인체의 몸 속에서도 장기간 잠복하여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어 국제사회에서도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있음.
 - 노동부에서는 노·사대표, 생산업자 등 관련자와의 의견도 수렴하였으며, 현재 벤젠의 제조·사용업체 73개중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업체 10개 업소에 대하여는 작업환경비용을 지원하면서 노출기준을 강화하므로 노동부 의견에 동의

(7)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심사요청 내용(강화 3)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기준을 조정(강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장애인의 기준에서 제외
 - 중증장애인의 기준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상이등급을 종전 2급 이상의 상이자에서 3급 이상의 상이자로 확대하여 다른법과의 장애정도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서 정한 3급이상의 장애등급은 제외
 - 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조정(강화)
 - 최저임금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을 중지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고용장려금의 세부지급단가는 당초 법령에서 정하던 것을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적용대상 사업주의 범위 확대(강화)

-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주를 당초 300인 이상의 기업에서 100인 기업으로 확대 조정함.
- 1차 심사결과(2002. 1. 17) : 심의보류 1, 원안의결 1, 철회 1
 - 장애인 기준은 다음 문제점에 대한 규제영향 분석 후 심의(심의보류)
 - 현재 장애인으로 고용되어 있는 장애등급 10~14등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안정적 신분 문제
 - 기업주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약 160억원)과 장애인의무고용장려금(약 218억원)의 미수에 다른 기업의 경제적 문제
 - 장애등급 1~9등급 장애인이 기대한 만큼 기업에 고용되어 신규 고용촉진의 효과를 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대책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함.
 - 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노동부 의견수용(원안의결)
 - 적용대상 사업주의 범위 확대는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노동부 의견에 부동의(철회)
- 2차 심사결과(2002. 3. 7) : 개선권고 1
 - 산재근로자(10~14등급)을 제외시키기 위하여는 장애인 고용정책 전반에 대한 심층 분석한 후 보완대책 강구 필요
 - 현재 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안으로는 기존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증장애인들을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1단계로 장애인의 기준적용과 의무 고용률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장려금 지급은 산재근로자 1~9등급에게만 지급하도록 하고, 2단계로 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전반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2002년도 말까지 강구토록 개선권고
- 3차 심사결과(2002. 3. 21) : 개선권고 보류
 - 노동부에서는 향후 산재근로자 제외에 대한 영향분석, 장애인 기금 고갈방지 대책 등에 대한 수립·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주도록 요청하여 2차 심사결과 이행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을 수용
- 4차 심사결과(2002. 7. 4) : 추가심사 보류
 - 노동부에서 「장애인고용정책의 규제효과 분석」 용역실시 결과를 토대로 2002년 6월 28일 재심사를 요청하였으나, 분과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거론된 대안이 부족하여 추후 더 보완한 후 규제심사기로 의결
 - 장애인고용제도의 장기적인 안정성 문제

- 중증장애인 고용 시는 인센티브를 더 주도록 하여 기업에서 자발적인 장애인 채용 동기부여방법
- 경증장애자 고용으로 의무고용율 2%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정지 등 기금의 안정성 문제
-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더블카운트제도(double count) 등 도입방안 등
- 5차 심사결과(분과위 2002. 7. 25, 본회의 2002. 8. 9) : 조건부 동의
- 장애인의 기준에 경증산재장애인을 제외시키는 노동부안에 동의하되 현재, 노동부·보건복지부에서 공동으로 수립중인 「제2차 5개년복지발전계획(2003~2007)」에 보완방안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동의
- * 분과위 의결 후 노동부 보완사항(2002. 8. 2)
- 이에 노동부에서 제출한 보완방안으로는 당초 산재장애자를 장애인 인정기준에서 제외하려고 하였으나, 장애인등록 등의 불편을 고려하여 현행규정은 그대로 두면서 경증산재장애자(10~14급)만 제외
- 경증산재 장애자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인정받았던 기득권자에 대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공포·시행함.

(8)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시행령

- 심사요청 내용(강화 3)
- 5인 미만의 사업자에 대하여도 진폐법 적용(강화)
- 진폐의 조사·연구 및 진단 등을 위하여 진폐전문기관 지정·운영토록 하고 지정요건, 절차 등은 노동부령으로 규정(강화)
- 진폐 관련 법령 위반시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로 규정함.(강화)
- 심사결과(2002. 8. 16) : 원안의결

(9)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시행규칙

- 심사요청 내용(강화 3)
-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대한 단계적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강화)
- 검진비용 청구시 건강진단실시내역서, 건강관리 수첩 기재내용 사본 외에 항목별

김진비용 입증서류 제출(강화)

-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규정(강화)
 - 진폐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정밀진단 기관으로서 최근 3년간 진폐 관련 논문등의 연구실적이 연간 10건 이상인 자
 -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심사결과(2002. 8. 16) : 원안의결 2, 철회 1
- 현행규정의 서식으로도 검진에 따른 진단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할 수 있음에도 추가로 항목별 김진비용 입증서류, 건강관리수첩 기재내용 사본 등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부동의

(10)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고시)

- 심사요청 내용(내용심사 4)
-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 실시(내용심사)
 - 정도관리 구분과 주기를 정하고 정도관리 대상기관과 정도관리 신청기간을 정함.
- 정도관리 실시방법 및 기준평가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불합격 판정기준을 정함.
- 정도관리 대상업무 종사자 교육 등을 정함.
- 심사결과(2002. 8. 21) :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일부철회 1
- 정도관리 실시방법으로 검사가 필요하다면 지정항목 또는 새로 신설되는 선택항목에 추가하여 분석능력 검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자율항목의 분석관리제도는 폐지권고
- 특수건강 진단기관의 지정의사에 대한 특별교육은 교육내용 자체가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개정내용과 새로운 진단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그 목적으로 하는 매우 일반적인 사항의 전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불참시 제재내용 및 참여 시 인센티브가 없는 등 교육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보아 철회
 - 정도관리 종사업무 종사자교육과 진폐사진 판독평가 및 판독교육은 노동부안대로 규정

(11) 근로기준법

- 심사요청 내용(강화 4, 신설 1)

-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시행시기를 2003년 7월 1일부터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 단, 15세 이상 18세 미만자는 1일 42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강화)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여 그 한도를 1월에서 3월로 하고 특정주의 근로시간 한도를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맞추어 56시간에서 52시간으로 조정(강화)
- 연월차 휴가제도 개선(강화)
 - 1월간 개근시 월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연차유급휴가 부여조건을 개근시는 10일로, 9할 이상 출근시는 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1년에 1일씩 가산하되, 총 20일을 초과하는 휴가일수는 금전보상을 하도록 하였으며 여성에 대하여는 매월당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하였으나,
 - 개선안에서는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유급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며, 8할 이상 출근시는 연차휴가 부여일수를 15~25일로 조정하고 연차휴가일수 가산기준은 2년당 1일로 규정하는 한편 1년 미만 근속자는 1월당 1일을 비례하여 부여
-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사용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 면제(신설)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한시적으로 연장근로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그 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50%에서 25%로 인하(강화)
 - 1차 심사결과(2002. 9. 11) : 긴급규제 여부심사
 - 노동부에서는 금년도 국회 일정이 10월 25일 종료함에 있어 주5일 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긴급규제로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주5일 근무제를 긴급한 사유가 있는 규제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
 - 2차 심사결과(분과위 2002. 9. 25, 본회의 2002. 10. 2) : 개선권고 1(강화), 원안 의결 4(강화 3, 신설 1)
 -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추진에는 동의하되, 그 시행시기는 우리나라의 산업여건의 성숙 등에 따라 재조정할 것을 개선권고
 - 농업 이외의 전체 산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4시간 이하에 달하는 시점부터 시행
 - 정부의 업종별 · 규모별 시행시기를 당초 내년 7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안을 2년 단위로 조정

(12)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

■ 심사요청 내용(신설 1, 강화 5)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대행하는 사업주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무 가입토록 하고, 퇴직공제사업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문화재수리공사 등으로 확대(강화)
- 의무가입공사 소요비용을 건설공사 도급계약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사업소요금액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자체로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도 공사원가계산서에 그 소요비용을 명시하고 하도급산출내역서에 소요금액을 명시하도록 규정(신설)
- 퇴직공제사업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로서 근로시간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자, 고용형태·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피공제자격을 당연 배제하도록 함.(강화)
- 퇴직공제제도 가입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건설근로 복지수첩을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신청·발급받아 근로자에게 교부(강화)
-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월 이상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이외에는 만 60세에 도달하는 시점에 퇴직공제금 지급(강화)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며, 퇴직공제사업 가입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강화)

■ 심사결과(2002. 10. 9) : 개선권고 2(신설 1, 강화 1), 원안의결 4(강화 4)

- 도급금액 산출내역서는 시공업체에서 발주자가 제시한 물량내역서에 해당하는 비목별 단가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로서 의무가입공사에 있어 발주자의 비용부담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작성하는 물량내역서 작성단계에서부터 퇴직공제부담비용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개선권고(개선권고)
- 과태료 부과 관련규정 제10조의1, 제13조에서 강제의무가입 및 공제부금 납부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였음에도 근로자에게 게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동법 개정안 제26조제2항제5호 규정의 삭제
 - 과태료 부과규정 제10조의2는 공사 시행자가 퇴직공제금 가입비용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나 의무가입 여부가 확정된다면 공제부금을 공사비에 산정하든가 아니면 자체비용으로 지원하든지 별개의 문제라고 보아

동법 제26조제2항제1호 삭제(개선권고)

(13)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시행령

- 심사요청 내용(강화 1)
 - 교섭단체 단일화 방법 규정(강화)
 -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연명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단체교섭 요구방법을 정함.
 -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2 이상의 노동조합이 교섭개시 예정일 전까지 교섭위원을 선임하지 못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의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
- 심사결과(2002. 11. 13) : 원안의결 1

(14)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 심사요청 내용(내용심사 2)
 - 직장내 성희롱 발생 등으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성희롱으로 진정 및 신고민원이 제기되는 등 노사분규로 진전될 우려가 심히 있는 사업장은 특별감독대상으로 추가(내용심사)
 - 각 법령위반 시 조치에 따른 세부적용 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업무수행상 불필요한 부동산을 소유시와 해산시 기금위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적용시 조치기준 규정
 - 복지기금을 보조 또는 용자받은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와 자사주 예탁의무 및 예탁자사주의 담보제공 금지 위반에 대한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적용시 조치기준을 정함.
 - 모집과 채용에서 불평등한 경우와 정년·퇴직 및 해고 차별시,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였을 경우,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하여교육을 미실시하였을 경우에 남녀평등법을 적용에 대한 세부조치기준을 규정
- 심사결과(2002. 11. 13) : 원안의결

(15) 방문동거자의고용관리에관한규정(고시)

- 심사요청 내용(신설 3)

- 방문동거자의 취업대상업종 및 취업대상업종별 정원을 규정(신설)
- 방문동거자가 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에 구직신청서, 여권사본, 건강진단서 사본을 제출토록 하고, 가사사용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는 상해보험, 보수체불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토록 함.(신설)
 - 방문동거자와 고용계약 체결시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
- 방문동거취업자의 사업장 이동사유를 명확히 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토록 하고, 방문동거자가 이탈·사망·출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보고토록 함.(신설)
 - 노동부 장관은 방문동거자를 고용하는 사업 중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토록 규정
- 심사결과(2002. 11. 27) : 원안의결 3

(16)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 심사요청 내용(신설 1, 강화 3, 내용심사 5)
 -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림·어업 및 수렵업 법인까지 포함(강화)
 -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의 범위 확대(강화)
 - 국가 등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근로 종사자
 - 외국인 근로자 중 재외동포의 자격이 있는 자(F-4)와 영주의 자격이 있는 자(F-5)
 - 실업자 재취직훈련등을 수료한 40세 이상 실업자를 채용한 500인 이하 제조업 사업주에게 1년간 훈련수료자에게 채용장려금을 지급(신설)
 - 사업주가 공동으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전직지원장려금 지급 시 첨부서류를 추가(내용심사)
 - 대표사업주 선정관련 서류 사본 1부.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지원대상을 건퇴공 임의가입 대상으로 제한하고 지원액은 30일분에서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1/3으로 지원방식을 변경(내용심사)
 -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근축법 제2조의 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300만원 한도)하되, 교양, 취미활동 등에 대하여는 제외(내용심사)
 - 능력개발 지원금의 지원절차, 지원한도 등을 규정(내용심사)
 - 실업자재취직훈련비 대부절차, 지원한도 등을 규정(내용심사)
 - 훈련연장급여 지급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강화)
- 심사결과(2002. 12. 11) : 원안의결 4(신설 1, 강화 2, 내용심사 1), 개선권고 4(내용

심사), 철회권고 1(강화)

- 전직지원서비스 공동제공시 첨부서류로 요구되는 대표사업주 선정관련 서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개선권고 (예시: 대표사업주 확인서 등)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절차와 관련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확인서를 제출케 하는 대신에 노동부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간에 협조를 통해 공제부금납부사실을 확인토록 개선권고
- 능력개발 대부금 신청시 하한액을 50만원 이상으로 제한하였으나 소액이 필요한 경우를 감안하여 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권고
- 실업자재취업 훈련비 대부신청서를 제출기한을 당초 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훈련비 대부여부 심사 결과도 일정기간 내(예, 10일, 20일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도록 개선권고
- 훈련연장급여 지급기간을 당초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려고 하였으나 이는 현행 규정으로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으므로 현행대로 하도록 철회권고

(17) 외국인연수취업자의관리에관한규정(고시)

- 심사요청 내용(신설 3)
 - 산업연수생이 연수취업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연수업체에서 6월 이상 연수후 산업연수업체의 장이 추천하도록 함.(강화)
 - 연수취업자로의 전환 시에는 표준근로계약서에 의한 연수취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사업체 이동신청은 지방노동관서와 연수추천단체에 하도록 함.(신설)
 - 연수취업자의 관리(신설)
 - 연수취업자의 보건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
 - 외국인근로자 상담창구를 이용하여 고충상담 등 일상적 관리업무를 수행
 - 연수취업자는 임금총액의 8.3%를 출국만기적립금으로 적립
- 심사결과(2002. 6. 27, 2002. 12. 11) : 원안의결 2(신설), 조건부 동의 1
 - 연수취업자 교육시간을 당초 “3일 이상, 20시간 이상”에서 “20시간 이상”으로 단일화하여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조건부 동의)

(18)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고시)

- 심사요청 내용(강화 2)
 - 접점방식전자접촉기 및 무선접점방식의 주회로용 반도체소자의 용량산정 시 기준이 되는 정격전류를 실효값 기준으로 적용(강화)
 - 자동전격방지기의 표시방법에 제품의 명칭, 종류, 제조자명, 주요부품 모델과 용량의 필요 기재사항을 추가 규정(강화)
- 심사결과(2002. 12. 18) : 원안의결 2(강화)

제10절 _ 외교 · 국방 및 보훈분야

*집필자 : 김진남 사무관 (Tel. 3703-2186, twinjin@opc.go.kr)

1. 외교통상부

가. 지난 5년간 신설 · 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총 2개(98년 1개, 2002년 1개)의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령을 대상으로 4건(강화 2건, 내용심사 2건)의 규제에 대한 심사를 통해 기존규제중 2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 신설 · 강화규제

- 해외이주 알선업자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요건을 강화
- 해외이주 희망자의 피해구제관련 보증보험금 지급신청절차를 규정

나. 2002년도 신설 · 강화규제 심사결과

- 2002년도에는 여권법 1개 법령에 대해 내용심사 2건을 심사하였으며 2건 모두 원안동의

(1) 여권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2)
-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병역의무자에 대해 여권의 발급 등을 거부 또는 제한하거나 여권의 유효기간을 특별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사법경찰관리가 여권을 몰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
- 심사결과(2002. 10. 9) : 원안동의 2
-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및 사법경찰관리의 여권몰취 규제는 여권법 시행령·시행규칙상의 관련규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의

2. 통일부

가. 지난 5년간 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총 6개(99년 2개, 2000년 1개, 2001년 1개, 2002년 2개)의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령을 대상으로 15건(신설 8건, 강화 7건)의 규제에 대한 심사를 통해 6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규제중 2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취업보호대상인 북한이탈주민이 근무태만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면직될 경우에는 1년의 취업보호 제한기간을 둠.
-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하는 모범사업주의 우선구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청절차를 신설
-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요건하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신설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가 일정한 장소 내에 편의시설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고자 할 때 관계서류 제출 절차를 신설

나. 2002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 2002년도에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한교역대상 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등 총 2개 법령에 대해 신설 2건, 강화 1건 등 총 3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건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 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통일부의 2002년도 총 신설규제는 1건(신설 1건은 법제 처 심사과정에서 수정)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정착 유형에 따라 정착금 지원 등을 최대 1/2의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해외여행 중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안전과 입북 등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여행에 대해 자제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심사결과(2002. 3. 7) : 원안동의 1, 개선권고 1

-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따라 정착지원시설 내에서의 적응 훈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는 현실에서 부득이 경제적 수단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의
- 북한이탈자의 신변안전과 국익보호를 위하여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외여행 자제권고 조치 등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향후 집행과정에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구체화하도록 권고

(2)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의 반입 시 승인을 요하는 물품의 대상으로 통일부 장관이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입물품 중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을 통해 반입하는 농산물·임산물·수산물·공산품을 추가

- 심사결과(2002. 9. 18) : 원안동의 1
- 수입업자가 관세면제 등을 받기 위해 중국산 등 제3국산 물품을 '제3국을 경유하는 북한산물품'으로 위장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의

3. 국방부

가. 지난 5년간 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총 1개(2002년 1개)의 개정되는 법령을 대상으로 1건(강화 1건)의 규제에 대한 심사를 통해 기존규제중 1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군인공제회 임원의 정치활동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산하 사업체 임원의 정치활동도 제한

나. 2002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 2002년도에는 군인공제회법 1개 법령에 대해 강화규제 1건을 심사하였으며 원안동의

(1) 군인공제회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누락·강화 1)
- 군인공제회 임원의 정치활동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산하 사업체 임원의 정치활동도 제한
- 심사결과(2002. 11. 6) : 원안동의 1
- 군인 및 군무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공제회의 정치단체화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회 임원 및 산하 사업체 임원의 정치

활동 금지를 실효성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의

4. 국가보훈처

가. 지난 5년간 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총 7개(98년 3개, 2000년 2개, 2001년 2개)의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령을 대상으로 12건(신설 12건)의 규제에 대한 심사를 통해 6건의 규제를 신설
- 미등록 규제 5건(2001년 2건, 2002년 3건)에 대해 규제심사하여 원안동의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참전군인 지원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참전사실 확인을 위해 등록신청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함.
- 생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사망 또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일정 생활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권 소멸 신고의무를 부과
- 참전기간 중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는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2002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 신설·강화규제 없음.

다. 미등록규제 심사

(1) 개요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미등록된 규제 3건에 대해 심사

(2) 미등록 규제내용 및 심사결과(2002. 7. 25)

- 국가유공자가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하지 않으며, 국가유공자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국가유공자가 중대한 범죄를 행하거나 상습적으로 품위손상행위를 하는 경우에 당해 법률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정지
 - 국가유공자 지원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조직 및 활동을 금지하고, 단체설립시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
- ⇒ 상기 규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타당하므로 원안동의

5. 병무청

가. 지난 5년간 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총 1개(1998년 1개)의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령을 대상으로 2건(신설 1건, 강화 1건)의 규제에 대한 심사를 통해 기존규제 중 1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국외여행허가 미귀국자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3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상 ~ 5000만원 이하)

나. 2002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 신설·강화규제 없음

제11절 _ 환경분야

*집필자: 김영환 사무관 (Tel. 3703-3946, hwan49@opc.go.kr)

1. 환경부

가. 지난 5년간 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총 30개 분야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145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등록규제 중 240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신설 9, 강화 5)
 - 기존 건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설치 변경하도록 의무화
 - 오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자, 오수처리시설 제조업자로 제한하는 강화규제를 건설업면허소지자 등 건축주에게도 허용토록 완화의결
 -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축산 농가에 대하여 축산폐수를 처리하지 아니한 상태로 공

수역으로 배출하지 못하도록 축산폐수처리의무를 부과

-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는 처리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축산폐수 저장시설 또는 축분 분리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접객업 숙박업 영업을 하는 자가 상습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하는 때에는 환경부 장관이 당해 영업을 허가한 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등을 요청
-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신설 조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
- 폐기물관리법(신설 4건, 강화 5건)
 - 폐기물의 엄격한 처리를 위한 처리증명제(안제25조의2~제25조의 10)는 바람직하나 과도한 규제 신설·강화는 수용 곤란하여 수정의결
 - 수탁처리자와 연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와 감시전문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제도신설은 삭제
 - 과태료(안 제63조)는 폐기물처리 연간 계약 및 감시 위·수탁계약 체결 제도의 신설규정 삭제에 따라 해당 과태료 규정 삭제
- 대기환경보전법(신설 5건, 강화 6건)
 - 방지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당해 방지시설 시공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토록 한 실명제는 삭제
 -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한 사용 정지기간 연장 등(안 38조 및 38조의2)의 규정 삭제 의결
 -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미준수, 생활악취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기준 미준수, 불법연료를 사용, 판매한자 등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화규정 삭제 의결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심사(신설 4, 강화 3, 1999. 1. 29)
 - 정도검사의 대상을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오염누출 측정자가 사용 관리하는 측정기기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 환경측정기기 제작 및 사업장 출입점검을 삭제하고 대형 전문기관에 대해서만 필요시 점검하는 것으로 수정
 - 검사대행자 지정 취소, 업무정지 기준설정을 규제개혁위원회가 검토한 기준으로 수정보완
 - 기타 환경부안 수용

- 환경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심사(신설 6건, 1999. 4. 23)
 - 동일사업장내에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의 업무정지는 철회의결
 - 오염물질 불법 배출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과징금 수입의 2~10배로 정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토록 하여 규제신설의 목적에 맞도록 조정
 - 불법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승계는 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해 철거명령 사실을 양수인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마련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규칙 심사(신설·누락 등 5건, 강화 7건, 내용심사 7건, 1999. 6. 18)
 - 사업장폐기물 운반처리 시 폐기물인계서 작성, 인계시기 등 내용심사
 - 폐기물인계서 검인시기를 처리시 7일에서 3일로 완화
 - 강열감량기준의 강화율 적용시기를 2008년 이후로 완화
 - 감염성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는 제도는 관련업계 준비를 위해 유예기간을 1년에서 1년6월로 연장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차량요건을 현행 3대를 존치하되, 필요시 서울시의 경우 5대 이상으로 기준강화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규칙을 재심사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시설 요건 중 파쇄시설 구비기준을 1일 300톤에서 100톤으로 조정하고 재활용신고업자의 업종 전환 유예기간을 3년으로 존치하도록 수정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심사(신설 1, 내용심사 2, 1999. 6. 25)
 - 행위제한이 배제되는 시설의 허가 시 향후 원상복구 등의 조건부여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일정범위를 정하여 허가 시 총량 계획 이행을 평가하는 기관과 허가 전에 협의토록 하는 방안강구로 대체
- 자연공원법 심사(신설·누락 2, 강화 6, 1999. 10. 29)
 - 공원구역 외 계획확대용지는 주차장과 도로만으로 한정토록 조정
 - 공원관리상의 필요에 따른 건축물 등의 철거이전 철회(불인정)
 - 공원 원상회복 소요비용의 예치기준을 각각 5~10%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보증보험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 공원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불을 내는 행위 및 총기·도끼·삽의 휴대행위)는 삭제하고 총기휴대행위는 규제하도록 조정

- 낙동강수계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심사(신설 21, 2000. 5. 19)
 - 수변구역지정 및 행위제한에 있어서 수변구역 대상지역임에도 시설입지 가능지역과 불가능지역으로 나누어지는 형평성문제를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관한법률 등에서 형평성을 보완하도록 수정
 - 하천구역 내 농약사용제한에 대해서는 유기성농업지원, 정부수매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규제의 실효성 제고
 - 공사비용 사전예치제를 삭제하고 의무 불이행 시 준공, 사용검사의 거부조치 등으로 보완
 - 오염 부하량 할당제도와 함께 오염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초과부담률을 2배 이내로 완화조치
 - 완충저류시설 등 설치, 관리의무에 있어서 유독물 영업자의 시설설치 유예기간을 3년으로 완화
 - 산업단지입주자의 폐수재이용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미이행 시 조업중지규제는 삭제, 과태료로 전환하고 가급적 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토록 조치
 - 축산폐수시설의 분·뇨 분리시설의무 및 산업단지 입주자의 폐수재 이용 의무의 유예기간을 3년으로 완화
- 수도법개정안 심사(신설 5, 강화 3, 2000. 9. 22)
 - 물수요관리 목표미달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 등의 인가제한
 - 인가제한 대상을 물수요관리 목표미달 시·군·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으로 하고, 물수요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병행 실시
 - 중수도시설 설치업소에 대한 하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조건으로 일정규모이상의 신축건물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
 - 물절약 투자대행업의 등록제도 도입을 삭제
 - 농원여관업, 여인숙업과같이 영세·노후하여 절수효과가 미미한 업소를 제외하는 조건으로 절수설비설치를 의무화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 심사(신설 9, 강화 2, 2000. 9. 28)
 - 이행계획서 제출승인, 결과보고, 재활용인정 등 번잡한 절차를 줄이기 위하여, 이행실적 등이 우수한 재활용의무 생산자에 대하여 인센티브제의 도입 등으로 자발적 이행 유도 및 절차를 간소화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질 분류표시, 재활용 가능표시와 혼용하여 사용할 경우, 혼동의 소지가 있으므로 기존제도를 통합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재활용품 분리배출표시로 일원화
- 금강·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정안(신설 14, 2000. 2. 16)
 - 금강 및 영산강수계의 상수원 보호 및 수질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변구역지정 및 행위제한, 오염총량관리제, 물이용부담금 등의 근거 규정을 신설
-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신설 2, 강화 7, 2001. 7. 13)
 -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억제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향후 자치단체조례로 정할 때 단속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야 함(공회전의 기준, 단속장소, 단속대상 등 외국의 사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설정을 조건)
 - 신고차량에 대한 법적 처분을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배출허용기준초과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나 민원인의 주관적인 신고만으로 점검을 받도록 처분하는 것(점검명령)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고 행정권한의 남용이 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연간 수천건에 이르는 신고건수를 행정처분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의 행정력이 따라 주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
 - 굴뚝원격감시체계(TMS : Telemetry System)를 도입하는 것은 자가측정·방지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지도·단속의 위험성이 줄어들고 횡수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출입의 근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측정기기의 부착)으로 하지 말고 TMS의 운영과 기기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에 한정하도록 권고

나. 2002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 2002년도에는 악취방지법, 지하생활공기질관리법 등 24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20건, 강화 30건, 내용심사 42건 총 9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92건 중 8건에 대하여 철회권고, 37건에 대하여 개선권고, 47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환경부의 2002년도 총 신설 규제 수는 13개

(1)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동지역대기오염저감을위한종합대책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특별대책지역(울산, 여천 등)에 소재한 내 외부 부상 지붕형 벤젠 저장시설에 대한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 기준 등을 강화
- 심사결과(2002. 1. 11)
 - 내부 부상 지붕형 벤젠저장시설에 대한 육안 검사 시 감독관 입회 근거 및 저장시설 재충전 보고의무 삭제가 필요
 - 행정기관의 감독관이 검사 시에 입회를 하고 사업자는 중복적으로 검사결과를 행정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므로 감독관의 입회와 재충전하기 전 보고를 삭제함으로써 중복적인 규제를 폐지
 - 동일한 밀봉장치의 표현을 1차/2차 밀봉장치, 위/아래 밀봉장치, 상/하 밀봉장치로 각각 달리 표현하고 있어 용어 통일(1/2차, 위/아래, 상/하)이 필요
 - 외부 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의 간격측정 기준은 기존시설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한 규제이므로 동 고시 개정 이후 신설되는 저장시설에 한해 적용토록 함.
 - 기타사항은 원안의결

(2) 지하생활공기질관리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8, 강화 4)
 - 다수인 이용시설 소유자에게 공기질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전담할 수 있는 실내환경 관리인을 지정, 신고하도록 의무화(신설)
 - 신규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유해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입주민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입주전 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고하도록 함.(신설)
 - 환경부장관은 건축자재의 유해물질 방출기준 및 기준초과 건축자재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시하고, 유해건축자재의 생산 및 이용을 제한(신설)
 - 다수인 이용시설 소유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도지사에게 이용 개시 신고를 하도록 함.(신설)
 - 다수인 이용시설 소유자는 실내 공기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토록 의무화함.(신설)
 - 실내 환경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대행 영업제도를 마련하고, 등록 및 등록 취소 등

-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신설)
 - 실내 환경관리자에게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신설)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신설)
 - 다수인 이용시설 적용대상을 여객터미널, 도서관, 종합병원, 실내주차장 등으로 확대(강화)
 - 시설 및 지역특성에 따른 권고기준을 설정하고 기준 초과 시 시·도지사는 이를 시설 이용자에게 공고(강화)
 -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실내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강화)
 - 현행 지하 공기질 미준수자(500만원 이하) 등에 추가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유해 건축 자재를 사용한 경우, 신규 공동주택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은 경우, 자료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수인 이용시설 이용 개시 미신고, 측정결과 허위 기록)(강화)
 - 심사결과(2002. 1. 18)
 - 실내 환경 관리자 지정 및 신고 의무화, 다수인 이용시설 이용 개시 신고, 실내 환경 관리 대행업 마련, 실내 환경관리자 교육 등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철회를 권고
 - 유해건축자재를 고시할 때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외에 관련 공인전문기관에서 위험성이 검증된 유해건축자재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고시토록 할 것을 권고
 - 시설의 특성과 지역의 특성에 따른 권고기준의 설정은 필요성이 인정되나, 권고기준 초과시 기준초과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최소한 1주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를 “개선될 때까지 공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조속한 공기질 개선과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함.
 - 실내환경관리자 및 실내환경관리업은 삭제의결되었으므로 과태료부과에서 관련조항을 삭제
 - 기타사항은 원안의결
- (3)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비용산출기준등에관한규정(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비용산출기준 현실화하고자 함.
- 심사결과(2002. 2. 1)
- 원안의결

(4) 폐기물관리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3, 내용심사 1)

- 정하는 바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서(신고서 제출), 관리대장 작성·보존 및 처리실적 제출 등의 의무를 부과(강화)
- 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미리 수탁자의 처리능력을 확인토록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구체적인 확인 시점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내용심사)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가 오염물질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강화)
-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갱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강화)

■ 심사결과(2002. 3. 15)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모두 포함됨.
 - 이중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적용되는 절차에 상응하는 절차규정이 없어, 쓰레기 발생량 저감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감량의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은 인정됨.
 - 그러나, 실제 관련 규정 집행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관리대장 작성 보존, 처리실적 보고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선 지방자치단체들도 인력부족을 이유로 지도 관리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향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경우, 감량의무 이행계획서 신고, 관리대장 작성 보존, 보고주기, 실적보고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권고
- 폐기물처리업자 단체에서 업체 난립방지와 시장질서 확립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자의

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위탁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입법예고(안)보다 상향 조정 (1백만원 ~ 3백만원 이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환경부가 이를 수용하였으나, 과태료의 인상은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부담완화라는 관련법조문 개정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입법예고안대로 유지를 권고

- 기타사항은 원안의결

(5) 제조·수입또는사용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화학물질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수산화 트리알킬주석류”의 선박 방오(防汚)도료용으로서의 제조 수입 사용 금지 대상에 내항화물선을 추가

■ 심사결과(2002. 3. 15)

- 원안의결

(6) 청정연료등의사용등에관한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2001년도 대기오염측정결과 대기오염 수준이 공급지역조정기준을 초과하는 성남시 등 7개도시를 0.3% 저황중유 공급지역에 추가하여 2002년 7월부터 공급하고, 월드컵 개최도시인 광주, 대전은 공급시기를 당초 예시된 2002년 7월에서 2002년 5월로 앞당김.

■ 심사결과(2002. 3. 29)

- 1996년 예시된 0.3% 저황중유 공급지역을 최근의 대기오염 정도를 기준으로 재조정해야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규제개혁위원회(경제2분과위 : 2002. 3. 15)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사전 예고 없이 추가될 7개 지역에 대해서는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

- 기타사항은 원안의결

(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6, 내용심사 1)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법률기준에 의하여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등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고, 기 확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확인(변경확

인)을 받아야 하나, 변경확인에 대한 구체적 변경사항 및 절차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내용심사)

- 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인 시설은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하고, 다만, 그 조성면적이 15만㎡ 미만이라 할지라도 매립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가 매립 시설 지반의 연약정도나 매립높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강화)
-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의 처리 또는 활용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을 받도록 함.(강화)
- 감염폐기물 자가 및 중간처리업자의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보관기간을 5일에서 3일로 각각 단축(강화)
- 감염폐기물 발생기관에 장례식장을 추가(강화)
- 태반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태반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전용용기를 풀어서 수량, 중량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폐기물인계서에 기재토록 하고, 태반을 담은 주머니는 흰색의 투명 비닐로 하며, 의료기관명, 담당의사명 등을 기재하는 등 ‘태반 실명제’를 실시함.(강화)
-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자가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사업장을 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강화)
- 심사결과(2002. 4. 26)
- 원안의결

(8)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샘플 및 먹는 샘플의 수질기준을 합리적으로 확대·강화
 - 카드뮴 수질기준 강화(0.01 → 0.005mg/l)
 -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의 수질기준을 신설하고 보론(B)을 검사항목으로 추가
- 심사결과(2002. 5. 3)
- 원안의결

(9)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6)

- 수변구역의 범위를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상류방향으로 광역상수원댐(계획홍수위선 기준)으로부터 20km, 지방상수원 댐으로부터 10km 이내의 지역으로 설정하고, 수변 구역 내 설치허가대상 시설물의 허가신청방법과 설치허가 가능지역을 규정
- 하천구역 내 국·공유지에 비료·농약 사용을 제한
- 하천인접지역 내 오염물질 저감시설 및 녹지 등의 설치를 의무화
- 취수시설 상류 집수구역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
-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을 지정
- 오염부하량 초과자 등에 대해 제재
-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초과배출자에게 부과하는 총량 초과 부과금의 구체적 산정방법 등을 규정
-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관련 등에 따른 행위를 제한
- 법에서 위임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산업단지의 범위를 규정
- 법에서 위임한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자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시기, 내용 및 수립기준을 규정
- 법에서 위임한 관거의 검사 및 관리방법을 규정
- 법에서 위임한 신규 폐기물매립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본·지류의 범위를 낙동강 본류는 하천경계로부터 1km,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는 경계로부터 0.5km이내의 지역으로 규정
- 폐수재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와 계획수립방법을 규정
-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절차를 규정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범위 및 방법을 규정
- 과태료를 부과

■ 심사결과(2002. 6. 14)

- 10호 이하라도 모든 주민의 동의하에 자발적으로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 권고
- 관리대장 기록·보관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병해충 발병 시 등에 농약·비료 사용은 “먼저 사용하고 3일 이내 신고”하는 방안으로 수정하고 친환경농업으로 인증을 받을 경우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대장 작성·보관, 비료 및 농약 사용 시 사전승인획득의무 면제를 권고

-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 초과배출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내용이 범위반행위의 위반정도와 비교형량하여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고 봄.
- 총량초과부담금 산정방법 중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부과계수를 합리적으로 조정
-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기준(별표 6) 중 시설의 운영관리 및 수질측정기록을 2년간 보존토록 하는 것은 필요이상의 보존기간을 부여했다고 보아 단축하도록 수정 권고
-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는 규제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이외에 추가적인 부담이므로 최대한 사업자의 자율성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사업자에 대한 일방적 조정·보완(요구)통보의 쌍방향의에 상응하는 수준인 “미리 사업자와 협의하여 계획을 조정·보완”하도록 수정 권고
- 검사와 재검사가 어떻게 다른지가 불분명하고, 매년 관거연장의 1/5 이상을 검사하는 경우 5년이면 전관거를 1회씩 검사하기 때문에 8년마다 (재)검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의미가 없으므로 기존 관거에 대해서는 매년 관거연장의 1/10씩 검사한 후 10년마다 재검사토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고 신설 관거는 10년마다 관거를 재검사하도록 권고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산업단지입주자의 폐수재이용계획 보완요청 시 미리 사업자와 협의하여 계획을 조정·보완하도록 수정 권고
- 기타사항 원안의결

(10)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3)

- 수변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지역 및 자연마을의 범위를 설정하고 수변구역 내 설치허가대상 시설물의 허가신청방법과 설치허가 가능지역을 규정
- 하천구역 내 국·공유지에 비료·농약 사용을 제한
- 취수시설 상류 집수구역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
-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을 지정
- 오염부하량 초과자 등에 대해 제재
-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초과 배출자에게 부과하는 총량 초과 부과

금의 구체적 산정방법 등을 규정

-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 관련 등에 따른 행위를 제한
- 법에서 위임한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자의 배출량 줄이기 계획의 제출시기, 내용 및 수립기준을 규정
- 법에서 위임한 관거의 검사 및 관리방법을 규정
- 법에서 위임한 신규 폐기물매립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본·지류의 범위를 본류는 하천경계로부터 1km,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는 경계로부터 0.5km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
-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절차를 규정
-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범위 및 방법을 규정
- 과태료 부과

■ 심사결과(2002. 6. 14)

- 관리대장 기록·보관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병해충 발병 시 등에 농약·비료 사용은 “먼저 사용하고 3일 이내 신고”하는 방안으로 수정하고 친환경농업으로 인증을 받을 경우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대장 작성·보관, 비료 및 농약 사용 시 사전승인획득의무 면제를 권고
-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할당 오염 부하량 또는 지정 배출량 초과 배출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내용이 법 위반 행위의 위반 정도와 비교 형량하여 형평을 유지해야 함.
- 총량초과부담금 산정방법 중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부과계수를 합리적으로 조정
-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는 규제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이외에 추가적인 부담이므로 최대한 사업자의 자율성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사업자에 대한 일방적 조정·보완(요구)통보의 쌍방향의에 상응하는 수준인 “미리 사업자와 협의하여 계획을 조정·보완”하도록 수정 권고
- 검사와 재검사가 어떻게 다른지가 불분명하고, 매년 관거 연장의 1/5 이상을 검사하는 경우 5년이면 전관거를 1회씩 검사하기 때문에 8년마다 (재)검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의미가 없으므로 기존 관거에 대해서는 매년 관거 연장의 1/10씩 검사한 후 10년마다 재검사토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고신설 관거는 10년마다 관거를 재검사하도록 권고

- 기타 사항 원안의결

(11) 임진강유역배출시설설치허가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임진강수계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제한지역을 임진강수계가 아닌 일부 지역(6개 里)은 해제하고, 취수원에 영향을 주는 지역(21개 里)은 추가

심사결과(2002. 2. 8)

- 원안의결

(12) 상수원관리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상수원으로서 하수도 정비 등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들지 아니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면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거리 산정 시 지정기준에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상류에 오염원이 있어 그 상류지역을 보호구역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

■ 심사결과(2002. 8. 30)

-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제2항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상류에 오염원이 있어 이를 보호구역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기존의 지정기준을 사문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자유재량에 의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삭제 권고
- 기타사항은 원안의결

(1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4)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도 오수처리대책지역 지정 범위에 포함(강화)

- 종전에는 소·돼지·젓소·말·닭·오리·양 및 사슴 등 8종의 가축만 규제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규제대상 가축에 염소, 토끼, 노새, 당나귀, 개, 거위, 칠면조, 메추리,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짐승·가금 등을 추가(강화)
 -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오수처리시설을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재질로 만드는 경우에 한해서 콘크리트로 기초공사를 하도록 하고 FRP 이외의 재질로 구조물을 만드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초공사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FRP보다 강도가 약한 재질로 구조물을 만드는 등 현행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FRP 외의 재질에 대해서도 최소한 FRP재질과 동일하게 콘크리트로 기초공사를 하도록 하고 콘크리트 기초공사에 대한 기존의 유권해석내용을 규정화(강화)
 - 축산업자가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저장액비화(貯藏液肥化)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재활용업자가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저장액비화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는 경우에도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분뇨 및 축산폐수의 재활용 시설의 개·보수, 시설용량의 부족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수탁물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한달 전에 위탁자와 신고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함.
- 심사결과(2002. 9. 6)
- 기존의 규제대상이 되는 가축의 경우에는 법제24조2, 시행령 제11조, 별표 1에 의해 가축별 사육규모에 따라 설치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이 규정되어 있으나, 신규로 지정하고자 하는 가축의 경우 가축 1마리당 축산폐수 발생량, 사육 규모별 규제수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삭제권고하고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법령개정 여부를 재검토
 - 축산업자가 액비화할 경우에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의 일관성 확보와 분뇨 및 축산폐수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장액비화(貯藏液肥化)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업자도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 제출을 권고
 - 기타사항 원안의결

(1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내용심사 7)

-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1회용품 규제대상으로 기존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10개 품목 외에 1회용 응원용품, 비닐식탁보를 신규로 지정하고, 운동장, 식품접객업소 등은 신규 지정되는 1회용 응원용품, 비닐식탁보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을 금지
 - 재활용제품 교환 판매매장 설치대상을 백화점에서 대형점 쇼핑센터로 확대하고, 이들 업소에서는 10m² 이상의 재활용제품 판매소를 운영토록 함.(강화)
- 제품의 설계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구조나 재질로 개선토록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TV, 냉장고 등 6개 제품 이외에 오디오를 재질 구조개선 대상품목으로 신규 지정(강화)
- 기존의 폐기물예치금제도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예치금 대상제품인 종이팩, 유리병 등 15개 품목을 재활용의무대상으로 지정하고, 이외에 오디오, 휴대폰,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 3개 품목을 재활용의무대상으로 신규 지정
 - 재활용의무총량은 제품별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환경부와 관계부처가 협의 고시하며, 개별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은 의무총량에서 각 생산자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에 따라 산정(내용심사)
- 재활용 폐기물의 수집, 운반, 선별,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품목별로 “재활용비용”을 산정하고, 사업자가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미이행량에 재활용비용을 곱한 금액의 30%를 가산한 액수를 “재활용부과금”으로 징수(내용심사)
- 재활용의무 대상제품중 포장재(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및 전자제품 완충용 발포합성수지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품 분리배출표시”를 의무화(내용심사)
- 재활용의무 대상제품 중 전자제품(냉장고, TV, 에어컨, 세탁기, 컴퓨터, 오디오, 휴대폰)의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제품과 동일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하여야 함.(내용심사)
-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당해 년도 개시 3개월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고 불승인시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불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계획서를 제출
 -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매년 3

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확인을 통하여 재활용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내용심사)

- 공병보증금제도의 대상제품, 신고방법, 반환율 등을 규정(내용심사)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품출고실적 자료제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된 결과보고의 문제가 있는 경우 등 재활용의무 이행여부를 조사, 확인할 수 있도록 함.(내용심사)
- 심사결과(2002. 10. 4)
 - 재활용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에 교환 판매 장소를 설치토록 하는 것은 필요하나, 민간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일정면적(10m²) 이상의 재활용제품 교환·판매매장을 운영토록 한 것은 영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정이므로 삭제 권고
 - 기존 대상품목이 대형 전자제품 중심으로 지정된 점을 감안하여, 대형 오디오만 대상으로 지정하고, 카세트, MP3 등 휴대용 오디오는 제외 권고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핵심이 되는 재활용의무총량 산출기준과 관련하여, 의무총량이 재활용여건계수에 따라 변동폭이 큰 점을 감안하여 여건계수의 범위(1±1)를 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경제변동이나 재활용여건의 변화에 따라 의무총량이 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며, 기존 예치금제도에서 출고량의 90% 이상을 회수 처리한 경우 예치금을 면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재활용률이 90%에 도달할 경우 재활용의무 줄임제(ceiling)를 도입할 것을 권고
 - 재활용의무 이행 확보수단으로 재활용목표 미달성시 벌과금 성격의 가산금 부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미이행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미이행 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 권고
 - 예치금제도에서 생산자재활용제도로의 변경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의무이행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의무이행결과보고서 미제출의 사유만으로 재활용부과금을 전체의무량에 대해 부과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확인을 거친 후 부과할 것을 권고
 - 용량이 작은 공병(베지밀 등)도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용량규정

삭제와 빈병의 재사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공병보증금 제외대상에서 위스키 및 브랜디 삭제권고

- 자료 미제출 시에 재활용 의무량 전량에 대해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사·확인을 거친후 부과할 것을 권고
- 기타사항은 원안의결

(15) 악취방지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2)

- 시·도지사에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신설)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시·도지사는 조례로 환경부령으로 정할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신설)
- 악취관리지역 안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악취방지계획을 첨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대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조치함.(신설)
- 악취관리지역 밖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악취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개선권고하도록 함.(신설)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악취관리지역 안의 사업장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개선을 명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경우 사용중지를 명함.(신설)
- 악취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악취배출시설의 사용시간 제한·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신설)
-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자에게 사용중지 명령을 하도록 하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설치 장소에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된 경우 폐쇄를 명하도록 함.(신설)
- 고무, 피혁, 합성수지류, 폐유류 및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소각시설이 아닌 곳에서 소각을 금지하도록 함.(신설)
-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악취오염도 검사기관의 지정에 따른 요건

등을 규정(신설)

- 악취오염도 검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악취검사기관의 악취판정사 고용을 의무화하고 검사기관이 고용하여야 할 악취판정사에 대한 자격시험, 결격사유, 자격의 취소사유 등을 규정(신설)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의 출입·시설 등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신설)
- 악취방지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신설)
- 심사결과(2002. 12. 6)
 - 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악취관리지역 지정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제정 시 지정요건 및 범위를 명확하게 함.
 - 악취유발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시·도지사가 자의적으로 환경부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제정 시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배출허용기준의 지정범위를 일정 한도 내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
 - 신고대상을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고, 악취방지시설을 사업장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하위법령 제정 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
 -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과징금 처분을 통하여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고,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의 급박여부는 일반화·구체화가 곤란하므로 철회를 권고
 - 악취검사를 원활히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악취검사기관에 악취판정사를 두도록 하는 것은 악취검사기관에 새로운 부담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부기관은 이러한 의무를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철회권고
 - 기타사항은 원안의결

(16) 하수도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배수설비 설치공사 비용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심사결과(2002. 12. 6)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시공을 의무화하는 당초원안을 수정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는 것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됨.
 - 또한,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지역여건에 따라 현행 제도만의 개선(현장확인 강화 등)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경우에는 굳이 특정사업자 집단에 한정하여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지 않음으로서 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공자격의 제한여부를 결정토록 규정하여 당초 환경부 개정안에 비해 경쟁제한 및 진입제한의 효과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어 수용함이 타당함.
 - 기타사항은 원안의결

(1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2003년부터 토지의 기존 용도지역 중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를 위한 지역계수를 이에 따라 조정
- 심사결과(2002. 12. 6)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전 국토가 종전의 5개 용도지역에서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금액 산정을 위한 지역계수도 조정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준도시지역은 앞으로 계획관리지역(지역계수 1 또는 0 적용)으로 분류될 지역임을 감안하여
 -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 동 지역에 대한 지역계수 2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기존 준도시지역에 대한 지역계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1 또는 0을 적용할 것을 권고
 -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은 각각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은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불과할 뿐 사실상 종전에는 준농림지역·준도시지역으로 관리가 되어온 차이가 있으므로,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의 지역계수를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지역계수보다 낮추어 차등 적용할 것을 권고

- 기타사항은 원안의결

(18)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내용심사 4)

- 시행령에 규제대상 1회용품의 종류, 업종 및 준수사항 규정함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여 대량 사용되고 있는 응원용품, 비닐식탁보 등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새로 규제하고, 수거 및 처리에 많은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다이옥신 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등 1회용 합성수지 용기에 대한 규제를 확대 또는 명확히 하고자 함.(강화)
- 개별 품목별로 재활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품목별 재활용현실과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 재활용의 질을 확보하고자 함.(내용심사)
- 공병보증금 대상제품의 빈용기의 용량별로 보증금의 요율을 규정하고, 보증금의 원활한 반환과 빈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의 제조자, 도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내용심사)
- 기존 폐기물예치금의 산출·납부 및 반환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보고 및 검사를 삭제하고,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이행 확인 등을 위한 경우와 빈용기보증금 제조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를 추가(내용심사)
- 종전 예치금납부 대상 사업자의 장부기록의무를 삭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관련 제조업자, 수입업자, 공제조합 등과 빈용기보증금 대상제품 제조자의 장부기록 의무를 추가(내용심사)

■ 심사결과(2002. 12. 12)

- 법에서 규정한 일회용품의 사용억제에 대한 대상사업장별 준수사항 및 적용대상 1회용품의 종류를 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시행이 촉박한 점과(2003. 1. 1) 신규 규제 및 규제가 강화되는 조항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충분한 홍보 및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6개월간 유예할 것을 권고하고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가격변동 상황을 시행 1개월 전까지 위원회에 보고

- 플라스틱의 고품연료화 등을 에너지회수 재활용방법으로 허용하고 이를 50%이하로 한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타이어의 시멘트 킬른 재활용 인정 수준(70%)으로 완화할 것을 권고
 - 또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를 단순 압축하여 수출할 경우 수출중량의 20%만을 인정하는 것은 수출을 통한 재활용률이 높을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재활용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압축 수출의 경우 수출전량을 인정하되 국내 재활용업계 보호차원에서 적절한 인정한도를 설정할 것을 권고
- 1,000ml 이상 공병의 보증금액을 일률적으로 개당 100원으로 정하는 것은 현재 대형 주스병의 보증금액이 200원 이상인 것을 감안해 볼 때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1,000ml 이상 공병에 대해서는 용량에 따라 그 용량에 상응한 보증금을 정할 수 있도록 보증금액의 범위(예: 100원 이상 300원 이하)를 설정할 것을 권고
 - 또한, 소비자가 빈용기 보증금에 대한 불편·부당사항을 신고할 경우 조사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조사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자원재생공사 사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되므로 삭제 권고
- 기타사항은 원안의결

(19) 분리배출표시에관한지침(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배출표시 기준 및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
- 심사결과(2002. 12. 12)
 - “30ml 또는 30g 미만 용기”에 대한 분리배출표시의 제외와 관련, 현실적으로 30ml 또는 30g의 용기가 소용량의 약품 및 화장품 등의 샘플용기로 많이 사용되는 점을 감안, 이를 “30ml 또는 30g 이하의 용기”로 수정할 것을 권고
 - 또한, 분리배출표시가 제외되는 포장재를 당초 “표면적 50제곱센티미터 미만”에서 필름 포장재의 경우는 밀봉을 위해 양면포장을 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으로 완화할 것을 권고
- 기타사항은 원안의결

제12절 _ 해양수산분야

*집필자 : 김창환 서기관(Tel. 3703-3942, kch318@opc.go.kr)

1. 해양수산부

가. 지난 5년간 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총 62개(1998년 18개, 1999년 8개, 2000년 10개, 2001년 12개, 2002년 14개)의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령을 대상으로 431건(신설 209건, 강화 169건, 내용심사 53건)의 규제에 대한 심사를 통해 193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규제 중 167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공유수면관리법에서 규정한 공작물설치 실시계획인가, 공작물설치등에 대한 준공신고 및 공유수면에 설치한 공작물의 제거등의 내용을 신설하고,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 등에 대한 규제는 강화
- 연안지역이 무질서하게 이용·개발됨에 따른 해양오염 및 황폐화 방지를 위하여 연안에서의 오물투기 등 행위제한, 금지·정비구역 안에서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행위제한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연안관리법을 제정

- 해운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선주상호 간의 보험사업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업의 허가, 조합의 설립요건 및 절차, 설립인가, 출자총액의 최저한도 설정, 조합의 사업 범위 제한 및 사업주체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을 제정
-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파괴가 심각함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매립을 결정하되, 매립의 목적을 엄격히 제한하여 매립지의 용도를 장기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함.
 - 매립 예정지에서의 어업권 등 새로운 권리설정 제한, 매립목적 변경 제한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 매립지 용도를 임의변경하여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공작물 등을 제거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강화
- 연안어장의 환경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유지하며, 연안어장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위생적인 수산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 연안어장의 환경조사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타인 면허·허가어장에의 출입, 양식어장 간 거리 등의 조정, 환경오염이 심각한 어장에 대한 사전예고 후 휴식제도, 어장정화정비사업의 시행 및 수익자 부담금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장관리법을 제정
-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국제안전관리규약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해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인증 심사원의 자격기준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 사전준비 등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대행업에 관한 등록(변경등록)절차 및 등록기준 등을 규정
- 국제적인 공기(公器)인 항로표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해상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로표지에 사용하는 장비·용품에 대한 검사의 종류를 제조검사, 정기검사, 임시검사로 구분하고, 검사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
- 수산업협동조합의 건전성,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임원의 해임, 수협중앙회 및 조합에 지도 및 감독 사항을 신설하고, 임원의 성실의무,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사업영역,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조치 및 조합의 해산 등의 내용을 강화
- 합리적 수산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근해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업무선국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업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 해양에 기름 등 폐기물의 배출을 금지하는 장소를 확대 지정하고, 환경보전해역지정 및 관리기본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보전해역에 시설설치 제한기준을 2,000m²이상 폐수배출사업장,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허가시설 등으로 규정
 - 해양폐기물 배출금지장소로서 선박, 해양시설 외에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 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 해양에 접해 있는 발전소·제철소·조선소·정유소,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어장을 추가 규정
-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자로서 당해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당해 처분일을 기준으로 1년 내에 다시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가중부과하는 규정을 신설
- 한·중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중국에 수출하는 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업체 중 생산가공시설의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을 정하여 등록토록 하고 위생 점검표 및 평가기준을 설정
- 선박투자회사법 제정으로 선박투자업의 인가, 인가취소, 존립기간, 등기, 업무의 범위, 선박운용회사의 등록 및 취소 등 업무에 대한 기준을 신설
- 2톤 미만 어선 및 내수면 어선에 대해 종전대로 건조허가를 받도록 하고, 개조허가는 현행대로 면제하여 불법어선건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강화
- 규제 등록이 누락된 한국해운조합법을 심사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항만공사법을 제정하여 부산항과 인천항의 관리기능을 공사(公社)화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항만이용자가 공동으로 항만운영에 관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항만관리체제를 기업적 경영원리에 기초한 항만관리·운영체제로 개선하는 등 국가에 의하여 관리·운영되고 있는 항만을 공사화 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을 신설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여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및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제도 도입을 위한 보험가입대상, 재해보상금 지급 등 재해보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
-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해양오염방지법이 개정(2001. 9. 12)됨에 따라 동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서 규정

나. 2002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 2002년도에는 해양오염방지법, 수산업법, 항로표지관리법, 항만공사법, 어선원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해운법, 해상교통안전법, 도선법, 낚시어선법, 선박안전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선원법 등 14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30건, 강화 17건, 내용심사 28건 등 총 75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75건 중 5건에 대하여 철회, 10건에 대하여 개선권고, 60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해양수산부의 2002년도 총 신설 규제수는 27개

(1) 해양오염방지설비의형식승인을위한성능시험및검정기준(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 대상품목으로 우수분리기 등 13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성능시험의 주요내용으로 일반조건,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검정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 심사결과(2002. 1. 11)

원안의결

(2) 어업면허의관리에관한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양식어장 시설기준에 “전복 침하식 양식어업에 필요한 양식방법, 시설기준”등을 추가하고, 키조개 양식어장을 소유한 양식업자에게는 자기 어장 내에서 잠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심사결과(2002. 2. 1)

- 원안의결. 단, 키조개 이외의 전복·해삼 등 다른 양식업자에 대하여도 자기 어장 내에서 잠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토록 권고

(3) 총허용어획량(TAC)적용대상어업의종류등의지정에관한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총허용어획량(TAC) 적용대상어업의 종류 와 어종별 총허용어획량을 정함.
- 총허용어획량 적용 대상 어종으로 지정된 대계를 조업하는 근해통발어업 및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총허용어획량에 따른 어획할당량을 배정받지 아니한 자는 대계의 포획·채취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심사결과(2002. 2. 1)

- 원안의결

(4) 항로표지장비·용품검사기준(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검사대행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검사에 필요한 항로표지점검·정비용 선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장비·용품의 검사종류별 검사내용과 검사내용의 세부기준을 정함.

■ 심사결과(2002. 2. 8)

- 원안의결

(5) 수출을목적으로하는수산물·수산가공품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된 시설은 수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어야 하며, 동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수산물의생산·가공시설및해역의위생관리기준” 중 “위생관리기준(공통)”에 부합하여야 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된 시설의 운영자는 위해요소등록관리기준을 이행하도록 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3월 전에 미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과 이의 이행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고, 수출 등 부득이한 경우에 3월 이내라도 언제든지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심사결과(2002. 2. 22)

- 원안의결

(6) 항만공사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5)

- 항만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항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
- 항만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도록 함.
- 항만공사는 사용료 및 임대료를 징수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 및 요율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재정의 건전성 및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공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 법 제7조(유사명칭 사용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심사결과(2002. 3. 8)

- 원안의결. 다만, “유사명칭사용금지 및 과태료부과” 조항은 법제처의 법제심사 시 실효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는 조건으로 원안동의

(7) 국제수산기구의어업규제사항이행에관한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선명, 위치, 일자와 시간 등 자료를 자동위치발신기를 통하여 보고토록 의무화한 선박감시체제(VMS) 의무화 지역이 현재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 및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협약수역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유엔공해어족보존관리협정(UNFSA), 한·러 어업협정 및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가 회원국 의무사항으로 채택한 대상수역 및 어종을 국내 법규에 반영
 - 조업위치보고 대상을 외국 또는 국제기구가 관할하는 수역에서 조업하거나, 국제협약 및 협정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어선으로 확대
 - 외국 또는 국제기구가 관할하는 수역과 국제협약 및 협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종을 동 고시에 명시

■ 심사결과(2002. 4. 19)

- 원안의결

(8) 어업허가및신고에관한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4)
 - 손실보상 등으로 어업허가가 소멸된 경우, 그 허가를 대신하는 새로운 허가를 금지토록 하고, 허가받은 노후어선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한 후 그 어선 등이 아닌 다른 어선 등으로 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를 금지
 - 어족자원의 수준에 적합한 허가건수(어선척수 등)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어업별 허가정수를 조정하거나 신설
 - 근해안강망어업의 어구사용 통수를 연차적으로 감축토록 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선의 대체 허가를 받은후 폐기대상 노후어선을 폐기하지 않고 또 다른 어선으로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함.
 - 폐기대상 노후어선 등의 해상방치 및 불법어업에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피대체 노후어선의 폐기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
- 심사결과(2002. 6. 7)
 - 규제사무명 “연안어업의 종류지정” 과 “어업에사용하는어선의설비기준”을 통합하도록 권고
 - 기타는 원안의결

(9) 치어및치패의수출제한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조치볼락 및 감성돔 치어의 포획금지 체장을 15cm로 정함.
- 심사결과(2002. 6. 7)
 - 원안의결

(10) 선박투자회사법시행령·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7)
 - 발기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해운·금융관련법률의 범위와 선박투자회사법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발기인의 자격이 없는 자의 범위를 정함.
 - 발기인이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할 때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과 선박투자회사가 회사를 설립 후 주식을 발행하여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 주식청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 선박투자회사의 설립등기 시에 첨부할 서류의 종류를 정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투자업의 인가시 심사하여야 할 사항과 실권주가 발생하였을 때의 처리대책 등을 정하고, 선박투자업의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및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공고할 내용을 정함.
- 주식의 발행가액의 산정방법과 특별관계자의 범위를 정하고, 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권설정을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정함.
- 선박투자회사의 업무 범위 중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 선박매매가격, 용선료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계약 체결 등 필요한 사항으로 정함.
- 선박투자회사의 선박의 취득 또는 개조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 및 사채발행은 자본금의 4배 한도로 정함.
- 소유권이전조건부 대선은 그 주요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선박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선박의 검사기관은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 및 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 선급으로 정함.
- 선박운용회사의 등록신청서에는 상호, 자본금, 임원 및 전문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선박운용회사의 납입자본금을 70억원 이상으로 정함.
- 선박운용회사가 선박투자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선박투자회사와의 금전대차행위
 - 유가증권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 선박운용회사가 위탁받은 업무중 발행하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매에 관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한 때에는 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자산보관회사가 보유하는 자산 및 선박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방법과 자산보관위탁계약 절차 등을 정하고, 자산보관회사의 임·직원이 자산보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선박투자회사의 운용비용의 범위와 수입분배시 산정방식을 정함.
 - 선박투자회사 및 선박운용회사가 법령을 위반할 경우 정관 또는 계약의 변경요구, 회사에 대한 주의 및 경고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내용을 정함.
 - 소수 투자자의 주주의 수를 150인으로 하고, 소수 투자자의 선박투자회사는 주주의 변동사항과 주식의 100분의 5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 대하여 그 소유주식의 변동내용을 6개월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선박투자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회계처리는 회계관습과 회계기준에 따르되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대선거래도 운용리스로 분류하여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등을 정하며,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정함.
- 심사결과(2002. 8. 9)
- 발기인의 자격제한에 필요한 해운·금융 관련 법령 중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은 삭제 권고
 - 시행규칙안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선박운용회사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삭제하여 시행규칙안 제20조에 규정할 것을 권고
 -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사항은 삭제 권고
 - 선박운용회사의 등록 및 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제심사 대상에서 제외
 - 기타는 원안의결

(11)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부과·징수절차를 정함.
 - 부담금 산정 : 폐기물해양배출량(m^3) × 단위당기준부과금액(800원) × 부과계수(1.2 ~ 2.3)
 - * 단위당기준부과금액은 800원으로 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3년간 매년 100원씩 인상
 - * 부과계수 : 준설토 1.0 ~ 분뇨처리오니 2.34
- 심사결과(2002. 8. 19)
- 원안의결

(12)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7)

-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비율급·생산수당 등의 임금지급으로 인하여 협약임금을 확인하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하며, 협약임금은 고시 기준임금 이상으로 함.
- 가입 대상범위는 모든 연근해 어선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선과 수산업의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등은 어선(원)재해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보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거나 심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회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
-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보험사업의 업무를 위탁
-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어선의 소유자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며,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는 어선원 등으로 규정
- 어선소유자는 당연 가입 대상자가 되거나 보험관계가 소멸할 때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또는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토록 함.
- 중앙회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어선소유자로부터 보험가입의 신고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어선원재해보험의 보험요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점 및 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과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액 보험사업의 운영비 등을 감안하여 산정토록 함.
- 보험급여 산정에 필요한 임금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승선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규정
 - 승선평균임금 : 어선원에게 지급한 협약임금 또는 기준임금의 총액을 그 승선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
 - 통상임금 : 승선평균임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 보험관계의 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보험금의 일부를 징수토록 하고, 보험관계의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의 보험료 및 보험관계의 신고를 행한 후 보험료 독촉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금을 징수토록 하였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의 2배 징수하고, 허위의 진단 등에 의하여 보험급여가 실시된 때에는 가입자 및 요양기관 연대하여 징수토록 함.

- 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기한 내에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독촉을 하며,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의한 보험료 등 징수의 우선 순위를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명문화 함
-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액의 범위를 제38조에서 정하는 보험가액의 한도 내에서 가입비율과 손실률에 따라 산출토록 하고, 어선소유자는 어선재해보상보험의 가입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입비율 이상으로 가입하도록 하며, 보험기간을 가입 후 1년으로 정함.
- 보험목적인 어선 등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앙회는 그 손해율 및 사고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목적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거나 일시 다른 장소에 이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징수금과 보험급여 등에 대하여 중앙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며, 별도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토록 함.
- 보험급여를 지급받거나, 보험료 등의 징수 및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되도록 함.(소멸시효설정)
- 중앙회는 어선의 소유자, 요양기관, 어선원 및 보험대리 취급자에게 보험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어선 내, 요양급여를 받은 자, 요양기관 기타 관련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질문하거나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보험관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

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심사결과(2001. 8. 19)

- 법안 제6조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제한 기준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의 규제이므로 심사대상에서 제외
- 법안 제9조는 “보험사업자의 지정”을 “보험사업의 위탁”으로 법안을 수정함에 따라 행정규제 내부규제에 해당되므로 심사대상에서 제외
- 법안 제19조(보험가입자) 제3항은 정책보험으로 운영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일방적으로 계약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보험관계를 소멸할 수 있는 경우를 하위법령에 정하도록 권고
- 법안 제22조(보험료)제1항의 보험료 징수는 보험가입 시뿐만 아니라 임의가입자의 신청과 갱신 시에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보험가입신고서”를 “보험가입의 신고·신청 및 갱신시”로 수정하도록 권고
- 법안 제30조의 보험료 등의 징수의 우선 순위는 집행상 실효성에 문제점이 있는 조항이므로 삭제권고
- 법안 제39조제1항(보험목적의 조사)의 내용은 법안 제48조(보고와 검사)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제48조에 통합하도록 권고
- 기타는 원안의결

(13) 해운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2, 내용심사 1)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개시에 필요한 수송 수요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함.
-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등 해운업을 영위하던 자는 그 사업을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폐업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고 대상에 폐업을 추가함.
-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간 또는 외국항에서 외국항 간 화물을 운송하거나,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국내항간 화물을 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함.

-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보유량”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송계약물량”을 추가
- 심사결과(2002. 8. 30)
- 여객운송사업자가 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신고의무 부과조항은 동의함, 다만, 해상 화물운송사업자 및 해운중개업자에 대하여도 폐업신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준용규정은 삭제권고
-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에 “수송계약물량”을 추가하는 것은 삭제권고
- 기타는 원안의결

(14) 해상교통안전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강화 1, 내용심사 1)
-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상악화 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출항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출항통제의 대상선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함.
- 신규 설립된 선박회사 및 새로이 구입한 선박에 대하여 최초안전관리인증심사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수시인증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국제안전관리규약에 따라 수시안전관리증서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중간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 합격할 때까지 안전관리증서의 효력을 정지
-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의 개정내용을 수용
 - 다른 선박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선박의 주의의무를 규정
 - 교통량 폭주 등으로 해상충돌 사고가 우려되는 국내수역에 통항분리방식에 의한 항행방법을 확대 적용
 - 유지선의 협력동작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피항의무가 면제되지 않도록 규정
 - 조업중인 타어선 근처에서 조업하려고 하는 트롤어선 및 선망어선의 추가등화신호 설치관련 규정을 강제화
- 심사결과(2002. 9. 6)
- 안 제9조(선박출항통제) 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세부사항에 “출항통제의 대상선박”을 “출항통제기준”으로 변경하고, 선박의 범위에 어선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토록 권고
- 기타는 원안의결

(15) 도선법시행령·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내용심사 1)
 - 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징수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추가
 - 강제도선 구역인 동해항 도선구역에 속초항을 추가하고, 현재 임의도선구역인 목포항의 일부구간을 강제도선구로 지정
- 심사결과(2002. 9. 13)
 - 원안의결

(16) 산적액체위험물운송선박의시설등에관한기준(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액화가스 하역용 호스의 성능기준과, 화물탱크의 압력조절용 통기장치의 재질 및 추가설치 의무 규정, 폭발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불활성가스 발생장치는 사용중이 지 않을 때는 화물탱크와 분리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하며, 국제항해 종사선박의 협약기준 준용조항을 신설
- 심사결과(2002. 10. 4)
 - 안 제243호(다른규정의 적용)의 신설은 상위법인 선박안전법 제16조(조약규정의 적용)에서 선박의 감항성과 인명의 안전에 관한 조약에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조항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삭제권고

(17) 낚시어선업법시행령·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3)
 -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낚시어선의 조종 등을 금지하여야 하는 음주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8%로 정함.
 - 과태료 부과기준에 낚시어선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추가
 - 변경신고 미이행자 : 10만원, 폐업신고 미이행자 : 30만원
 - 낚시어선업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기는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고, 폐업신고의 대상(사유)를 낚시어선이 매도·임대 또는 침몰되어 사용

할 수 없거나 낚시어선의 행방이 6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정함.

- 심사결과(2002. 10. 4)
- 원안의결

(18) 수산물·수산특산물및수산전통식품의품질인증에관한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전통성과 대중성, 소비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에 수산특산물 2종(다시마환, 다시마과립) 및 수산전통식품 2종(양념장어, 부각류)의 품목 및 품질기준을 추가
- 심사결과(2002. 10. 29)
- 원안의결

(19) 원양어선표지크기및표시방법등에관한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유엔공해어족보존관리협정, 편의국제금지협정, 불법어업방지행동계획 등 각 수산기구에서 어선표지를 의무화함에 따라 원양어선에 대한 표지크기 및 표시방법, 표지내용 및 도색방법, 표지의 위치를 정함.
- 심사결과(2002. 10. 29)
- 원안의결

(20) 선박방화구조기준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선박에서의 화재발생과 확대방지를 위한 선박의 구조, 설비 및 방화조치 등 기준을 정함.
- 심사결과(2002. 10. 29)
- 원안의결

(21) 선박및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대상지정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개정 등에 따라 새로이 요구되는

선박 용물건을 형식승인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

- 적층용수지액, 유리섬유재, 비상탈출용호흡구, 고정식국부소화장치용 미분무수 소화장치 노즐, 선박용윤활유 여과기

- 심사결과(2002. 11. 8)
- 원안의결

(22) 선박및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시험및검정에관한기준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개정 등으로 새로이 요구되는 선박용물건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정함.(강화)
- 적층용수지액, 유리섬유재, 비상탈출용호흡구, 고정식국부소화장치용 미분무수 소화장치 노즐, 선박용윤활유 여과기
- 심사결과(2002. 11. 8)
- 원안의결

(23) 유전자변형수산물의표시대상품목및표시요령(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유전자변형수산물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선정 및 표시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을 선정(무지개송어, 대서양연어, 미꾸라지)하고, 이에 대한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 심사결과(2002. 12. 12)
- 원안의결

(24) 어선외국인산업연수생관리지침(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4)
- 연수업체의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면서 출입국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수생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송출기관 및 중앙회장의 입국 전·후 연수생에 대한 소양교육실시의무 및 건강검진의무를 규정

- 연수생이 생활할 수 있는 숙박시설 제공 등 연수업체의 자격요건과 연수업체의 추천 및 취소사유를 정하고, 연수업체의 교육실시의무 등을 규정
 - 중앙회장은 연수업체로부터 연수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연수업체에게 연수수당 등의 지불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권을 제출케 하거나 이행보증금을 예치케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장은 연수생 등의 연수장소 무단이탈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송출기관과 연수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수수당·임금미지급 등 계약불이행 행위와 연수업체의 연수생 등에 대한 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부당행위를 한 연수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심사결과(2002. 12. 27)
- 원안의결

제13절 _ 농림분야

*집필자 : 정대우 사무관(Tel. 3703-2181, dw0327@opc.go.kr)

1. 농림부(농업진흥청 포함)

가. 지난 5년간 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총 90개(1998년 5개, 1999년 12개, 2000년 19개, 2001년 28개, 2002년 26개)의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령을 대상으로 256건(신설 130건, 강화 96건, 내용심사 30건)의 규제에 대한 심사를 통해 123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규제 중 92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위해축산물의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축산물의 유통관리를 중지하고 회수계획 및 회수결과를 제출토록 규제
- 농협 지역조합의 설립기준으로 출자금을 현행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품목조합의 출자금은 현행 1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강화
-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에게 가축에 대

한 검사·주사·약물목록, 투약 또는 주사의 표시를 명할 수 있으며 가축 이동시 필요한 경우 소유자 등에게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휴대하게 하거나 당해 가축에 대하여 주사의 표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돼지콜레라·구제역 등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 등이 격리·역류·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사육시설 폐쇄 및 가축을 살 처분하고, 기구 또는 시설물은 사용할 수 없게 함.
-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방역기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 적극 협조하도록 의무화하는 축산관련단체를 대한수의사회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등으로 정함.

나. 2002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 2002년도에는 농지법·령·규칙, 농약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한국마사회법시행령, 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규칙, 식물방역법시행령·규칙,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규칙 등 26개 법령 및 고시에 대해 신설 18건, 강화 11건, 내용심사 12건 등 총 4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그 중 농업진흥청소관으로는 비료공정규격 및 농약및원제의취급제한기준 등 고시2건을 심사
- 심사대상 41건 중 1건에 대하여는 철회 권고, 11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하고, 29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농림부의 2002년도 총 신설규제는 17건

(1) 적기시정조치의기준과내용(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부실조합 및 부실 우려 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적기 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정함.
 - 경영개선 권고 : 순자본 비율이 0% 미만이거나 경영상태 종합평가결과 4등급일 경우, 또는 3등급 이상일지라도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평가 4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지사무소 운용의 효율화 및 신설제

한, 부실자산 또는 불용자산의 처분, 고정자산 투자·신규사업의 진출·신규출자 등의 제한, 출자금의 증액 및 이익배당의 제한, 합병권고,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예금금리 수준의 제한 등 기타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경영개선 요구 : 순자본 비율이 -7% 미만이거나 평가등급이 5등급일 경우에는 조직·인력의 축소, 지사무소의 폐쇄·통합, 사업의 일부 정지, 합병요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신용사업 등에 관한 계약의 이전계획 수립·추진 또는 경영개선권고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경영개선 명령 : 순자본 비율이 -20% 미만이거나 예금 등의 지급,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거나 자금지원이나 차입 없이는 예금 등의 지급·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에게는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합병명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액 또는 경영개선요구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심사결과(2002. 1. 11)

- 원안의결

(2) 비료공정규격(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퇴비의 유해성분 중 구리의 함유기준을 500mg/kg에서 300mg/kg으로 강화
- 퇴비의 유해성분에 니켈(50mg/kg)과 아연(900mg/kg)의 함유기준을 신설
- 퇴비의 수분함량을 50% 이하로 설정

■ 심사결과

- 원안의결

(3) 농산물표준규격(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포장 표시사항중 산지는 재배지역 시·군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읍·면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산지, 생산년도 또는 품종이 각각 다른 농산물을 혼합하였을 경우에는 점유비율이 높은 순서 2개까지의 혼합비율 등 혼합내역을 표시하도록 함.

- 농산물 표준규격을 개정
 - 단감, 자두 등 과실류(12품목), 참깨 등 특작류(10품목), 쌀 등 곡류(18품목), 국화 등 화훼류(20품목)의 품목별 등급규격(특, 상, 중)을 품종, 종류별로 세분화함.
 - 당도 등의 기준을 객관화하고 소비자 성향에 맞게 개선함.
 - 크기(무게)를 등급에 반영하고 거래단위에 개수 단위를 도입함.
- 농산물의 포장규격은 재질별 65개 규격(골판지, P. E대, P. P대, 그물망)으로 정하고 한국산업표준규격에서 정한 수송용 포장계열치수 69개 규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심사결과(2002. 1. 25)
-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산지를 재배지역의 시·군명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4조(원산지 표시방법등)의 규정에 국산 또는 시·군명을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이므로 삭제
- 농산물의 산지, 생산년도, 품종별 혼합비율 등 혼합내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물품의 포장표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품목, 산지, 품종, 생산연도(곡류에 한함), 등급, 무게 또는 개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반하므로 삭제
- 기타내용은 원안대로 의결

(4) 사료검사요령(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자가품질검사기준 설정
 - 배합사료의 등록성분중 칼슘·인·조단백질·조섬유·조회분·중성세제불용물질·산성세제불용물질·수분은 분기별 1회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 심사결과(2002. 2. 22)
- 원안의결

(5)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시·도지사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한 이후에 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 과태료 처분은 정밀 혈청검사를 실시한 후 예방접종 항체로 확인된 경우와 예방약 보관(판매)과 예방접종행위 현장을 적발한 경우에만 부과토록 함.
- 심사결과(2002. 3. 8)
- “예방약 보관(판매)과 예방접종 행위 현장 적발(제3자 신고 행위 포함)” 내용 중 예방약을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법령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삭제
- 기타내용은 원안의결

(6) 농지법시행령·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내용심사 2)
-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골프연습장·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으로 규정함.
- 농지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예치해야 하는 보증보험증권은 농업기반공사를 수취인으로 하고 보증기간은 농지조성비 납입기간에 30일을 가산한 보증기간으로 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예치하도록 함.
- 신규 취득할 농지면적이 1,000㎡ 이하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류를 추가로 제출토록 함.
- 심사결과(2002. 3. 8)
- 원안의결

(7) 한국마사회법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3)
- 경마장별 경마개최의 범위에 관하여 연간 경마개최일수는 105일 이내로 하고, 1일 경주회수는 15회 이내로 그 한도를 정함.
- 마사회가 설치하는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및 처리사무를 정함.
 - 방송시설, 전산시설, 교부시설, 편의시설
 - 마권 및 구매권 발매, 환급료 교부 등에 관한 사무
- 마사회에 등록한 마주의 등록취소 요건을 신설

- 부정한 방법으로 마주등록을 할 경우 등

■ 심사결과(2002. 4. 12)

- 마사회법 개정시 경매개최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그 위임근거에 따라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매에 관하여 그 일정 범위 또는 한도를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경매장별 연간 경매일수 및 회수의 한도를 정하여 제한하는 것은 타당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되,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다시 규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
- 경매행위에서 마주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마주의 등록취소 요건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기타 마사회규정에 의한 마주등록심의위원회가 경매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는 삭제
- 기타내용은 원안의결

(8) 검역대상잡초가혼입된곡물류의처분규정(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검역대상잡초가 발견된 곡물의 가공처리는 폐기·반송하거나 당해 잡초의 발아력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수입자가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과학적·객관적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허용함.
- 수입자가 가공처리에 의한 처분을 원하는 경우에는 '저장·수송·가공처분 세부이행 계획서' 및 '가공 공정서' 를 수입지 국립식물검역소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가공처분 대상식물이 가공처리장에 도착하면, 즉시 가공처리장을 관할하는 지·출장소장에게 도착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 입항지 항만시설 내의 저장 싸이로·야적장 등 저장지에서 가공처리장으로 수송시에는 '싸이로·저장지별 저장량 및 가공처리장별 운송상황 기록카드' 를 비치하도록 함.

■ 심사결과(2002. 4. 12)

- 원안의결

(9) 농산물품질인증에관한세부실시요령(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축산물의 유해성 잔류물질 검출여부 조사를 위한 시료 채취방법을 정함.

- 한우고기, 돼지고기는 도축장에서 도축 후 정육 100~500g과 지방 10g을 채취하
되, 호르몬 검사 시는 간 50g을 추가로 채취함.
- 닭고기는 도계장에서 도계한 후 1마리를 채취함.
- 계란은 사육장에서 10개를 채취함.
- 유해성 잔류물질 검사용 시료 수거 시에는 시료수거 확인서를 받음.

■ 심사결과(2002. 4. 12)

- 원안의결

(10) 농지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농지의 세분화 방지를 위해 농지의 전용·도시계획의 확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
거나, 일정규모 이상으로 분할하는 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농지의 분할을 허용함.
 - 도시계획구역내 주거·공업·상업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포함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 각 필지의 면적이 2천㎡를 초과하도록 분할하는 경우
 - 농지개량이나 교환·분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심사결과(2002. 6. 7)

- 원안의결

(11)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4)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위생관리기준
(SSO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미시행작업장을 추가함.
- SSOP, HACCP 미시행작업장의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금액을 상향 조정
함.(30만원 → 100만원)
- 식용란의 검사기준을 식용란의 표면상태, 변질·부패여부, 잔류물질 허용기준 적합
여부,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 오염 여부로 정함.
- 법개정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된 SSOP 및 HACCP 미시행작업장에 대한 행정
처분기준을 신설함.

■ 심사결과(2002. 6. 14)

- 원안의결

(12) 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3)

-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범위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로 제한
 -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운영지원대상자는 운영자의 자격 및 경력, 이용할 시설의 확보상황, 사업계획서의 내용, 그 밖의 사업추진과 관련 사항을 평가하여 선정하며, 지방비만으로 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한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매년 운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운영실적 평가결과 부진한 여성 농어업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 심사결과(2002. 6. 14)
-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만큼 사업효과에 대한 평가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상위법에 관련시설에 대한 평가 및 부진시설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에 근거하여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은 가능하므로 이를 삭제
 - 원안의결

(13) 농약관리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내용심사 1)

- 등록된 품목이 약해, 독성, 잔류성 등의 위해성이 인정되거나 국제기구 등에서 안전성문제 등으로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현재 당해 품목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그 제조, 수출입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추가함.
- 로테르담 협약에 규정된 농약 및 원제를 수출입하는 자에 대한 수출입 승인요령 등

준수사항과 그 대상농약 및 원제를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도록 함.

* 본 협약 대상물질은 생산·사용의 금지 개념이 아니고 수입국의 사전통보승인이 있을 때만 수출이 가능토록 하여 인간건강과 환경보존에 대한 책임을 수출국·수입국이 공유하도록 함.

■ 심사결과(2002. 6. 21)

- 원안의결

(14) 농산물품질관리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산지 및 소비지의 유통시설에 농산물의 등급판정, 출하통제, 생산기술 및 유통관련 컨설팅 업무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를 두게 할 수 있고, 이를 고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농산물품질향상에 소요되는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산물품질관리사가 되고자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그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며, 자격증 대여를 금지함.

■ 심사결과(2002. 10. 4)

- 농림부장관이 산지·소비지의 농산물유통시설에 농산물품질관리사를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유통시설의 사업자에게 고용의무를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를 고용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품질관리 관련자금을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없음으로써 사실상 고용이 강제되어 민간사업자의 자율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품질관리사의 고용여부와 그 직무의 범위는 유통시설의 사업자가 산지·소비지의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정
- 기타내용은 원안의결

(15) 여성농업인센터및여성어업인센터운영비지원대상자선정기준(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비지원 사업신청자는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

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고, 동시에 필요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활동경력·필요자 격증 소지·시설물의 입지·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세부내용(창의성, 사업의 종류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함.

■ 심사결과(2002. 10. 11)

- 여성농어업인육성법령에 의하여 운영비지원대상이 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중 농림부소관시설인 여성농업인센터운영비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농림부고시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간의 형평성있는 지원을 위하여 여성어업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고시로 내용을 수정하도록 개선함.
- 선정기준의 경우 그 대상자를 개인의 경우에 국한하여 정하고 있어 여성농업인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선정기준이 미흡하므로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내용 중 “사업신청자의 자격·경력”을 “사업신청자(여성농업인단체에서 신청한 경우는 그 단체에서 지정한 자)의 자격·경력”으로 내용을 수정
- 기타내용은 원안의결

(16) 식물방역법시행령·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 국내 미거주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휴대수입식물을 검사 받지 않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검사 받은 경우 과태료를 공·항만 등의 위반현장에서 부과·징수
 -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한 조항에 “국내 미거주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가 발생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 휴대식물 관련 과태료 금액을 위반행위·횡수별로 차등화
- 수입 시 병해충 유무판단이 곤란하여 격리재배를 통해 검사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대상식물을 추가함.
 - 벚나무·장미나무속의 묘목·접수·삽수
 - 과수류의 씨앗
- 격리재배검사 종료시까지 지정된 격리재배 포장 외의 장소로 이동금지, 수입자와

소유자·대리인간의 위임장 또는 계약서 사본 제출 등 격리재배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 심사결과(2002. 10. 29)

- 휴대수입식물에 대한 검사관련규정을 위반한 국내미거주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 대해서 위반행위 발생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없이 강제 징수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국내체류기간을 고려하여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발부 받은 현장에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금액을 감면해줌으로써 현장 납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
- 검역적으로 중요하고 잠복병원체의 유입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식물을 격리재배 대상식물에 추가하는 것은 식물검역관리 목적상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격리재배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격리재배요건으로 하여 이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재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규정에 의하여 격리재배 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로 내용을 수정
 - 수입자가 직접재배하지 않는 경우 그 소유자와 대리인 간의 위임장·계약서를 제출토록 하여 격리재배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현행대로 존치하되 용어통일을 위하여 조문 중 ‘종묘’를 ‘종자’로 수정
- 기타내용은 원안의결

(17)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4)

-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위한 납부통지, 의견진술기회부여 및 위반횟수별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규정
- 축산단체가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서에 자조활동자금의 명칭, 목적 및 내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업계획과 공동 운영방법 및 절차를 포함시킴.
- 거출금납부의 찬반투표를 위한 대의원의 선출을 위하여 필요한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을 정하고 후보자의 등록절차와 대의원의 선거절차 및 방법을 정함.
- 축산업자가 수납기관을 통하여 거출금을 납부하도록 의결함으로써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작업장(수납기관) 대표자에게 거출금 수납을 위탁하게 되는 경우 수납기

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수납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상 규정되어 있어 수납기관에서 거출금의 수납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

- 작업장에서 매매되지 아니한 품목이 발생한 경우
- 판매금액이 도축세, 수수료, 거출금액을 합한 금액 이하일 경우
- 도축한 축산물을 폐기 처분하는 경우
- 심사결과(2002. 10. 29)
- 원안의결

(18) 농약및원제의취급제한기준(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어독성 I, II급 농약 및 비선택성 제초제농약은 상수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수원보호구역하천 인근의 도로변에서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농약제조업자는 파라코액제 제조시 구토제·약취제 및 색소를 혼입하고, 농약판매업자에 대한 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심사결과(2002. 11. 22)
- 어독성 I, II급 농약의 경우 상수취수원으로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의 사용을 기금지 하고 있어, 그 사용금지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 하천인근 도로변으로 한정하는 개정안은 기존 규정과 상충되며, 비선택성 제초제사용금지 규정안을 별도 항목으로 정하는 것은 규정체계상 적합하지 않으므로 동 개정안 중 어독성 I, II급 농약관련규정은 현행규정을 적용하고, 비선택성 제초제의 경우는 “2. II급(보통독성) 농약” 내에 특례조항으로 신설하되 그 금지지역을 “상수취수원으로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수정함.
- 파라코액제에 구토제, 약취제, 색소를 첨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유독 파라코액제가 음독자살 등 농약 중독사고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약중독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파라코액제 제조업자의 판매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의무 신설안은 취급제한기준에서 농약판매업자는 농약판매협회장(농협농약판매자는 농협중앙회장)이 실시하는 농약안전관리교육을 받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

(19)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회원조합이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를 확대하되, 그 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농림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 범위 내로 제한함.

■ 심사결과(2002. 11. 29)

- 원안의결

(20)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4)

- 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변경신고의무, 등록유효기간과 싸움소의 등록 거부사유, 법에서 위임한 싸움소주인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소싸움경기의 심판 및 조교사의 자격을 얻고자 하는 자는 경기시행자가 시행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토록 규정하고,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아울러 경기시행자에게 심판 및 조교사의 자질향상과 공정한 경기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의무를 부여함.
- 우권을 구매·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되는 자 중 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한 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와 수탁사업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토록 규정함.

■ 심사결과(2002. 12. 12)

- 원안의결

(21) 외국인농업연수생제도운영에관한지침(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4)

- 연수업체의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면서 출입국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수생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송출기관 및 중앙회장의 입국 전·후 연수생에 대한 소양교육실시의무 및 건강검진의무를 규정함.
- 연수생이 생활할 수 있는 숙박시설 제공 등 연수업체의 자격요건과 연수업체의 추천 및 취소사유를 정하고, 연수업체의 교육실시의무 등을 규정함.
- 중앙회장은 연수업체로부터 연수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연수업체에게 연수수당 등의 지불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권을 제출케 하거나 이행보증금을 예치케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장은 연수생 등의 연수장소 무단이탈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송출기관과 연수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연수수당·임금미지급 등 계약불이행 행위와 연수업체의 연수생 등에 대한 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부당행위를 한 연수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심사결과(2002. 12. 27)
- 원안의결

2. 산림청

가. 지난 5년간 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총 18개(1999년 3개, 2000년 5개, 2001년 5개, 2002년 5개)의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령을 대상으로 69건(신설 20건, 강화 43건, 내용심사 6건)의 규제에 대한 심사를 통해 20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규제 중 41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신설·강화규제

- 산림형질변경기준을 정함.
 - 경사도가 45도 이하, 해당 시·군의 ha당 평균입목축적 비율이 150% 이하, 구역안에 수목의 평균 나이가 50년 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75% 이하인 경우
- 채석허가기준을 정함.
 - 채석허가 면적이 3만^m 이상, 평균 경사도가 45° 이하, 해당 시·군의 ha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 이하, 채석해당 구역안에 평균 나이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면적이 75% 이하인 경우
- 일정 규모 이상의 보존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산림전용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고, 산지전용 또는 채석·토사채취 복구비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와 재해방지명령

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허가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지전용지역 등에 대하여 목적사업도중 장기간의 사업중단이나 훼손지 방치 등으로 인한 산사태·토사유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 설치·조립·사방 등 응급복구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시 예치된 복구비로 대집행 할 수 있도록 함.
- 보전임지 편입비율 기준을 설정함.
 - 당해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보전임지의 면적은 사업부지 총면적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스키장, 집단묘지, 대중골프장과 시·군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예정지 등은 적용 예외로 함.

나. 2002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 2002년도에는 임업및산촌잔혹축진에관한법률시행령·규칙, 산림법시행령·규칙 등 5개 법령에 대해 신설2건, 강화9 등 총1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1건 중 3건은 개선권고 하고 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친 산림청의 2002년도 총신설규제는 2건

(1) 임산물표준규격(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임산물의 산지는 재배지역 시·군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읍·면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생산년도는 수확년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산지, 생산년도 또는 품종이 각각 다른 임산물을 혼합하였을 경우에는 점유비율이 높은 순서 2개까지 혼합비율 등을 표시하도록 함.
- 임산물 표준규격을 개정함.
 - 밤의 표준규격 중 직경에 따른 등급규격을 추가(직경 38mm 이상 특대)
 - 견대추의 등급규격의 고르기의 혼입률을 명시(특 : 크기가 다른 것 혼입률 5% 이내)
 - 호두의 등급규격의 충실도를 강화(특 : 충실도 50% 이상 → 80% 이상)하고 경결점과의 기준을 수치화(특 : 거의 없는 것 → 3% 이하)

- 임산물의 포장규격은 품목별(15개) 44개 규격으로 정하고, 한국산업표준규격에서 정한 수송용 포장계열치수(69개) 규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심사결과(2002. 1. 25)
- 임산물 표준규격품의 산지를 재배지역 시·군명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농산물 품질관리법시행령 제24조(원산지 표시방법 등)의 규정에 국산 또는 시·군명을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이므로 삭제
- 임산물의 생산연도를 수확연도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곡류에만 생산연도를 표시하도록 한 규정에 반하므로 삭제
- 농산물의 산지, 생산년도, 품종별 혼합비율 등 혼합내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반하므로 삭제
- 기타내용은 원안의결

(2) 임업및산촌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 임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목재제품은 3년, 기타 임산물은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하고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방부처리목재, 목탄, 목초액 기타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품목으로 함.
- 시장·군수는 산촌개발사업을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심사결과(2002. 1. 25)
- 원안의결

(3) 산림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8)
- 보전임지(생산임지, 공익임지)의 전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중 “농업인 등이 부지면적 1,500㎡ 미만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를 농업인 등이 자기소유의 산림에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면적 1,500㎡ 미만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농림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결한 시·구·읍·면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함.

- 보전임지의 용도변경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조정함.
- 벌채목적 및 방법 등에 따라 벌채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벌채허가시의 조사확인사항으로 규정함.
 - 모두베기 벌채허가 면적 등 벌채사업기준 및 운재로 시설기준 명시 등
-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지정시 1ha 이상의 산림에 대해서만 지정토록 한 면적제한을 삭제하고, 대상지역에 ‘그 밖에 자생식물의 보호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추가함.
-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채석허가 신청 시 영림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취득자)가 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를 구비서류에 추가함.
- 형질변경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하여는 형질변경기간 만료일까지 산림토목기술자가 작성한 복구설계서로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함.
- 2급 산림토목기술자의 업무범위를 현행공사규모 10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축소조정함.
- 심사결과(2002. 8. 30)
 - 보전임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서 괄호의 내용은 삭제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보전임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에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권고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시 ‘그밖에 자생식물의 보호를 위해 특별히 인정되는 산림’을 지정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삭제
 - 기타내용은 원안의결

제14절 _ 과학기술 · 정보통신분야

*집필자 : 김용진 과장(Tel. 3703-2183, rjkim@opc.go.kr)

1. 과학기술부(기상청 포함)

가. 지난 5년간 신설 · 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총 29개(1998년 2개, 1999년 1개, 2000년 4개, 2001년 11개, 2002년 11개)의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령을 대상으로 88건(신설 43건, 강화 36건, 내용심사 9건)의 규제에 대한 심사를 통해 41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규제 중 34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 신설 · 강화규제

-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업체 등에 대하여 전문용역업체에 의해 방사선 관리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토록 업무대행자 등록제도를 도입
- 대덕연구단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입주승인이 취소된 후 부지양도명령 불이행 시에 당해 부지 공시지가 20/100 한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함.
- 원자력발전소 사용 중 검사에 공사중검사를 추가
- 동일한 설계의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을 반복적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 기술

부장관의 인가를 받게 함.

-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업체 등에 대하여 전문용역업체에 의해 방사선 관리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을 촉진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력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함.
- 원자력사업자가 되기 위하여 원자력법에 따른 허가·인가 또는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물리적 방호체제를 수립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원자력사업자는 핵물질의 불법 이전과 그에 따른 불법전용 및 원자력시설 등의 사보타지 그밖의 위협에 대한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사용개시 전에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원자력사업자는 해당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사용개시 전에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나. 2002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 2002년도에는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등 9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24건, 강화 4건, 총 28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8건 중 1건에 대하여 철회권고, 13건에 대하여 개선권고, 14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과학기술부의 2000년도 총 신설 규제수는 23개

(1) 방사선안전관리등의교육훈련에관한규정(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1)
-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 방사선안전에 관한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교육실시 3개월 전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한 교육·훈련 강사는 해당 사업소의 방사선안전관리자, 해당 종목의 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등으로 구성
-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안전관리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기록장비는 5년간 보존

- 비파괴검사 종사자 자격교육을 위탁받은 교육기관은 교육·훈련 및 평가사항 등에 관한 기록은 5년간 유지·관리하고 교육이수에 관한 기록 및 장부는 영구 보관하며, 교육결과를 매 반기별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
- 심사결과(2002. 3. 29)
- 원자력관계사업자의 방사선 안전교육계획 제출의무 및 비파괴검사종사자 위탁교육 기관의 교육·훈련 등의 기록·보관 및 보고의무를 삭제
- 기타사항은 원안의결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수리업무의 위탁근거규정으로서 “협회”에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변경
- 과학기술부장관이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고수리 취소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설계도서 등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심사결과(2002. 6. 21)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수리업무의 위탁근거규정으로서 현행 “협회”로 수정
- 기타사항은 원안의결

(3)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정부예산을 이용하여 외국여행을 하는 과학기술자에 대하여 외국여행과정에서 수집한 과학기술정보를 보고토록 함.
- 과학기술부장관이 과학기술 국제화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을 맺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국제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연구개발결과 등 주요정보가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연구개발 관련정보 및 연구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등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심사결과(2002. 6. 21)

- 원안의결

(4) 기술사법시행령·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강화 1)
 -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신청서에 사무소명칭, 소재지, 기술인력 현황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2인 이상의 기술사가 합동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합동기술사 사무소 개설·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토록 함.
 - 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기술사가 보유하는 자격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별로 기술사, 기사 등의 기술인력 3인 이상을 확보토록 함.
 - 기술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회원 기술사들에 대한 경력 및 실적 발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기술사 사무소 개설등록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사회의 요건을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되, 과학기술부장관이 수행기관의 요건을 지정·고시하기전까지는 한국기술사회가 동 업무를 수행함.
- 심사결과(2002. 7. 12)
 - 기술사 사무소 개설등록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사회의 요건을 시행령 개정 후 6개월 이내에 고시토록 함.
 - 기타사항은 원안의결

(5)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을 촉진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협력할 여성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함.
- 심사결과(2002. 8. 23)
 - 여성과학기술인의 학력요건 및 우수여성과학기술인의 정의조항을 삭제하고, 여성담당관의 명칭을 여성과학기술인력담당관으로 변경하며, “지원을 받는 기관”을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구체화
 - 기타사항은 원안의결

(6)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3)

- 과학기술부장관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과학기술부장관은 방사선 등을 이용한 산업·의료·환경 및 기초분야 연구와 연구 결과의 산업화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기관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정부기관 중에서 지정함.
- 과학기술부장관은 방사선이용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원자력 관련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기타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심사결과(2002. 8. 23)

- 방사선연구전담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에서 방사선연구전담기관 지정요건을 구체화
- 기타사항은 원안의결

(7)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5)

- 원자력사업자가 되기 위하여 원자력법에 따른 허가·인가 또는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물리적 방호체제를 수립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원자력사업자는 핵물질의 불법 이전과 그에 따른 불법전용 및 원자력시설 등의 사보타지 그 밖의 위협에 대한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사용개시 전에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원자력사업자는 당해 원자력시설 등에서 핵물질의 절도나 강탈 또는 불법적 취득, 또는 위협 등을 받거나,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 등에게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 과학기술부장관은 물리적 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시설 등이 미흡할 경우, 원자력사업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음.

-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그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함.
- 물리적방호 관련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방호협의회회원, 공무원 또는 관련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물리적 방호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동법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원자력사업자는 해당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사용개시 전에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원자력사업자는 소관 원자력시설 등에서 방사선비상 등이 발생한 경우 당해 방사선 비상계획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방사선비상을 발령하고, 이를 과학기술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사고 또는 재난의 확대방지와 종사자의 보호 및 주민에 대한 방사선 위해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비상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야 함.
- 원자력사업자는 당해 원자력사업소마다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조직과 인원을 확보해야 함.
-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 방재요원, 방사선 비상 진료기관의 방사선 비상 진료요원 및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요원은 방사능 재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방사능 방재대책 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
- 과학기술부장관은 보고 또는 제출된 서류의 현장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사능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 법에 따른 각종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할 수 있음.
-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는 자체 방사선 비상 진료기관을 설치하여야 함.
- 원자력사업자는 방사능재난사후대책으로서 방사성물질의 농도 등의 조사, 의료조치, 방사능물질의 확산현상에 관한 홍보 등의 조치를 취함.
- 원자력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등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심사결과(2002. 8. 23)

- 기존 원자력사업자의 물리적 방호체제 및 방호비상계획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최소 3개월 이상의 경과조치가 필요함.
- 물리적방호규정 및 방호비상계획에 대한 사후 검사를 삭제
- 원자력사업자는 방사능방재계획 수립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동 계획을 통보하고, 추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토록 함.
- 안 제72조제4호의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등급과 다른 등급의 방사선비상을 발령한 자”를 “고의적으로 현저히 다른 비상등급을 발령한 자”로 수정
- 보고·검사에 관한 규정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
- 발전용 원자로사업자의 자체진료기관 설치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변경
-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재난 발생 시 방사능 확산상황에 대한 홍보의무를 삭제
- 기타사항은 원안의결

2. 정보통신부

가. 지난 5년간 신설·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총 61개(1998년 2개, 1999년 2개, 2000년 17개, 2001년 17개, 2002년 25개)의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령을 대상으로 146건(신설 72건, 강화 37건, 내용심사 37건)의 규제에 대한 심사를 통해 69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규제 중 34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 신설·강화규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며 개인정보 수집시에는 이를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토록 함.

-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취소사유 등을 규정하고, 공인인증기관에게 인증업무의 안정성 확보의무 등을 부과
- 전자과 인체보호기준을 권고기준으로 설정
- 국가안보 및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금융, 통신, 국방 등의 정보통신시스템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함.
- 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제도를 도입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기간통신사업자는 번호이동성계획을 수립·시행함.
-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함.

나. 2002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 2002년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23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7건, 강화 12건, 내용심사 14건 등 총 3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3건 중 10건에 대하여 개선권고, 3건에 대하여 철회권고, 20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정보통신부의 2002년도 총 신설 규제 수는 7개

(1) 한국전기통신공사의공익성보장(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한국통신은 2005년까지 전국 모든 농어촌가구에 1Mbps급 이상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함.
 - 한국통신은 매년 12월 말까지 익년도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하고, 분기별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현황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심사결과(2002. 1. 11)
 -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현황 제출의무를 연 1회로 완화
 - 기타 사항은 원안의결

(2) 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별정우체국장의 자격요건으로서 8천만원 이상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로 정함.
- 심사결과(2002. 1. 25)
 - 원안의결

(3) 유선방송사업및전송망사업의허가및등록등에관한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내용심사 1)
 - 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신청시, 사업계획서 및 시설설치계획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추가로 제출함.
 - 방송국의 검사방법으로서, 대조검사와 성능검사로 나누어 실시함.
- 심사결과(2002. 1. 25, 2002. 4. 26)
 - 동 법령안에서의 사업계획서·시설설치계획서 제출의무는 삭제하되, 방송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양식을 정보통신부 법령안 양식으로 정형화하여 추후 정보통신부로 송부함.
 - 기타사항은 원안의결

(4) 시외전화사전선택제시행기준(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시내전화사업자는 시외전화 신규가입신청시 사전선택을 안내해야 함.
 - 시외전화사업자는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신청서를 작성 또는 제출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용자의 의견·불만을 즉각 처리해야 함.
 - 이용자가 시외전화사업자의 불법 변경으로 인한 요금청구를 받을 때, 6개월 이내에 전화 등으로 불법변경 신고 및 이의신청 제기를 할 수 있음.
 - 시외전화와 시내전화역무를 함께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시내전화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방문고객 응대 시 또는 전화 등의 통신을 매개로 사전선택제 모집활동을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됨.
 - 시외전화와 시내전화역무를 함께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연 2회 이상 시내전화

역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시외전화사전선택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시외전화사전선택 고객을 유치할 수 없는 시내전화업무의 범위를 일반전화 신규 및 해지, EDPS·중앙불 수입결의, 요 검토자료 분석, 직권해지·청문통지 등으로 정함.
- 심사결과(2002. 2. 8)
 - 불법변경으로 인한 요금청구에 대한 이용자 이의신청 제기기한(6월)을 삭제
 - 시외전화사전선택제중 위반행위로서, “자사의 시외전화를 선택하도록 변경을 요청하는 행위”를 “시외전화 변경신청서를 받는 행위”로 구체화함.
 - 연 2회이상 교육실시의무 및 시내전화 업무직원 명단비치의를 삭제
 - 시외전화사전선택 고객을 유치할 수 없는 시내전화업무의 범위중 EDPS·중앙불 수입결의, 요 검토자료 분석, 직권해지·청문통지 등을 제외함.

(5)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접속통화로 산정에 있어 시외전화사업자가 전체 대역의 기본서비스와 관련하여 가입자가 가장 많은 시내전화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접속통화로 중 가입자선로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다만, 가입자가 가장 많은 시외전화사업자는 1대역 시외전화서비스에 한하여 가입자선로원가를 제외함.
 - 2대역 기본서비스 할인은 접속통화로 매출 대비 비중이 21%를 초과하는 경우에 실시하고, 할인율은 동 접속통화료의 매출 대비 비중이 21%되는 수준에서 정함.
- 심사결과(2002. 3. 15)
 - 원안의결

(6) 가입자선로의공동활용기준(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동선일괄제공방식으로서, 제공사업자는 동선으로 된 가입자선로를 보유하고 있는 시내전화사업자로 하고, 이용사업자는 시내전화사업자로 함.
 - 고주파수회선분리제공방식으로서, 제공사업자는 동선으로 된 가입자선로를 보유하고 있는 시내전화사업자로 하고, 이용사업자는 회선설비임대역무를 허가받고 초고속 인터넷접속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함.
 - 초고속인터넷접속망 개방을 위하여, 매년도 1월 말 기준으로 초고속인터넷접속망

유형별 가입자수가 50만명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는 초고속인터넷접속망 제공을 허용하여야 하고, 이용사업자는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로 정함.

- 심사결과(2002. 3. 29)
- 원안의결

(7) 전기통신사업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4)
-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기통신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다만,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공의 이익 증진 및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제3자가 통신사업자를 대리·중개하여 계약체결 등을 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 것으로 간주함.
- 통신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해야 하나,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통신자료의 범위에 전화번호와 사용자 식별번호를 추가하고, 통신자료 요청기관에 법원(판사)를 포함하도록 함.
-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수립지침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재난관리계획을 작성·제출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의 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심사결과(2002. 3. 29)
- 통신사업자의 사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에 있어, 실효성 있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함.
- 기타사항은 원안의결

(8) 전자서명법시행령·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1, 내용심사 2)
 -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재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지정을 받아야 함.
 -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준칙 변경 시, 변경되는 인증업무준칙 수행 15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 공인인증기관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발급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확인함.
 -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방호조치, 화재·수해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함.
- 심사결과(2002. 4. 19)
 - 지정유효기간 및 갱신지정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중 기술인력의 교육에 있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이외의 다른 기관들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
 - 기타사항은 원안의결

(9) 국제전화요금의정산계약에관한승인기준(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국제전화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협정료 계약에 있어서 동일 국가의 외국사업자에 대해 동일한 협정료를 적용하고, 외국사업자와 협정료를 균등하게 배분하며, 동일 국가에 복수의 외국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국가로부터 받은 전체 통화량 중 각 외국사업자로부터 받은 통화량의 비율에 따라 해당 외국사업자에 대한 발신통화량을 정함. 다만, 상기 기준 외의 계약을 허용하는 국가의 외국사업자와는 위 방법 외의 협정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국제전화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위 기준 외의 방법으로 협정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는 외국사업자와 국제전화역무에 관한 신규 또는 변경계약

을 체결할 경우 각각 계약체결 후 30일, 15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후 60일 이내에 신청된 계약을 승인함.

-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일방향 착신행위를 할 수 없고, 별정통신사업자의 반기별 착신통화량이 같은 기간 발신통화량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을 일방향 착신행위로 간주함.
- 별정통신사업자는 매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회선의 증감현황 등을 정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심사결과(2002. 4. 26)

- 정보통신부장관의 계약승인기간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함.
- 별정통신사업자의 회선 증감현황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삭제함.

(10)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2)

- 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구축 자료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승인함.
- 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구축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연도별·분기별 전기통신설비 구축계획, 수시 전기통신설비 구축계획 등을 조사하고, 조사된 자료에 의하여 공동구축이 가능한 지역 또는 구간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함.
- 자가통신설비를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설비의 설치·변경공사 개시 21일 전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 심사결과(2002. 6. 7)

- 분기별 설비구축계획 조사 및 전문기관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삭제
- 기타사항은 원안의결

(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내용 등이 있는 경우 “(성인광고)”라는 문구를 전자우편의 제목란에 명시해야 함.
-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글 및 영문으로 각각 명시해야 함.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우편의 제목란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의 문구를 표시할 때, 처음에 빈칸 없이 한글로 해당 문구를 표시해야 함.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수신자로부터 전자우편에 전송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해당 전자우편 제목란에 “광고” 또는 “(성인 광고)”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전자우편의 본문란에 동의를 얻은 시기 및 내용을 명시해야 함.
- 심사결과(2002. 6. 14)
- 원안의결

(12) 국제로밍서비스계약에관한승인기준(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국내 통신사업자는 외국 통신사업자가 제시하는 사업자요금이 당해 외국 통신사업자와 제3의 사업자와 체결한 요금과 동일한 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함.
- 국내 통신사업자는 로밍서비스 제공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국내통화요금은 국내 통신사업자 선불요금 평균의 110% 내지 120%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고, 국제통화요금은 상기의 국내통화요금과 KT의 국가별 국제전화요금을 합계한 것으로 정함.
- 국내 통신사업자가 외국 통신사업자와 로밍서비스에 관한 신규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각각 계약체결 후 30일,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은 승인신청 후 30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함.
- 심사결과(2002. 6. 14)
- 획일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요금산정을 하기 보다 제3자와 체결한 요금이하로도 요금계약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 기타사항은 원안의결

(1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등을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전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거래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고시함.

- 전화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수행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온라인콘텐츠사업자 또는 타인의 온라인콘텐츠를 전송하는 자에게 정보통신망 등 중개시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안 됨.
- 심사결과(2002. 6. 21)
- 원안의결

(14) 정보보호시스템평가·인증지침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정보보호시스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 평가등급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인증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인증을 취소함.
- 신청인은 인증제품을 국가기관에 보급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한 보호프로파일을 사용하여야 함.
- 신청인이 인증제품 및 평가제품의 원시프로그램 등 핵심기술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증기관이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평가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심사결과(2002. 7. 19)
- 인증기관이 요청하는 조치 이행기한을 “90일 한도 내”로 명기함.
- 인증취소사유로서, “기타 평가등급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원시프로그램의 유출 등으로 평가등급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 구체화함.
- 기타사항은 원안의결

(15)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1)
- 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망을 통하여 부정복제물 등이 전송되거나 게시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을 하도록 명할 수 있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등으로부터 당해 프로그램 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당해 프로그램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프로그램 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

- 심사결과(2002. 8. 30)
- 원안의결

(16)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 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할 있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기업을 지정할 수 있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사업자 선정시 전문기업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심사결과(2002. 9. 27)
 - 전문기업의 “지정”을 “인증”으로 변경하고, 전문기업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우대 조치를 삭제함.
 - 기타사항은 원안의결

(17) 정보통신기기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를위한세부운영지침(고시), 정보통신기기 인증을위한세부운영지침(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내용심사 1)
 -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시험책임자(시험원)은 고등학교 졸업후 9년(4년),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7년(3년), 학사학위 취득후 5년(1년), 석사학위 취득후 3년(6개월),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후 1년(2개월) 이상 당해 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함.
 - 전파연구소장이 정보통신기기의 인증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받은 자로부터 정보통신기기 또는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시험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기로서, 통신사업자 또는 특정업체에 공급되거나 서비스 가입 등 특약조건으로 판매되어 구매하기 어려운 정보통신기기를 추가함.
- 심사결과(2002. 10. 11)

-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시험책임자 및 시험원 요건을 삭제
- 기타사항은 원안의결

(18) 전자서명공인인증업무지침(고시), 공인인증기관의보호조치에관한규정(고시)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2)

- 공인인증기관은 등록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등록정보를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여 전송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공해야 함.
- 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의 전자서명키를 생성하는 경우 3인 이상의 권한 있는 직원이 공동으로 이를 수행해야 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전자서명키를 생성하는 경우 2인 이상의 권한있는 직원이 공동으로 이를 수행하여야 함.
-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업무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공인인증기관은 등록대행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신청인의 신원확인업무, 공인인증서 신청서의 접수·처리업무, 등록시스템 관리 등 공인인증기관이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6개월마다 1회 이상 지도·관리하여야 함.

■ 심사결과(2002. 10. 29)

- 공인인증기관의 등록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관리”를 “점검”으로 변경
- 기타사항은 원안의결

(19)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

■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이동전화망의 접속통화료는 주파수의 특성 및 통화량 규모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별로 2002, 2003년 분을 산정함.
- 시내, 시외 및 공중전화망의 접속통화료는 2001년 말 기준으로 가입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의 접속통화료를 적용함.
- 시내, 시외, 공중 및 이동전화망의 2004년도 이후의 접속통화료는 장기증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시장 경쟁상황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함.

■ 심사결과(2002. 11. 22)

- 원안의결



제7장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및 APEC -OECD 규제개혁회의

제1절 _ 2002년 자치단체 규제정비

제2절 _ APEC-OECD 규제개혁 한국회의

제1절 _ 2002년 자치단체 규제정비

*집필자 : 손방 사무관(Tel: 3703-3935, sonbang@opc.go.kr)

1. 추진배경

- 1998년 이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행정규제개혁의 성공적 추진과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 및 자치단체별 행정규제개혁의 성공적 추진과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 및 자치단체별 규제개혁 성과의 정확한 전달 및 홍보가 필요
 - 자치단체별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는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폐지, 완화, 존치)하여 민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 품질을 제고
 - 법령에서 위임된 규제는 중앙부처의 규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조례규칙 등을 정비,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는 폐지 또는 근거 마련
 -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지방규제개혁에 대한 주민의 관심 고취와 참여 확대를 위하여 자치단체별 규제신고센터 설치·운영, 지역신문·방송(유선), 반회보, 소식지, 인터넷을 통하여 대국민 집중 홍보

2. 2002년도 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현황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 총 규제사무수 85,921건 중 규제정비 대상은 53,240건이며 이 중 99.9%인 53,181건의 규제정비
- 자치단체 평균 정비목표 213건의 99.9%(212건)을 정비 완료

규제정비 현황

2002. 12. 31 현재

시도별		총 규제 사무수	정비 대상 사무수		추진 실적	
합계	계	85,921	53,240	62.0%	53,181	99.9%
	광역시	7,531	4,813	63.9%	4,796	99.9%
	기초	78,390	48,427	61.8%	48,305	99.9%
서울	광역시	1,114	834	74.9%	818	98.1%
	기초	7,556	5,376	71.2%	5,340	99.3%
부산	광역시	436	266	61.0%	266	100.0%
	기초	2,869	1,719	59.9%	1,717	99.6%
대구	광역시	407	239	58.7%	238	99.6%
	기초	1,310	858	65.5%	858	100.0%
인천	광역시	569	323	56.8%	323	100.0%
	기초	2,776	1,806	65.1%	1,806	100.0%
광주	광역시	503	270	53.7%	270	100.0%
	기초	1,282	912	71.1%	912	100.0%
대전	광역시	349	223	63.9%	223	100.0%
	기초	1,315	926	70.4%	926	100.0%
울산	광역시	474	339	71.5%	339	100.0%
	기초	1,142	664	58.1%	664	100.0%
경기	광역시	309	160	51.8%	160	100.0%
	기초	12,600	6,844	54.3%	6,840	99.9%
강원	광역시	412	251	60.9%	251	100.0%
	기초	6,722	4,448	66.2%	4,448	100.0%

시도별		총 규제 사무수	정비 대상 사무수		추진 실적	
충북	광역	314	181	57.6%	181	100.0%
	기초	3,770	2,318	61.5%	2,318	100.0%
충남	광역	466	314	67.4%	314	100.0%
	기초	6,088	4,211	69.2%	4,211	100.0%
전북	광역	567	381	67.2%	381	100.0%
	기초	5,999	3,742	62.4%	3,742	100.0%
전남	광역	489	318	65.0%	318	100.0%
	기초	7,996	5,104	63.8%	5,104	100.0%
경북	광역	381	221	58.0%	221	100.0%
	기초	7,707	4,249	55.1%	4,249	100.0%
경남	광역	332	259	78.0%	259	100.0%
	기초	7,982	4,572	57.2%	4,572	100.0%
제주	광역	409	234	57.2%	234	100.0%
	기초	1,276	678	53.0%	678	100.0%

3. 향후 자치단체 규제정비 중점 사항

가. 잔존 규제의 지속적 발굴·정비

- 시·도별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특정과제 선정·관리
- 훈령, 예규, 공고, 고시 등 잔존 규제 지속 발굴·정비
- 규제총량관리,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영향분석 및 심사강화, 최대한 억제
- 조례·규칙상의 행정규제 이외의 주민이 실질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유사행정 규제 발굴·정비

나. 규제정비 및 이행실태 현지확인·점검 강화

- 중앙 및 시·도 자체 점검반 편성·운영
- 행정감사를 통한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다. 지방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및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규제개혁' 교육과정 개설, 교육 과목 편성·운영

라. 규제관리정보를 국민이 쉽게 접근·활용토록 규제관리 홈페이지 지속 운영

- 「지방행정 규제개혁 정보센터」 개설·운영(2002. 9. 1)
- 중앙과 지방 간 연계성이 강화된 규제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 주민이용 활성화 도모

마. 현장 체감지수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홍보 매체를 활용, 체계적 홍보
- 민원 처리 시 지방규제개혁의 홍보자료 제공, 규제개선 내용을 직능 단체·협회 등에 파급 홍보

제2절 _ APEC-OECD 규제개혁 한국회의

1. 개요

2002년 10월 16~18일 3일간 “APEC-OECD 규제개혁 한국회의(APEC-OECD Co-operative Initiative on Regulatory Reform : Third Workshop and High-level Conference)”가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APEC)의 협력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APEC·OECD 44개국 회원국 대표, 세계은행(World Bank) 및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국제기구 대표를 포함한 300여 명의 인원이 참석, 각국의 규제개혁 경험과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국제사회가 규제개혁을 통해 공동의 번영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2. 회의개최 배경

OECD·APEC 회원국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규제개혁 성과

와 경험을 확산·공유해 나가기 위하여 2000년 11월 브르나이 다루살람에서 OECD와 APEC은 규제개혁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2월 싱가포르에서 OECD와 APEC의 44개 회원국과 여러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APEC-OECD 협력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후 협력 프로그램은 한국회의가 개최되기 이전 두 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회원국의 규제개혁 성과와 경험을 확산·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1년 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런칭 컨퍼런스(launching conference) 이후 2001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워크숍이 개최되었으며, 2002년 4월 멕시코 메리다에서 제2차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번 한국회의는 지난 제1·2차 워크숍의 연장으로 제3차 워크숍이 개최되었고, 이와 함께 2년간의 협력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APEC·OECD의 회원국 고위급인사와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APEC-OECD 규제개혁 한국회의는 제3차 워크숍과 고위급 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졌다.

3. 한국회의의 논의내용

「APEC-OECD 규제개혁 한국회의」에는 APEC·OECD 44개 회원국 대표와 World Bank, ADB 등 국제기구 대표를 포함하여 약 300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국제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한국측 대표로는 김석수 국무총리,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안문석 규제개혁위원장 등이 참석하였고 Donald Johnston OECD 사무총장, Piamsak Milintachinda APEC 사무부국장, Yukio Yoshimura 세계은행 부총재, John Lintjer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 등이 APEC·OECD 회원국과 국제기구를 대표하여 참가하였다.

10월 16~17일 양일간 개최된 워크숍에서는 첫째 날 개회식에 이어 행정규제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각국의 경험이 발표되었고, 이어 둘째 날에는 금융·정보통신·에너지 분야의 규제개혁 추진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18일에 개최된 고위급회의는 김석수 국무총리와 Donald Johnston OECD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이 있었으며, 각국의 고위급 대표

가 참가하여 지난 2년간 추진된 APEC-OECD 협력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 후 기자회견을 끝으로 폐회하였다.

가. 워크숍(10. 16~17)

양일간 개최된 워크숍에서는 각국의 규제개혁 담당자들이 자국의 규제개혁에 대한 경험과 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하였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행정규제 투명성 제고방안”과 “금융·정보통신·에너지 분야 규제개혁”으로 각 분야에 대한 참가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첫날 안문석 규제개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의 재도약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규제개혁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소개하고, 향후 규제개혁 과제로 규제의 질과 규제순응도 제고를 위한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내실화와 정보화를 기반으로 한 행정개혁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어 APEC 대표(Margarita Trillo, 경쟁정책 및 규제완화그룹 의장)와 OECD 대표(Rolf Alter 공공관리 및 지역개발국 부국장) 등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회의를 통해 회원국의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각국의 규제개혁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첫날 회의 주제인 “행정규제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한국, EU, 태국, 캐나다 대표는 각국의 사례를 소개하였고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회원국들은 선진화된 규제제도의 도입·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국민의 참여·이해집단과의 협상·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등을 통해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회원국들은 자유토론 시간을 통해 각국의 경험을 추가로 발표하였으며, 향후 규제투명성 제고방안으로 규제영향분석 및 비용편익분석의 내실화, 투명한 사회문화의 확산 등을 향후 논의과제로 선정하였다.

특히 한국대표는 과거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규제에 따르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원리를 강화하여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이루었음을 소개하여 회원국들의 높은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

둘째 날에는 금융·정보통신·에너지 분야 등 주요 산업분야의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각 분야별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금융분야 패넬토의에서는 OECD 국가들의 금융규제개혁의 배경과 주요 규제개혁 사례

및 향후 조치계획이 논의되었다. 독일 대표는 최근 독일의 금융시장의 업종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금융시장이 통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독일연방금융감독원이 신설되었음을 소개하였다. 영국 대표는 회계원칙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련의 회계부정 사건들이 야기되었음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대만대표는 금융 분야의 전반적인 구조조정 정책을 소개하면서 구조조정 측면에서의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정보통신 분야 패널토의에서는 각국 정보통신 분야 규제개혁 주요사례·규제개혁의 성과 및 통신시장 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규제개혁 방향 등이 논의되었다. 호주대표는 특정사업자의 시장지배력·농촌지역 서비스제공·통신망 간의 상호 호환 문제 등을 언급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호주의 규제개혁 노력을 소개하였다. 프랑스 대표는 정부의 직접적인 규율에서 벗어나 경쟁원리에 의한 통신시장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을 밝히고 앞으로 통신서비스 가격규제, 접속료 산정의 사업자 간 조정 등의 정부역할을 강조하였다. 중국대표는 아직 통신시장이 발전단계에 있으나, 부가통신서비스시장 개방 등으로 다수의 통신사업자가 경쟁하고 있음을 예로 들며, 향후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후발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정책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한국 대표는 이동통신망 사업자 간의 경쟁체제 구축·후발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통신분야 공기업 민영화 조치 등을 규제개혁 성공사례로 소개하고, 정보통신 분야의 선진국으로서 규제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에너지 분야 패널토의에서는 에너지 분야 규제개혁의 주요 사례·규제개혁 추진방향·에너지산업 구조개편 시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APEC 대표는 APEC 국가들의 규제개혁조치로서 발전설비 민영화, 전력 도매시장의 시장가격시스템 도입 등을 선진 사례를 소개하면서, 전력 분야 규제개혁의 성과로써 향후 2010년까지 710억불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러시아 대표와 대만 대표는 민영화와 경쟁 체제의 도입을 특징으로 하는 자국의 규제개혁 사례를 소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국가의 정책목표를 두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OECD·APEC·한국정부 대표는 규제개혁 원칙의 확립, 성공적인 정보 경험의 교환, 각국 규제개혁의 진전 등을 이번 회의의 성과로 평가하고 1단계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성과를 토대로 2단계 규제개혁 프로그램으로 진전시켜나갈 것을 제의하면서 워크숍을 결산하였다.

나. 고위급 회의(10. 18)

고위급 회의에서는 OECD·APEC의 회원국과 국제기구의 대표가 참석하여 지난 2년간 추진된 협력프로그램을 결산하고 향후 2단계 협력 프로그램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원국들은 향후 2년간 2단계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협력 프로그램의 확대 및 구체적 실행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한국의 김석수 국무총리는 기초연설을 통해 한국의 규제개혁 성과를 소개하고, OECD·APEC 회원국의 공동 변명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전자정부 구현, 표준화시스템의 정비, 전자통관 및 전자구매 활성화 등 ICT 기술을 활용한 규제개혁의 새로운 영역 확장

둘째, 행정개혁을 통한 정부구조와 기능의 합리적 재조정

셋째, NGO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의식과 관행의 개혁

넷째, 국내 규제의 준거가 되는 국제규범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

다섯째, OECD·APEC 회원국들과 비회원국들 간의 협력 강화 및 비회원국들의 자발적 참여유도 방안

Donald Johnston OECD 사무총장은 이번 한국회의가 2003~2004년 동안 적용될 2단계 협력 프로그램의 시발점이며, 제2단계의 주요 목표는 규제개혁을 위한 통합점검목록(Integrated Checklist)을 마련하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목록은 양 기구 회원국들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될 것이며, 2005년 양 기구의 집행기구에 제출될 것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제안하였다.

Piamsak Milintachinda APEC 사무부국장은 양 기구의 공동협력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APEC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Yukio Yoshimura 세계은행 부총재와 John Lintjer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도 OECD와 APEC의 규제개혁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2단계 협력프로그램의 발전방향을 논의한 본회의에서 Somboon Sangiambut 주한 태국대사는 협력 프로그램을 비회원국에게도 개방할 것을 건의하였고, 2003년 5월 태국에서 개최되는 다음 워크숍에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다. Carlos Arce Marcias 멕시코 연방 규제개혁위원회 국장은 멕시코가 새로운 APEC 경쟁정책 및 규제완화그룹 의장국으로서 향후 2년간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2004년 가을에 다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하였다.

박기종 규제개혁조정관은 우선 제1단계 협력프로그램이 규제개혁에 대한 원칙을 정립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정계 및 고위직 관료들의 관심이 제고되지 않아 각 회원국의 행정 전반에 걸친 성과확산에는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향후 2단계에서는 참가대상을 APEC·OECD·IBRD, ADB 등 국제기구와 NGO 등의 고위직인사로 참가자를 대폭 확대하여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하면 일정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4. 한국회의의 성과

한국회의는 회원국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 속에 개최되었으며, 향후 APEC-OECD 협력 프로그램의 기틀을 마련하고 폐회되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거둔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규제개혁 노력을 대외에 적극 알림으로써 한국정보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받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은 전 패널에 걸쳐 최대한 참여하여 지난 5년간의 규제개혁 성과를 홍보하여 참석자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

대외적으로는 OECD와 APEC 협력 프로그램의 2단계 추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선도적 역할을 구축하였으며, 세계사회에서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한국회의를 통해 향후 2단계 프로그램의 시작과 방향을 결정지음으로써 양기구 간의 협력관계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회의 의제나 회의장 시설에 대해 회의참가자들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냄으로써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의 제고에도 도움이 되었다.

대내적으로는 이번 회의를 준비하면서 각 부처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정부 전반의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하고 관심을 유도하는 성과를 얻었다. 회의의 발표나 부대행사 등 회의 전반에 걸쳐 각 부처나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 성공적인 회의개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었다. 특히 KBS와 중앙일보 등 언론기관과 한국규제학회·정책학회 등이 회의를 후원하여 사회 전반의 관심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5. 향후 조치 계획

이번 회의의 향후 조치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무총리 기초연설을 통해 제안한 국제회의 창설 및 논의의제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2003년 5월에 개최되는 방콕 회의에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둘째, 국제회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선진국의 규제개혁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에 대해 연찬회 시 OECD 국가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각 국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셋째, 많은 해외전문가들이 규제개혁 선진국으로 지적하고 있는 호주·뉴질랜드 등에 대한 추가적인 사례연구를 추진하여 규제개혁 제도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하여 일선 규제개혁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도록 한다.

[참고]

□ 회의 일정표

시 간	주 요 일 정
◇ 第 1 日 : Workshop(10. 16, 水)	
12:00~14:00	등록
14:00~15:00	환영사 및 개회사 - 규제개혁위원장 - 제주지사 - APEC 의장(Competition Policy and Deregulation Group) - OECD 국장(Public Governance & Regional Development)
15:00~19:00	제1세션 : 행정규제의 투명성 제고 방안 - 사회 : Rolf Alter(OECD 공공관리 및 지역개발 부국장) - 발표

시간	주요 일정
15:00~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x Deighton-Smith(호주 Jaguar 컨설팅 대표) · Manuel-Maria Santiago-Dos-Santos(EC 선임자문관) · 양준석(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Suchit Bunbongkarn(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 Stuart Carre(OECD 무역위원회 부위원장)

시간	주요 일정
	◇ 第 2 日 : Workshop(10. 17, 木)
09:00~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Joanna Shelton(전 OECD 사무차장) -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ul Crampton(OECD 경쟁국 팀장) · Korkmaz Ilkorur(BIAC 지배구조위원회 팀장) • 제2세션 : 주요 경제분야별 규제개혁 • 제1패널 : 금융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Ian Harper(호주 경영대학원 교수) -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ohn Thompson(OECD 금융·재정·기업국 자문관) · Thomas Schmitz-Lippert(독일 국제문제 및 금융감독팀장) · Richard Martin(영국 공인회계사협회 금융감사팀장) · Ming-yen Tseng(대만 공정거래위원회 부국장) • 제2패널 : 통신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Carl Willner(미국 법무부 검사) -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종훈(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Stephen Farago(호주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 부국장) · Michel Roseau(프랑스 경쟁정책부 국제문제담당관) · Cui Shutian(중국 정보산업부 과장)

시 간	주 요 일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패널 : 전력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Mark Ronayne(캐나다 경쟁국 선임담당관) -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mando Caceres(전 APEC 경쟁정책 및 기업진흥부 차관) · Andrey Tsyganov(러시아 박독점정책 및 기업진흥부 차관) · Shing Daw Tsai(대만 공정거래위원회 선임위원)
17:30~18:00	Workshop 종합 및 결론

시 간	주 요 일 정
	第 3 日 : Conference(10. 18, 金)
09:30~11:00	환영사 및 기조연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 - OECD 사무총장 - APEC 사무부국장 - World Bank 부총재 - ADB 부총재 - Peru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11:20~12:50	APEC-OECD 국가들의 규제개혁 성과와 비전 및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Rolf Alter(OECD 공공관리 및 지역개발부국장) Margarita Trillo(APEC 경쟁정책 및 규제완화그룹 의장) -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los Arce Macias(멕시코연방규제개혁위 국장) · Somboon Sangiambut(주한 태국대사) · Andrey Tsyganov(러시아 반독점정책 및 기업진흥부 차관) - 맺음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기종(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제8장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제1절 _ 이행실태 점검개요

제2절 _ 제9차 이행실태 점검

제1절 _ 이행실태 점검개요

*집필자 : 김진남 사무관(Tel. 3703-2186, twinjin@opc.go.kr)

1. 점검체계 구축 개요

가.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단 구성

- 1998년도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법령, 조례,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의 신속한 이행과 개선된 규제의 적정한 집행을 확인·독려하여 규제개혁의 성과를 확산·정착시키고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지수를 제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을 단장으로 하고 국무조정실,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규제개혁 이행 실태 상시점검단’을 구성(1999. 4. 18)

나. 점검단 운영 및 활동

- 정기적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1999년 4회, 2000년에 2회, 2001년에 2회(감사원과의 합동감사 포함), 2002년 1회 등 총 9회에 걸쳐 총 171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

구분	기 간	점검반원	대 상 기 관		비 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1차	1999. 4. 19 ~ 24 (6일)	1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 부처 - 행자부, 문광부, 농림부,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식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광역자치단체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 10개 기초자치단체 - 서울(종로구, 성북구, 강남구, 송파구), 인천(남구, 부평구), 경기(의정부시, 남양주시, 용인시, 군포시) 	
2차	1999. 7. 5 ~ 13 (8일)	15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광역자치단체 - 대전시, 대구시, 전남도 • 12개 기초자치단체 - 대전(서구, 대덕구), 충남(공주시, 연기군), 전남(순천시, 강진군, 구례군, 해남군), 대구(북구, 중구, 달성군), 경북(칠곡군) 	
3차	1999. 9. 13 ~ 21 (9일)	2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부처 - 교육부, 노동부, 관세청, 산림청, 식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광역자치단체 - 부산시, 충북도, 전북도, 경남도 • 12개 기초자치단체 - 부산(연제구, 중구, 기장군), 충북(충주시, 영동군, 옥천군), 전북(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경남(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 4개 소방서 및 소방본부 - 동래소방서, 충주소방서, 전북소방본부, 창원소방서 	
4차	1999. 11. 15 ~ 23 (9일)	21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광역자치단체 - 광주시, 울산시, 강원도, 경북도 • 12개 기초자치단체 - 광주(동구, 서구, 광산구), 울산(남구, 북구, 울주군), 강원(춘천시, 인제군, 고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청도군) • 20개 특별지방행정관청 - 세관(광주, 울산, 동해, 포항) - 경찰(전남·울산·강원·경북지방경찰청, 광주북부·남부·고성·경주경찰서) - 소방(광주·울산·강원·경북소방본부 및 소방서) 	

구분	기 간	점검반원	대 상 기 관		비 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5차	2000. 4. 17 ~25 (9일)	12명	4개 부처 - 재경부, 복지부, 해수부, 해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광역자치단체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 8개 기초자치단체 - 서울(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인천(서구, 연수구), 경기(성남시, 하남시, 광주군) 	
6차	2000. 11. 20 ~28 (9일)	13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광역자치단체 - 대구시, 충북도, 전남도, 경남도 • 8개 기초자치단체 - 대구(수성구, 달서구), 충북(청주시, 보은군), 전남(여수시, 나주시), 경남(거제시, 통영시) 	
7차	2001. 5. 21 ~30 (10일)	1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 부처 - 행자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환경부, 노동부, 건교부, 중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광역자치단체 - 부산시, 충청도, 전북도, 제주도 • 4개 기초자치단체 - 부산(해운대구), 충남(아산시), 전북(정읍시), 제주(제주시) 	
8차	2001. 10. 8 ~18 (10일), 2001. 10. 29 ~11. 8 (10일)	50명 (국조실 : 10명, 감사원 : 4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 부처 - 산자부, 건교부, 행자부, 문광부, 노동부, 농림부, 복지부, 환경부, 정통부,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광역자치단체 - 부산시, 광주시, 충청도, 전북도 • 4개 기초자치단체 - 광주(광산구), 충남(부여군), 부산(연제구, 동래구) 	감사원 과 합동 감사
9차	2002. 5. 8 ~ 6. 26 (50일)	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부처 - 재경부, 해수부, 공정위, 금감위, 문화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시도 및 지역교육청 - 서울시, 서울동부, 충북도, 청주시, 강원도 • 2개 지방환경관리청 - 대구시, 원주시 • 2개 지방노동청 및 노동사무소 - 대전시, 천안시 	

2. 점검결과

가. 점검실적

- 1999년 4월 이후 총 9회에 걸친 점검결과 총 816건의 부적정 운영사례를 적발하였는
 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행정규제와 규제법정주의에 대한 이해부족과 함께 규제심사
 를 받지 않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규제누락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외형상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홍보 등 노력은
 하고 있으나 여전히 관행에 의한 폐지된 규제운용과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운용 및
 조례개정 지연 등 후속조치 미흡이 지적되는 등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가 다소 미
 흡한 것으로 평가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소계	무심사 규제 신설	규제 누락 등	소계	폐지규제 운영	법령 미근거규제	법정 외 서류 징구	후속조치 지연 등
816	225	22	203	591	161	120	178	132

* 1차(68건), 2차(91건), 3차(110건), 4차(86건), 5차(57건), 6차(78건), 7차(127건), 8차(130건), 9차(69건)

나. 점검 후 조치 결과

-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행정기관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토록하여 지적사항
 및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중요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문책
 - 기관경고 : 2건,
 - 징계 : 3건 5명
 - 훈계 및 주의 : 120건 154명

제2절 _ 제9차 이행실태 점검

1. 점검 개요

가. 점검기간 및 대상기관

- 기간 : 2002. 5. 8(수)~6. 26(수)
 - 5개반 20명으로 점검반을 구성, 각 반별 순차적 점검 실시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 재경·해수부, 공정위, 금감위, 문화재청 등 5개 기관
 - 지방행정관청 : 서울시교육청, 대전노동청, 대구환경관리청 등 9개 기관
 - 5개 시도 및 지역교육청(서울시-서울동부, 충북도-청주시, 강원도)
 - 2개 지방환경관리청(대구, 원주)
 - 2개 지방노동청 및 노동사무소(대전-천안)

나. 중점 점검사항

- 각급 기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
- 일선 기관의 관행에 의한 폐지·개선된 규제의 계속 집행 여부

- 법정 외 과다서류 징구 등 법령 미근거 규제 운용 여부
- 일선 기업현장의 규제개혁에 대한 여론수렴 및 규제개혁 대상과제 발굴 등

2. 점검결과

가. 총평

- 그동안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8회)에서 제외된 기관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한 결과, 행정규제기본법상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기관 모두가 자체심사기구를 두는 등 외형적으로는 추진체계가 가동되고 있음.
- 그러나,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부족하고 관행 및 행정편의에 의해 규제를 집행하는 사례 등이 상존
 -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 위주 운영
 - 고시·예규·훈령 등 하위법령의 제·개정 시 법정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
 - 신설 또는 변경된 규제의 등록관리 부적정
 - 법정 외 과다서류 징구 등 법령 미근거 규제운용 등
-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고 추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
- 그 외 각급 기관에도 점검결과를 전파하여 규제개혁 추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3. 분야별 세부 지적 사항

가.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 점검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교육청 모두가 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설·강화규제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고 있으나, 위원회 운영 및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상존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규제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도출 노력이 필요함에도 시간부족, 회의소집 애로 등을 이유로 대부분 서면 위주로 형식적으로 운영
- 민간위원 구성도 해당기관 소속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결과적으로 시민단체·이해관계인의 참여가 배제

【주요 지적 사례】

- 1998. 6월 자체규제개혁위원회 구성 후 단 1회만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나머지 61회는 서면심사로 운영(재정경제부)
- 1999. 4월~2002. 4월까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50회 회의 중 47회를 서면회의로 운영(금융감독위)
- 문화재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19명 위원 중 민간위원 13명 전원이 문화재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구성(문화재청)

나. 고시 등 하위규정 규제심사 절차 없이 임의 신설·강화

- 행정규제기본법상 모든 신설·강화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고시·훈령 등 하위규정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자체심사조차 거치지 않고 운영
- 특히 일부기관은 고시 등 하위규정에 대한 규제심사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규제법정주의에 대한 인식부족 및 관행에 의한 행정에 기인

【주요 지적 사례】

- 어항시설관리규정(훈령) 등 4건의 고시·훈령 규제심사 누락(해수부)

- 위해물품및용역회수절차등에관한규정(고시) 등 3건의 고시 규제심사 누락(재경부)

다. 법령 미근거 규제운용 및 과다서류 징구

- 법령 미근거규제는 규제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사항임에도 법령 미근거 규제를 관행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여전히 지적되고 있어 자체적인 발굴·정비 및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
- 특히 시도교육청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의 경우 법령 미근거 규제가 상당수 지적되었는 바, 각 시도 교육청의 학원 조례에 대한 정비가 필요
 -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교습시간, 생활지도사 채용 및 해임 시 통보의무
 - 강원도교육청은 학원강사의 신분증 휴대, 생활지도사 채용 및 해임 시 신고의무, 행정처분기준
 - 충북도교육청은 학원교습시간, 학원시설기준 및 행정처분기준을 법적 근거 없이 운영
- 아울러 관행 또는 감사를 의식해 법정 구비서류 외에 불필요한 서류 등을 법적 근거 없이 징구하는 사례가 다수 지적

【주요 지적 사례】

- 유치원설립 및 학급증설 인가 시 법령에 근거 없는 인감증명서, 이력서, 각서 등을 징구(청주시교육청)
- 공인노무사 직무 개시 신고 시 관련 첨부서류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신원증명서, 이력서, 실무수습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계속 징구(대전노동청, 천안노동사무소)

라. 규제등록 부적정

- 행정규제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 법령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게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기관에서 신설 또는 변경된 규제에 대해 등록을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사례 발생

【주요 지적 사례】

- 재정경제부 소관 7개 법률 20건의 신설규제 등록누락 및 10개 법령 29건의 변경규제에 대해 변경 등록 미이행(재정경제부)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신설·변경 규제에 대해 등록지연(해양수산부)
- 아울러 별개의 규제를 하나의 규제로 통합·등록하는 등 규제분류가 부적정한 사례도 있음.

마. 정비계획(의결사항) 미이행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한 정비계획 또는 안전심의 결과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없이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진을 포기하는 사례가 상존

【주요 지적 사례】

- 기르논어업육상법 제정(안) 심사(2000. 12) 시 '수산자원조성금 부과대상에서 수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 토록 의결하였으나, 재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2. 1. 4일 공포된 법률에는 동 규정을 임의로 포함.(해수부)
- 1999년도 환경부 정비계획에 의거,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조정신청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도록 하고 2000. 12. 30일 완료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33조 ⑤항 규정은 처리기간이 30일로 규정되어 있음.(환경부)

바. 기타

- 규제신설·강화 시 비용편익분석, 실현가능성, 규제대안 등 규제영향분석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규제기준의 설정에 있어 객관성과 명확성이 결여된 경우가 나타남.

【주요 지적사례】

- 충청북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및 시행규칙 중
 - 교습 과정보별 일시수용능력 인원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학원시설기준상의 최소허가 면적기준(60㎡)과 수용인원기준(45명)을 상이하게 규정함으로써 규제의 기준이 부적정
 - 학원·교습소의 변경 시 상위 법령에 구비서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조례시행규칙에서 “기타 필요한 서류”로 규정함으로써 규제의 명확성을 저해

4. 수범 사례

가. 금융분야 규제개혁 적극 추진(금융감독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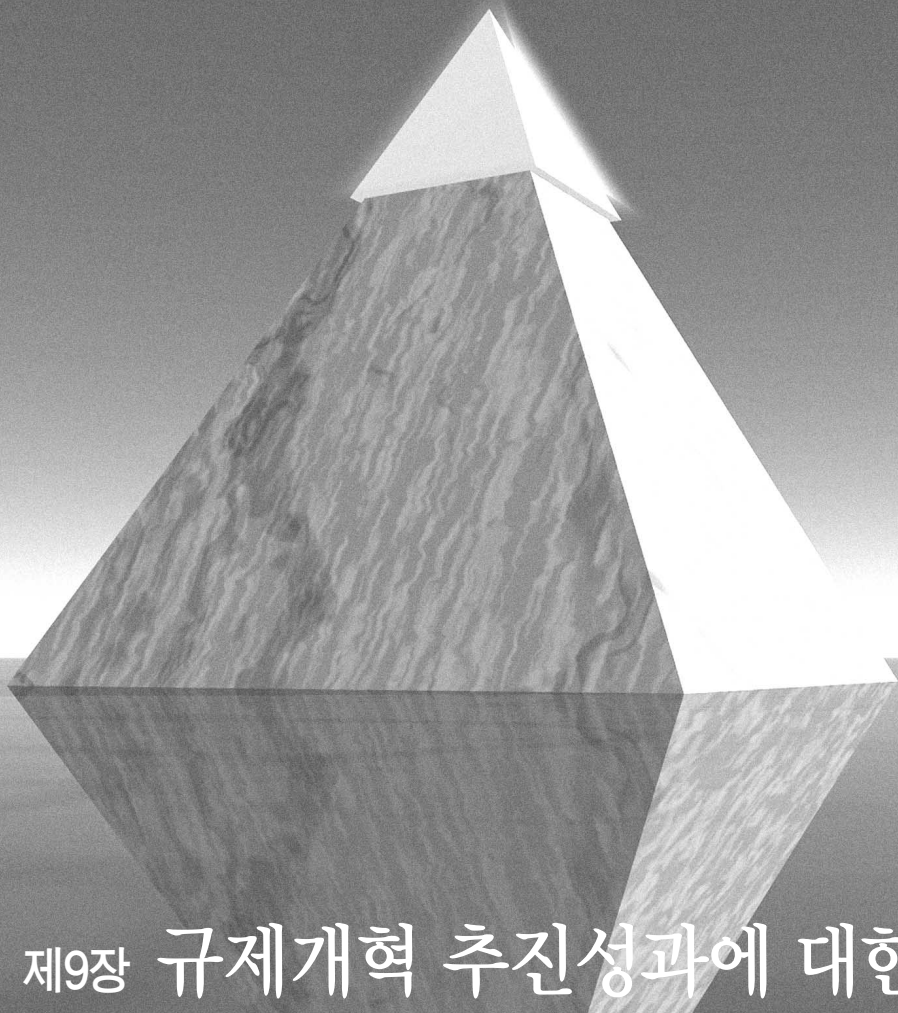
- 금감위에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장 친화적인 금융감독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1999년, 2001년 2회에 걸쳐 금융분야 규제개혁을 추진
 - 금융유관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규제정비작업단과 실무작업반을 구성, 금융유관기관 및 인터넷을 통해 총 290건의 개선건의 사항을 접수하여 총 151건의 개선방안을 마련
- 금융감독규정 정비 및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마련 추진(2000. 11)
 -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1법률(法律) - 1규정(規程) - 1세칙(細則)」 원칙을 견지하고 시행절차(11개)는 전부 폐지하여 금융감독법규의 체계를 간소화

나. 규제개혁 현장점검 실시(해양수산부)

- 자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2001년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산하단체 및 해양수산업소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규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등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

다. 『학원운영 길라잡이』 제작·배포(청주시교육청)

- 학원의 설립·운영자를 위해 학원 관련 규제의 내용 및 각종신고사항·행정처분기준 등을 알기 쉽고 상세하게 수록한 『학원운영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함으로써 규제에 대한 이해와 순응도를 제고



제9장 규제개혁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제1절 _ 김대중정부 규제개혁 5년의 평가

제2절 _ 2002년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제1절 _ 김대중정부 규제개혁 5년의 평가

*집필자 : 김일섭(이화여자대학교 부총장)

최병선(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김태운(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 우리나라에서의 규제개혁의 의의: 규제완화, 민영화, 분권화

사회발전의 기반과 원동력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며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가 서로 다르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는 개인과 기업이 서로 다른 정보와 지식과 경험이 교환되고 거래되는 시장이다. 이 시장에서 각자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부지런히 상호작용하고 협력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회를 발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에 일정한 제약을 가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질서가 강제력과 권위를 가진 정부가 만들고 공급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 하지만 복잡하기 그지없는 인간의 상호작용을 질서 있게 이끌어낼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없다. 그런 질서는 인위적(made order; taxis) 질서로서 그 질서는 그것을 창안해 낸 사람의 머리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또한 그 질서로는 그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이상의 것을 결코 달성할 수 없다. 이것이 인위적 질

서의 한계다.

반면에, 시장경쟁원리가 만들어내는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라는 것이 있다. 월드컵 응원에 나선 수백만의 시민이 따르고 있는 질서를 떠올리기 바란다. 경찰의 지휘를 받아 이들이 이런 질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들의 목적의식이 동일해서도 아니다. 이 질서는 누가 어떤 특정한 목적의 실현을 위해 고안하거나 설계한 질서가 아니라, 각자의 의도와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저절로 자라난 질서지만, 우리를 감동케 하고 경탄케 하였다.

이 두 종류의 질서 중 어느 하나의 질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회는 없다. 이 두 가지 질서 모두에 의존하되, 양자의 조합은 극히 다양하다. 사회마다 역사, 문화, 관습에 차이가 있고, 경제사회구조의 복잡성과 분화의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사회를 이끌어 감에 있어서 인위적 질서와 자생적 질서 중 어느 것이 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진보와 정체와 퇴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요인이다. 안타깝게도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길고 강한 중앙집권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이 자생적 질서의 개념이 거의 없거나 매우 희박하다. 관존민비(官尊民卑)라는 말이 웅변하고 있듯이 민은 못 배우고 하찮고 무책임한 존재라서 관이 지배하고 지도하고 이끌어 가야만 한다는 생각이 깊이 뿌리 박혀 있다.

더구나 1960년대 이후 정부 주도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업가적 역할과 기능, 기획과 통제가 불가결하다는 생각이 여기에 더하여져 더 큰 힘과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경제사회구조는 매우 복잡하게 변화하였다. 시민의 요구도 다양화되고 복잡해졌다. 정책환경은 요동치고 불확실성은 높아졌으며 변화의 속도는 매우 빨라졌다.

그 결과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정부가 과연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의 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사회발전 주도능력이 쇠퇴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정부의 관리능력도 따라서 증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민간부문이 몰라보게 성장하였고, 정부를 훨씬 앞질러 가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정부의 인위적 질서만으로 민간의 잠재력을 조직화하고 사회를 잘 관리해 나가기 어렵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민주화과정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행정조직, 인력, 예산을 늘리는 데는 엄연한 한계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바로 여기에 정부역할 전환의 필요성과 긴박성이 있다. 우리가 이제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

게 된 소이가 있다.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이제 정부는 민간에 앞자리를 내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민간을 이끌고 나가기보다는 민간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고 민간의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뒷받침해 주는 지원자적 역할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민간에서 자생적 질서가 나타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정부개혁의 핵심은 정부규모의 축소가 아니라 규제완화(deregulation), 민영화(privatization), 분권화(decentralization)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일을 가려서 할 줄 알아야 한다. 힘에 벅찬 줄 알면서 모든 일을 그대로 끌어안고 있다가 결국 어떤 일도 제대로 해 내지 못하는 무책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가 꼭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일”과 “잘 할 수 없는 일”을 잘 구분해,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 해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정부의 역할을 실현하는 길이다. 이러한 규제완화, 민영화, 분권화를 동시에 통합적으로 이루어내는 정부의 기능이 규제개혁이다. 전통적 지배구조와 경영방식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발전을 주도하려 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제는 정부개입과 규제의 논거를 세밀하게 재검토하고, 사회의 유인체계(incentive structure)를 재설정하며, 공공부문의 비용효과성을 재평가하고, 정부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을 극대화하여 정책의 응집성(policy coherence)을 높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신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급선무다.¹⁾ 공사부문을 막론하고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확립함으로써 혁신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비용을 낮추고 질을 향상시키지 않는 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규제개혁은 이제 이 시대의 지상명령이다.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불필요하게 또는 불합리하게 억누르고 있는 정부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개혁하지 않는 한, 다양성과 창의력을 조장하는 자생적 질서가 획일성과 피동성을 조장하는 인위적 질서를 대체하지 않는 한 이 시대의 도전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세계화시대,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규제는 국가 경쟁력 강화의 최대의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 불합리한 규제로 민간과 기업의 활동에 족쇄를 채운 채 국제경쟁력을

1) CATO연구소에서 매년 연구조사되는 미국연방정부규제의 경제적 부담을 살펴보면 2002년의 경우, 규제의 사회적 비용은 미국 GDP의 약 8.4%에 달하며, 미국 평균가구소득의 18%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집계되고 있다. 즉 미국의 평균적인 가구가 자신의 수입의 약 18%를 부지불식 간에 규제를 지키는데 사실상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Crews, 2003).

강화한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마찬가지로이다. 규제개혁은 불합리한 규제에 의해 극도로 제약되고 위축되어 있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는 일이다. 정부주도가 아니라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초한 시장경쟁의 원리를 국가발전의 주축으로 삼는 일이다. 권위주의적 행정, 편익주의적 행정이 아니라 국민편의 위주의 민주적 행정,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행정이 아니라 이를 강력하게 지원하는 행정, 획일적인 기획과 통제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다양성과 창의력을 인정하고 이를 조장하는 행정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작은 정부의 구호를 외치며 바라는 것들이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먼저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규제개혁 추진실적과 평가 및 규제개혁추진체계의 문제점

가. 김대중 정부 규제개혁 추진실적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의 성과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다. 규제개혁과 관련된 제도와 절차의 도입 및 운영의 차원, 규제의 폐지와 개선을 포함한 규제정비의 차원이 그 두 가지이다.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에서 우선 실질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은 전면적인 규제정비다. 1998년 7월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는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출한 각 부처의 기존규제정비계획을 전문가 심사소위, 분과위원회, 본 위원회의 3단계로 심사하기 시작하였다. 1998년 7월 11,125건이었던 규제사무를 1998년에 5,430건, 1999년에 503건 폐지하여, 1998년 이후 신설 또는 추가된 규제사무를 고려하면 2003년 현재 잔존 규제사무는 7,678건이 된다. 이러한 실적은 어떤 OECD국가에 비교해도 탁월

한 실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OECD, 2000). 특히 1999년에는 3단계 정비심사의 전 단계로서 민간전문기관들에게 기존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사전심사를 수행케 하여, 실질적으로 4단계의 규제정비심사를 수행한 점도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규제정비의 내용에 있어서도 규제개혁의 난제로 여겨졌던 사안들이 상당히 개폐되었다.²⁾ 1998년부터 매년 50에서 30여 가지의 주요 규제개혁대상 정책을 핵심과제라는 이름으로 선정하여 규제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였다. 상기한 규제정비실적 이외에 규제개혁과 관련된 제도 및 절차의 도입에 있어서도 김대중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이 요구하는 규제영향분석제도, 규제등록 및 전산화, 규제법정주의, 규제일몰제 등을 구체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규제신고센터 및 국민제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지원단, 산업자원부에는 기업규제개혁작업단, 공정거래위원회에는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하여 입체적인 규제개혁을 시도하는 한편 규제개혁과 관련된 홍보와 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광석(1999)은 우리나라 규제의 제약 정도를 지수화하여 김대중 정부의 1998년 규제개혁의 실적을 계량화하여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규제지수는 1998년 이전의 60.6에서 31.9로 낮아졌다. 즉 1998년의 규제개혁으로 인하여 규제에 기인한 국민경제사회의 제약 정도가 절반으로 저감되었다는 것이다.³⁾ 한편 규제개혁의 실적을 계량적인 차원에서 음미한 하병기 외(1999)는 1998년의 주요 규제개혁 조치가 1999년 이후 2003년까지 최대 106만개의 일자리(1997년 경제활동인구의 4.9%)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예측하였다. 거시경제적으로는 5개 주요 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으로 우리나라 실질 GDP가 연평균 0.64% 포인트 인상되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⁴⁾

2) 지난 2년간의 규제정비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을 위해서는 1998, 1999, 2000, 2001 규제개혁백서를 참조.

3) 규제지수란 어떤 나라나 부처의 규제가 국민의 경제 사회적 활동에 대한 제약 정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이다. 모든 규제가 가장 제한적인 규제수단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100으로, 아무런 제한적인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은 0이 되도록 정의되었다. 규제지수의 개념과 규제지수에 입각하여 수행한 한국의 1998년의 규제개혁의 평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한광석(1999) 참조.

4) 이러한 통계를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면, 분석의 대상이 되었던 몇몇 안 되는 규제가 그렇게 많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아왔고, 상당한 규모의 GDP 창출을 원천 봉쇄해 왔다는 말이 된다.

나. 김대중 정부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들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논자의 입장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중 각 부문별 평가를 제외하고, 규제개혁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을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룬 문헌들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규제개혁 국별 심사를 수행한 OECD(2000)는 ‘한국의 규제개혁 프로그램은 국제적인 모범적 관행에 부합한다며 강력한 대통령의 지원, 행정규제기본법의 유효성, 규제일몰제, 규제영향분석제도 등의 도입 및 운용’ 등을 들어 한국의 그간의 규제개혁 실적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일몰제의 비현실적인 측면, 규제와 기본 법률의 질적 개선의 미흡, 규제개혁위원회의 대표성 미흡, 규제개혁 결과의 실질적 집행의 지연,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형식적 운영, 독립적인 부문별 규제기관의 부재 등을 우리나라 규제개혁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김종석(1999)은 1998년의 규제개혁, 특히 규제정비는 국내외적으로 유례가 없는 다소 과격한 규제개혁 방안이었다고 회고하면서, 보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규제개혁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규제수단을 개혁하고자 하는 규제개혁이 매우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일종의 역설이라는 것이다. 김종석은 향후 규제개혁의 방향으로서 품질관리를 제시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규제의 품질관리와 기법개선, 규제의 투명화, 현실화를 통한 부정부패 가능성의 척결, 규제개혁추진체계의 강화와 행정규제기본법의 효과적 시행, 규제행정의 선진화, 정부 영향력 남용에 대한 견제 등을 들었다. 1998년의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한 이성우(1999)는 정부 출범 초년도에 정부규제를 대폭 축소할 획기적인 성과는 공직사회에 규제개혁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1998년 규제개혁의 미흡한 점으로서 규제개혁의 비전과 전략이 초기에 적절히 제시되지 못하였고, 공무원의 동참 유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미흡하였다. 또한 저비용 고효율의 고품질 규제수단의 연구, 도입노력이 부족하였으며, 다수의 법령과 여러 개의 부처가 연관되어 있는 규제군에 대한 정비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부가하여 1999년의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한 이성우(2000)는 지자체 및 정부산하 유관단체, 협회, 법인들의 규제개혁이 미흡한 것이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규제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네트워크와 규제개혁의 방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1999년도의 사회분야의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 김태운(2000a)은 사회분야의 규제개혁이 정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창출하기보다는 그 방향성만을 제시하는데 그쳤으며, 대안적 정책의 틀을 제시하는 데에도 미흡하였고, 정부 기능을 탄력적으로 재설계하는 관점과 기능이 부족하였음을 지적했다. 경제력 집중억제, 상수원보호규제 등 몇 가지 주요한 규제에 대한 질적 분석을 행한 이용환(1999)은 규제개혁의 필요성 등에 대한 홍보와 설득이 중요하며, 행정 편의적, 정부 주도적 규제개혁은 지양하여야 하며, 규제개혁은 행정조직의 개편 등 전체적인 틀 안에서 기획되어야 하고, 규제영향분석(RIA)은 신설규제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종석·김진국·김태운·이성우·이주선·최병선(1999)은 규제개혁위원회와 그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는 규제개혁조정관실 등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체계의 비전문성과 한시성, 유인체계의 미흡,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없는 행정업적주의적 접근, 규제영향분석(RIA)의 형식적 운영, 지자체 규제개혁의 지체, 규제개혁의 성과가 정부기능의 재편과 화학적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 규제개혁과 예산과의 연계의 한계 등이 김대중정부의 규제개혁의 문제점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여론은 규제개혁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더 많다. 행정개혁시민연합이 2002년 2월 한국행정학회 회원(600명)과 중앙부처 공무원(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규제개혁이 잘되었다는 응답은 각각 8%와 25%에 불과했으며 미흡했다는 응답이 학자들의 34%, 공무원의 14.9%에 달하여서, 학자들이 더욱 비판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미흡		보통		잘되었음		모르겠음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행정학회 회원 및 시민단체 간부	48	34.0	79	56.0	12	8.5	2	1.4
중앙부처 공무원	28	14.9	100	53.2	48	25.5	12	6.4

* 자료 : 남궁근, 「김대중정부 행정개혁 4년 평가」

기업체종사자들도 규제개혁을 낮게 평가한다(신종익, 2002).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01년 토지, 환경, 사업장 안전, 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체의 중간간부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고, 63%가 약간의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문제되는 법령조항을 고치는 현행 규제개혁방식으로는 성과가 나타날 수 없다.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규제가 적지 않고,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 원리가 준수되지 않아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유무형의 정부간 섭이 줄어들지 않았다. 전경련이 “새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규제개혁 과제”를 전국의 120명 CEO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준조세부문, 공정거래부문, 행정조사 부문 등의 규제는 지난 김대중정부에서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의견이다. 또한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규제부문은 노동 노사부문, 공정거래부문, 지배구조부문이 지적되어, 정리해고제도, 근로자파견제도, 법정퇴직금제도, 출자총액규제, 부당내부거래규제, 계열금융사 의결권제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선임제도 등을 불합리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 김대중 정부 규제개혁체계의 평가와 문제점

상기의 평가는 규제개혁의 성과 자체에 대한 평점과 그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 및 요인에 대한 지적 등이 혼재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위의 평가에 기초하여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는 목적 하에, 김대중 정부 규제개혁체계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규제개혁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근거로 삼고자 한다.

1) 현행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장점

(1) 제도적 뒷받침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규제개혁위원회가 포괄성 있는 권능을 보유하게 되었고 규제정비제도, 규제영향분석제도, 규제일몰제도 등이 도입되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를 보좌하는 전문적인 사무국이 설치되었다.

(2) 집행력

행정규제기본법은 기존 규제와 신설 규제 모두에 대하여 상당히 강력한 통제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있다. 우선 중앙의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기존 규제는 매년 규제정비계획의 대상이 됨으로써 기존 규제의 존재의 정당성과 그 품질에 대한 평가가 매년 이루어지도록 되었다. 신설 규제의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제도에 따라 그 도입의 타당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입증해야한 한다. 또한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규제개혁체계가 강력한 집행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국무조정실장이 차관회의를 주재함으로써 규제개혁대상

사안에 대한 부처의 순응과 이해갈등의 조정을 확보하기가 유리하다는 점이다.

(3) 전문성의 제한적 보유

전문위원제도, 규제정비심사소위 및 전문연구기관제도의 운영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전문성 활용이 사무국이나 규제개혁위원회 차원에서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전문성의 제고라는 현행 체계의 강점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체계와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것임에 유념해야 한다.⁵⁾

2) 현행 규제개혁체계의 단점

(1) 정치적 기반 취약

현행 규제개혁체계가 비록 행정규제법이라는 강력한 법적, 제도적 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기는 하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실상의 권능이 주로 대통령의 지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대통령이 광범위한 지지를 고수하는 경우 이러한 구도가 규제개혁체계에 큰 힘이 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상정해보아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방향성이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과 일치되지 않으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은 급감할 것이다.

(2) 정부 내 규제개혁 네트워크 미비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처의 이해가 얽혀 있거나,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중첩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중요한 규제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리적인 규제정비가 안 되고 있다(김태운, 2000a). 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자면 정부예산의 보완이 있어야 하는 경우, 사회의 전통적 규범과 시장의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등과 관련된 규제들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범정부적 관점에서는 명확한 해결방안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예산, 인사, 조직, 업무 관할 등의 문제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가 명확한 입장을 취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

따라서 규제개혁에 연관된 인사·조직·예산·감사 등에 있어, 규제개혁위원회와 행정

5) 이러한 우려를 더욱 강화시키는 사실로서 현행 규제개혁체계가 행정규제기본법의 근본정신과 방향성과 일정한 괴리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규제기본법은 대통령 소속 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체계는 사무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과 전문위원제도의 지속성 측면에서 행정규제기본법의 기본 정신에 크게 미흡하다.

자치부, 기획예산처간의 긴밀한 협력과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와 기획예산처 간에 그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주로 예산관련 사안인 경우에는 기획예산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업무를 담당하는 형태로 업무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기관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수평적 업무 분장은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성 및 관점의 공유와 협의를 원천 봉쇄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3) 지자체와의 규제개혁 네트워크 미비

규제개혁의 성패가 근본적으로 국민의 지지에 달려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중앙에서 정비한 내용과 절차를 지자체들이 성실히 반영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는 여전히 불합리하고 과도한 존재일 것이며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소멸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자체가 중앙의 규제개혁의 후속조치를 성실히 수행해 주어야 한다. 현행 규제개혁체계는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자치부에 이러한 책무를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가 지자체의 규제개혁을 도모하고 관리하기에 적합한 인적, 물적 자원과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행자부의 일과 과(課)의 한 팀이 지자체규제개혁의 관리, 감독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업무의 다양성과 방대함을 고려할 때, 인력과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4) 명망가 중심의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의 한계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이 주로 사회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민간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개혁의 초기 단계에서는 민간위원의 개혁적 사고와 관점이 개혁체계의 확립에 큰 도움이 된다. 김영삼 정부의 여러 규제개혁관련 위원회 중 개혁적인 성과가 실질적으로 두드러지게 산출된 기구는 민간위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원회들이었다.⁶⁾ 따라서 위원회가 민간인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민간위원을 그 전문성을 중심으로 다소 실무형으로 선정할 것인가, 아니면 대표성을 중심으로 명망가형으로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선 규제개혁위원회가 일정한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의 권위와 수용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명망가형 기구에는 존재한다. 그

6) 이주선·한선옥(1999)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의 규제완화 실적을 위원회별로 파악해 보면 관주도적 성격이 강했던 행정쇄신위원회와 경제행정정규제완화위원회의 규제개혁의 주 내용이 그 중요도가 상당히 낮은 고시·규정·지침 등 행정명령의 개정에 있었던 반면, 민간인의 구성비가 높았던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와 규제개혁추진회의 경우에는 그 실적의 많은 부분이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러나 한편으로는 위원의 전문성, 집중력, 객관성 등이 미흡한 명망가형 위원회의 보편적인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민간위원의 부족한 시간과 자원을 규제개혁조정관실에서 보완해주는 형태와 내용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운용되게 되는데 이러한 위원회 운영은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다. 그 이유는 첫째, 규제개혁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된다. 규제개혁위원회 활동의 상당한 부분이 국무총리실의 조직인 조정관실의 판단에 의거하면, 규제개혁위원회가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공간이 당연히 감소하게 된다. 둘째, 조정관실의 입장에서는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불필요한 행정적 소요가 증가하고 그 결과 조정관실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유실된다. 결국 전문성보다는 대표성에 근거한 민간위원의 구성은, 역설 같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또한 규제개혁체계의 전문성 함양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대표성과 전문성간의 선택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의 대다수가 공정거래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또 다른 독립 위원회 조직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에는 명망가형 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김종석 외, 1999).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복잡한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것이며, 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에는 비교적 심각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두 위원회의 각각의 인적 구성의 기본 방향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위원회의 전문성의 당위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판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결국 규제개혁의 단계별로 요구되는 규제개혁체계의 모습에 대한 철저한 이해에 기초해야 한다.⁷⁾ 즉 규제를 정비하고 합리화하며 그 품질을 제고하는 단계에서는 대표성이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이 국민을 설득하고 고통분담을 호소하는 한

7) 규제개혁을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OCED의 기본적 입장인데, 첫 번째 규제완화단계에서는 주로 규제완화(deregulation)와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중심 과제가 된다. 이와 함께 주요 산업에 대한 진입제한의 완화와 적극적인 경쟁촉진을 통해 정부규제를 시장경쟁으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병행된다. 두 번째 규제품질관리 단계는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비규제적 수단과 보다 유연한 규제수단의 모색과 도입이 본격화되는 단계이다. 규제영향분석과 규제기획제도가 규제품질을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또한 규제의 남발과 임의적 간섭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등록제와 규제준수를 확보 의무의 부과 등도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 단계에서 도입된다. 규제개혁의 최종적인 단계는 규제관리단계로서 규제개혁이 일과성의 개혁과제가 아니라, 하나의 정부기능이며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조직뿐 아니라, 규제를 직접 입안하고 집행하는 조직들도 규제행정의 품질관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따라서 규제관리의 목표가 법령상의 행정규제에 국한되지 않고 경쟁정책, 무역정책, 예산 조세 정책 등과 연계되어 정책목표의 총체적 달성이 그 목표가 된다. 규제개혁의 3단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서술과 우리나라의 현실에 입각한 해석을 위해서는 김종석 외(1999) 참조.

편 과도기적인 규제개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여론을 이끌어어나가는 기능을 수행해야만 한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초기 단계에서는 명망가위주의 민간위원 구성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규제영향분석제도를 확립하고 정부정책의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규제관리의 단계에서는 민간위원이 누구보다도 정부정책의 영향과 함의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국민에 대한 대표성의 중요성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대적 중요성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결국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의 구성은 이제는 규제개혁을 실질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명망가중심에서 전문가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⁸⁾

(5) 조정관실의 기능적 · 기관적 위상의 부적절함과 전문성 부족

행정규제기본법의 정신에 따르면 규제개혁조정관실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의 존재 이유는 전문성의 보유와 지속적인 함양이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등의 정부조직 관례상의 한계로 인하여 외부로부터의 영입에 의한 전문성 보유가 불가능하다. 또한 조정관실이 총리실에 속해 있는 기관으로서 부처간 의견조율 등의 과정에서 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조정관실 소속 요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commitment)을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결국 외부영입의 어려움과 조정관실 요원의 헌신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조정관실이 객관성이 있는 전문적 역량을 보유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규제개혁체계의 역량부족으로 귀결되면서 향후 규제개혁과정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다.

(6) 체계적 교육 · 훈련의 미흡

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 부처의 현직 공무원 중에서도 상당한 수의 규제전문가가 필요하다. 우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데 양질의 분석가가 필요하며, 향후 복잡다단한 규제정비를 기획 ·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규제개혁의 기본 지향은 물론 그 방법론에 정통한 전문가 다수가 각 부처마다 필요하리라 예상된다. 또한 전통적인 명령 지시적 규제수단과 관점을 보다 높은 품질의 규제대안적 수단과 관점으로 변환시키는 작업도 상당히 수준 높은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⁹⁾ 그러나 현행 공무원 교육과정에는 이러한 인력소

8) 여기서 전문성이라 함은 정부의 업무에 대한 기능적 지식, 이를테면 환경문제, 국토개발문제, 산업정책에 대한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 정부규제에 대한 깊은 이해,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기법에 대한 이해 등을 포괄한다.

9) 규제대안에 대한 개념적 정리와 각각의 대안적 정책수단에 대한 토의를 위해서는 김태운(2000b)를 참조.

10) 이러한 보편적인 추세의 중요한 예외는 서울시의 경우인데,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은 2000년 5월에 제1기 규제개혁과정을 신설하여 3일간 규제행정일반, 규제영향분석과 비용편익분석기법, 규제대안개발 등의 과목을 교육하였으며 2001년에는 5일 일정의 규제개혁전문 프로그램을 연 4회 계획하여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프로그램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¹⁰⁾ 전문인력의 부재 때문에 규제영향분석은 초보적인 수준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이 지속될 것이며, 기존 규제의 품질의 향상에 대한 관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할 것이며, 규제일몰제에 대한 행정부처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신설되는 규제법안에 그 정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게 될 우려도 있다.

3. 김대중정부 규제개혁의 교훈

가. 규제개혁체계 개편의 필요성

1) 범정부적 차원에서 규제개혁체계의 역할 구조를 재정립¹¹⁾

규제개혁의 성과와 연관된 인사·조직·예산 등에 있어, 규제개혁위원회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간의 긴밀한 협력과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규제개혁추진체계의 구조에 있어서 명확한 역할 정립이 전제되지 않고 규제개혁 관련 추진기구간 실적 위주와 부처 이기주의에 입각한 미시적 접근으로 개혁이 추진된다면, 정부혁신 및 정부와 민간 부문간에 생산적 관계 재정립이라는 규제개혁의 본질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11) Knott & Miller(1987)는 미국관료제의 개혁에 있어서 중립성, 기술적 효율성, 책임성 등 고전적 행정개혁의 패러다임이 과연 사회적으로 합리적인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상황적 맥락에 적합한 대안적인 제도적 선택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규제개혁은 인사·조직·예산·감사제도 등 행정개혁의 대안적 제도적 선택의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이 반드시 정부구조조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최병선(한국행정연구원, 「규제개혁 정책토론회」)에서)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서 자신의 신분과 위치가 직접적으로 위협받게 된다면,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조직 감축과 규제개혁을 단선적으로 연계시키는 경향을 경계하였다.

2) 중앙부처 규제개혁 전담조직의 강화

규제개혁은 궁극적으로 규제를 만드는 정치가(국회)와 행정부 관료의 의식의 전환이 없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 목표가 「규제개혁위원회」와 같은 범정부적 규제개혁 기구 하나의 노력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난센스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만들어내는 현장인 중앙행정 부·처·청의 정책결정 및 의사결정 과정에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의 관념이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중앙행정 부·처·청 단위로 규제개혁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근본이유가 있다. 중앙행정 부·처·청 단위에 규제개혁 전담기구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상 규제영향분석(RIA)을 담당해야 할 책무가 일차적으로 중앙행정 부·처·청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에서 찾지 않을 수 없다. 이 제도는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의 생산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최선의 장치로 인식되고 있다(McGarity, 1991). 부·처·청 수준의 규제심사분석 기능 수행은 크게 볼 때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의의가 있다. 첫째, 이 제도의 도입은 규제입법과정(regulatory legislation process)의 질을 향상시키고, 규제 지향적 문화(regulation-prone culture)를 변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적어도 규제비용과 편익에 대한 비교평가가 선행되지 않는 한 규제의 신설이 불가능해지고, 규제정책과정의 공개에 따라 다양한 이해집단의 참여가 촉진되기 때문이다. 둘째, 관료의 책임(bureaucratic accountability)이 강조됨에 따라 규제관료들이 규제의 신설이나 개체에 보다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규제에 대한 관료들의 학습(learning)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다.

3) 충분한 조직, 전문인력, 예산의 확보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도 자원이 소요된다. 무릇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훌륭한 개혁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것은 충분하고 적절한 조직, 인력, 예산이 뒷받침 없이는 되지 않을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 점에서 매우 인색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방식이 선진외국과 마찬가지로 규제영향평가를 가장 중요한 기초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되었다. OECD 보고서(1997)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15건의 규제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데 소요된 예산이 \$10,000,000인데 이것으로 잘못된 규제의 신설을 막아 국민이 얻게 된 이득은 \$10,000,000,000에 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규제영향평가 비용 대 사회적 편익의 비율이 1: 1,000이다. 이 수치야말로 규제개혁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방법의 중요성과 가치를 옹변해 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잘못된 '작은 정부'의 개념에 입각해 정말 필요한 정부조직과 인력의 확보, 예산의 사용을 가로막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합리적 재정립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규제개혁 작업에 대한 지원에 인색했던 지금까지의 우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

나. 규제개혁제도의 실질적 개선의 필요성

1) 규제기획제도의 도입

규제기획제도(regulatory planning system)는 1985년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제정한 「대통령령(Executive Order) 제12498호」(1985. 1. 4일자), 「규제기획과정과 절차(Regulatory Planning Process)」에서 유래한다. 동 제도는 1993년 클린턴 행정부의 「대통령령 제12866호」(1993. 9. 30일자)의 「규제기획 및 심사(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제도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양자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들 대통령령에 표현되어 있는 이 제도의 도입목적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①연도별로 행정부의 규제 프로그램(Regulatory Program)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규제에 관한 일련의 조정과정과 절차를 수립하고, ②행정부의 규제 우선 순위를 정한다. ③규제기관이 생산하는 규제에 대해 기관장이 좀더 큰 책임을 지도록 하고, ④대통령이 규제의 전 과정을 통할할 수 있도록 한다. ⑤기존 및 신설규제로 인한 부담을 축소함과 동시에 ⑥규제 간 모순이나 중복을 최소화하고, ⑦행정부의 규제목표를 의회와 일반국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규제기획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역시 규제개혁과 관련한 기획의 과정과 절차다.¹²⁾ 규제기획제도는 각 규제기관이 작성하는 규제계획(regulatory plan)을 토대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으며,¹³⁾ 규제계획의 조정 권한과 책임은 부통령에게 주

12) 규제기획제도의 개요와 운용에 대해서는 최병선(2002)을 참조.

13) 각 규제기관의 규제계획의 작성 및 확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과 절차를 따른다. 먼저 각 규제기관은 당해 년도 중 또는 차후 년도에 시안 또는 확정안의 형태로 개발하게 될 중요규제에 대한 행동계획을 작성하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작성된 규제계획이 전정부적 차원에서 작성되는 연도별 「통합 규제 안건」의 핵심내용이 된다.

어져 있다. 부통령은 적절한 규제관련 고위인사의 도움을 얻어 규제계획에 관해 규제기관의 장들과 협의할 수 있으며, 적절한 경우에는 추가적 고려나 기관 간 조정(inter-agency coordination)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확정된 각 규제기관의 규제계획은 매년 10월 「통합 규제 안건」에 수록되어 발간된다. 이 발간물은 의회, 주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일반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은 규제기관의 규제계획에 대한 의견(계획된 규제행동이 다른 규제와 갈등을 일으킨다거나 국민에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거나 부당한 이익을 가져다주게 될 것이라는 등)을 해당 규제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규제기획제도의 도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규제가 행정부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입법도 대부분 행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기획 및 심사제도의 효과성은 매우 크다. 더 나아가 연방제 국가와 달리 법률의 제정 및 수정권한이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다는 점 역시 행정부 주도의 규제기획 및 심사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요소다. 또한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의 체계상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규제기획제도를 비교적 용이하게 접목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 역시 동 제도의 도입에 유리한 점 가운데 하나다. 사실상 동법은 이런 제도적 과정과 절차의 도입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제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제도 도입의 난점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에서 규제기획제도를 도입하려 할 경우 봉착하게 될 최대의 난관은 역시 입법관행의 줄속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동 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 이익이 매우 클 것임을 시사한다. 다시 말하면 규제기획 및 심사제도의 도입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인 동시에 좀 더 일반적으로 행정합리화의 중요목표이기도 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decision-making)의 합리화와 행정의 책임성(accountability) 제고에 혁신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행정의 관행과 풍토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혁명적인 시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규제기획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2) 부처에 대한 규제개혁 평가기능의 강화

규제개혁의 기본적인 개념들인 규제품질의 제고, 준수율의 확보, 규제대안의 개발 및 채택 등은 각 부·처·청이 자발적으로 몰입해야만 이루어낼 수 있는 창의적이며 전문적

인 과제들이다. 그러나 부·처·청의 자발성이 담보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에서「행정규제기본법」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규제개혁위원회는 각 부처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개혁 노력이 미흡하거나 성과가 부진한 부처에 대한 시정조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기능을 십분 활용함으로써, 각 부처 장·차관이 규제개혁에 경쟁적으로 나서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향후 국무총리, 장·차관 인사에 있어서는 규제개혁의 의지와 추진능력을 인재등용의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어야 하며, 이런 인사가 규제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임기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추진체제와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정부 각 부처와 규제공무원이 규제개혁에 적극성을 보이지 못하게 만들었던 압력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는 데 규제개혁 추진전략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역시 규제개혁에 따르는 과도기적 문제에 대한 행정책임을 흡수해 주기 위한 장치의 강구다. 우선 아무리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완화하거나 개혁하게 되면 과도기적으로 다소의 혼란이 야기되는 것은 불가피하며, 이것이야말로 규제관료들을 규제완화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만드는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점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흔히 행정기관이 규제완화 조치를 취한 다음에도 여전히 음성적인 방법으로 규제와 간섭을 계속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은 바로 과도기적 문제에 대한 과도한 우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한다. 그동안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각 부·처·청이 민간자문위원회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의 결정에 비교적 순응하였던 이유가 이런 위원회들이 규제개혁에 수반되는 행정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흡수해 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규제개혁에 따르는 과도기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흡수해 주는 정치·행정적 리더십이 보강되기만 한다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관료 중심적인 규제개혁 접근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이런 면에서 「행정규제기본법」 37조에서, 공무원이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동시에 규제개선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우대하도록 한 것도 대단히 바람직하다.

3) RIA의 실질화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제도는 현재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작성주체인 주무 부처들

의 무관심과 법적 책임의 방기, 그리고 심사 및 의결기관의 전문성 부족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실상 행정규제기본법에 명기된 쌍방의 책임의 완수라는 단순하지만 원칙적인 접근으로 극복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의결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 및 의결 기능을 보다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무 부처의 규제영향분석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는 각 부처가 비용편익분석 기법을 유연하고 탄력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관련 공무원의 교육과 훈련을 통한 전문 인력화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외부평가제도와 사전평가제도를 도입해야한다. 동시에, 중요규제와 비중요규제의 심사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에 입각한 차별적인 심사전략을 채택하고, 일몰대상 기존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착근을 위하여 보다 근본적인 토론이 필요한 이슈는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와 그 사무국인 규제개혁조정관실을 중심으로 하는 규제영향분석 심사체계는 합목적적인 체계가 못 된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규제개혁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독립위원회로 진보하거나, 규제심사원과 같은 반관반민 단체로 발전적으로 해체되어야한다. 그렇게 했을 때 신설규제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토론과 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규제영향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중석(1999), “규제개혁의 과제와 방향”, 『규제연구』, 8:453-466.
- 김중석 · 김태운 · 이성우(1998), 『규제개혁의 비전과 전략』, 서울: 규제연구회.
- 김중석 · 김진국 · 김태운 · 이성우 · 이주선 · 최병선(1999),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선 및 규제개혁의 발전방향』, 서울:규제연구회,
- 김태운(2000a), “사회분야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1999년도 규제개혁백서』, 서울: 규제개혁위원회.
- 김태운(2000b), 『시장유인적 규제방식의 개발』,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남궁근(2002), 『김대중정부 행정개혁 4년 평가』, 행정개혁시민연합 토론회 자료.
- 신종익(2002), “규제개혁 왜 잘 안되나”, 『시장경제와 규제개혁』, 최병선 · 신종익(편), 서울: FKI미디어.
- 이성우(1999), “김대중 정부 규제개혁 1년의 평가와 과제”, 『한국행정학회 하계논문발표집』.
- 이성우(2000), “규제개혁 2년의 평가와 과제”, 『1999년도 규제개혁백서』, 서울: 규제개혁위원회.
- 이용환(1999), 『규제개혁정책의 논리와 실제』,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 이주선 한선옥(1999), 『김영삼 행정부의 규제완화실적 평가』, 서울:한국경제연구원.
- 최병선(2002), “규제개혁추진체계” 『시장경제와 규제개혁』, 최병선·신종익(편), 서울: FKI미디어.
- 하병기 외(1999), 『규제개혁의 경제효과 분석』, 서울: 산업연구원.
- 한광석(1999), “총론:김대중 행정부의 규제개혁평가”, 『규제연구』, 8:3-22.
- Crews, C. W. (2003), “Ten Thousand Commandments: Annual Report of Snapshot of the Federal Regulatory State”, 2002 Edition, Washington, D.C: CATO Institute.
- Knott, J. H. and G. J. Miller. (1987). 『*Reforming Bureaucracy: The Politics of Institutional Choice*』,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McGarity, Rhomas O. (1991). 『*Reinventing Rationality: The Role of Regulatory Analysis in the Federal Bureau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ECD. (1997). 『*Regulatory Reform Report*』, OECD.
- _____(2000), 『*The OECD Review of Regulatory Reform in Korea*』, OECD.

제2절 _ 2002년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2002년 규제개혁 종합평가

* 최유성 :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1. 2002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및 실적

가. 2002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규제개혁위원회는 2002년도 규제개혁 추진의 기본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설정했다. 즉 우리 경제의 회복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 규제의 정비,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와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규제체제의 구축,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와 규제순응도 제고 등을 통한 규제품질의 제고가 그것이다.

이러한 규제개혁의 기본 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시행지침으로는 먼저, 경제5단체 및 전문분야별 단체 등으로부터 규제정비 의견을 수렴하거나 현지실태조사를 통해 경제관

련 규제를 일괄 정비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전자정부 구현과 더불어, 지식·정보·기술의 생산적 활용체계를 마련하고, 교육시스템 정비 및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하며,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적 기업·금융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규제의 효율적 운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기존 규제를 재정비하고, 유사행정규제를 전면 정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관리체계를 효율화 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규제총량의 증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철저한 규제영향분석의 실시 및 규제순응도 조사를 의무화 하며,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규제준속기한 설정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도록 했다.

나. 2002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2002년 동안 이러한 방향과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추진된 규제개혁의 실적을 보면, 전반적으로 국민의 정부 초기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세가 많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초기의 규제 폐지와 완화를 통한 규제개혁의 추세가 점차 약화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신설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추세는 국민의 정부 초기의 대폭적인 규제의 수량적 감축에 비해 후반기의 규제 축소의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측면 이외에, 규제의 수량적 감축 보다는 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이 초점이 전환되고 있다는 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2002년의 규제개혁 실적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1999년 이후 연도별 규제수의 변경 현황을 정리하였다. 다음의 <표 1>을 보면 2002년의 경우는 규제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초기의 연도들에 비해 규제의 폐지 등으로 인한 규제건수의 감소 추세가 확연히 줄어들어 반면, 규제수의 증가 추세, 그 중에서도 신설된 규제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2000년도의 신설 규제의 수에 비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즉, 2002년 폐지된 규제의 수를 보면 16건으로 1999년(3,597건), 2000년(696건), 2001년(246건)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부처당 평균 1건이 채 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신설된 규제의 수는 275건으로 2001년의 509건 보다는 적지만, 244건의 규제가 신설되었던 2000년 보다 신설 규제의

〈표 1〉 규제변경 현황

(단위 : 건)

연 도	규제수 변경					증감소계
	증 가			감 소		
	신 설	누락등록	기 타	폐 지	기 타	
1998	28	73	23	174	309	-359
1999	380	156	190	3,597	191	-3,062
2000	244	250	166	696	352	-388
2001	509	76	254	246	261	332
2002	275	56	27	16	46	296

수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폐지된 규제수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규제수의 감소 추세가 약화되고 신설규제의 증가 추세가 일정 수준 유지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단순히 개혁 초기에 비해 개혁의 지가 둔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규제의 신설을 통한 규제의 증가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규제개혁의 기본 취지를 고려할 때 우려할 만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규제내용의 변경 현황

(단위 : 건)

연 도	규제강화	규제완화	존속기한 연장	기 타
1998	28	109	0	0
1999	142	1,717	0	0
2000	110	536	0	0
2001	230	283	0	0
2002	180	77	0	0

이러한 추세는 규제내용의 변경 현황을 연도별로 정리한 〈표 2〉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즉, 2002년도 강화된 규제의 수가 180건이고 완화된 규제의 수는 77건인데, 이 강화된 규제의 건수는 1999년(142건), 2000년(110건)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또한 2002년의 77건의 완화된 규제의 경우 1999년(1,717건), 2000년(536건), 2001년(283건)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이는 2001년(230건) 이후 점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규제개혁이 반드시 규제완화나 폐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표 3〉 유형별 규제사무 현황

(단위 : 건)

유형별		연도별					
		1998. 8	1998. 12	1999. 12	2000. 12	2001. 12	2002. 12
인허가 · 면허등	소 계	2,562	2,438	1,695	1,583	1,671	1,748
	허 가	669	614	496	443	453	463
	인 가	270	265	188	193	205	208
	면 허	74	69	63	63	64	66
	특 허	19	19	13	13	13	13
	승 인	642	613	353	328	339	347
	지 정	360	347	245	210	230	243
	추 천	26	22	16	16	14	14
	동 의	23	23	7	7	9	12
	기 타 1	479	466	314	310	344	382
확 인 · 증 명 등	소 계	618	585	453	431	444	449
	시 험	51	55	44	43	45	46
	검 사	275	248	220	204	210	209
	인 정	47	46	36	34	41	44
	확 인	93	89	66	61	62	62
	증 명	40	49	29	28	25	25
	기 타 2	112	108	58	60	61	63
지 도 · 단 속 등	소 계	1,723	1,685	1,245	1,166	1,236	1,288
	결 정	42	42	32	31	30	35
	명 령	555	551	369	336	349	360
	지 도	228	220	120	107	130	133
	단 속	76	74	64	59	56	66
	행정질서벌	648	631	541	521	546	564
	행정형벌	11	10	3	2	-	-
	기 타 3	163	157	116	110	126	130
의 무 · 금 지 등	소 계	5,814	5,652	3,905	3,730	3,891	4,053
	신고의무	1,041	1,004	587	543	542	546
	보고의무	464	445	224	197	196	199
	등록의무	204	220	157	161	167	171
	고용의무	55	53	43	42	46	46
	통지의무	60	57	38	33	36	52
	제출의무	280	269	158	148	162	176
	기준설정	1,496	1,461	1,124	1,116	1,210	1,287
	금 지	758	744	579	562	609	626
	기 타 4	1,456	1,419	995	928	923	950
총 계	10,717	10,360	7,298	6,910	7,242	7,546	

단순히 규제 수의 증가되었다거나 규제가 강화되었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즉, 대상이 되는 규제가 경제적 규제인 경우와 사회적 규제의 경우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2년의 규제개혁 결과 규제가 강화되고 규제 수의 증가하는 추세를 보았다면 이러한 변경된 규제의 성격을 규명해 보아야 이것이 우려할 현상인지 바람직한 추세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앞의 <표 3>은 등록된 규제사무를 유형별·연도별로 정리한 것인데, 이를 통해서 경제규제의 증감 정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표 3>을 보면, 1998. 8월을 기준으로 인허가 및 면허 관련 규제가 2,562건, 확인·증명 관련 규제가 618건, 지도·단속 관련 규제가 1,723건, 의무·금지 관련 규제가 5,814건이었으며, 규제개혁 5차년도인 2002. 12월 기준으로는 인허가·면허 관련 규제가 1,748건, 확인·증명 관련 규제가 449건, 지도·단속 관련 규제가 1,288건, 의무·금지 관련 규제가 4,053건으로 각각 감소하였다. 다시 말해, 시장진입규제와 관련이 깊은 인허가, 인가, 면허, 특허, 승인, 지정, 등록의무, 고용의무와 관련한 규제사무가 1998.8월을 기준으로 총 2,293건이었으나, 2002. 12월 기준으로 볼 때 68%수준인 1,557건으로 감소한 것은 그간의 지속적인 규제개혁의 결과, 경제규제라고 할 수 있는 시장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음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민의 정부 5년간의 시중에 대한 전반적인 비교가 아니라, 2000년의 6,910건, 2001년의 7,242건, 2002년의 7,538건과 같이 2000년을 기점으로 경제규제라고 할 수 있는 시장진입 관련 규제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규제의 수가 증가하는 데 경제적 규제의 수량적 증가가 기여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며, 이는 전반적인 규제의 강화의 추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설명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는 강화된 규제의 수를 부처별·연도별로 정리한 것으로, 이 표의 분석을 통해, 위의 <표 3>을 통하여 분석한 바와 같이 2001년 이후 규제의 수가 증가하고 강화되는 추세가 경제적 규제에 의해 주도되었는지 아니면 사회적 규제도 이러한 규제의 강화 및 수적 증가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특정 부처의 규제가 경제규제인지 사회규제인지를 단순히 부처의 성격만 가지고 판단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으나, 산업자원부나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정보통신부, 그리고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같이 부처의 성격상 다루는 규제의 성격이 경제규제나 사회규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처의 경우에 초점을 맞춘 부분적인 논의는 가능할 것이다.

먼저, 2001년과 2002년을 합해서 강화된 규제의 수가 20건 이상인 부처를 순서대로

〈표 4〉 부처별·연도별 강화된 행정 규제(1998-2002)

(단위 : 건)

소관부처	'98	'99	'00	'01	'02	소관부처	'98	'99	'00	'01	'02
건설교통부	0	9	13	11	4	경찰청	0	1	0	14	6
공정거래위원회	0	6	0	0	7	과학기술부	0	1	0	11	9
교육인적자원부	0	1	0	0	0	국세청	0	1	0	0	0
금융감독위원회	0	7	15	12	8	노동부	0	0	0	15	29
농림부	0	4	7	8	34	문화관광부	0	7	3	0	0
문화재청	0	0	1	0	1	법무부	0	1	0	2	1
병무청	0	1	0	0	0	보건복지부	0	2	17	8	7
산림청	0	0	4	10	9	산업자원부	0	17	1	17	10
식품의약품안전청	1	3	18	7	0	재정경제부	0	2	0	8	1
정보통신부	0	1	7	11	3	철도청	0	0	0	1	0
청소년보호위원회	0	0	11	0	0	통일부	0	1	0	0	0
특허청	0	1	0	0	0	해양수산부	1	17	4	13	33
행정자치부	0	0	4	23	10	환경부	0	59	5	59	8
						총계	2	142	110	230	180

정리하면, 환경부(67건), 해양수산부(46건), 노동부(44건), 농림부(42건), 행정자치부(33건), 산업자원부(27건), 금융감독위원회(20건), 경찰청(20건), 과학기술부(20건)이다. 환경부, 해양수산부, 노동부의 경우 다수의 규제가 사회적 규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농림부,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우는 다수가 경제적 규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를 위의 〈표 3〉에서 분석한 결과와 종합하여 정리하면 2001년 이후 규제의 강화와 증가를 주도한 것은 사회적 규제이지만 경제적 규제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2001년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 모두가 강화되고 증가되었다고 단순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표 5〉와 〈표 6〉은 각각 ‘폐지된 규제의 부처별·연도별 현황’과 ‘완화된 규제의 부처별·연도별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들을 통해서 2001년 이후 규제의 강화 및 증가 추세가 경제적, 사회적 규제 모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해석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단순히 특정 부처의 규제가 많이 폐지되고 완화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그 부처의 규제가 많이 증가하고 강화되었다고 연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과 2002년을 합해서 규제의 폐지 건수가 많았

〈표 5〉 부처별·연도별 폐지된 행정 규제(1998-2002)

(단위: 건)

소관부처	'98	'99	'00	'01	'02	소관부처	'98	'99	'00	'01	'02
건설교통부	18	175	179	16	1	경찰청	0	77	62	0	0
공정거래위원회	0	19	0	0	0	과학기술부	0	208	1	13	1
관세청	0	101	0	0	0	교육인적자원부	0	88	0	45	0
국가보훈처	3	36	0	3	0	국방부	0	15	0	0	0
국세청	3	4	0	0	0	금융감독위원회	0	208	12	57	1
기상청	0	14	0	0	0	노동부	0	115	6	8	1
농림부	2	258	53	8	2	농촌진흥청	4	3	0	0	0
문화관광부	0	102	41	3	2	문화재청	0	64	1	0	0
법무부	0	4	0	0	1	병무청	0	2	0	0	0
보건복지부	0	575	148	41	0	산림청	1	43	54	1	0
산업자원부	0	336	21	5	2	식품의약품안전청	58	34	28	8	0
외교통상부	0	5	1	0	0	재정경제부	14	183	1	10	1
정보통신부	26	148	13	3	0	조달청	0	16	0	6	0
중소기업청	0	40	6	2	0	철도청	4	21	0	1	0
통계청	0	7	0	0	0	통일부	0	18	0	0	0
해양수산부	16	334	17	5	4	해양경찰청	6	50	1	0	0
환경부	0	157	0	3	0	행정자치부	0	126	51	5	0
특허청	12	11	0	3	-	총계	167	3,597	696	246	16

던 부처를 정리하면 금융감독위원회(58건), 교육인적자원부(45건), 보건복지부(41건)인 바, 이 세 부처를 제외한 전 부처에 걸쳐서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 모두에 대해 규제의 폐지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표 6〉을 보면 2001년과 2002년을 합해서 규제의 완화 건수가 많은 부처를 보면, 금융감독위원회(59건), 재정경제부(54건), 노동부(36건), 행정자치부(28건), 건설교통부(27건)로 대부분 경제 규제를 주로 다루는 부처가 많은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2002년 규제개혁의 실적에 관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정확히 2002년의 기간만을 한정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2001년 이후 규제의 폐지 및 완화의 추세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고 규제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이러한 규제의 강화와 증가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의한 것이며, 규제의 완화 및 폐지는 경제적 규제의 경우 더 많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 부처별·연도별 완화된 행정 규제(1998-2002)

(단위: 건)

소관부처	'98	'99	'00	'01	'02	소관부처	'98	'99	'00	'01	'02
건설교통부	4	107	164	24	3	경찰청	0	64	5	6	12
공정거래위원회	0	9	0	0	0	과학기술부	0	2	2	1	0
관세청	0	39	0	1	0	교육인적자원부	0	28	0	11	2
국가보훈처	0	9	0	4	0	국방부	0	3	1	0	0
국세청	10	7	5	0	0	금융감독위원회	1	122	29	45	14
기상청	1	5	0	0	0	노동부	11	58	13	28	8
농림부	9	126	20	10	5	농촌진흥청	0	5	0	0	0
문화관광부	1	62	33	0	0	문화재청	0	14	7	0	2
법무부	1	11	0	2	1	병무청	3	9	18	2	0
보건복지부	0	113	68	37	0	산림청	5	38	46	1	0
산업자원부	0	150	13	2	3	식품의약품안전청	17	40	20	3	0
외교통상부	0	11	2	0	0	재정경제부	14	97	9	53	1
정보통신부	7	70	22	12	3	조달청	0	3	0	8	0
중소기업청	0	8	7	0	0	철도청	4	5	0	0	0
통계청	0	2	0	0	0	통일부	0	15	0	0	0
해양수산부	11	169	9	1	17	해양경찰청	3	24	0	0	0
환경부	0	194	2	7	0	행정자치부	4	88	37	22	6
특허청	3	10	4	3	0	총계	109	1,717	536	283	77

2. 2002년도 규제개혁 평가

2002년은 행정규제기본법과 규제개혁위원회에 근거한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온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였으며, 새로운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준비하는 분위기가 2002년도 규제개혁의 성격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 초기에 규제 폐지 및 완화를 통해 강력하게 추진되어 온 수량감축 위주의 규제개혁 방식에 대한 반

성과 아울러 규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운영의 내실화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시작되고 시도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2년의 규제개혁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가. 핵심규제 및 기존규제 정비의 미흡

국민의 정부의 규제개혁을 평가할 때마다 제기되는 비판 중의 하나는 규제 총량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규제에 대한 정비가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적은 국민의 정부를 마감하는 2002년까지의 규제개혁 노력을 통해서도 획기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부 5년간 기존규제에 대한 일제 정비를 통해 기존규제 약 9,000건을 정비하고 특정·지식정보화 과제 추진, 경제5단체 건의과제 수렴 정비 등을 통해 기존규제의 정비를 추진했으나 여전히 이에 대한 규제 체감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산업자원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규제 체감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완화 노력에 대해서는 ‘좋아지고 있다’(72%)는 응답이 가장 많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문제점으로 ‘건수 줄이기 위주 개혁’이 36.3%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부분적인 규제완화에 치중’했다는 응답이 30.4%을 보여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전체 응답의 77% 정도를 차지했다.

나. 규제개혁추진체제 개선 부진

다음으로, 2002년까지도 규제개혁 추진체제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즉, 현재 국무총리와 민간공동위원장 체제를 통해 민간부문의 입장이 반영되어 규제개혁 방안을 이행하는 데에는 장점이 있으나, 민간위원 13인을 포함한 20명의 위원들이 광

범위한 규제 분야를 다루다 보니 전문성 확보 및 심도 있는 안전 검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조직의 규모가 작고 전문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규제개혁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 및 기법을 정립하고 지원할 전문적인 연구 기능에 취약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2002년말에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규제개혁의 총괄기구로서 규제개혁위원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공무원 53%, 전문가 33%로 나타났다.

다. 형식적인 규제의 질적 제고 노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영향분석 등과 같은 핵심적인 규제개혁 수단을 완비하고 이를 운용할 전문성 있는 조직 및 인력이 확보되어야 함은 기본적인 요건이다. 그러나 현재 규제영향분석, 규제법정주의, 규제순응도 관리 등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는 갖추고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선진기법과 전문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1단계 수량감축 위주의 규제개혁에서 규제의 질적 제고에 초점을 맞춘 2단계 규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규제영향분석의 효과적인 운영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 각 부처에서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제대로 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전무한 실정이며, 설사 이러한 규제영향분석서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안전의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의 인력으로는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전문성 있고 심도 있는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규제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운용에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집행을 위한 규제순응도의 체계적 관리에도 해당된다 하겠다.

3. 규제개혁의 과제와 방향

현재 추진 중인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량 감축 위주의 1단계 규제개혁에서 2단계 규제의 질적 제고를 위주로 한 규제개혁으로의 전환을 우선적 목표로 한다면 그 노력의 초점은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에 모아져야 한다. 이는 직간접적으로 현재 우리의 규제개혁 관련 제도 및 운영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 규제영향분석의 첨부를 의무화 하면서 각 부처의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자세가 보다 신중해졌다. 따라서 향후 부처의 입장에서 현재와 같이 형식적이고 부실한 규제영향분석서로는 규제의 신설·강화를 생각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중심으로 제출된 규제안건에 대해 전문성 있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산된 규제는 그 자체가 국민 생활에 보다 많은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이고, 규제에 대한 순응도도 제고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의 규제담당인력도 실질적인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규제개혁위원회도 전문성있는 안전 심의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규제에 대한 이러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은 핵심규제 및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에도 적용될 것이며, 이는 국민 및 공무원들의 규제에 대한 체감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규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다시 이러한 변화는 규제개혁에 대한 순기능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금융분야 규제개혁 평가

* 집필자 : 강철준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2002년은 전년에 이어 금융부문에서 지속되는 규제강화 요구에 대한 방어노력에 일관할 수밖에 없는 한해였다. IMF 경제위기가 금융기관 경영부실과 재벌의 금융독점에 의해 비롯되었으므로 금융기관과 재벌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사회 전반적으로 힘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당초 국민의 정부 초기에 내세웠던 시장원리의 회복에 바탕을 둔 규제개혁의 기본방향은 다소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2002년 중 규제증대요인을 보면 지역서민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최근에 상호저축은행으로 개칭)와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각종 규제가 도입되었으며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강화가 불가피하였다. 여기에다가 신용카드 남발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들이 추가되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맞춘 전자금융거래 제도정비, 자산운용산업의 효율화를 위한 규제체계의 통합작업,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지주회사의 출범과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 영업 허용, 등 새로운 규제신설요인이 잇따랐다.

이러한 규제강화 요구가 증대되면서 자연히 금융부문의 규제개혁작업은 기존 규제의 삭제나 축소보다는 신설강화규제의 강도를 완화하고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규제총량면에서 전년대비 규제의 증가추세가 아래 표에서 보듯이 비록 증가율이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계속되었다.

금융부문 잔존규제수 추이

	1998. 8월 말	1999. 8월 말	2000년 말	2001년 말	2002년 말
잔존규제수	928	647	800	845	865
증 감		-281	+153	+45	+20
증감율(%)		(-30.3)	(+23.6)	(+5.6)	(+2.4)

규제수의 증가세가 몇 년간 이어지고 있는 데에는 국민의 정부 초기에 잔존규제 50%

삭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부처에서 서둘러 폐지하였던 규제들을 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한다는 구실로 부활시키고 있는 것도 적지 않게 작용하였다고 보아진다. <표 1>에서 규제수의 증감을 보면 99년 말 647건까지 대폭 줄었던 규제가 1년 만에 감소된 것의 절반 이상이 늘어났고 이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중에는 규제수가 늘어나기는 하였지만 규제체계의 합리화나 규제방법 면에서 개선이 있었다. 첫째로 개별 법규 조항의 개선보다는 관련된 법규 조항들을 덩어리로 묶어 전체적인 규제체계의 합리화를 도모한 점이다. 증권투자신탁회사, 투자신탁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 수탁회사 등에 관한 규제가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등에 산재하여 있었는데 이를 자산운용업법으로 통합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밖에도 보험업법과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 둘째로는 당국의 직접 규제보다는 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의 역할을 증대시킨 점이다. 투신사들이 신규 펀드를 발매할 때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국의 허가 대신에 투신협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예이다. 당국의 직접 심사를 받는 경우에 비해 시장상황에 맞추어 신상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논리적으로도 당국의 신상품 발매 허가에 따른 이익은 투신사들이 가장 많이 얻는 반면에 허가체제 유지에 국가예산이 사용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 따라서 투신사들의 비용으로 유지되는 협회에서 신규 펀드 발매 규제를 하는 것이 자원배분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 규제방법에 있어서 외부감사 의무화, 공시의무 강화 등 시장친화적인 규제 방식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증권투자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를 자산운용보고서 등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증권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권유전에 일반고객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또한 신탁중앙회에 대해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정비를 위한 노력이다. 규제준수 비용 면에서 볼 때 보고서 규제는 피규제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준다. 이점에서 각종 보고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있는 것은 평가할 만한 것이었다.

이상의 긍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우선 감독당국의 시장에 대한 불신과 계몽적 태도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상장법인이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할 때 일정 적격시장으로 제한한다든지 신용카드회사가 결제능력 심사기준을 금감위에 보고토록 한다든지 자산운용을 위탁하는 금융회사는 펀드에 가입할 때 사모단독펀드로만 하도록 규제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상장법인이 적격시장이 아닌 곳에서 증권을 발행할 때 그 피해는 해당법인이 지게 되는 것이며 감독당국이 할 일은 그러한 증권발행사실이 제때에

정확하게 공시가 되느냐를 감시하는 일일 것이다. 불법거래나 변칙 증여를 위해 그러한 일을 할 때는 해당 법규의 위반으로 처벌할 문제이다. 또한 적격시장인지를 판단하는 권한을 정부 당국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시장개입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감독당국의 시장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에 금융부문 규제개혁을 추진할 때 기본방향 중 하나는 감독강화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예방에 한계가 있으며 신속한 퇴출이 부실금융기관 대책으로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었다. 이 방향에 따르다 보니 공시의무를 제외하고는 경영간섭적 규제들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금융기관 경영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예금보험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초가 지속될 경우 규제수가 증가함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부실보호책임이 늘어나고 부실기관의 퇴출이 더 어렵게 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네거티브 규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금융시장 안정 유지나 소비자 보호 이념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우선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상품, 새로운 영업형태가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정부의 사전적 통제 아래 둔다는 것은 위헌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상장지수 투자신탁은 펀드의 운용수익이 특정 지수의 변동에 연동되도록 하는 상품인데 정부가 그 요건이나 취급방법을 정하여 규제하고 있는 것은 일단 사회적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하지 않는 한 영업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당 금융기관에서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투명하게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당국으로서 보다 바람직한 자세는 규제를 신설하는 것보다 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업계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일이다.

장외파생상품 영업의 경우에도 선진국에서는 증권회사의 고유 영업분야로 인정되고 있는데 우리는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 때문에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취급할 수 없는 증권사의 겸업업무로서 정의하고 있다. 더욱이 당국에서 요건 기준을 정하고 그 내용에 따라 심사를 받기 전까지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데 이것은 네거티브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앞으로 만약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파생상품영업을 하다가 부실이 나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불거져 나올 수 있다. 재보험에 대한 규제도 같은 맥락이다. 선진국에서 재보험영업은 정형화시키기 어려운 사업분야로서 대규모 금융기관보다는 소규모 투기적 거래기관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이 크다고 일정 요건을 갖추어 당국에 보고를 한 후 거래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재보험 전

문투자회사에 관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국내에 재보험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연간 보험수지 적자폭이 1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내 재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사족으로 이번 재보험 제도정비는 미국이나 영국의 제도보다 일본의 제도를 따르고 있는데 98년에 금융부문규제 일제 심사를 할 때는 금융후진국인 일본의 제도를 답습한 것은 과감하게 삭제하도록 했었다는 사실을 덧붙이고 싶다.

세 번째는 규제의 효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산운용업법에서는 사모펀드 외에는 성과급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는데 이는 시장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운용역이 여러 가지 펀드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 보통인데 운용성과가 좋으면 보수를 더 받을 수 있는 펀드에 더 역점을 두는 것은 상식이다. 미국에서도 1960년대까지만 해도 공모펀드에 대해서 성과급 보수를 규제하였으나 이는 사모펀드 고객인 거액투자자에 대해서 공모펀드 고객인 소액투자자들을 역차별하는 것이라 하여 규제를 폐지하였다. 또한 부실 펀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근원적인 문제는 펀드환매 요청 시 환매가격을 환매 전일 기준으로 규제하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선진국에서처럼 환매가격을 환매요청 접수 후 2~7일 후로 한다면 적지 않은 규제를 감축할 수 있다.

2002년 중 규제수가 증가한 요인중의 하나는 신용카드 남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드회사 영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에 있다. 이것도 문제의 핵심을 당국에서 비켜 간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도 심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아무나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금융기관으로서 상식적인 경영이었다고 할 수 없다. 또 예금이나 대출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받도록 강요한 것은 끼워팔기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제재를 했어야 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처럼 은행이나 카드회사의 영업장 내에서만 카드 신청절차를 밟도록 하고 끼워 팔기를 제재했다더라면 지금처럼 카드 남발로 인한 부실사태가 불거지지는 않았을 것이고 신용카드 업무에 대한 복잡한 규제 신설의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아무튼 이번 카드사 부실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경영진과 대주주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할 것이다. 97년 IMF사태 당시 정부가 종금사부실에 개입했다가 금융시장 전체가 위기에 빠졌던 것처럼 정부가 카드사 부실에 책임을 떠안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2002년은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강화 요구가 지속되면서 비록 전년보다는

증가세가 줄었지만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된 한해였다.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향상되었겠지만 금융기관의 자율경영능력이 그만큼 훼손되는 것은 불가피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금융시장에서 규제증가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액 예금자나 투자자가 개입되지 않는 도매금융부문을 소매금융부문과 차별화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서구 선진국의 금융제도를 벤치마킹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건설분야 규제개혁 평가

* 집필자 : 이동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전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1. 평가의 관점

규제개혁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이유를 든다면 대략 다음 다섯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는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이다. 갈수록 다양화·개성화되어 가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보다 싼값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하여 사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시장원리를 기본으로 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이다. 경제·사회적 여건변화 속에서 국내산업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서는 민간활동에 대한 행정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국내의 제도 내지 관행의 국제적 조화를 위해서이다. OECD국가로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갖는 위상을 고려하여 국내의 제도 내지 관행을 국제적 표준에 맞추어 나갈 것이 요구된다. 넷째는 국민 및 행정기관이 감수해야 하는 각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이다. 인·허가 등의 규제는 신청 시에 방대한 첨부서류를 필요로 하고 정기적으로 보고서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신청하는 국민뿐 아니라 신청을 받는 행정기관에도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 마지막으

로는 행정운영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서이다.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도 인·허가의 기준이나 절차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반론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두가 납득할 만한 규제개혁 실천기준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가장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규제개혁의 실천 원칙은 규제를 일단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한 다음,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완화를 원칙으로 하고, 사회적 규제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강화를 허용한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경제적 규제란 시장에 자유롭게 맡겨 놓아서 재화나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거나 가격수준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지 못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정부가 생산량이나 가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규제를 말한다.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생산설비에 대한 신·증설 규제, 수입규제, 가격규제, 금융·증권·보험업에 대한 규제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사회적 규제란 경제·사회적인 제반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지키고 국민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들이다. 안전, 품질, 위생, 환경보전, 재해방지 등에 관한 규제들이 대체로 이에 속한다.

이러한 구분에 입각하여 특정 규제의 필요성을 평가할 때는 우선 그 규제가 경제적 규제에 속하는가 사회적 규제에 속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전자에 대해서는 폐지를 원칙으로 접근하되 즉각적인 폐지가 초래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보완장치가 필요한가를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 접근방법이다. 반면 후자에 대해서는 일단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제적인 표준과의 조화 등을 두루 고려하여 규제의 강도를 필요최소한도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규제의 목적을 기준으로 하는 이 같은 이분법적 접근방식은 유효하고 편리한 평가방식임에 분명하나 한계 또한 뚜렷하다. 모든 규제가 어느 한 쪽으로 반드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공정거래법과 같이 가름하기가 애매한 경우도 많다. 토지이용 관련규제나 수도권규제도 그러하다. 기업들은 이를 경제적 규제로 분류하여 대폭적인 완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주거환경의 개선 내지 국토의 균형발전과 같은 규제의 목적을 놓고 판단하면 오히려 사회적 규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의 성격으로 볼 때 산업자원부의 소관규제는 일부 안전규제를 제외하면 거의 경제적 규제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무역, 외국인투자, 에너지·자원, 산업 등 산업자원부가 관장하는 분야는 거의 실물경제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관장하는 규

제는 상당히 복합적이다. 운수산업, 건설산업, 주택산업 등에 대한 규제는 경제적 규제라 볼 수 있지만 국토정책, 도시계획, 건축, 교통안전, 시설물안전 등과 관련된 규제는 사회적 규제의 측면이 강하다. 게다가 건설산업이나 운수산업은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어서 진입규제의 완화 내지 폐지가 부실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1999년의 제31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의 단계적 폐지를 의결한 바 있다. 당시 25대 이상이던 최저등록기준대수를 2000년부터는 5대 이상, 2001년부터는 1대 이상으로 감축하여 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0년 1월 1일부터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등록기준대수가 25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완화 조치되었으나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적인 완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단계 완화조치로 등록업체가 크게 늘어나면서 운임이 하락하고 소비자의 선택 폭이 확대되는 등, 경쟁의 효과가 나타난 반면에 과적차량 및 난폭운전의 증가, 영세업체의 보험가입 기피 등 안전과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각종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의 경우도 1999년부터 면허제가 등록제로 바뀐 이후 유사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전문건설업 간 겸업제한 폐지 등 추가적인 진입규제 완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세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에서도 같은 종류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를 비롯하여 여론에서는 사고가 있을 때마다 안전규제의 강화를 요구하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성급한 진입규제 완화를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특히 건설교통부 소관규제의 개혁에는 다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규제만을 골라내어 이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접근방법을 지양하고 규제체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 진입규제와 같은 사전적 규제의 폐지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입규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경쟁원칙을 설정하되, 원칙위반자를 걸러낼 수 있는 행정적 감시체제의 정비 및 벌칙의 강화, 분쟁처리체제의 정비, 보험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등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경쟁원칙이란 표현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는 안전규제와 같은 사회적 규제의 강화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업무영역을 벗어난다는 지적도 있겠지만 최소한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규제개혁위원회와 해당부처가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노력에 의하여 개혁실천 프로그램을 작성한 다음, 계획적·체계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2. 2002년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

가. 2002년 규제개혁의 특징 및 총평

개혁의 대상이 되는 규제는 크게 기존규제와 신설·강화규제로 대별된다. 먼저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는 그동안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추진되어 왔다. 하나는 등록작업을 통하여 확인된 소관규제에 대하여 각 부처가 일일이 재검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심사·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규제개혁위원회 및 규제개혁조정관실이 주도적으로 폐지 또는 개선할 규제를 발굴하여 심사·조치하는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출범한 1998년에는 주로 전자의 방식을 통하여 규제개혁이 진행되었다. 폐지율 50%의 수치목표 아래 기존규제에 대한 전면적 정비가 추진되어 결과적으로 총 규제수 1만 1,125건의 48.8%가 폐지되었고 21.7%가 개선되었다. 1999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주도하에 잔존규제에 대한 또 한 차례의 일제 정비가 추진되었다. 30개 전문연구기관의 사전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503건이 추가 폐지되고 570건이 개선되었는데, 이로서 개별 규제별로 그 당위성을 평가하여 폐지나 개선여부를 판단하는 일제정비 형식의 규제개혁은 일단락되게 되었다.

일제정비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기존 규제 정비는 주로 핵심규제개혁과제 수행을 통하여 추진되어 왔다. 과거 행정쇄신위원회나 규제개혁추진회의 등에서부터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실천되지 못한 사안들,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각종 제안들,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무역협회 등 각종 단체로부터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해당부처로 하여금 폐지 또는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이다. 1998년에는 주택건설관련 규제개혁방안을 비롯하여 37개 주제의 핵심규제개혁과제가 추진되었고, 1999년에는 품질인증제도 규제개혁방안 등 33개 과제, 2000년에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방안 등 56개 중점과제가 추진되었다. 2000년에는 핵심규제개혁과제 이외에 지식정보화사회의 구현을 위한 규제정비에 역점을 두어 81개 개혁과제를 별도로 발굴하여 추진하기도 하였다. 2001년부터는 종래의 핵심규제를 특정과제로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2001년 한해 동안 추진된 특정과제는 맥주제조시설기준완화방안 등 17개 과제이다. 또한 2000년의 제1단계에 이어서 2001년에는 제2단계 지식정보화과제로 29개 과제가 선정되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에서 기존규제에 대한 개혁 못지 않게 중요한 비중을 점하는 것이 신설·강화규제의 억제이다. 부처에서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요청 또는 국무회의 상정에 앞서서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 기타 각계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심사 요청된 규제를 중요규제와 비중요규제로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전체회의에서 심사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다. 1998년부터 2001년 말까지 총 3,621건의 신설·강화규제를 심사하였으며, 이 가운데 902건(24.9%)에 대해서는 개선율, 338건(8.5%)에 대해서는 철회가 권고되었다.

이상에서 2001년까지의 규제개혁위원회 활동을 개괄해 보았다.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2002년도의 규제개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새로운 개혁과제를 발굴하기보다는 그동안 발굴된 규제의 개혁을 실천하는데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존규제의 개혁을 위한 핵심규제개혁과제수가 감소하였다. 2000년에 56개에 달하였던 핵심규제개혁과제수는 2001년에 이어 2002년에도 17개에 그쳤다. 2002년도의 건설교통부 소관 특정과제는 「건축기준의 합리화방안」의 1개 과제였으며, 산업자원부 소관 특정과제 역시 「석유통체계 개선방안」의 1개 과제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새로운 지식정보화과제를 발굴하기보다 2000~2001년에 이미 발굴된 지식정보화과제의 실천에 주력하여 법령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마련되었다. 산업자원부의 경우 전자서명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도록 전자거래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산업단지의 관리기관 확대를 위하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관련조항을 2003년 7월까지 개정토록 하는 일정계획을 마련하였다. 건설교통부의 경우는 우선 지리정보유통 관련제도 정비를 위하여 지리정보유통시스템의 일원화, 지리정보유통가격 기준 설정, 지리정보통합관리소 추가 구축 등을 위한 구체적 추진프로그램이 수립되었고, 지하시설물 수치지도의 표준화를 위하여 2003년 1월까지 도로기반시설물통합관리에관한지침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건설기능인력의 효율적 경력관리를 위하여 2003년 중에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는 2004년 1월부터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경력관리시스템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기존규제의 폐지보다는 합리적 개선방향을 찾는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교통부 소관 특정과제로 「건축기준의 합리화방안」이 추진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

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 하나 하나의 제안내용을 추후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제안된 내용의 많은 부분이 사회적 규제의 강화에 관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기재사항 변경신청 등재로 되어 있는 건축물 용도변경 규제에 일부 허가제 도입,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대수선행위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99년에 폐지된 바 있는 차면시설의 설치의무 규제 부활, 불연재료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대상건축물의 확대, 직통계단 설치대상 확대 등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씨랜드 화재사건, 러브호텔, 난개발 등 건축법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그 원인의 하나로 규제완화가 등장하곤 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곤란한 측면이 없지 않겠으나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2002년의 건설교통부 특정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 발족초기의 불도저식 규제개혁에 대한 청산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신설·강화규제의 심사에 있어서 철회권고된 경우가 줄어들었다. 건설교통부 소관규제를 예로 들면 1998~1999년에는 81건을 심사하여 10건(12.3%), 2000년에는 106건을 심사하여 16건(15.1%), 2001년에는 192건을 심사하여 21건(10.9%)을 철회 권고하였다. 그러나 2002년에는 98건을 심사하여 불과 5건(5.1%)에 대해서만 철회 권고하였을 뿐이다. 철회권고 대상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부처가 규제를 대하는 자세가 그만큼 신중하여졌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2002년의 규제개혁은 외형적 실적보다 내실을 중시하는 방향에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2년은 국민의 정부를 마무리하는 해이다. 규제개혁위원회 또한 국민의 정부와 같은 시기에 출범한 만큼 지난 5년간의 활동을 돌이켜 보고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하겠다. 그런 만큼 가급적 새로운 일을 벌리기보다 그동안 벌려 놓았던 일들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한 것은 당연한 처사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규제의 발굴이나 개혁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인상은 버릴 수 없다.

규제개혁위원회의 본연의 업무는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이를 정비하는데 있으며, 신설·강화 규제의 심사는 규제개혁위원회 업무의 일부분일 뿐이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되고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거나 부처간의 이해관계, 이익단체의 압력 등으로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개혁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 이들 과제들에 대하여 국민의 정부에서 입장정리를 하지 못한 채 참여정부로 숙제를 넘기고 있는 점도 마음에 걸린다.

나. 규제개혁의 내용분석 및 평가

건설교통분야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02년 중에 신설된 규제는 28건이고 강화된 규제는 45건이다. 이 가운데 필자가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규제를 두 가지만 골라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하나는 건설업의 등록기준 강화이다. 2002년 7월 22일의 제 100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건설업자로 하여금 건설업등록기준을 3년경과시마다 건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한 건설기술자 구비요건을 4인에서 5인으로 상향조정하는 정부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앞서서 2001년에는 1999년에 폐지된 바 있는 사무실 구비요건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부활된 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등록기준은 진입규제에 해당하며, 따라서 폐지함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폐지된 경제적 규제가 다시 부활하거나 강화되고 있어서 규제개혁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인상이다. 정부에서는 등록기준 완화 이후 부적격업체가 양산되고 있어 진입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등록기준의 강화를 통하여 부적격업체를 선별하겠다는 것은 규제개혁의 논리에 배치된다. 진입규제의 강화보다는 소비자의 선택에 의한 퇴출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시공능력에 대한 정보 제공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건설업에 대한 예외 인정의 여파가 다른 산업분야로 과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둘째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시행령에 대한 규제심사이다. 국토계획법은 종래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면서 이에 가름하여 2000년에 새롭게 제정된 법이다. 국토계획법이 제정된 직접적 배경은 준농림지역을 중심으로 한 난개발의 확산이다. 농촌지역의 나 홀로 아파트, 러브호텔과 고급 음식점의 난립, 무분별하게 들어선 개별공장들은 난개발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다. 난개발 진행의 주된 원인이 토지이용에 대한 제도적 결함에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선진국 어디에서도 우리나라처럼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가 느슨한 곳은 찾기 힘들다. 특히 유럽의 국가들은 사전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곳이 아니면 개발을 불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의 제정을 통하여 도시계획의 적용범위를 전국토로 확산하는 한편, 전반적으로 토지이용 규제를 강화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새롭게 도입된 다양한 제도들, 즉 제1·2종 지구단위계획제도, 개발행위허가제,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유효하게 기능하게 될 지는 미지수이다. 난개발 방지의 필요성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하나 하나의 제도가 과연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인지는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도를 집행하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일선공무원들조차 새로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토지이용규제는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시범지역 등에 대한 국지적 적용을 통하여 제도적 문제점을 사전에 체크한다던가 하는 절차 없이 법제화가 선행되었다는 인상을 받는다.

산업자원분야에서는 2002년도에 10건의 규제가 신설되었고 35건의 기존규제가 강화되었다. 건설교통분야에서 나타났던 진입규제의 강화는 산업자원분야에서도 발견된다. 2002년 6월 26일의 경제1분과위원회에서는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강화안을 의결하였다. 자본금기준을 종래의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1999년에 폐지된 바 있는 사무실 면적기준을 재도입하여 30m² 이상으로 정한 것이다. 건설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실·부적격업체의 난립 방지를 표면적 이유로 들고 있으나, 등록기준의 강화보다는 사후적 감시체계의 확립과 시장기능에 의한 퇴출환경 조성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사안이다.

산업자원분야의 규제개혁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경제적 규제 강화 심사사례는 액화석유가스의 공급구역 제한에 관한 것이다. 공급구역 제한이란 LP가스의 사고예방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LP가스공급자가 허가를 받은 지역 내(시·군·구)에서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말한다. 이 규제는 2001년 11월부터 2002년 7월까지 9개월간 일몰제로 도입된 바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존속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2002년 7월 24일의 제177회 경제1분과위원회에서는 공급구역 제한제도가 소비자의 선택권 및 사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는 규제개혁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공급구역의 제한은 진입규제와 더불어 폐지되어야 할 대표적 경제적 규제이기 때문이다. 택시의 사업구역과 같이 영업의 범위를 특정지역 내로 국한하는 규제는 아직도 많이 잔존하고 있다. 이번의 사례를 계기로 유사한 규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3. 맺는 말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규제개혁조정관실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금번의 평가에서 느낀 소회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경제적 규제 폐지의 원칙은 계속 견지되어야 한다. 건설산업과 전기공사업의 예에서 보듯이 폐지되었던 경제적 규제가 다시 부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은 심히 우려스럽다. 규제개혁위원회 출범초기에 있었던 일제정비식 개혁 추진의 부작용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개혁의 당초취지를 부정할 수는 없다.

둘째, 개별규제보다 규제시스템 전체를 개혁하여 나가야 한다. 특정규제가 경제적 규제라 하여 보완장치 없이 우선 폐지하고 보는 식의 규제개혁은 지양되어야 한다. 정부가 경제적 규제를 두게 된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수단들을 충분히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수단이란 사회적 규제를 포함하여 시장질서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의 마련과 더불어 위반자를 감시하고 골라 낼 수 있는 사후감시 시스템의 확립을 말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주도하에 해당부처가 시스템개혁의 일정을 마련하고 이에 맞추어 적절한 시기에 경제적 규제를 폐지하는 계획적 규제개혁이 요망된다.

셋째,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하고부터 부처에서 규제를 다루는 자세가 신중하게 되었음은 지극히 반가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은 심사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령개정 의 일정을 미리 정해 놓고 쫓기듯이 심사안을 만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무담당자를 책할 수 만도 없는 노릇이어서 부실한 규제영향분석서를 눈감아주는 게 관행이 된 듯하다. 규제영향분석서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약간의 토론을 거쳐 규제개혁위원들의 판단에 의결을 맡기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내실 있는 개혁을 기대하기 힘들다.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은 규제영향분석서의 품질 제고에서부터 새출발하기를 기대해 본다.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 평가

* 집필자 : 정우진 연세대학원 보건대학원 교수

1.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의 특성

지난 수년 동안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공급자인 공공 영역과 규제 수요자인 규제 수혜 집단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각종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규제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장기적인 정부개혁성과의 하나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분야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분야가 보다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규제개혁 대상이 되지 못했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의료분야 재화와 용역이 대부분 면허(licence)를 취득한 직능인에 의해서 제공되는 전문성으로 인하여 이 분야 종사자가 아닌 일반 규제전문가는 정책문제의 세부 내용을 이해할 수도 없으며 정책변동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는 자의반 타의반 인식이 팽배하였다.

다음은, 보건의료정책이 주로 사회적 규제정책의 구성요소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규제가 삶의 질 향상, 인간 기본권 신장, 소비자 보호, 사회적 차별 제거, 사회적 형평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건의료분야의 정부개입이 '확대 강화될수록 좋은 것'으로 여겨졌다. 보건의료분야 규제는 규제개혁기마다 개발독재시대에 가부장적으로 시장을 교란했던 경제적 규제에 그 우선 순위 경쟁에서 밀렸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 국민소득 증가, 소비자 주권의식 확대, 삶의 질 향상 욕구 증대로 보건의료영역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이 분야에서의 부적절한 규제는 그만큼 정치, 경제, 사회적 부담을 일으킬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유발시켰던 의약분업 정책, 전임 보건복지부장관의 이임 연설에서 촉발된 국민건강보험 약가정책의 문제 등은 보건의료분야의 규제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피부로 느끼게 해주었다.

2. 보건의료분야의 규제개혁 과제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영역은 크게 세 개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국민건강보험 영역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급여는 계속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계에 각종 규제가 가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 재정파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총 보험진료비 중 환자본인부담이 2001년 51.0%(입원 41.3%, 외래 53.9%)임을 비판하며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확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논리이다. 그러나 국민 건강향상 수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에 무조건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급여확대를 논할 때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 증가 등 건강수준 향상이 국민건강보험 때문인지, 또는 평균 교육수준 향상이나 1인당 소득수준의 향상 때문인지를 먼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선진국의 주요 연구결과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 의료보험보다는 교육, 소득 등이 건강향상에 기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비용효과성평가에 근거하지 않고 정치적 관념적 논리에 따라 보험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의 가격 및 수량 등에 각종 규제를 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급여항목의 무분별한 확대는 환자의 비용의식을 약화시켜 의료를 적정량보다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는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불필요하게 보험재정이 낭비되게 한다. 또한, 국민 건강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조차도 국민건강보험 환자를 받도록 허용하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그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많다.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공단의 조직과 재정을 중앙집권적 단일화함으로써 독점화, 관료화, 정치세력화, 노동경직화가 심각하고 관리운영의 효율성이 낮다. 각 지역의 보험자, 지역주민, 의료제공자의 상호간 협조와 합의에 의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보다는 단일 거대구조의 공단과 정부 그리고 전국적인 의료제공자단체간 정면 대결이 빈번히 발생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곤 한다. 이어서 단일 보험자의 급여항목 경직성 그리고 비급여 항목 배타성은 의료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하여 외국에서의 의료쇼핑을 증대시키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막는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의료를 과잉 소비하게 되고 단일 보험자는 국민건강을 개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건강보험재정 불안정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표방한 과도한 정부 통제는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WTO의 보건의료시장개방 압력 등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내 보건의료시장이 외국 의

료기관과 보건의료산업에 예측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둘째, 규제개혁 범주는 의료체계 영역이다. 이는 의료체계의 개혁 없이는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비 증가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1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가 넘는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전되어 2020년경에는 14%의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 저하추세 및 고령화는 의료재정을 조달할 청장년 층은 부족해지고 의료비를 크게 지출하는 노인 층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5.4%로 낮아 보이지만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에 대한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0.79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비해 대단히 높다. 이는 인구 중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면 다른 국가에 비해 GDP 중 상당히 많은 비용을 의료비로 지출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현재와 같은 의료체계에서 고령화가 진전될 경우 국민의료비 부담이 급속히 증가하여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큼 자원 낭비가 초래되는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드물다. 중한 질병 환자를 큰 병원으로 보내야 할 의원이 값비싼 의료기기를 갖추고 입원환자까지 받고 있는 등 의료기관 간 역할분담이 명확치 않다. 의료기관간 진료자료 교류가 원활하지 않아 환자가 기관간 이동시 다시 처음부터 검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료제공의 90% 이상을 영리추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민간자본이 담당하고 있어 이윤이 크게 발생하는 부문에만 의료자원이 집중되고 있으며 민간 의료제공자가 진료수가 인상 등을 이유로 의료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국민이 제때에 치료받을 길이 막혀 버린다.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요양시설 등이 없어, 값비싼 의료설비를 갖춘 고비용의 병원이 이를 담당하고 있어 비용부담이 크다.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인건비가 비싼 의료인력이 주로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즉, 전문의의 수가 일반의를 능가하고, 약사의 수도 지나치게 많다. 진료수가가 단위 의료서비스 당 개별 원가에 의해 결정되고 총 진료비가 진료수와 제공량에 따라 지급되는 행위별 수가제도를 외래와 입원 모두에서 실시하고 있어 진료수를 억제한다해도 제공량을 증가시키면 진료비 통제가 무력화되는 구조이다. 환자가 질병, 치료 및 예후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인프라 구축되어 있지 않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환자가 비용과 효과를 따져 의료기관을 선정하기가 어렵다. 선진국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도 의료기관에 입원하기보다는 의약품에 의해 치료받는 비중이 증가할 전망이다.

셋째로 주목해야 할 규제개혁분야는 바로 의약품 관련 제도이다. 먼저 정부는 200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의약분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세부 내용에 있어서 우

리나라 의약분업은 다른 나라들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서구국가, 일본, 대만은 의사는 처방하고 약사는 조제하도록 하는 역할분담 방식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외래환자를 위한 약국이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설치되는 것을 제약하는 형태이다. 이로써 외래환자는 처방전을 가지고 반드시 의료기관 밖에 있는 약국에서 조제받아야 한다. 정부가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내세운 정책목표는 의약품 오용 및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료비용을 대폭 절감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약분업 방식이 국민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료비를 절감시켰다는 실증적 자료가 국내외적으로 전무하다. 그리고 시행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각계에서 수행된 정책평가 결과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는 분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불편 증가 및 5차례의 의사파업 등 극심한 사회혼란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정부 및 의료계 간 상호 신뢰를 크게 해쳤다. 더구나 약제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고가 수입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이 증대되어 국내 제약산업의 대외의존도를 심화시켰다. 결국 분업으로 인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중방문과 수가증가로 지출이 증대되어 건강보험은 유례 없이 거대한 규모의 재정적자를 겪었다. 의약분업의 긍정적 효과로는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항생제 및 주사제의 처방율과 처방품목수가 다소 감소한 것 이외에 특별히 유의적인 결과는 없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도 분업후 건강보험지출이 증가하자 정부가 의료기관의 약 사용 통제를 위해 2001년 7월부터 시행한 ‘약제 적정성 평가’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어 순수히 분업효과로 식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주사제 처방도 분업 전 외래 주사제처방 감소 경향을 고려할 때 그 감소 정도가 과대평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의약품 부문에서 규제개선 항목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보험약의 최저실거래가 상환제도와 혁신적 신약 가격의 선진국 평균가 책정방식이다. 이들 제도 하에서는 저가구매기전을 갖추지 못해 의료기관과 약국이 저렴하게 약을 구하지 않게 되어 의약품 거래시장에서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고 있으며 약가 하락을 두려워하는 제약회사의 재판매가 가격 유지행위로 인해 여전히 리베이트 등 음성적인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의약품 시장의 대외의존성이 심화되었으며 의약분업 실시와의 상승작용으로 인해 상품명 처방이 증가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에서의 약제비 지출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음으로 주목할 규제개혁과제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규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약사법에 의하면 의약품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이분류되고 있는데 모든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의약품은 일반국민이 전문적인 지식 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는 기준에

따라 분류되고 있으므로 이를 약국판매로만 규제하는 것은 당위성이 없다. 더욱이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체 일반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 중 일부에 대한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심지어 영국과 독일에서는 일부 의약품을 무인자동판매기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현재의 규제는 일반의약품 시장에 약국이외의 새로운 판매군 즉 슈퍼마켓 등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적 진입장벽(legal barriers to entry)의 역할을 해 경쟁여건을 크게 악화시킴으로써 시장의 효율성 제고 능력을 제약하며, 소비자는 일반의약품 구매에 불편 등 부담을 증가시켜 실질 구입가격의 인상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각종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3.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의 새로운 출발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인식변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 먼저 이 분야 규제의 대부분이 경제적 규제임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의약품과 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관련 규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분야 규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은 또한 의료법, 약사법 등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 고유기능보다는 정부가 ‘건강보험제도’를 명목으로 소득 재분배를 시행하고 있어 사회적 규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 즉, 의료기관과 약국의 시장진입, 공급가격, 공급수량, 질에 대한 다양하고도 강력한 규제를 가하여 본원적 경제활동을 제약하므로 세부적으로는 경제적 규제로 분류할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보건의료분야는 국민건강보험제도로 사회적 규제를 표방하면서 실상은 각종 경제적 규제가 만연한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감추어진 규제의 바다’였던 것이다. 또한 이제 보건의료분야는 전문직능인의 배타적 범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수요의 확대와 다양화 그리고 세계화로 인해 정치, 경제, 외교, 행정의 서로 역동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영역으로 다양한 전문 정책집행자와 연구자가 참여하여 분석 발전시켜야 할 곳이다. 이제부터라도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관련 규제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할 영역이 바로 보건의료분야인 것이다.

교육분야 규제개혁 평가

* 집필자 :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1. 교육분야 규제개혁의 의의

교육규제는 이와 같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규제의 불가피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교육 분야에서는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촉진하고, 자율적인 학교 운영을 조장하기 위해 탈규제 방향의 규제개혁이 요청되어 왔다. 특히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주도한 교육개혁 방향이 단위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조장하는 교육행정의 자율화 방향이 천명되면서 이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규제 완화 정책이 표방되어 왔다.

교육규제는 교육기관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 활동을 제한한다. 교육과정 운영, 학생 선발, 정원 책정, 교직원 인사, 재정 운영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친 규제는 교육기관이 지역과 학교 실정을 감안하여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학교 운영을 곤란하게 한다. 또한, 교육규제는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교육행정기관의 지시와 명령만을 따르려고 하는 지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갖게 하여 교육현장의 자율의식과 자율 역량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규제는 교육기관이 교육행정기관의 규제적 보호막 속에 안주하게 되면서 교육기관간의 자발적인 경쟁을 회피토록 하여 결과적으로 교육체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이외에도, 과도한 교육규제는 필연적으로 교육기관의 행정업무의 증가를 초래하여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과도한 행정업무는 규제기관의 조직 비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규제기관의 비대화는 조직규모에 비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향으로 또 다른 규제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규제는 이와 같은 역기능적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으면서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교육정책에서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가 수월성, 평등성, 효율성, 자율성 등이라고 볼 때,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탈규제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수월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탈규제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반면에, 평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규제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평등성을 특별히 강조하는 평준화정책에서는 자연히 여러 가지 교육규제를 가지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정책에서는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수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게 됨에 따라 교육규제를 불가피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로서 입시경쟁에 따른 교육의 비정상화 문제가 크게 제기되어 오면서 교육의 정상화라는 측면도 중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 정상화라는 측면에서도 교육규제를 불가피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국영수 위주의 과외를 없애기 위한 대학별 본고사의 금지,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내신제 반영, 각급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관련한 여러 가지 지침 등이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규제의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정책에서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규제가 수반되는 경우도 많다. 사학 정책에서는 사학의 특성상 사학의 자주성이 강조되면서도 공교육기관으로서 사학의 공공성이 동시에 강조되어 왔다. 사립학교법 등에 나타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은 사학에 각종 비리와 부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학의 공공성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나타난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다. 학원 및 과외교습에 대해서도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수강생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나오고 있다. 또한, 학교 운영의 민주화를 위해 시도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도 불가피한 규제로서 입안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 교육분야 규제개혁의 추진 및 주요 실적

교육 분야 규제개혁은 정부가 1995년 5·31 교육개혁방안을 마련하면서 추진되었다. 이 교육개혁방안에서는 자율화, 분권화, 규제완화, 다양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설정하여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체제를 구안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육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규제 완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에는 주로 행정명령(훈령, 예규, 고시, 지침, 회의서류, 일반문서 등)

에 의한 교육규제를 완화하였다. 특히, 교육부는 교육규제완화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일몰제(sun-set approach)를 실시하여 정부 수립 이후 교육부가 제정한 모든 행정명령을 1996년 말까지만 유효하도록 하고 1997년 초부터는 별도 심의되지 않은 모든 행정명령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규제일몰제에 해당하는 행정명령 중 불가피하게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정명령은 별도로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1997년에는 법령(법률, 대통령령 등)상의 교육규제를 중점적으로 심의하여 폐지·완화해 왔다.

1998년부터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면서 교육규제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종합적인 규제개혁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교육 분야 규제개혁 실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8년에 편입학·전학·졸업 관련 규제로 조기진급·졸업 관련 규제, 귀국학생 편입학 규제, 국비유학생 선발제도 등의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고, 교육기관 설립·운영 분야에서 기술대학 설립과 학교법인 회계업무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학원·사회교육 분야에서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과 학원 교습과정의 제한을 완화하였다. 그리고 대학학사행정 분야에서는 대학 전입학 및 전과 비율 제한, 산업대학내 박사과정 설치 제한 등을 폐지하였다.

1999년에는 초중등교육 분야에서 초등학교 전학 절차 및 고등학교 입학제도를 개선하였고, 수업용 교재의 제한을 완화하고, 교과용 도서 및 부교재 채택 권유 금지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폐교재산 처리 방법 등을 개선하였다. 대학 및 대학원 분야에서 대학지원방법의 제한을 폐지하고, 교육대학과 산업대학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설치를 허용하였다.

2000년부터는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할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규제개혁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①사이버(Cyber)교육체제의 구축·운영, ②학교 운영의 자율성 및 경쟁제고, ③교과서 발행·공급 규제개혁, ④학원 설립·운영제도 개선, ⑤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⑥교육정보화 진흥을 위한 법·제도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학교 운영의 자율성 및 경쟁제고 방안에서는 외국인학교, 특성화 학교, 자립형 사립학교 관련 규제를 개혁하였다. 그리고 2002년에는 교육과정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사회교육체제 운영 관련 규제를 개혁하였으며, 전국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체제를 보완하였다.

지난 5년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설·강화된 규제는 제정 또는 개정되는 총

38개 법령(98년 7개, 99년 5개, 2000년 9개, 2001년 8개, 2002년 9개)을 대상으로 122건(신설 60건, 강화 31건, 내용심사 31건)의 규제에 대한 심사를 통해 58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규제중 20건의 규제를 강화하였다.

신설·강화된 주요 교육규제는 ①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②학교용지의 인접거리는 통학거리 1,000미터 이내로 하며, ③원격대학,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시 인가 신청토록 하고, 폐쇄 시 이를 신고토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④대학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교육여건과 학교현장을 공표하도록 하고, ⑤편제가 이미 완성된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을 당해연도 4월 1일 현재 당해 대학에 등록된 학생의 수로 하며, ⑥학력인정기준학점 중 18학점 이상은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취득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 분야의 규제개혁 노력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교육규제 건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던 1998년 당시 269건이었으나, 그간 130건이 감소하여(29건 신설 등으로 증가하고, 159건이 폐지 등으로 감소함), 2002년 12월 말 현재 139건의 교육규제가 남아 있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교육규제 중 건수가 많은 규제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1종 도서 발행권 부여, 교과용도서 가격 사정 등이 있고, 「고등교육법」과 「대학설립운영규정」과 관련된 규제로서 대학 설립인가, 학교폐쇄 명령, 대학입학지원 방법 제한 등이 있으며, 「사립학교법」과 관련해서는 학교법인의 설립 허가, 임원의 결격 사유 등이 있다. 그리고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학원 시설 기준, 학원 설립운영자의 결격 사유, 교습소의 교습과목·강사채용 제한, 학원 수강료 조정 등이 있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자비 유학 자격 기준, 국비 유학생 응시자격 결격 사유 등이 있다.

3. 교육분야 규제개혁의 성과

교육 분야 규제개혁의 성과는 성격상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비용-편익분석

이 가능하도록 계량화가 용이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기도 그리 용이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 동안 교육 분야에서 지속적인 규제개혁이 추진된 결과로 적지 않은 교육규제가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 분야 규제개혁의 성과는 교육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교육규제개혁에 대하여 교육기관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교육규제가 많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초중등학교에서는 학생 활동, 교원 활동, 수업 활동 측면에서 교육규제가 많이 완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대학에서도 학생선발,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정원 정책 등에서 교육규제가 많이 완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교육규제의 완화 결과로, 학교 현장에는 상당히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규제 완화에 따라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신장되고, 창의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육의 질 향상,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 행정능률 향상, 교원의 직무 경감 등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대학에서는 대학 운영의 자율성 신장과 함께 대학간 경쟁 유도 및 대학의 경쟁력이 제고되었고, 대학에서도 교육의 질 향상, 행정능률 향상, 연구기능 제고 등에 기여하게 되었다.

4. 교육분야 규제개혁의 미흡한 점

지금까지 교육 분야 규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규제개혁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는 교육 분야에 아직도 상당한 규제 요소들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일부 교육정책은 그 정책의 속성상 상당한 규제 요소를 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교육관련 법령 및 교육행정의 관행에서 규제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경우가 있다.

교육정책의 속성상 규제 요소를 많이 담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평준화 정책이나 대학입시 정책 등이다. 평준화 정책은 그 정책의 취지가 고교교육을 평준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선발에서는 물론 교원인사, 재정 운영 등에도 상당한 규제 요소가 담기고 있다. 또한 대학입시 정책은 기본방향에서 대학자율에 의한 운영을 표방하면서도 고교교육

의 정상화를 위해 대학별고사를 금지하는 규제적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관련 법령이나 교육행정의 관행에서 규제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예로서 현행 교육관계 법령의 많은 조항들은 교육기관 운영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제17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제4조)에서도 사학들이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 공립학교는 물론 사립학교까지를 망라한 모든 단계의 학교에 대하여 포괄적인 지휘감독권을 갖도록 되어 있어서 정부는 필요한 경우, 규제 영역을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5. 교육분야 규제개혁의 향후 과제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 발족 이후 규제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교육분야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규제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교육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규제에서 중점 개혁되어야 할 영역은 교육기관 설립과 폐지에 관한 규제 영역과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규제 등이다. 교육시장 진입 규제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의 설치에 관한 규제는 1990년대부터 각급 학교 설립인가 정책이 준칙주의를 따르게 되면서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수도권 인구 억제책이나 정부에서 강조하는 인력양성 정책 등과 같은 교육정책의 적용으로 여전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교육기관 설립과 폐지에 관한 규제는 이러한 제약조건을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규제에서는 중등교육의 경우, 평준화 정책의 실시로 나타나는 규제가 많다. 학생선발부터 교육과정 운영, 교원 인사, 납입금 정책을 포함한 재정 운영 등 학교 운영 전반이 평준화 정책의 실시로 불가피하게 규제를 받게 되어 있다. 이러한 중등교육의 각종 규제는 공립학교는 물론 사립학교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사학의 자주성 확보가 어렵고, 사학 나름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는 교육을 실시하기도 곤란하게 한다. 따라서 중등교육 분야에서의 교육규제 개혁은 평준화 정책의 기본구조에 대한 전면적

인 개편이나 수정·보완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 분야는 최근 자율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대학 운영에 관한 비교적 많은 사항들이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맡겨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사례는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지침이나 권고 등과 같은 비교적 완곡한 방법을 통해 대학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앞으로 고등교육 분야의 규제개혁에서는 법령 등에 의한 직접적인 규제 외에도 간접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인지하는 교육규제 중에는 교육제도나 교육정책 등 교육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수시로 지시 하달되는 교육규제들이 많다.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의 실시 여부, 모의고사의 실시 여부, 체벌 기준, 학급 내 학생 좌석 배치 방법 등이 그러한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은 나름대로 입시 과열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생지도를 위한 취지에서 나온 정책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처럼 세부적인 사항까지 교육행정기관에서 규제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에 준하는 세부적인 사항들은 학교장에게 결정 권한을 대폭 위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분야 규제개혁 평가

* 집필자 : 서진완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분야의 기술발전은 짧은 기간 동안 어느 기술분야보다도 빠른 속도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노동과 자본 중심의 전통적 산업사회에서 지식과 정보 중심의 지식정보사회로 변화를 촉진하였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새로운 공간으로서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를 창조하는 등 우리의 생활양식과 사고체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

적인 변화(paradigm shift)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화의 진전에 따라 네트워크의 유용성이 더욱 커지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이를 촉진하여 물리적, 심리적으로 새로운 사회환경을 조성하기에 이르고 있다.

정보통신은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미래의 산업, 생활, 그리고 행정의 변화를 유도하며, 또한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책은 결국 국민의 삶의 질적 향상, 경제의 디지털화 및 효율화 촉진, 그리고 행정의 효율화에 이르는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결정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산업부문, 정보화부문, 정보통신서비스부문 등 정보통신과 관련한 규제업무를 추진해 왔다. 1998년부터 지속된 정보통신부의 규제정비작업은 국내의 정보통신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정보통신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21세기를 대비한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본방향 하에 이루어졌다. 전면적인 규제사무의 검토작업은 정보통신시장이 그간의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WTO/IMF 체제를 맞아 새로운 시장환경에 적합한 규제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분야의 규제개혁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측면에서 그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보통신시장 개방에 따라 내외국인에게 동등하고 투명한 규제정책을 구현하려 하였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 국내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규제정비가 이루어졌다. 둘째, 사업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시장의 자율과 경쟁을 저해하는 겸업금지, 양도, 양수의 제한 등 각종 진입규제는 폐지하였으며, 통신사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에 장애가 되는 요인 및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규제는 완화하였다. 셋째, 고도화 및 다양화되는 기술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요불급한 규제사무를 정비하였다. 끝으로 궁극적으로 공정경쟁보장 및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 테두리를 설정하여 시장 경쟁 체제에 적응하도록 유도하였다.

1998년 이후 정보통신관련 중점규제개혁과제로는 정보통신관련규제개혁, 기간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 출연금제도 개선, 무선국 및 무선종사자관련규제개선과 정보통신산업관련 규제합리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겸업제한제도개선과 무선국 운용 및 검사관련규제개혁, 그리고 방송국 허가제도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검토를 해왔으며, 총 146건의 규제에 대한 심사를 통해 69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규제 가운데 34건의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다가오는 지식정보화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규제개혁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이에 따라 지식정보화사회의 구현을 위한 규제정비의 노력을 제1단계와 제2단계로 나누어 추진한 바 있다. 먼저 제1단계 지식정보화과제에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발신번호표시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민간부문 개인사생활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정보통신망상의 인권침해행위 방지대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정보통신기반 시설 보호체제 정비 등이 있다. 그리고 2001년 말 새로 제2단계 과제를 추진하면서 정보통신분야는 요금규제제도 개선, 번호이동성제도의 도입, 주파수경매제도의 시행, 소출력 FM방송제도 개선, 그리고 무선국 준공기한 신설 등 5개의 과제가 포함된 바 있다.

지난 1998년 이후부터 정보통신분야의 규제개혁은 주로 중점추진과제와 제2단계 지식정보화과제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주로 정보통신서비스와 산업부문에 집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제1단계 지식정보화과제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통신관련 규제사항은 상대적으로 정보통신정책에 대한 구분을 소위 정보화정책과 정보통신정책으로 나누어 이해할 때, 정보화정책에 해당하는 규제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분야의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주로 규정되어 주로 정보통신사업규제, 전파규제, 그리고 정보보호규제 등에 대하여 규제개혁의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어져 왔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동전화가입자 3천만명, 초고속인터넷가입자 1천만명을 넘어서 있으며, 해외 각국에서도 한국의 이러한 정보통신인프라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휴대폰과 반도체, LCD, 이동통신 등은 이미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통신서비스 산업의 지속적 경쟁도입, 기술발전과 시장 규모의 성장과 이에 따라 요금인하, 서비스의 다양화, 각종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절감 등 이용자의 편익 또한 증대되었다. 앞으로 초고속인터넷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이 더욱 발전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가정, 기업, 공공기관 등은 상호 연결된 망을 통하여 업무편의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생활 형태를 창조하면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 확보와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킬 것이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의 변화는 정보통신사업자에 의해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의 수요 및 이용 패턴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에 상응하는 정보통신정책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제분야에서도 많은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결국 정보통신분야의 규제정책은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정보통신 서비스시장은 배타적으로 형성되어 왔던 기존 정보통신의 각 세부영역이 통합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통신과 정보, 방송과 통신, 정보와 방송의 융합 등 정보통

신기술의 환경변화는 곧 규제분야에서의 변화를 의미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음성과 데이터의 경우 통신서비스의 최종 이용자입장에서 보면 양자의 구분이 가능하였으며 본질적으로 음성망과 데이터망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음성데이터통합(VoIP)으로 대표되는 음성망과 데이터망의 통합으로 이들의 구분이 모호하게 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통신망의 변화를 통해 통신정책과 규제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회선교환방식의 음성전화망과 패키지방식의 데이터망은 통신망의 구성에서도 별도로 구분되어 왔고, 이러한 통신망의 구성에 따라 규제의 틀도 차별적으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통신정책 및 규제의 기본틀이었던 이러한 통신망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통신정책 및 규제의 틀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

과연 이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분야의 규제정책이 이를 제대로 반영해왔는가? 우리는 새로운 정보통신환경으로 변화하는 시점에 있다. 변화는 정보통신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정보통신시장의 추세는 음성과 데이터, 유선과 무선이 각각 차세대네트워크(NGN)를 통하여 하나로 융합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술적인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규제체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EU의 대응은 향후 정보통신분야의 규제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2003년 후반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EU규제체제(regulatory framework)와 통신법에 대해 최근 영국의 오펔(Ofcom)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을 위해 신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정보통신, 인터넷과 방송서비스 등의 급속한 융합추세 하에서는 더 이상 상이한 형태의 통신에 대해, 개별적인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여기서 제시된 새로운 규제지침에서도 예를 들면, 규제체제의 변화는 서비스 제공사업자들에게 기술적인 융합과 더불어 분류체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세계적인 추세 역시 기술의 변화에 따라 통신규제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중요한 측면은 수요동향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법제도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통신인프라의 고도화와 통신서비스의 멀티미디어화에 따른 규제기관과 관련법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 등 유효경쟁체제의 구축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역시 정부의 역할은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통신산업의 경우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갖추는 것이 어려우며 독점 또는 불완전한 과점 상태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독점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 통신서비스 산업에서의 통신규제는 그 원칙과 방법론의 분명한 설정이 없을 경우, 상당한 혼란과 시행착오가 따르게 되며, 결과적으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통신시장의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상당 기간 남아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이러한 통신시장에서의 정부 기능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규제구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기술 및 수요동향의 변화는 결국 규제정책에 있어서 미래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규제제도의 정비를 요구하게 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속도를 고려할 때, 미래에 대한 확실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변화가능성은 무엇보다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통신기술과 수요동향의 변화에 따른 현재의 정보통신규제의 문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현 규제체제에서 완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며, 현 규제체제에서 새롭게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며,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도입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하는 측면에서 규제개혁의 세부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를 수용하고 공정경쟁 여건조성 및 이용자 이익 보호를 효율적으로 도모함으로써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규제제도 본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보통신분야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보통신강국을 주장하기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의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미흡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지난 5년간 추진해왔던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정보통신정책부분에서의 기존의 노력과 함께 이제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조성 없이는 지금까지 이루어온 많은 노력들이 빛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정보화정책 부문에서의 규제개혁에 관심을 함께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정책이 공급자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정보화정책은 수요자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1단계 지식정보화과제에서 부분적으로 이와 관련한 과제가 제시된 적은 있지만 이제는 정보문화적인 차원에서 정보화정책과 관련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이 검토되어야 한다.

정보문화의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이버공간은 열린 문화로서 평등성, 선택성, 그리고 다양성이 강조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정보화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에 배반하는 현상들 또한 사회 전반에 점차 확산되어 하나의 사회현상으로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젊은 새로운 정보문화에 대한 패러다임에 부합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대상이 된다.

정보화 역기능은 우리 사회에 이미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사이버테러, 해킹과 바이러스의 유포 등 정보기술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한편, 자살사이트 등 산업사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문화까지 등장하여 기성세대와 사이버세대간의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정보화 역기능이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정보화 역기능은 개인정보의 침해,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테러 위주의 범주에서 분류되고 있었으나, 이제는 인터넷 중독과 같은 비정상적인 정보생활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자살사이트, 동성애 및 동거 사이트 등 사이버우리의 부재에서 발생한 부작용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인터넷 이용자 수 및 인터넷 이용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터넷 이용의 급증이 주로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세대간의 격차는 이미 2002년 월드컵, 촛불시위, 그리고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바 있다. 그리고 고전적인 의미로 신체적, 지리적,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소외계층이 정보화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 또한 여전히 남아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신체적, 지리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정보격차 문제는 콘텐츠 격차로 연결되어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지금까지 정보접근을 강조하였으며, 최근 정보활용의 측면에 정책적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격차와 관련된 정책 또한 단순히 기술적인 관점보다는 이제 정보문화의 관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왜냐하면 왜곡된 정보격차와 정보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결국 폭력 및 음란성 정보의 범람, 해킹, 바이러스의 유포, 개인정보의 침해, e-Corruption 등 정보화사회 이전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문제와 연계되어 심각한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화 역기능과 정보격차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전반에 걸쳐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점은 정보통신분야에서 정보통신정책분야와 함께 다른 한 축으로서 정보화정책에 대한 규제개혁적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해외의 각종 사례를 벤치마킹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 어느덧 더 이상 벤치마킹할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은 괄목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주로 인터넷 보급과 확산 등 정보인

프라 측면에서 국한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앞서 나가고 있는 우리의 정보통신환경에 맞는 그리고 향후 변화할 정보통신환경에 비추어 규제정책을 수립하고 이로 인한 영향에 대해 주목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환경분야 규제개혁 평가

* 집필자 : 최신용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

1. 서론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기존규제 전체를 대상으로 규제의 타당성 및 국제적 정합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전체 11,125건의 규제 중 48.8%인 5,430건을 폐지, 21.7%인 2,411건을 개선하는 규제개혁 실적을 이루었다.

이러한 규제개혁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는 매년 중점개혁 대상으로 특정과제 등을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우리 경제의 회생에 시급한 규제로서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분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어 온 분야 및 국민생활 불편 분야와 다수의 법령과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복합규제 등이 그 동안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 결과 전체 규제 중 환경분야의 규제는 1998년 기준 643건의 등록 규제 중 163건의 규제가 증가되고 191건의 규제가 감소하여 2003년 2월 현재 총 615건의 규제가 등록되어 있다.

2002년도에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제활력의 회복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식·정보·기술의 활용·확산, 전자정부의 구현,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 마련 및 사회적 규제

의 품질제고 방안 마련 등의 규제개혁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다섯 가지의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였다. 세부 시행지침은 ①경제활력 회복 및 기업자율성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②지식정보화 사회구현을 위한 규제정비, ③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통한 국민의 체감도 향상, ④규제관리체계의 효율화, ⑤규제개혁 성과 확산 및 중장기 비전 제시 등이다.

이러한 규제개혁 목표와 관련하여 환경분야에서는 ‘우선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 하되, ‘환경개선 효과보다 경제적 부담이 더 큰 비효율적인 규제는 정비·개선’ 하고, ‘과도한 절차, 중복규제, 법령 미근거 규제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개선’ 을 2002년도 규제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위와 같은 전체 및 환경분야 규제개혁의 목표 아래, 2002년도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소각시설 규제의 합리적 개선’, ‘청정연료사용규제의 합리적 개선’ 및 ‘오수처리시설의 공동운영 시 운영기구 설치 및 신고의무 개선’ 을 중점규제개혁 대상인 특정과제로 선정하였다.

2. 2002년도 환경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 및 실적

2002년도의 환경분야 규제개혁의 실적을 규제개혁의 기본방향에 따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우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으로는 연료사용규제의 합리적 개선, 폐기물 소각시설 규제의 합리적 개선, 오수처리시설의 공동운영 시 운영기구 설치 및 신고의무 개선 등 특정과제를 선정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경제5단체 등과 함께 환경분야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는 등 민간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규제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규제의 품질제고 및 규제 존속기한의 설정 등을 통하여 규제총량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의 철저한 규제심사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2006년도까지의 연차별 규제 순응도 조사 계획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의 평가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등록 및 관리의 강화,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사항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및 규제개선내용의 이행여부의 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기업자율성 확대를 통한 규제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발적 협약의 대상품목과 기

환경규제 개혁 내용

규제개혁의기본방향	환경부의 규제개혁 추진 사항	내 용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의 추진	●특정과제 및 규제준수율 미흡 과제의 중점 개선	-연료사용규제의 합리적 개선 -폐기물 소각시설 규제의 합리적 개선 -오수처리시설의 공동운영 시 운영기구 설치 및 신고의무 개선
	●경제5단체 등 건의과제의 정기적 수렴·정비	
규제 관리체계의 효율화	●규제총량의 관리	-규제 총량 증가의 억제(2003년 현재 615건) -신설규제 필요 시 기존규제의 품질제고방안 마련 -규제 존속기한의 설정
	●철저한 규제심사를 위한 규제영향 분석의 내실화	-외부 전문가의 규제영향분석서 첨부 의무화
	●규제순응도조사 실시로 규제의 평가 및 개선추진	
	●규제등록 및 관리의 강화	-미등록 규제의 폐지 및 개선 및 존치가 필요할 경우 신설·강화규제에 준하는 심사를 거쳐 등록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규제개선 내용의 이행 여부 점검 강화	
기업자율성 확대를 통한 규제의 선진화 추진	●자발적 협약 확대	
	●환경친화기업제도 개선	-환경친화기업 대상사업장 및 중소기업 지정 확대 -지도·점검 면제 근거의 강화 및 면제범위의 확대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발전을 위한 홍보 추진
규제개혁관련 교육 및 홍보강화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	
	●규제개혁업무편람의 작성 배포	

업을 확대하여 자율 재활용 추진을 위한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의 추진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협약을 확대(2002년 6월 현재 351개 사업장이 9개 기관과 협약체결)하고, 현재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환경친화기업 분야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2002년 8월 현재 131개 기업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하고 자율적인 환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별 우수 중소기업 1개 이상을 선정,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지속적인 규제개혁의 성과 달성을 위한 규제개혁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각종 홍보물 및 규제개혁업무편람을 작성 배포함으로써 실무자들의 인식 제고 및 적극적인 활용을 장려하도록 하였다.

2002년 규제개혁위원회는 환경분야에서 악취방지법, 지하생활공기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24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규제 20건·강화규제 30건·내용심사 42건 등 총 92건

의 규제를 심사하였으며, 이 중 철회권고는 8건 · 개선권고는 37건 · 원안대로 의결된 것은 47건이었다. 환경부 특정과제는 연료사용규제, 폐기물소각시설규제 및 오수처리시설의 공동 운영 시 운영기구 설치 및 신고의무(규제준수율미흡과제) 등의 세 가지이며, 세부적인 개혁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2002년 환경부 소관 특정과제

과 제 명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료사용규제의 합리적 개선	현 황	-서울 등 7개 지역에서 황함량 0.3% 중유(2002년 7월 20개, 2003년 7월 24개 지역으로 확대 예정), 대전 등 52개 지역에서는 0.5% 중유, 기타지역은 1.0% 중유를 사용
	문제점	-대기오염 저감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나, 저황유 사용 의무로 인한 이중규제 논란, 절차적 부담, 비용부담의 증가
	개선내용	-0.3% 저황중유 공급지역의 합리적 조정 -초저황경유 보급확대 -바이오디젤(경유 대체연료) 보급 확대기반 구축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굴뚝높이 제한 규정개선
폐기물 소각시설 규제의 합리적 개선	현 황	-2001년 6월 현재 8,173개의 소각시설 운영 중
	문제점	-소각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의 일부가 불합리 혹은 과도한 절차적 규제 기술개발 및 설치가 어려움 -다이옥신 측정의무가 없는 소형소각시설의 다이옥신 저감대책 및 적정관리방안 미흡 -다이옥신 함유 소각재의 재활용 규제기준 미흡
	개선내용	-소각시설 연소실 출구온도 현실화 -소각시설 바닥재 강열감량 기준의 합리적 조정 -소각시설 운전 · 관리기준 현실화 -자동온도기록계 등 연속 측정 · 기록유지 현실화 -폐기물 투입조성비 변경 시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 -상호 변경신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처벌기준 현실화 -폐기물 투입과정에서 적용되는 온도기준 완화
오수처리시설의 공동운영 시 운영기구 설치 및 신고의무 개선(규제준수율미흡과제)	현 황	-규제준수율 미흡 과제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에 대하여 운영기구 설치 의무화
	문제점	-관리주체가 없는 소수세대의 서민형 빌라,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는 운영기구설치 및 대표자 지정이 현실적으로 곤란
	개선내용	-공동운영기구 설치대상 공동주택의 기준 완화 -하수처리구역 내의 경우 운영기구 설치 면제 등 제도개선방안 마련

3. 2002년도 환경분야 규제개혁의 평가

보건·안전·환경 등과 관련된 사회분야의 규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규제 개혁 및 완화인 적극적 규제폐지와 규제신설 방지뿐만 아니라, 규제에 대한 순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설정하는 등 품질을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더구나 환경규제와 같은 사회적 규제는 규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업의 자율과 시장원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를 위한 정부의 개입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규제행위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분야의 규제를 평가할 때 단순히 양적인 증감의 문제보다는 규제의 내용, 즉 규제의 품질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2002년도 환경분야의 규제개혁 성과를 환경분야 규제개혁이 국가 전체의 규제개혁 방향과 목표가 합치하는지의 여부와 확정된 규제내용의 합리성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환경규제는 환경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보호를 위하여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및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사회적 규제라는 특징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내용이 비현실적이거나 과도하여 규제로 인한 혜택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거나 기존의 규제와 중복되어 피규제집단에게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키는 경우, 또는 일상적 규제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나 새로운 규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환경규제 분야의 현실적인 개혁이 요청된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1998년 이후 지속적인 규제개혁 작업을 통해 지난 5년간 총 30개 분야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총 145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등록규제 중 240건의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개혁이 이루어졌고, 2002년도의 경우 악취방지법 등 24개의 법령에 대해 92건(신설 20건, 강화 30건, 내용심사 42건)의 규제를 심사하였다.

신설·강화된 규제의 내용들은 대부분 현재의 환경의 질 보호 및 개선을 위한 규제들인데, 이러한 규제들은 심사과정을 통해 8건의 철회권고, 37건의 개선권고 등의 과정을 거쳐 총 13건의 규제가 신설되었다. 신설·강화 규제의 경우, 규제의 총량관리제나 규제폐지 중심의 규제개혁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 등록 이전에 전문가의 견해가 반영된 충분한 심사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러한 심사과정을 거침으로써 규제수준의 합리성 검토 및 자율환경관리제도와 같은 규제대안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2002년도의 심사대상 규제 중 특정과제의 하나인, 연료사용규제의 경우 '저황유 사용 의무화' 등을 통해 연료사용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오염의 저감에는 기여하는 바가 있으나 연료공급자 및 사용자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키고, 중복 규제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더구나 저황유 사용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시점이 1996년도인 점을 감안할 때, 당시 고시된 해당지역의 대기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지역이 포함되고 당시 지정되지 못하였던 지역이 제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도의 규제위 심사과정에서는 현재 예고된 중유공급 예정지역을 포함하여 56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저황중유 공급지역을 재조정하였다. 이는 규제의 실질적인 목적인 대기질의 보호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변화하는 환경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했다는 측면에서 규제내용의 현실화에 해당된다. 규제준수율 미흡과제인 오수처리시설의 공동운영 시 운영기구 설치 및 신고의무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하수처리구역 내 운영기구 설치 면제 지역 확대 및 운영기구 설치 제외 공동주택 조건 완화: 소유자가 2인 이하인 공동주택 소유자가 30인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관리주체가 없는 소수세대의 서민형 빌라, 연립주택 등 운영기구설치 및 대표자 지정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완화한 경우이다.

2002년도의 전반적인 환경분야 규제개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규제내용의 현실화를 위한 개혁(최근 기준의 반영 등)과, 국민의 불편을 초래(절차적 복잡성 간소화 등)하거나 중복적인 규제의 개선을 중심으로 규제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복규제라 하더라도 단순히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규제의 필요성 및 가치를 판단하여 그 존재여부를 결정하는 등 규제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규제의 품질을 고려한다는 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환경규제의 경우, 그 특성상 규제폐지만을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실행을 보장할 수 없다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의 품질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2002년도의 규제개혁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과제를 비롯한 규제의 내용과 관련된 개혁 뿐만 아니라 규제순응도조사의 연차별 계획 마련 등과 같은 규제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상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 기업과의 자발적 협약을 통한 자율규제관리의 지속적인 확대노력 및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규제개혁업무편람의 작성·배포를 통한 규제개혁내용의 확산 노력은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이라 하겠다.

위와 같은 환경분야의 규제개혁은 국가 전체적인 규제개혁의 방향과 기본적인 맥을 같이하며, 또한 환경부의 기본 방향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 하고, ‘환경개선 효과보다 경제적 부담이 큰 비효율적인 규제는 정비·개선’ 한다는 기본방향과 맥을 함께 한다고 할 것이다.

4. 환경분야 규제개혁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규제개혁위원회의 출범 이후, 지속적인 규제개혁 작업을 통해 환경분야에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사업자에게 불편 및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 환경산업규제 및 중복규제 등 상당한 규제개혁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규제개혁 노력으로 인해 2003년 2월 현재 상당수의 규제개혁 실적을 이룬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모든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가 그렇듯 평가주체의 입장에 따라 그 체감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분야의 2002년도 규제개혁 내용 중 삶의 질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는 바, 이를 통해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주고 환경적 가치를 보호할 수는 있겠지만, 규제의 주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규제개혁을 통해 또 다른 규제를 받아야만 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므로, 규제회피나 불응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환경분야와 같은 사회적 규제의 개혁에 있어서는 사회적 가치의 극대화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규제개혁 내용에 대한 피규제집단의 자발적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시와 통제에 의존하지 않는 정책수단과 유인장치를 도입하고, 사적유인동기와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피규제자의 자율성과 창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며, 강압적인 규제수단보다는 유연하고 준수유인을 제공하는 규제수단을 사용하고,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규제수단을, 과정보다는 결과를 점검하는 규제수단 등의 규제품질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환경분야의 규제개혁은 환경보호라는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것과 같다. 다양한 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환경분야의 규제개혁은 무엇보다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일괄적인 기준 제시 등의 행정편의주의적이거나 전문가의 심각한 분석과 평가가 수반되지 않은 규제는 피규제집단의

순응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규제의 효과를 달성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법령에 근거한 획일적인 내용의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전문적 지식의 적용과, 계속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분석이 병행될 수 있는 규제내용의 주기적 검토 과정을 통한 개선노력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과 경제성장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규제개혁의 난제는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 향상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고려할 때 해결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이란 지도이념이 경제성장의 부차적인 논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규제개혁위원회는 새로운 개혁이념으로 환경지속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환경규제 개혁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제10장 2003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제1절 _ 추진방향

제2절 _ 세부 추진계획

제1절 _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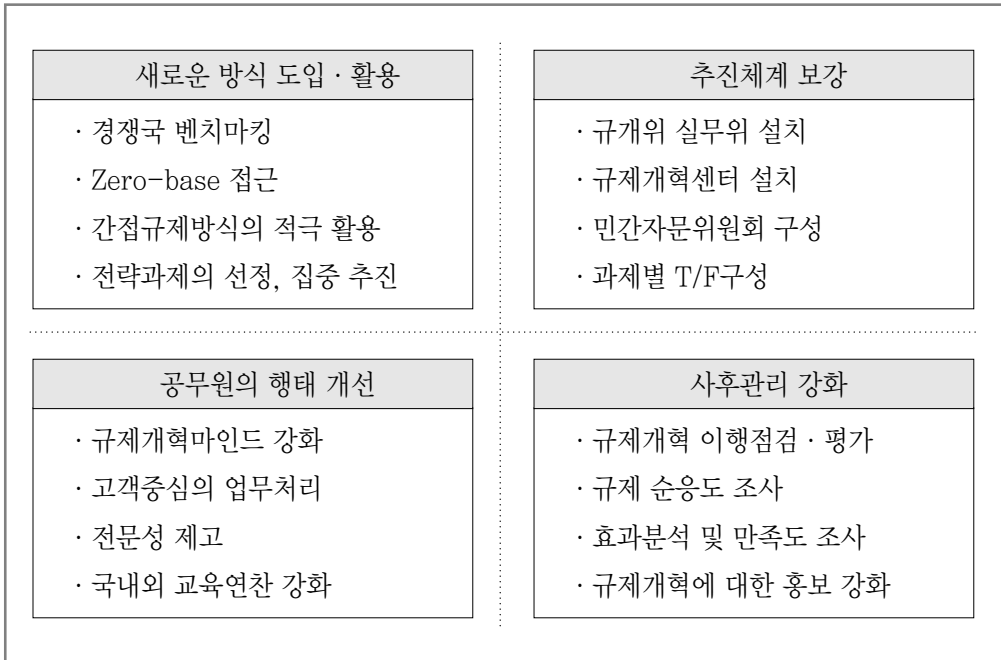
*집필자 : 박구연 서기관(Tel. 3703-3926, kuyeon@opc.go.kr)

국민의 정부에서는 기존규제의 절반을 감축하는 등 양 위주의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인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그간 규제감축에도 불구하고 금융, 건축 등 다수 부처가 관련되고 파급효과가 큰 핵심적인 규제의 개혁이 미흡하고 규제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으며, 규제의 품질관리를 위해 도입한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형식적인 운영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평가에 따라 참여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의 추진방향을 양 위주의 1단계 규제개혁에서 질 위주의 2단계 규제개혁으로 전환하고 경쟁국 벤치마킹 등 새로운 추진방식을 활용하여 우리의 기업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선진국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제2절 _ 세부 추진계획

*집필자 : 박구연 서기관(Tel. 3703-3926, kuyeon@opc.go.kr)

1.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10대 전략과제 추진

규제개혁위원회는 2003년도에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 공장설립, 물류·유통 등 10대 규제개혁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정비할 예정이다. 전략과제는 다수 부처가 관련되고 규제개혁의 파급효과가 큰 규제분야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관계부처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주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개혁 전략과제는 기업활동분야 6개 과제, 국민생활분야 4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활동분야 전략과제는 외국인 투자촉진 지원제도 관련 규제개선, 공장설립·입지 관련 규제완화, 금융회사 영업활동 관련 규제완화, 기업준조세 정비, 물류·유통분야 규제완화, 수출입통관 관련 규제완화 등이다. 국민생활분야 과제는 식품안전 규제의 합리화, 건축규제의 합리화,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 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등이다.

전략과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경쟁국 벤치마킹, 제로베이스(Zero-base) 접근, 규제맵(map) 작성·활용 등 과제별 특성에 맞는 추진방식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이를 모델화하여 규제개혁 추진전략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2003년도 10대 전략과제 내역

분야별	전략과제명	추진시기
기업활동 분야	1. 외국인 투자촉진 지원제도 관련 규제개선	3/4분기
	2. 공장설립·입지 관련 규제완화	3/4분기
	3. 금융회사 영업활동 관련 규제완화	4/4분기
	4. 기업 준조세 정비	4/4분기
	5. 물류·유통분야 규제완화	3/4분기
국민생활 분야	6. 수출입통관 관련 규제완화	3/4분기
	7. 식품안전 규제의 합리화	4/4분기
	8. 건축규제의 합리화	4/4분기
	9. 토지이용 규제의 합리화	4/4분기
	10. 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3/4분기

2. 기존규제 일제정비

전략과제 추진과 병행하여 중앙부처 소관 기존 규제 전체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규제의 형식과 내용 등 품질을 제고하는 기존규제 일제정비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규제 정비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요소는 규제의 존치 여부이며 특히, 지시·통제 등 직접적인 규제방식보다는 인센티브·민영화 등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규제의 성격에 따라서도 정비원칙이 달라지게 되는데, 시장 효율과 경쟁을 제한하는 경제적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되, 환경·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된다.

특히, 금년도에는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제로베이스 방식에 의한 규제정비가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제로베이스에 의한 정비방식이란 부처별로 특정 분야에 있어서의 규제가 일정 시점(예를 들면 2004.1월)부터 일괄 폐지되는 것으로 상정하고, 그 전에 부처에서 필요성을 입증한 규제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여 존치토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각 부처는 선정된 분야에 대해 꼭 필요한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마련하여 규

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고 규제개혁위의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규제 외에는 모두 폐지하게 되는 것이다.

3. 유사행정규제 등 현장규제의 정비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규제정비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에 의한 규제와 협회·단체 등 준공공기관에 의한 유사행정규제의 정비도 추진한다. 선택과 집중을 위해 2003년도에는 실태조사 및 정비모델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기존규제 일제정비가 마무리되는 2004년부터 본격적인 정비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4. 신설·강화규제 심사의 내실화

기술 발달 등 급속한 여건 변화로 규제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이 짧아지고 있으므로 금년부터는 신설·강화규제에 대해 규제일몰제를 철저히 적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규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규제일몰제를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부처에서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가 아니면 존속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규제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량적 비용효과분석에 기초한 규제영향분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는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기 직전에 실시하던 규제영향분석을 2003. 9월부터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실시토록 하며, 부처 간 협의과정이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를 공개토록 하였다. 또한, 중요규제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였다.

그와 아울러 규제심사에 소요되는 부처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규제심사절차를 개선해 나간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제심사 간에 원 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 체제를 구축하고, 또한 중요규제가 아닌 규제에 대해서는 간이심사제도의 적용을 확대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

5. 규제개혁 추진역량의 제고

규제개혁 추진시스템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안전심사와 사무국의 안전검토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30명 내외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분야별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규제개혁 추진시스템의 정비와 병행하여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개혁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 규제개혁센터를 설치하여 규제에 대한 계량적 분석연구 전문가를 양성하고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전문가 풀(Pool)로 활용하게 된다. 나아가 국내외 규제개혁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규제영향분석 연구를 특화하여 세계적인 규제개혁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훈련도 강화된다. 선진국의 규제영향분석기관에 공무원 및 전문가를 파견하여 규제영향분석 전문가를 양성하고, 중앙 및 지방공무원의 의식과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연찬회,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참여도 확대된다. 학계·협회·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과 규제개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규제개혁과제의 발굴·정비·평가 과정에 이들을 적극 참여토록 한다. 경제5단체,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이 제기하는 건의과제와 함께 규제개혁 위원회에서는 기업과 민원인들을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게 된다. 인터넷을 통한 규제개혁 신고센터의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6. 규제개혁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주요 규제에 대하여 피규제자인 기업과 국민의 순응도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행정정보공개 등 46개 규제에 대해 공무원·피규제자·일반국민의 순응도를 조사·분석하여 순응도가 낮은 규제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2003년부터는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보완하여 규제의 도입 및 설계 단계부터 규제의 순응도를 고려하도록 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강화해 나간다. 특히, 금년부터는 민간과 합동으로 규제개혁 추진실태를 확인·점검하고, 정책평가위원회에 의한 기관평가의 주요 항목에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반영토록 하였다. 아울러, 주요한 규제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주기적인 효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정부 2단계 규제개혁 추진방향

고 건 국무총리 언론브리핑
2003. 4. 18(금)

오늘 저는 무엇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거 양 위주의 1단계 규제개혁을 질 위주의 2단계 규제개혁으로 전환하여 규제개혁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을 밝힙니다.

저는 1997년 규제혁파를 위하여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설치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힘쓰는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을 성안하여 규제개혁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규제의 숫자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양 위주의 평면적인 규제개혁에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핵심규제에 대한 개혁이 미흡하고 규제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도 크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불 수준입니다만, 2만불대의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시스템을 개혁하고 효율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규제개혁은 우리나라의 기업환경과 국민생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규제환경과 시스템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와 부합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방향에서 우리의 규제시스템과 운영을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경쟁국 벤치마킹, 제로 베이스(Zero-Base) 접근, 간접규제방식 등의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여 금년 중 기업활동, 금융, 건축, 물류·유통 등 다수 부처가 관련된 10개 핵심 전략 과제에 대한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부처로 하여금 모든 기존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토록 하여 시장효율과 경쟁을 제한하는 경제적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고 환경·안전 등 사회적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개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조사연구팀(T/F)을 운영할 것입니다.

특히, 규제개혁의 핵심역량인 규제영향분석전문가를 육성하고 규제영향분석 등을 내실있게 실시하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 규제개혁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공무원과 전문가를 미국·영국 등 선진국의 규제영향분석기관에 파견하여 교육시킬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규제개혁마인드와 규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규제를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교육·연찬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과 국민들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기업과 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겠으며,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규제개혁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시스템과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켜 규제 개혁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반드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무한경쟁시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저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제프리 존스(미국인)를 규제개혁위원으로 영입하여 규제개혁에 국제적인 시각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개방적인 입장은 우리의 규제정책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와 협력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 줄 것입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우리의 규제수준이 OECD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우리의 기업 환경이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나아지도록 2단계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 규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 록

제1장 행정규제기본법 · 시행령

제1절 _ 행정규제기본법 · 시행령

제2절 _ 규제개혁위원회운영세칙

제1절 _ 행정규제기본법 ·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1997. 8. 22, 법률 제536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등”이라 함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라 함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 후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라 함은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진 기관과 동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규제영향분석”이라 함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2.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 조세 등에 관한 사무 중 이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규제의 원칙)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보건과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실효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당해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 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등록·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령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되기 1년 전까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청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에 대하여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견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제11조(예비심사) ① 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8조제3항·제9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할 때에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할 때에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개선권고) 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재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4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신설 또는 강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당해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7조(의견제출)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한 경우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로부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이송받은 경우
3. 기타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 따라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공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공표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하여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는 그 기한 내에 정비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정비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당해 기존규제의 정비계획을 제

출하고, 준비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조직정비 등) ① 위원회는 기존규제가 정비된 경우 정부의 조직 및 예산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의 정비에 따른 정부의 조직 또는 예산의 합리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8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제30조(조정 및 의견청취등)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위원회의 업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34조(규제개선 점검·평가) ①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및 평가결과 규제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5조(규제개혁백서) 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36조(행정지원 등) 총무처장관은 규제관련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 공무원이 규제개선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 제4735호 행정규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법 시행 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자체 정비에 갈음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모든 소관 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정비 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훈령·고시 등의 재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 시행 당시 시행중인 훈령·예규·지침·고시 등에 규정된 규제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하였는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 결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하지 아니한 훈령·예규·지침·고시 등에 규정된 규제는 이를 지체없이 폐지하거나 관계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그 근거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다른 법령의 규정”을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다)의 규정”으로 한다.

제42조 중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미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2조제3호 중 “제정 또는 개정”을 “개정”으로 하고, 동조제5호 중 “행정규제”를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사·심사사항 중 행정규제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관련자료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8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이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2. 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3.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제4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규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기타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단위 및 등록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법령 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별 평가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다. 규제의 목표설정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가. 국민·기업·단체 등의 반대 기타 사회적 제약요소
 - 나.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가. 기존 규제로 대체가 가능한 지 여부
 - 나.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 여부
 -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가.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의 분석
 - 나.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의 분석
 -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 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 나. 기업활동 저해 요소의 포함 여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 · 일관성 · 이해용이성
- 나. 규제의 법적 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7. 행정기구 ·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가.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 · 인력 및 예산의 소요 판단
 - 나. 기존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지 여부
-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 ·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의견수렴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9조(첨부서류의 보완) ① 위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사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 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2조(의견제출의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모사전송·컴퓨터통신·구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주소
 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기타 참고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의견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 자체정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①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 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2.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3.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5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2월 말까지 관보에 게재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

있던 자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 ③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2. 2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의 소관 조정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회피)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 ③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장의 임명 기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전문위원 등)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②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4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실지조사)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간사인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여비 기타 경비 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30조(규제개선의 점검·평가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확인·점검사항

2. 확인·점검일정
 3. 확인·점검자 인적사항
- ②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속 직원과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말 현재 정부의 규제현황
2.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그 평가
3.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368호 행정규제기본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제7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규제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고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의 규제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규제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법령·조례·규칙·훈령·예규·고시 또는 공고의 형식이 아닌 것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령·조례·규칙이나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예규·고시 또는 공고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 당시의 모든 소관 기존규제를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법 시행 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소관 기존규제에 대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별정비계획은 1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연차별정비계획에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
 2. 법 시행일 전 5년간 개정되지 아니한 규제
 3. 다른 규제와 중복 또는 경합되는 규제
 4.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된 규제
 5. 기타 정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규제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부터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연차별정비계획의 시행결과를 그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_ 규제개혁위원회운영세칙

규제개혁위원회운영세칙

[2000. 5. 15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운영

제2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조(의안의 제출) ① 의안은 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과 관련한 의안을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다.

제4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구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3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경제1분과위원회
2. 경제2분과위원회
3. 행정사회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을 소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배치한다.

제6조(소관) ① 경제1분과위원회는 재정경제·건설교통·산업자원·공정거래·금융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 경제2분과위원회는 정보통신·과학기술·해양수산·농림·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행정자치·외교통상·통일·국방·법무·복지·교육·노동·문화관광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분과위원회별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사위원이 소관사항을 조정한다.

제7조(회의)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 시 정부위원의 경우 국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 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⑥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기타 활동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의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 1.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중요 규제 여부의 결정
- 2.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규제의 긴급성 인정 여부의 결정
- 3. 기타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의결토록 위임한 사항

제9조(회의록) 분과위원회는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기구

제10조(조직)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이 수행한다.

제11조(규제개혁조정관실의 직무) 규제개혁조정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작성·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사항
- 3.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인사·회계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 4.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평가
-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제12조(심의안건 설명) 규제개혁조정관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제5장 전문위원 · 조사요원 및 전문 연구기관 등

제13조(전문위원 · 조사요원의 구성 등) ① 전문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며,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한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조사요원은 소속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위원을 보좌한다.

제14조(공정위에 조사·연구 의뢰) ① 위원장은 경제규제개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의 규제개혁작업단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의 일부로 본다

제1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위원장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사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 및 연구업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비를 지급하며, 용역비의 지급기준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관계행정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또는 검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17조(위임)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의 지급기준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00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록

제2장 규제개혁위원회 개최현황 및 상정안건

제1절 _ 규제개혁위원회

제2절 _ 경제1분과위원회

제3절 _ 행정사회분과위원회

제4절 _ 경제2분과위원회

제1절 _ 규제개혁위원회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1차	1998. 4. 18	제1호	• 규제개혁위원회운영세칙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2호	• 분과위원회 구성 및 간사위원 지명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호	• 법령 미근거 행정규제 정비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2차	1998. 4. 24	제4호	• 1998년 규제개혁 종합지침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5호	• 전문연구기관 지정안	의결사항	보 류
		제6호	•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개혁방안(1)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7호	• 규제개혁기본계획시안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8호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일정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3차	1998. 5. 8	제9호	• 주택건설 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0호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완화방안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1호	• 규제개혁 우선추진과제 추진상황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2호	• 행정규제 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업무지침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4차	1998. 5. 22	제13호	• 자동차관련분야 규제개혁방안(1)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4호	• 물류·운수분야 규제개혁방안(1) -해운항만부문 규제개혁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5호	• 우선추진과제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일부보류
		제16호	• 전문연구기관 지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5차	1998. 6. 5	제17호	• 풍속영업 및 식품접객업 관련 규제개혁방안(1)	의결사항	수정의결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18호	• 자동차관련분야 규제개혁방안(II)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6차	1998. 6. 19	제19호	• 건설분야 규제개혁방안(I)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20호	• 물류· 운수분야 규제개혁방안(II)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21호	• 벤처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I)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22호	• 관광산업 관련 규제합리화방안(I)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23호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24호	• 법령 미근거 행정규제정비 추진상황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7차	1998. 7. 3	제25호	• 주차장관련 규제개혁방안(I)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26호	• 물류· 운수분야 규제개혁방안(II-1) (판매· 물류시설의 설립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27호	• 1998년 규제개혁실적평가 및 향후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28호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일정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8차	1998. 7. 16	제29호	• 수출입통관 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30호	• 증권투자회사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1호	• 규제개혁위원회운영세칙 개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2호	• 항만행정 간소화방안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33호	• 도심지주차 정책방향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34호	• 1998 부처별 기존규제 정비계획종합 및 심사 계획보고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35호	• 1998 상반기 신설· 강화규제법령안 심사현황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9차	1998. 8. 14	제36호	• 1998 부처별 기존규제정비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37호	• 1998 통계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8호	• 1998 조달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9호	• 1998 관세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40호	• 1998 국세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41호	• 주류분야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42호	• 항만하역 노무공급제도 개선방안	의결사항	보 류
		제43호	• 건설기계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44호	• 사업자단체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0차	1998. 8. 28	제45호	• 1998 농촌진흥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제46호	• 1998 해양경찰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47호	• 1998 산림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48호	• 1998 경찰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11차	1998. 9. 11	제49호	• 1998 통일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부록 제2장 규제개혁위원회 개최현황 및 상정안건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50호 제51호 제52호 제53호 제54호 제5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 외교통상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 1998 국방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 1998 병무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 1998 국가보훈처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 풍속영업관련 규제개혁방안(II)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일부보류 일부보류 수정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보 류
제12차	1998. 9. 18	제56호 제57호 제58호 제5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 금융감독위원회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 1998 중소기업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 1998 특허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수정의결 원안의결 일부보류 원안의결
제13차	1998. 9. 25	제60호 제61호 제62호 제63호 제6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 기상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 1998 과학기술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 1998 정보통신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 1998 환경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일부보류 원안의결
제14차	1998. 10. 2	제65호 제66호 제6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 행정자치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 1998 교육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보 류 원안의결 수정의결
제15차	1998. 10. 16	제68호 제69호 제70호 제71호 제72호 제73호 제7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 행정자치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 1998 재정경제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 1998 산업자원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 1998 건설교통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 1998 철도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 병역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일부보류 일부보류 수정의결 일부보류 수정의결 부 결 원안의결
제16차	1998. 10. 26	제75호 제76호 제77호 제7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 규제정비지침안 • 1998 문화재관리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 1998 해양수산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 수상레저안전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보 류 원안의결 원안의결 보 류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79호	• 1998 농림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80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17차	1998. 10. 30	제81호	• 1998 법무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일부보류
		제82호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83호	• 1998 보건복지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84호	• 장기이식에관한법률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85호	• 1998 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86호	• 1998 노동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87호	• 1998 문화관광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88호	• 1998 공정거래위원회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89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90호	• 자산유동화업무처리에관한규정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보 류
		제91호	• 증권투자회사감독규정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92호	•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한 재심사안	의결사항	부 결
		제93호	• 1999 규제정비지침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8차	1998. 11. 6	제94호	• 1998 부처청별 기존규제 추가정비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95호	• 1998 기존규제 정비결과 종합보고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96호	• 사업자단체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97호	• 수상레저안전법 제정안 규제심사안(2차)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98호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부 결
제19차	1998. 11. 20	제99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규제 재심사안	의결사항	부 결
		제100호	• 매장및모지등에관한법률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101호	• 은행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02호	• 주택저당채권유동화중개회사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20차	1998. 12. 4	제103호	• 건설현장 안전관리 합리화 방안	의결사항	보 류
		제104호	• 환경분야 각종 부담금제도 개선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05호	•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06호	•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폐지에 대한 재심사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07호	• 1998 하반기 신설·강화규제법령안 심사실적	보고사항	원안접수

부록 제2장 규제개혁위원회 개최현황 및 상정안건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108호	• 규제개혁 관련 법률정비 추진현황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21차	1998. 12. 18	제109호	• 은행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10호	• 무보증사채신용평가전문기관지정등에관한기준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11호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보 류
		제112호	• 1998 부처청별 기존규제폐지계획(2차분)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22차	1999. 1. 29	제113호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14호	• 1999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15호	• 지방자치단체의 1999 행정규제정비 추진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16호	• 1998 규제개혁법률 입법 추진현황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17호	• 1999 핵심과제 추진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18호	• 1998 규제개혁백서 발간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19호	• 법령 미근거 행정규제 정비실태 점검결과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20호	• 1999 OECD 규제개혁 국별 심사준비 관련 보고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23차	1999. 2. 12	제121호	•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및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22호	• 연안어장환경관리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123호	• 외국인유학생 출입국제도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24호	•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25호	• 변호사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126호	• 규제등록 및 전산화 추진현황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24차	1999. 2. 26	제127호	•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28호	•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29호	• 각종 영향평가제도 통합·개선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25차	1999. 3. 12	제130호	•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기준(고시)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31호	• 품질인증제도 규제개혁방안(1)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32호	• 자동차운전속도제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26차	1999. 3. 26	제133호	• 경쟁 제한적인 수출입 및 관련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134호 제13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 부처별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방안 • 1998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계획 	<p>보고사항</p> <p>보고사항</p>	<p>원안접수</p> <p>원안접수</p>
제27차	1999. 4. 9	제136호 제137호 제13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방안 • 품질인증제도 규제개혁방안(II) •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상시 점검체제 운영계획 	<p>의결사항</p> <p>의결사항</p> <p>보고사항</p>	<p>원안의결</p> <p>수정의결</p> <p>원안접수</p>
제28차	1999. 4. 23	제139호 제140호 제141호 제14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의에너지절약기준 개정안 규제심사안 • 의료용구산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 비업무용 공장용지 종과세제도 및 공장 업종구분 개선방안 • 규제개혁위원회의 주요업무실적 및 향후계획 	<p>의결사항</p> <p>의결사항</p> <p>의결사항</p> <p>보고사항</p>	<p>원안의결</p> <p>원안의결</p> <p>보 류</p> <p>원안접수</p>
제29차	1999. 5. 7	제143호 제144호 제145호 제146호 제147호 제14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 자율성 확대방안 • 비업무용 토지제도 및 공장업종구분 개선방안 • 우수처리시설 설치관련 규제개혁방안 •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 •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방안 • 1999 OECD규제개혁 국별심사준비 관련보고(II) 	<p>의결사항</p> <p>의결사항</p> <p>의결사항</p> <p>보고사항</p> <p>보고사항</p> <p>보고사항</p>	<p>수정의결</p> <p>수정의결</p> <p>보 류</p> <p>원안접수</p> <p>원안접수</p> <p>원안접수</p>
제30차	1999. 5. 21	제149호 제150호 제151호 제15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처리시설설치 관련 규제개혁방안 • 굴뚝자동측정기부착대상사업장측정항목및부착시기지정고시 규제심사안 • 기간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 출연금제도 개선방안 • 농업인협동조합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p>의결사항</p> <p>의결사항</p> <p>의결사항</p> <p>보고사항</p>	<p>수정의결</p> <p>원안의결</p> <p>원안의결</p> <p>원안접수</p>
제31차	1999. 6. 4	제153호 제154호 제155호 제156호 제15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만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방안 • 자동차운수사업 진입규제 개선방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산업현장 안전기준 등 관련 규제 합리화방안 • 보세구역 관련 규제개혁방안 	<p>의결사항</p> <p>의결사항</p> <p>의결사항</p> <p>의결사항</p> <p>의결사항</p>	<p>원안의결</p> <p>원안의결</p> <p>원안의결</p> <p>원안의결</p> <p>원안의결</p>
제32차	1999. 6. 18	제158호 제159호 제160호 제16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의약품 안전 관련 규제개선방안 • 석유· 화학시설 등의 안전관리합리화방안 • 농업 관련 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개선방안 • 지역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p>보고안건</p>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원안접수</p> <p>원안의결</p> <p>원안의결</p> <p>보 류</p>

부록 제2장 규제개혁위원회 개최현황 및 상정안건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162호	• 규제총량 변경상황 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33차	1999. 7. 2	제163호	• 건설현장 안전관리 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64호	• 증명민원 개혁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65호	•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34차	1999. 7. 16	제166호	• 안마사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재심사안	의결안건	수정의결
		제167호	• 전자자격사 관련 규제개혁 추진방안	의결안건	수정의결
		제168호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선방안	의결안건	보 류
		제169호	• 개발제한구역관리에관한법률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69-1호	•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선방안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170호 제171호	• 규제영향분석 사례연구 결과보고 • OECD 규제개혁심사팀 방안결과보고	보고안건 보고안건	원안접수 원안접수
제35차	1999. 7. 30	제172호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선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73호	• 1999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74호	• 1999 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75호	•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2차)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76호	•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작업단 운영방안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36차	1999. 8. 13	제177호	• 1999년 노동부 잔존규제 정비계획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78호	• 1999년 산림청 잔존규제 정비계획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79호	• 승강기검사제도 개선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80호	• 약용작물(한약재)의 가공 및 유통 관련 규제 개혁	의결안건	보 류
		제181호	• 중앙일보 규제개혁 기획보도 관련 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37차	1999. 8. 27	제182호	• 1999년 정보통신부 잔존규제 정비계획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83호	• 1999년 교육부 잔존규제 정비계획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84호	• 1999년 건설교통부 잔존규제 정비계획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85호	• 약용작물(한약재)의 가공 및 유통 관련 규제 개혁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38차	1999. 9. 3	제186호	• 1999년 환경부 잔존규제 정비계획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87호	• 1999년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잔존규제 정비계획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88호	• 기업의 준조세 관련 규제개혁(I)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89호	• 1999년 경찰청 잔존규제 정비계획	의결안건	원안의결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181호	• 규제개혁 체감효과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39차	1999. 9. 17	제191호	• 자격제도 규제개선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92호	• 1999년 과학기술부 잔존규제 정비계획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93호	• 1999년 농림부 잔존규제 정비계획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94호	• 1999년 문화관광부 잔존규제 정비계획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95호	• 1999년 재정경제부 잔존규제 정비계획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96호	• 1999년 금융감독위원회 잔존규제 정비계획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40차	1999. 10. 1	제197호	• 1999년 산업자원부 잔존규제 정비계획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98호	• 1999년 행정자치부 잔존규제 정비계획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99호	• 1999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잔존규제 정비계획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00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01호	• 2000년 규제개혁추진지침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02호	• 교육부잔존규제 정비계획 중 의결유보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03호	•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3차)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41차	1999. 10. 29	제204호	• 양식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05호	• 저작권 행사 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06호	• 약사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07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08호	• 전기사업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09호	• 기간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출연금제도 개선 방안 추진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10호	•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정안 규제심사결과 보고안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42차	1999. 11. 12	제211호	• 지정진료제도 개선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12호	• 향만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방안 후속조치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13호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규제개선방안 조정안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14호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지원단 운영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15호	• 기업규제개혁작업단 운영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16호	• 경쟁제한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17호	• 타조의 식용허용 관련 규제개선방안	보고안건	원안접수

부록 제2장 규제개혁위원회 개최현황 및 상정안건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43차	1999. 11. 26	제218호 제219호 제22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건축물 공사감리 관련 규제개혁방안 •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1999년도 규제개혁백서 발간계획 	보고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수정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제44차	1999. 12. 10	제221호 제222호 제223호 제224호 제225호 제22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가공 및 식품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 소방 관련 법령·규제정비계획보고 • 증명민원 서류감축 추진상황 보고 • 규제자유지역 설치방안 • 제4차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 • “고시 등” 하위규정 일제정비계획 	의결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제45차	1999. 12. 24	제227호 제228호 제229호 제230호 제23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산업 관련 규제개혁방안 • 노동조합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대학원·박사과정 설치 관련 규제 재심사안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방안 • 규제대안 개발연구용역 결과보고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제46차	2000. 1. 28	제232호 제233호 제234호 제23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어선 출입항 신고제도 개선방안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행정규제의 판단 및 단위분류 기준 • 2000년도 부처별 중점규제개혁 추진과제 	의결안건(개별)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수정접수
제47차	2000. 2. 11	제236호 제237호 제238호 제239호 제240호 제24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도 규제개혁 업무계획보고 •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규제개혁방안 • 보험 관련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 • 폐기물관리 관련 규제개선방안 • 평생교육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2000년 계획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원안접수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제48차	2000. 2. 25	제242호 제243호 제244호 제24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보험의 진입규제 개선방안 • 외국인 국내활동 관련 규제개혁방안 • 농약유통 및 안전 관련 규제개선방안 • 기업규제개혁작업단 추진실적 보고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제49차	2000. 3. 10	제246호 제247호 제248호 제24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II)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Model)보고 • 통합방송법령 시행관련 보고 • 경쟁제한적 규제개혁작업단 2000년 추진계획보고 	의결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수정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50차	2000. 3. 24	제250호	• 도시계획지역 · 지구제도개선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51호	• 청소년보호연령 기준관련 규제 개선방안	의결안건	수정의결
		제252호	• 감사인 수입제한제도 개선방안	의결안건	상정보류
		제253호	• 임산물 굴취 · 채취 · 매각 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안건	수정의결
		제254호	• 생태계보존협력금에 대한 규제재심사안	의결안건	수정의결
		제255호	• 공원지역 내 행위제한 규제개선방안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51차	2000. 4. 7	제256호	• 감사인 수입제한제도 개선방안	의결안건	수정의결
		제257호	• 무선국 및 무선종사자 관련 규제개선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58호	• 약용작물(한약재)의 가공 및 유통관련 규제개혁 후속조치 계획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59호	• 코스닥(KOSDAQ)시장 건전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 개선방안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52차	2000. 5. 15	제260호	• 의료보험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61호	• 항만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후속 조치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62호	• 규제개혁위원회운영세칙 개정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53차	2000. 5. 26	제263호	•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64호	• 산업안전 관련 건축물 시설기준 합리화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65호	• 최저임금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66호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67호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상정보류
		제268호	• 의료보험 관련 규제개혁방안 중 의결 보류사항 검토보고	보고안건	접수보류
제54차	2000. 6. 9	제267호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보류
		제269호	•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 관련 규제개선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70호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 개선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71호	• 의료보험 관련 규제개선방안 중 의결 보류사항(의료전달체계) 검토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72호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방안 중 의결보류사항 검토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55차	2000. 6. 23	제267호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규	의결안건	수정의결

부록 제2장 규제개혁위원회 개최현황 및 상정안건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영업관련 규제개선방안 • 해운분야 규제개혁 방안 • 증명민원 서류 감축방안 •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안 신설규제심사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조 건 부 의 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56차	2000. 7. 7	제277호 제278호 제27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업 관련 진입규제 개선방안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을 시행령 제정안 규제심사안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조 건 부 의 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제57차	2000. 7. 21	제280호 제281호 제282호 제29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고유업종지정제도 개편방안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규제개혁모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2000년 규제정비계획보고 • 동물용 의약품 중 항생제에 대한 국가 검정 폐지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원안의결 상정보류 원안접수 원안접수
제58차	2000. 8. 18	제284호 제285호 제286호 제28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운전학원 관련 규제개혁방안 • 도로교통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제심사안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59차	2000. 9. 1	제288호 제289호 제29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재활용 관련 규제개선방안 • 도로교통법 개정안 관련 규제제심사안 • 증명민원감축 추진결과보고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제60차	2000. 9. 15	제291호 제292호 제293호 제29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방안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 규제개혁방안 • 학원설립·운영 관련 규제개혁방안(Ⅰ) • 사법시험법 제정안 규제심사 결과보고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접수보류
제61차	2000. 9. 29	제295호 제296호 제297호 제298호 제29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산지의 보존 및 이용 관련 규제합리화방안 • 문화산업 관련 규제개혁방안(Ⅱ) •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보 류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300호	• 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301호	• 사법시험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02호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03호	• 건축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04호	•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재심사안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62차	2000. 10. 13	제305호	• 수도물 절수 및 상수원 수질보전 개선대책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306호	•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2차)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307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308호	•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309호	• 지하철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10호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63차	2000. 10. 27	제311호	• 통신산업규제의 합리화방안 규제심사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12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13호	• 고용보험 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14호	•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관련 규제 합리화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15호	• 제대군인 지원 관련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16호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17호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18호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19호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64차	2000. 11. 10	제320호	•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보 류
		제321호	• 문화재보호 관련 규제의 합리화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22호	• 경제5단체 규제개혁 건의과제 조치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323호	• 부품·소재산업발전특별법 제정안 심사결과 보고안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65차	2000. 11. 24	제324호	•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보 류
		제325호	• 농지 관련 규제개선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26호	• 경제5단체 건의 관련 규제정비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327호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지원단 추진실적 및	보고사항	원안접수

부록 제2장 규제개혁위원회 개최현황 및 상정안건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328호 제329호 제330호	향후추진계획 • 경쟁제한 규제개혁지원단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기업규제개혁직업단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 • 유전자변형생물체의의국가간이동에관한법을 제정안 규제심사안	보고사항 보고사항 의결사항	원안접수 원안접수 수정의결
제66차	2000. 12. 8	제331호 제332호 제333호	• 고창군 규제개혁 추진현황 • 전북도 규제개혁 추진현황 • 환경·교통·재해등영향평가법시행령 제정안 규제심사안	보고사항 보고사항 의결사항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의결
제67차	2000. 12. 22	제334호 제335호 제336호 제337호 제338호	• 건설현장 환경관리관련 규제개혁방안 •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결과 보고 • 폐기물처리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및 검사 관련 규제심사 • 출판및인쇄진흥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을 제정안 규제심사안(2차)	의결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제68차	2001. 1. 19	제339호 제340호 제341호 제342호	• 2001년도 규제개혁업무 추진계획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 규제심사보고 • 2000년도 규제개혁백서 발간 계획 •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을 제정안 규제심사 보고	의결사항 보고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69차	2001. 2. 2	제343호 제344호 제345호	• 진입 및 경쟁제한 규제개선방안 •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원안접수 원안의결 원안접수
제70차	2001. 3. 2	제346호 제347호 제348호 제349호	• 금강·영산강수계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을 제정안 규제심사안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고등교육기관 설립·운영 관련 규제개혁방안 보고 • 규제개혁 여론조사 결과보고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제71차	2001. 3. 16	제350호 제351호 제352호	• 영재교육체계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 보고 • 관광진흥관련 규제의 합리화방안 • 환경 관련 중복규제 개선방안 규제심사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접수 원안의결 원안의결

규제개혁 백서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72차	2001. 3. 30	제353호	•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54호	• 중등학교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355호	•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심사결과 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73차	2001. 4. 13	제356호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수정의결
		제357호	•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수정의결
제74차	2001. 4. 28	제358호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수정의결
제75차	2001. 5. 11	제359호	• 규제개혁제안 처리상황 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360호	• 경제5단체 건의과제(건설·산업부문) 규제개혁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361호	• 경제5단체 건의과제(소방·도로교통·노동분야) 규제개혁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362호	• 환경 관련 중복규제 개선방안(II)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76차	2001. 5. 25	제363호	• 경제5단체건의과제(공정거래, 교통, 농림, 해양수산분야) 규제개혁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364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보 류
		제365호	•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366호	• 정부규제업무평가지침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77차	2001. 6. 8	제364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367호	• 농지거래제한 규제개선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68호	•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69호	• 경제5단체 제3차 건의(환경, 농림 등 4개 분야) 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70호	• 경제5단체 규제개혁 건의관련 추진경과 및 조치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78차	2001. 7. 6	제371호	• 경제5단체건의(재경·건설분야) 관련 규제개혁방안(II)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72호	• 경제5단체건의(광고물·소방·노동·통일부)	의결사항	원안의결

부록 제2장 규제개혁위원회 개최현황 및 상정안건

구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373호	야) 관련 규제개혁방안(Ⅱ) • 민간합동기업규제 실태조사 추진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79차	2001. 7. 20	제374호 제375호 제376호	• 접도구역제도 개선방안 • 대기환경보존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해양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제80차	2001. 8. 17	제377호 제378호 제379호 제380호	• 석탄산업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대학등록금납부제도 개선방안 검토 • 자립형 사립고 사범운영방안 • 2단계 금융규제정비계획	의결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원안의결 수정접수 수정접수 원안접수
제81차	2001. 8. 31	제381호 제382호 제383호	• 도로교통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맥주제조시설기준 완화방안 • 국민불편·애로사항 개선방안	의결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접수
제82차	2001. 9. 14	제384호 제385호 제386호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완화방안 재심사안 • 산업자원부소관 지식정보화과제 추진상황 • 환경 관련 중복규제개선방안(Ⅲ)	의결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제83차	2001. 9. 28	제387호 제388호 제389호 제390호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안 규제심사안 • 경제5단체 3/4분기 건의사항 조치계획 • 제2단계 금융규제 정비계획 • 환경 관련 중복규제 정비계획	의결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제84차	2001. 10. 12	제391호 제392호 제393호 제394호	• 선박투자회사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 경제5단체 3/4분기 건의 관련 규제 정비계획(Ⅱ) • 기업규제실태조사결과 및 조치계획 • 제2단계 금융규제 정비방안	의결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제85차	2001. 10. 26	제395호 제396호 제397호 제398호 제399호	• 오수처리시설기준 관련 규제개선방안 •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고용보험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산자부 소관 하위규정 및 유사행정규제 종합 정비추진 보고안 • 2002년도 규제정비지침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수정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제86차	2001. 11. 9	제400호 제401호	• 금융감독규제자율기능 활성화 및 보고 부담 경감 방안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의결사항	원안의결 수정의결

구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402호 제403호	•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의결사항	수정의결 수정의결
제87차	2001. 11. 23	제404호 제405호 제406호 제407호	• 직업훈련 및 교육제도 규제개혁방안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규제정비계획 재 심사안 • 주택조합공급비율지침 개정안 규제심사안 • 대기업집단정책 개선방안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원안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제88차	2001. 12. 7	제408호 제409호 제410호 제411호 제412호	• 변리사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행정사제도 폐지 재심사안 • 기업규제 개선방안(Ⅰ)(행자부, 노동부 소관) • 기업규제 개선방안(Ⅱ)(환경부, 농림부, 해양 수산부 소관) • 무선국운용 및 검사 관련 규제개선방안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제89차	2001. 12. 21	제413호 제414호 제415호 제416호 제417호 제418호 제419호	• 기업규제 개선방안(Ⅲ) • 기업규제 개선방(Ⅰ-1) • 환경 관련 중복규제 개선방안 • 건설·자원분야 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 • 해양수산분야 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 • 환경분야 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 • 부대입찰제 연장심사 재심사안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90차	2002. 1. 18	제420호 제421호 제422호	• 세무사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소음·진동 관련 규제합리화방안 • 2001년도 규제개혁백서 발간계획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수정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제91차	2002. 2. 1	제423호 제424호 제425호	• 전문자격사 및 사업자단체 관련 규제개혁방 안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 사회복지시설 관련 규제개혁방안 • 문화관광분야 하위 및 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접수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92차	2002. 2. 22	제426호 제427호	•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규제순응도 조사 및 활용지침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원안접수
제93차	2002. 3. 8	제428호 제429호	• 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규제개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계획	의결안건 보고안건	원안의결 수정접수
제94차	2002. 4. 12	제430호 제431호	• 어선원및어선자해보상보험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 의결안건	의결보류 개선권고

부록 제2장 규제개혁위원회 개최현황 및 상정안건

구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432호	• 세무사법 개정안 규제재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95차	2002. 4. 26	제433호	• APEC-OECD 규제개혁 서울회의 준비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434호	• 경제5단체 건의과제 개선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435호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96차	2002. 5. 2	제436호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 재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97차	2002. 6. 3	제437호	• 규제개혁위원회 간사·분과위원장 지명 및 분과위원 임명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438호	•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98차	2002. 6. 14	제441호	• 국민의 정부 4년간 부처별 규제개혁실적 평가 결과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440호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439호	•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99차	2002. 6. 28	제442호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443호	• 소방법 체계개편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444호	• 신의료기술등결정및조정기준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보류
		제445호	• 방문판매법및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규제심사결과보고안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100차	2002. 7. 12	제446호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447호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01차	2002. 8. 9	제448호	• 신의료기술등결정및조정기준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449호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450호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451호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452호	• 운항관리자제도 폐지 관련 의결사항 재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453호	• 유사행정규제 정비모델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102차	2002. 8. 23	제454호	•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455호	•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정 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456호	•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457호	• 선박항행구역의 합리적 조정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458호	•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459호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103차	2002. 9. 6	제460호	• 보험업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461호	• 방송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462호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안 규제심사결과 보고안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463호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결과 보 고안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464호	• APEC-OECD 규제개혁 한국회의 개최준비 상황 보고안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104차	2002. 9. 27	제465호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규 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466호	• 근로기준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보류
		제467호	• 건축물의피난및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468호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 신설 · 강화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보류
		제469호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105차	2002. 10. 2	제470호	• 방송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471호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472호	• 근로기준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106차	2002. 10. 24 ~25	제473호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동의
제107차	2002. 11. 1	제474호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475호	• 교육과정개편 관련 규제개선방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476호	• 행정사제도 폐지에 대한 재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부록 제2장 규제개혁위원회 개최현황 및 상정안건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108차	2002. 11. 15	제477호	• 접도구역제도 개선방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478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479호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동의
		제480호	• 금융기관 유사업무 관련 법규 통·폐합 및 투산업 관련 공시제도 개선방안	의결안건	원안동의
		제481호	• 자산운용업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109차	2002. 12. 6	제483호	• 약취방지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484호	• 의료정보 유통의 원활화를 위한 기반구축 등 개선방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485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486호	• 의료급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487호	• 2003년 규제개혁백서 발간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110차	2002. 12. 13	제488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동의
		제489호	• 특정·지식정보화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490호	• 경제5단체 등 건의과제 개선방안	의결안건	수정의결

제2절 _ 경제1분과위원회

나. 경제1분과위원회

차수	회의일자	상 정 안 건	구 분	회의결과
제157차	2002. 1.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도로와다른도로등과연결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개선권고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158차	2002. 1.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운영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 세무사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개선권고 의결보류 원안의결
제159차	2002. 1.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원안의결	개선권고
제160차	2002. 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손해사정인의 의무 및 책임강화 방안 	의결안건 보고안건	원안의결 원안접수
제161차	2002. 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162차	2002. 2.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법시행령·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신용카드규제 관련 경과보고 •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 액화석유가스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변리사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원안접수 개선권고 개선권고 심의보류 원안의결
제163차	2002. 3.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부록 제2장 규제개혁위원회 개최현황 및 상정안건

차수	회의일자	상 정 안 건	구 분	회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2차) 	의결안건 의결안건	개선권고 개선권고
제164차	2002. 3.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도 규제정비계획(건교부)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 가격표시제도실시요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접수 심의보류 심의보류
제165차	2002. 3.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 가격표시제도실시요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개선권고 원안의결 개선권고
제166차	2002. 3.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PG 판매사업소의 용기보관실 안전대책 • 2002년도 규제정비 추진계획(재경부) • 2002년도 규제정비 추진계획(금감위) • 상호신용금고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 공동주택관리 관련 규제개혁방안 • 세무사법 개정안 규제재심사안 	보고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의결 접수보류 개선권고
제167차	2002. 4.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도 규제정비 추진계획(산자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보고안건 의결안건	원안접수 의결보류
제168차	2002. 4.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구매 전용카드거래제 관련 개선대책 •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접수 원안의결 개선권고 개선권고 개선권고
제169차	2002. 4.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공정위)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 유사행정규제 정비모델안 • 경제5단체 건의과제 개선방안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접수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170차	2002. 5.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개정안 규제심사안 • 유사행정규제 정비모델안 • 세무사법 개정안 규제재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개선권고 원안의결 원안의결 개선권고 원안의결 개선권고
제171차	2002. 6.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량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차수	회의일자	상 정 안 건	구 분	회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관세사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관세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개선권고 개선권고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172차	2002. 6.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방향 관련 보고안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본회의상정 원안접수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개선권고 원안의결
제173차	2002. 6.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증권거래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금융부문)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규제심사안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개선권고 원안의결 개선권고 (본회의보고)
제174차	2002. 6.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개선권고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본회의상정)
제175차	2002. 7.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전기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은행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차수	회의일자	상 정 안 건	구 분	회의결과
제176차	2002. 7.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 규제재심사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규제재심사안 골재채취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 재심사안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회권고 철회권고 개선권고 개선권고 원안의결 원안의결 개선권고 원안의결 개선권고 <p>(본회의상정)</p>
제177차	2002. 7.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재심사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재심사안 항공기운항안전법시행규칙 제정안 규제심사안 액화석유가스공급구역제한에관한조정명령공고 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안의결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제178차	2002. 8.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배사업법시행령·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안의결
제179차	2002. 8.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안동의 원안동의 원안동의 원안동의
제180차	2002. 8.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업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보고안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개선권고 개선권고
제181차	2002. 9.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보고안(금감위)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보고안(산자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개선권고 개선권고

차수	회의일자	상 정 안 건	구 분	회의결과
		•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182차	2002. 9. 11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보고안(건교부)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개선권고 개선권고 원안접수 개선권고
제183차	2002. 9. 18	•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개선권고 원안의결 개선권고
제184차	2002. 9. 25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대부업의등로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개선권고
제185차	2002. 10. 2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규칙 제정안 규제심사안 • 증권업감독규정 관련 규제실효성 검토보고안(증권회사의 매매권유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공시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개선권고 원안접수 원안의결
제186차	2002. 10. 9	•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보고안 • 건축기준 합리화 방안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 보고안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원안접수 개선권고 원안의결 원안접수
제187차	2002. 10. 23	• 산업단지관기기관 범위 확대방안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 규제심사안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보고안건 의결사항 의결안건	접수보류 개선권고 개선권고 (본회의상정)
제188차	2002. 10. 30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시행령·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접도구역 개선방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개선권고 개선권고 개선권고
제189차	2002. 11. 6	• 한국화재보험협회 국가고유기능의 분리 및 임의단체화	의결안건	원안의결

차수	회의일자	상 정 안 건	구 분	회의결과
		에 대한 재심사안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 제2호의규정에의한여신금융기관의연체이자율에관한규 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석유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개선권고 원안의결
제190차	2002. 11. 13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금융기관 유사업무관련 법규 통·폐합을 통한 규제정비 방안 • 투신업관련 공시제도 개선방안 • 자산운용업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개선권고 개선권고 개선권고 개선권고 개선권고
제191차	2002. 11. 20	•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안전검사기준 개정안 규제심사안 •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금감위 소관 3개 과제) • 금융기관 건정성 관련 규제정비방안	의결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개선권고 접수보류 원안접수
제192차	2002. 12. 4	• 특정과제 및 지식정보화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 지리정보 유통 및 관리 등 합리화방안 • 경제5단체 건의과제 개선방안(금감위·건교부) •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시행령·규 칙 제정안 규제심사안 • 관세사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보고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접수 수정접수 원안의결 개선권고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193차	2002. 12. 11	• 경제5단체 건의과제 개선방안 • 석유유통체계 개선방안 • 전자서명시스템 구축방안 • 증권업감독규정 등 개정안 규제심사안 •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 금융감독규제의 체계화방안 및 각종 신고부담 경감방안 • 지식정보화 사회구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금감위)	의결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의결 개선권고 원안의결 원안접수

차수	회의일자	상 정 안 건	구 분	회의결과
제194차	2002. 12.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세무사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의결안건	개선권고
			의결안건	원안의결
			의결안건	원안의결
			의결안건	심사보류
제195차	2002. 12.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분야외국인연수에관한지침 개정안 규제심사안 • 공공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3절 _ 행정사회분과위원회

다. 행정사회분과위원회

차수	회의일자	상 정 안 건	구 분	회의결과
제143차	2002. 1.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실시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및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사회복지시설규제개혁방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보 류 보 류
제144차	2002. 1.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기준 개정안 규제심사안 하위·유사행정규제정비방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개선권고 보 류 원안의결 수정의결
제145차	2002. 1.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정안 규제심사안 사회복지시설 규제개혁방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 류 원안의결
제146차	2002. 1.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정안 규제심사안 장애인재활사업등고시 제정안 규제심사안 게임취급업소의경품기준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 류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147차	2002. 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진흥법시행령·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료기관행정처분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심사보류 원안의결
제148차	2002. 2.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양급여청구대행범위기준 개정안 규제심사안 평생교육진흥법시행령·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소방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149차	2002. 2.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대책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차수	회의일자	상 정 안 건	구 분	회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북한이탈주민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보 류
제150차	2002. 3.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북한이탈주민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규제심사안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정안 규제심사안 • 연소방지도료등의도포및성능기준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개선권고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151차	2001. 3.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식소화기승인등기준 개정안 규제심사안 • 교과용도서규제개혁방안 보고 규제심사안 • 2002 규제개혁추진계획 보고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제152차	2002. 3.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사에관한법률시행령·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2002 방송프로그램편성기준 개정안 규제심사안 • 방송프로그램등금분류및표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2002 규제개혁추진계획(복지부·교육부·문광부·행자부 등)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개선권고 원안접수
제153차	2002. 4.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 규제개혁추진계획 보고 • 관광진흥규제 합리화 보고 	보고안건 의결안건	원안접수 원안의결
제154차	2002. 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건강검진실시규정기준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 장애인능력개발훈련실시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 2002 규제개혁 추진계획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개선권고 개선권고 원안의결 원안접수
제155차	2002. 4.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대한약전외한약규격 개정안 규제심사안 •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노출기준 개정안 규제심사안 • 경제단체 건의과제(노동부·행자부)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 류 원안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제156차	2002. 4.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피부양자인정기준 개정안 규제심사안 • 경제단체 건의과제(복지부·식약청·국방부) • 충남도 건의과제(노동부)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철회권고 원안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제157차	2002. 5.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등의기준및규격 개정안 규제심사안 •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출국금지업무및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개선권고 개선권고
제158차	2002. 6.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청소년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개선권고

차수	회의일자	상 정 안 건	구 분	회의결과
		• 의약품기준및시험방법기준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159차	2002. 6. 14	• 도로교통법시행령·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소방관련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 신의료기술등의기준 개정안 규제심사안 • 식품위생중점관리기준 개정안 규제심사안 • 공연법시행령·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개선권고 개선권고 보 류 원안의결 보 류
제160차	2002. 6. 21	• 공연법시행령·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신의료기술등의기준 개정안 규제심사안 • 혈액관리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방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개선권고 개선권고 개선권고 개선권고 원안접수
제161차	2002. 6. 27	• 외국인연수취업자관리규정 제정안 규제심사안 •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개선권고 보 류
제162차	2002. 7. 5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개정 관련 보고 • 채해구호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의약품의기준및시험방법기준 개정안 규제심사안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접수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163차	2002. 7. 11	• 행정사제도 개선방안보고 •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관한규정 제정안 규제심사안 • 화장품품질위탁검사기관지정규정 제정안 규제심사안 •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재 보 고 개선권고 개선권고 개선권고
제164차	2002. 7. 25	•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을 누락규제보고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소방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접수 개선권고 개선권고
제165차	2002. 8. 2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개정 관련 보고 •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규제순응도 조사결과(청보위)	보고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원안접수 개선권고 원안접수
제166차	2002. 8. 14	•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67차	2002. 8. 21	• 특수건강진단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 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 개정안 규제심사안 • 규제순응도 조사결과(복지부·보훈처)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개선권고, 철회권고 개선권고 원안접수

차수	회의일자	상 정 안 건	구 분	회의결과
제168차	2002. 8.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제공업에서제공하는게임물의범위 제정안 규제심사안 • 소공연장육성방안 보고 • 규제순응도 조사결과(행자부 · 경찰청 · 복지부 · 식약청) 	의결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보 류 원안접수 원안접수
제169차	2002. 9.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안전예방관리및재해예방전문기관관리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개선권고 개선권고 원안의결
제170차	2002. 9.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보고(노동부) • 미등록 및 누락규제(행자부)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개선권고 개선권고 원안접수 원안의결
제171차	2002. 9.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제공업에서제외하는영업소의게임물설치범위 제정안 규제심사안 •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시험기준 개정안 규제심사안 • 남북교역물품반출입기준 개정안 규제심사안 • 동물생약등의유해중금속허용기준 관련 보고 • 규제순응도 조사결과보고(노동부)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개선권고 개선권고 개선권고 원안접수 원안접수
제172차	2002. 9.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173차	2002. 1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에관한법을 개정안 규제심사안 • 총포화약도검류단속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여권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보건복지부 지식정보화과제 보고 • 부랑인복지시설치운영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특수의료장비설치및품질관리에관한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개선권고 보 류 원안의결 원안접수 개선권고 개선권고
제174차	2002. 10.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포도검및화약류단속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행정사제도 개선방안 • 노동부소관 누락규제 • 교육과정개편 보고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개선권고 원안의결 개선권고 원안의결
제175차	2002. 1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보건복지부소관 지식정보화과제 • 군인공제회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보 류 개선권고 원안보고 원안의결

차수	회의일자	상 정 안 건	구 분	회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소관 지식정보화과제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176차	2002. 11.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 교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경제단체 건의과제(국방부·병무청) • 복지부소관 지식정보화과제 • 응급의료법시행령·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개선권고 원안접수 개선권고
제177차	2002. 11.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용구등의허가에관한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 의료용구기준및시험방법심사기관지정및운영규정 제정안 규제심사안 • 경제단체 건의과제(복지부) • 교육부 미등록규제 •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개선권고 개선권고 개선권고 개선권고
제178차	2002. 11.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법시행령·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지식정보화과제 보고(복지부) • 방문동거자의고용관리에관한규정 제정안 규제심사안 • 경제단체 건의과제(노동부)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개선권고 개선권고 원안의결 원안의결 개선권고
제179차	2002. 12.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법시행령·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외국인연수취업자의보호관련규정 보고 • 경제단체 건의과제(복지부·행자부) 	의결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개선권고 원안접수 개선권고
제180차	2002. 12.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개발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외국인력의 합리적 활용방안 •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사기준 개정안 • 농작업재해의 산재보험 확대방안 • 방송프로그램편성비율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 시간표시대상화장품지정고시 제정안 규제심사안 • 옥외광고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개선권고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개선권고 개선권고 수정의결

제4절 _ 경제2분과위원회

라. 경제2분과위원회

차수	회의일자	상 정 안 건	구 분	회의결과
제122차	2002. 1. 11	• 대기보존특별대책지역지정및동지역대기오염저감을위한 종합대책(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수정의결
		• 적기시정조치기준과내용(고시)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 해양오염방지설비의형식승인을위한성능시험및검정기준(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 한국전기통신공사의공익성보장(고시)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수정의결
제123차	2002. 1. 18	• 비료공정규격(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 지하생활공기질관리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수정의결
제124차	2002. 1. 25	• 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 유선방송사업및전송망사업의허가및등록등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수정의결
		• 농수산물표준규격(고시) 및 임산물표준규격(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수정의결
		• 환경·농림분야 민원사항 개선방안	의결안건	건의과제
제125차	2002. 2. 1	•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비용산출기준등에 관한규정(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 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 총여획량적용대상어업의종류등의지정에관한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부록 제2장 규제개혁위원회 개최현황 및 상정안건

차수	회의일자	상 정 안 건	구 분	회의결과
제126차	2002. 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외전화사전선택제시행기준(고시) 제정안 규제심사안 • 선로표지장비·용품검사기준(고시)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수정의결 원안의결
제127차	2002. 2.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검사요령(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 수출을목적으로하는수산물·수산가공품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128차	2002. 3.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2002년도 추진계획 보고 • 항만공사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 농지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접수 수정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제129차	2002. 3.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 제조·수입또는사용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화학물질(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연료사용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특정과제
제130차	2002. 3.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 방사선안전관리등의교육·훈련에관한규정 제정안 규제심사안 • 가입자선로의공동활용기준(고시) 제정안 규제심사안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해양수산분야 하위·유사행정규제세부정비계획 보고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수정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접수 수정의결
제131차	2002. 4.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마사회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수입곡물류에혼입된잡초검역규정(고시) 제정안 규제심사안 • 농수산물품질인증에관한세부실시요령(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수정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132차	2002. 4.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서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경제5단체 건의 관련 규제개선방안 • 국제수산기구어업규제사항이행에관한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수정의결 건의과제 원안의결
제133차	2002. 4.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5단체 건의 관련 규제개선방안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건의과제 원안의결

차수	회의일자	상 정 안 건	구 분	회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전화역무취급에따른국제전화역무제공자와외국사업자간요금의정산에관한승인기준(고시) 제정안 규제심사안 유선방송사업및전송망사업의허가및등록등에관한규칙 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수정의결 수용불가 의 결
제134차	2002. 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35차	2002. 6.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기업활동 규제완화 건의안 심사 농지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과학기술연구 활성화 방안 보고 치어및치폐의수출제한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건의과제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접수 원안의결 수정의결
제136차	2002. 6.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규제심사안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규제심사안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규제심사안 임업진흥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국제로밍서비스계약에관한승인기준(고시)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수정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제137차	2002. 6.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약관리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규제심사안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제138차	2002. 7.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운항관리자제도 폐지 관련 재심사안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운영·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수정의결 수용의결 원안접수
제139차	2002. 7.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출력 FM방송제도 개선방안 보고 정보보호시스템평가·인증지침(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보고안건 의결안건	원안접수 수정의결

차수	회의일자	상 정 안 건	구 분	회의결과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보 류
제140차	2002. 8. 9	•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을 제정안 규제심사안 •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 선박투자회사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규제심사안 • 선박항행구역의 합리적 조정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 류 수정의결 수정의결 특정과제
제141차	2002. 8. 19	• 임진강유역배출시설설치허가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 배출시설지정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을 제정안 규제심사안 •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142차	2002. 8. 26	• 환경·농림분야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143차	2002. 8. 30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해운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산림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제144차	2002. 9. 6	•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오수·분뇨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수정의결 수정의결
제145차	2002. 9. 13	• 과학기술부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보고 • 해양수산부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보고 • 도선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보고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의결 원안의결 (本:수정)
제146차	2002. 10. 4	• 산적액체위험물운송선박의시설등에관한기준(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 낚시어선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수질개선부담금 관련 규제개선방안 규제심사안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수정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건의과제 수정의결
제147차	2002. 10. 11	• 정보통신기기인증관련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수정의결

차수	회의일자	상 정 안 건	구 분	회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농업인센터운영비지원대상자선정기준(고시) 제정안 규제심사안 기상업무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수정의결</p> <p>원안의결</p>
제148차	2002. 10.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물·수산특산물및수산전통식품의품질인증대상품목 과품질인증에관한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원앙어선표지크기및표시방법등에관한고시 제정안 규제심사안 선박방화구조기준(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정보통신부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및 개선방안 전자서명인증관련고시 제정안 규제심사안 식물방역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보고안건</p>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원안의결</p> <p>원안의결</p> <p>원안의결</p> <p>원안접수</p> <p>수정의결</p> <p>수정의결</p>
제149차	2002. 1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하수도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경제5단체 등 건의 관련 규제개혁방안 선박및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대상기준(고시) 제정안 규제심사안 선박및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시험및검정에관한기준(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원안의결</p> <p>보 류</p> <p>건의과제</p> <p>원안의결</p> <p>원안의결</p>
제150차	2002. 11.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번호이동성시행계획 보고 	<p>보고안건</p>	<p>원안접수</p>
제151차	2002. 11.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약및원제의취급제한기준(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약취방지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수정의결</p> <p>원안의결</p> <p>수정의결</p>
제152차	2002. 11.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수정의결</p> <p>보 류</p>
제153차	2002. 12.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하수도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특정과제·지식정보화과제 추진경과 보고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보고안건</p>	<p>수정의결</p> <p>수정의결</p> <p>원안접수</p>
제154차	2002. 1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전자변형수산물의표시대상품목및표시요령(고시) 제정안 규제심사안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규제심사안 폐기물 소각시설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의결안건</p>	<p>수정의결</p> <p>원안의결</p> <p>특정과제</p>

부록 제2장 규제개혁위원회 개최현황 및 상정안건

차수	회의일자	상 정 안 건	구 분	회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배출표시에관한지침(고시) 제정안 규제심사안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수정의결 수정의결
제155차	2002. 12.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해양수산분야 외국인 산업연수생 관리지침(고시)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2002년도

규제개혁 백서

발행처 · 발행인 규제개혁위원회

편집협력 엔더블유기획정보 T.02-2235-6114

인쇄 · 제본 엔더블유기획정보

발행일 2003. 6. 30

ISBN 89-950708-2-X 13350

— ❷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206호 규제개혁위원회(우: 110-760)

전화 (02)722-9797

팩스 (02)720-2056

인터넷 <http://www.rrc.go.kr>(참여마당-규제신고센터)